

용역보고서 2023-123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971-12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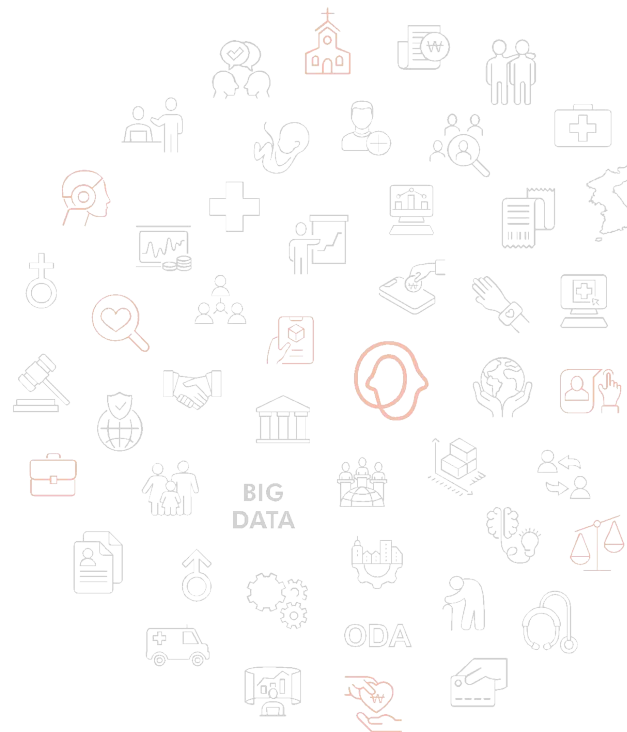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강지원

임완섭·조성호·최인선·고숙자·강은나·고혜진·황남희·황도경·김문길·김보름



■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보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3. 12. 15.)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4
제2장 조사 설계	17
제1절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19
제2절 조사표 개발 및 구성	29
제3장 중앙부처 기본조사	49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51
제2절 기초분석	56
제3절 기준변수의 선정	74
제4절 부정수급 현황 분석	77
제5절 부정수급 환수 실적 분석	86
제4장 사회보험 기본조사(시범조사)	95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97
제2절 고용보험	100
제3절 산재보험	104
제4절 국민연금	108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11
제6절 건강보험	115

제5장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시범조사)	123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125
제2절 기준변수의 선정	126
제3절 부정수급 규모	142
제6장 보장기관 심층분석 조사	157
제1절 조사 개요	159
제2절 심층조사 주요 결과	164
제7장 정성 조사	197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199
제2절 초점집단면접조사	213
제8장 결론: 주요 결과와 함의	227
제1절 기본조사 주요 결과	229
제2절 사회보험 시범 조사 주요 결과	238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범 조사 주요 결과	243
제4절 심층 조사 주요 결과 및 함의	247
제5절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251
참고문헌	259



부록	261
[부록 1]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367개)	261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중 조사 대상 사업 목록(100개)	272
[부록 3]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275
[부록 4] 사회보험기관 기본조사표	283
[부록 5]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표	303
[부록 6] 심층조사표	307
[부록 7] 델파이 조사표	323
[부록 8] 초점집단면접 조사표	336
[부록 9] 중앙부처 기본조사 미응답 사업 현황	345
[부록 10] 중앙부처 예산 미제출 및 통합 사업 현황	347
[부록 11] 사회보험기관 부정수급 현황 및 추이	350

표 목차

〈표 1-1〉 부정수급 분류	9
〈표 1-2〉 조사별 대상과 조사 방법 요약	14
〈표 2-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19
〈표 2-2〉 중앙부처별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21
〈표 2-3〉 분야별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22
〈표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부처 소관 정보시스템 활용 사업 수	22
〈표 2-5〉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사회보장급여 현황	23
〈표 2-6〉 지방자치단체 분야·부문 ¹⁾ 별 사회보장급여 현황	24
〈표 2-7〉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별 사회보장급여 현황	24
〈표 2-8〉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의 사후관리 현황	25
〈표 2-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	25
〈표 2-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의 근거	26
〈표 2-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조사 대상 사업: 시도	28
〈표 2-1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조사 대상 사업: 시도	28
〈표 2-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조사 대상 사업: 급여 유형	29
〈표 2-1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변경: 2018 vs 2022	38
〈표 2-1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위험성 분석 조사항목	39
〈표 2-16〉 기본조사(1): 중앙부처	41
〈표 2-17〉 기본조사(2): 사회보험	42
〈표 2-18〉 기본조사(3): 지방자치단체	44
〈표 2-19〉 심층조사표: 보장기관	45
〈표 2-20〉 전문가 델파이 조사	46
〈표 2-21〉 초점집단면접조사 대상자	47
〈표 2-22〉 초점집단면접조사	48
〈표 3-1〉 중앙부처 조사 대상 및 응답율	52
〈표 3-2〉 집행액 조정 사업	54
〈표 3-3〉 분석 대상 사업 현황: 중앙부처	57
〈표 3-4〉 분석 대상 사업 현황: 회계기준	58
〈표 3-5〉 분석 대상 사업 현황: 집행액(분위)	59
〈표 3-6〉 분석 대상 사업 현황: 집행액(국비, 지방비)	59
〈표 3-7〉 분석 대상 사업 현황: 급여 형태	61



〈표 3-8〉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의 법령 근거와 대응조치	62
〈표 3-9〉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 지침	63
〈표 3-10〉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주체	64
〈표 3-11〉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주체(상세)	65
〈표 3-12〉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66
〈표 3-13〉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신고체계	67
〈표 3-14〉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파악 방법	67
〈표 3-15〉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는 사유	68
〈표 3-16〉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69
〈표 3-17〉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의 고의성과 유형	69
〈표 3-18〉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환수 실적	70
〈표 3-19〉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의 고의성과 유형	70
〈표 3-20〉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적발(미환수 내역)	71
〈표 3-21〉 분석 대상 사업 현황: 상세자료를 활용한 부정수급 환수 결정과 환수 실적	72
〈표 3-22〉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원인별 부정수급액	73
〈표 3-23〉 기준변수 1: 2020년 기준변수	74
〈표 3-24〉 기준변수 2: 2023년 신규 기준변수	75
〈표 3-25〉 부정수급 현황 분석을 위한 기준변수	76
〈표 3-26〉 사회보장급여 환수 결정과 부정수급	80
〈표 3-27〉 사회보장급여 환수 결정 금액 ¹⁾ :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사유 ²⁾	83
〈표 3-28〉 사회보장급여 환수 결정 금액 ¹⁾ : 비고의적인 부정수급의 사유 ²⁾	85
〈표 3-29〉 사회보장급여 환수 실적과 부정수급	89
〈표 3-30〉 사회보장급여 환수 실적 금액 ¹⁾ :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사유 ²⁾	92
〈표 3-31〉 사회보장급여 환수 실적 금액 ¹⁾ : 비고의적인 부정수급의 사유 ²⁾	94
〈표 4-1〉 사회보험 기본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99
〈표 4-2〉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100
〈표 4-3〉 2022년 고용보험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100
〈표 4-4〉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101
〈표 4-5〉 부정수급 관리 주체 및 관리방법	102
〈표 4-6〉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 체계 운영	102
〈표 4-7〉 부정수급 분류 기준과 항목 기준	103

〈표 4-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103
〈표 4-9〉 산재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104
〈표 4-10〉 2022년 산재보험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104
〈표 4-11〉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105
〈표 4-12〉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 체계 운영	107
〈표 4-13〉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107
〈표 4-14〉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108
〈표 4-15〉 2022년 국민연금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108
〈표 4-16〉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109
〈표 4-17〉 부정수급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109
〈표 4-18〉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110
〈표 4-19〉 부정수급 분류 기준과 항목 기준	110
〈표 4-20〉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110
〈표 4-2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111
〈표 4-22〉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112
〈표-4-23〉 부정수급 관리 주체 및 관리방법	112
〈표 4-24〉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113
〈표 4-25〉 부정수급 분류 기준과 항목 기준	113
〈표 4-26〉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114
〈표 4-27〉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114
〈표 4-28〉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115
〈표 4-29〉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	116
〈표 4-30〉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조치 및 주요 대응조치	117
〈표 4-31〉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관련 지침	117
〈표 4-32〉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관리 주체	118
〈표 4-33〉 부정수급 관리 방법	119
〈표 4-34〉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120
〈표 4-35〉 2022년 건강보험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120
〈표 4-36〉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121
〈표 5-1〉 기초분석을 위한 기준변수	126
〈표 5-2〉 기준변수 기술통계량: 지자체 사업(100개)	127



〈표 5-3〉 사업 지원 형태	129
〈표 5-4〉 부정수급 관리 주체	131
〈표 5-5〉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 유무	133
〈표 5-6〉 근거법령에 제시된 대응 조치(다중응답)	135
〈표 5-7〉 부정수급 관리 관련 지침 유무	137
〈표 5-8〉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유무	139
〈표 5-9〉 부정수급 관리 신고체계 운영 유무	141
〈표 5-10〉 부정수급 규모 파악 여부	143
〈표 5-11〉 부정수급 파악 방법(다중응답)	145
〈표 5-12〉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다중응답)	147
〈표 5-13〉 부정수급 규모 파악을 위한 기준변수	149
〈표 5-14〉 사회보장급여 환수 규모: 41개	151
〈표 5-15〉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규모: 41개 사업 대상	152
〈표 5-16〉 지자체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154
〈표 6-1〉 응답자 특성	160
〈표 6-2〉 응답자 소속별 현황	161
〈표 6-3〉 대상 사업의 유형별 현황	162
〈표 6-4〉 구성원 수, 담당 사회보장사업 수, 월평균 신청자	165
〈표 6-5〉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평균)	166
〈표 6-6〉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여부	167
〈표 6-7〉 감사부서에서 해당 사업 외의 다른 사회보장사업 관리 여부	168
〈표 6-8〉 감사부서 구성원 수(평균)	169
〈표 6-9〉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자체 운영 여부	170
〈표 6-10〉 자체 운영 신고/접수 운영 형태	170
〈표 6-11〉 감사부서를 제외한 부정수급 전담 조직 여부	171
〈표 6-12〉 부정수급 전담 조직 설치 형태	171
〈표 6-13〉 전담 조직에 해당 사업 포함 여부	172
〈표 6-14〉 전담 부서 부서원(평균)	173
〈표 6-15〉 부정수급 관련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정기적 관리 여부	174
〈표 6-16〉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관리 방법	175
〈표 6-17〉 부정수급 인지(접수) 경로	176

〈표 6-18〉 부정수급(고의적) 관련 조치 실적 : 환수 결정	178
〈표 6-19〉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_환수실적_고의적	180
〈표 6-20〉 오류수급 관련 조치 실적, 환수결정, 비고의적	182
〈표 6-21〉 오류수급 관련 조치 실적_환수실적_비고의적	183
〈표 6-22〉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 지원중단, 수사의뢰, 형사고발, 행정처분	184
〈표 6-23〉 환수결정 이후 원활한 환수 여부	185
〈표 6-24〉 환수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이유(중복응답)	187
〈표 6-25〉 해당 사업 보장기관의 초기 상담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188
〈표 6-26〉 해당 사업의 초기상담 담당기관의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189
〈표 6-27〉 안내 대상에 대한 안내 횟수(평균)	189
〈표 6-28〉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실시 여부	190
〈표 6-29〉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의 대상 범위	190
〈표 6-30〉 부정수급 교육 참석 횟수 여부 및 횟수	191
〈표 6-31〉 부정수급 교육 주최	192
〈표 6-32〉 부정수급 교육 관리 및 예방 도움 정도	193
〈표 6-33〉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중복응답)	195
〈표 7-1〉 응답자 특성	200
〈표 7-2〉 사회보험급여 목록에서 적절성 검토 대상 사업	202
〈표 7-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FGI 추진내역	219
〈표 8-1〉 2023년 중앙부처 사회 보장 급여 사업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233
〈표 8-2〉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원인별 부정수금액	234
〈표 8-3〉 2023년 기준변수와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 ¹⁾	236
〈표 8-4〉 사회보험 기본조사 대상	240
〈표 8-5〉 2023년 사회보험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242
〈표 8-6〉 2023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245
〈표 8-7〉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외 대상 사업(안)	252
〈표 8-8〉 심층조사 문항 개선(안)	255
〈부표 11-1〉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현황	350
〈부표 11-2〉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유형	350
〈부표 11-3〉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350
〈부표 11-4〉 산재보험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	351



〈부표 11-5〉 유형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	351
〈부표 11-6〉 유형별 적발금액(징수결정액) 현황	352
〈부표 11-7〉 국민연금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건수	352
〈부표 11-8〉 국민연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수급기간)	353
〈부표 11-9〉 국민연금 연도별 부당이득 적발건수 및 환수 결정 금액	353
〈부표 11-10〉 국민연금 연도별 부당이득 환수 금액	353
〈부표 11-11〉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현지조사 결과)	354
〈부표 11-1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현황	354
〈부표 11-13〉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유형별 현황	355
〈부표 11-14〉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 적발기관 행정처분 통보 현황	355
〈부표 11-15〉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 적발 기관 수사의뢰(고발) 현황	355
〈부표 11-16〉 최근 5년 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	356
〈부표 11-17〉 면허대여약국 부정수급 현황	356
〈부표 11-18〉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현황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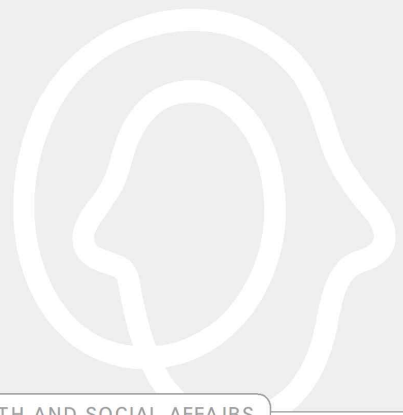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사회보장 분야 예산(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3
[그림 1-2] 사회보장 분야 사업 수(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4
[그림 1-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5
[그림 1-4] 사회보험 기금 추이	6
[그림 1-5]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7
[그림 1-6] 본 연구의 추진 프로세스	11
[그림 2-1] 건강보험 부적정지출 관리체계	37
[그림 7-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인지와 주기에 대한 인식	204
[그림 7-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규모 분석 기준에 대한 인식	206
[그림 7-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세부 분석기준에 대한 인식	207
[그림 7-4] 사회보장급여 심층 조사 대상 사업 선정기준	209
[그림 7-5]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210
[그림 7-5]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계속)	211
[그림 7-6]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이 빈번한 제도	212
[그림 7-7]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13
[그림 8-1]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소관 부처	230
[그림 8-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정부 기능	230
[그림 8-3] 중앙부처 기본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현황	232
[그림 8-4]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현황	245
[그림 8-5] 조사 방식 개선(안)	254
[그림 8-6] 심층조사 대상 선정 기준: 1안	256
[그림 8-7] 심층조사 대상 선정 기준: 2안	257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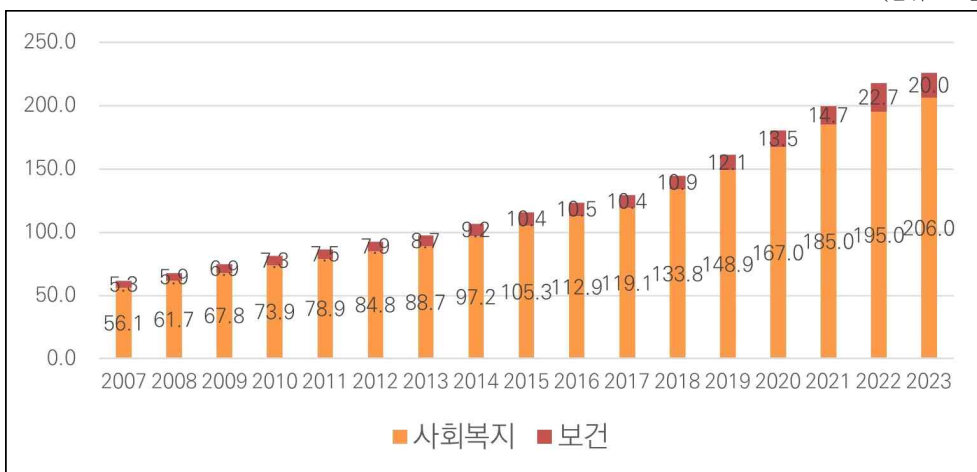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복지 수요의 다변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예산은 계속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 근거한 16대 분야별 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 분야(보건 분야+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07년 61.4조 원에서 2023년 226.0조 원으로 약 3.6배 증가함.

- 사회보장 분야 예산 중 보건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예산임.

[그림 1-1] 사회보장 분야 예산(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단위: 조 원)



주: 사회보장 분야는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합으로 구성함.

자료: 열린 재정 홈페이지(<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8>)에서 2023년 9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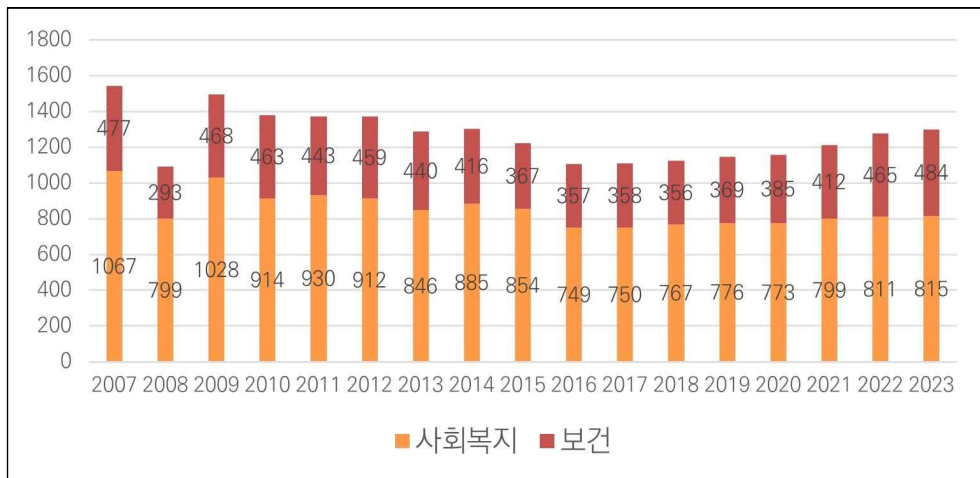
4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 우리나라의 재정사업¹⁾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운영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²⁾-부문-프로그램-단위 사업-세부 사업-내역 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예산편성 및 평가의 기본 단위는 ‘세부 사업’임. 사회보장 분야 예산의 증가는 사업 수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사회보장 분야 세부 사업 수는 2007년 1,504개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2016년 1,106개로 최저점을 찍은 후에 2017년부터 완만한 증가를 이뤄 2023년 예산 기준 1,299개임(2008년 제외).
- 최근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기존 사회보장급여의 불충분성을 완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2008년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의 세부사업 수는 1,092개소며, 이는 2009년에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이상점에 해당함.

[그림 1-2] 사회보장 분야 사업 수(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단위: 개)



자료: 열린 재정 홈페이지(<https://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년 12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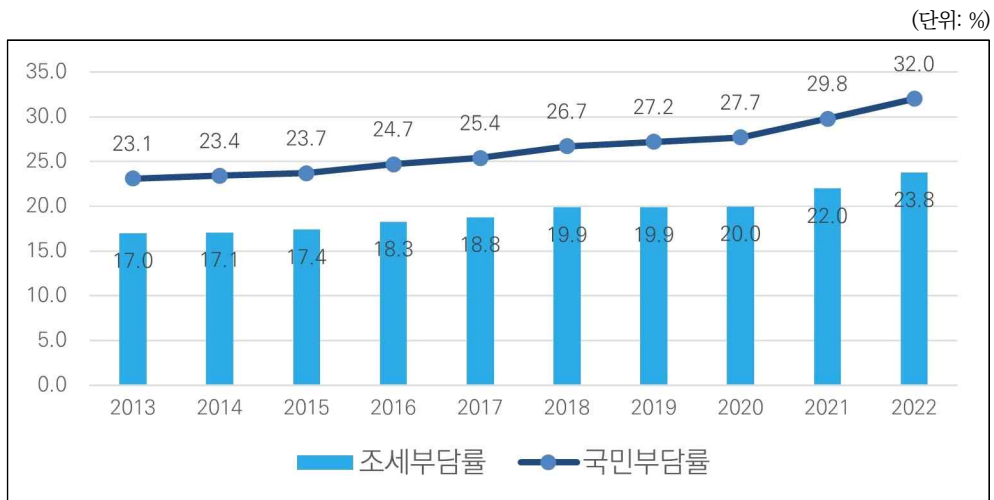
- 1) 재정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재정은 운용방식에 따라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됨.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으로 구분함. (열린재정 홈페이지,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us/UOPKOUS29?acntYr=2023>)
- 2) 세출예산은 16개 분야로 이뤄지는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예비비로 구성됨.

□ 한 국가의 사회보장지출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됨.

○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13년 17.0%에서 2022년 23.8%까지 계속 증가했음. 반면에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22년 32.0%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 추이는 2012년 8,070억 원에서 2022년 1조 6,599억 원으로 약 2.1배 증가하였음(국가지표 체계, www.index.go.kr).

[그림 1-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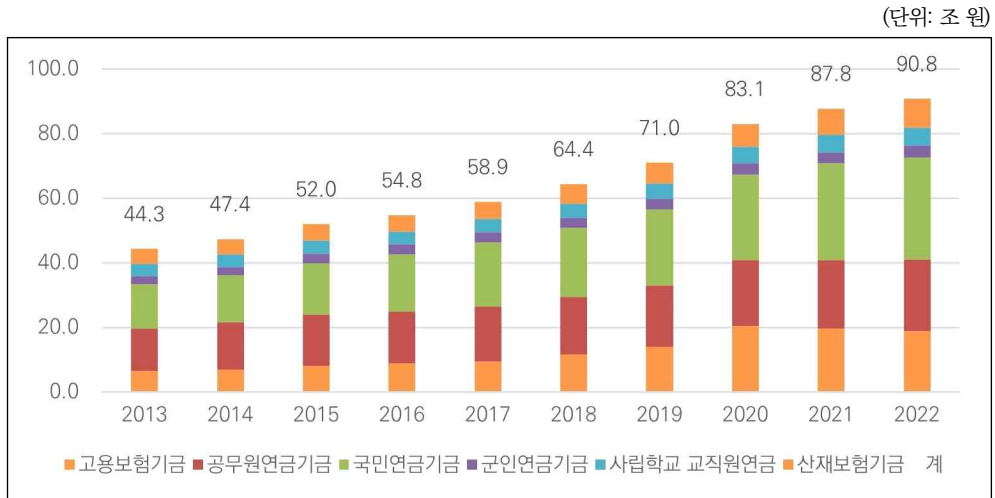
주: 1) 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2)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임.

자료: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에서 2023년 12월 10일 인출.

○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차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공적연금기금(4가지)과 관리기금(2가지)으로 구성되며, 2013년 44.3조 원에서 2022년 90.8조 원으로 증가함.

[그림 1-4] 사회보험 기금 추이



주: 사회보장성 기금은 건강보험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 Brief: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2023년 9월 10일 인출.

□ OECD는 회원국의 사회보장지출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에 맞춰 각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출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특히 정부와 사회보험 등 공공 부문에서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 성격을 가진 지출을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라고 명명함(OECD SOCX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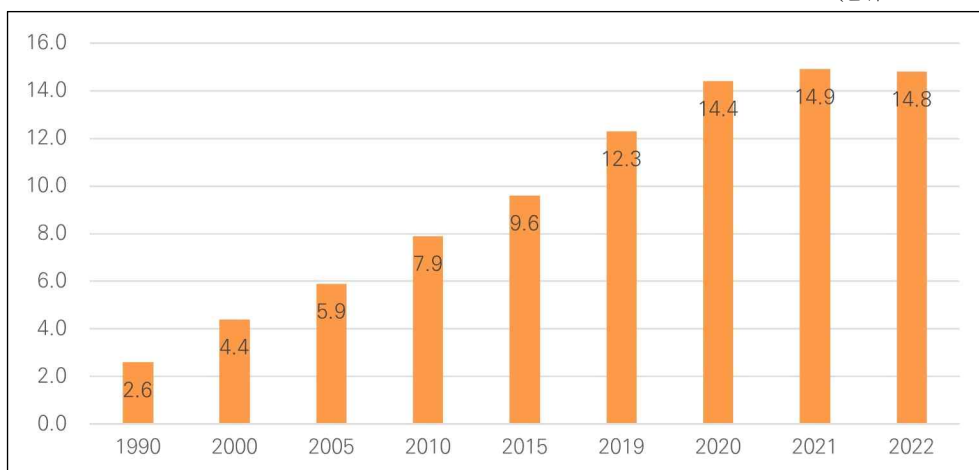
○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함(국가지표체계, 사회복지 지출규모).

○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GDP 대비 2.6%에서 2022년 14.8%까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였음(OECD SOCX, 2023).

○ 한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20년 기준 302조 원임. 이는 일반 정부지출과 사회보험지출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일반 재정의 2022년 사회보장 분야 예산(217.7조 원)과 사회보험기금(90.8조 원)의 308.5조 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그림 1-5]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단위: % of GDP)



주: 2019~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3년 12월 10일 인출.

- OECD SOCX는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사회보장에 지출된 금액(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산출함.
- 한편, 고정환 외(2017)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산출하기 위해서 정부 결산 자료 중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포함된 모든 재정사업(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준과 범위에 맞춰 재검토하고, 그 외 재정 분야 전 사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의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힘.
- 요약하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가재정 분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만을 포함하지도 않음. 또한 일반적인 행정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현물 등의 급여를 기준으로 재정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급여’와 유사함.

□ 한편,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효율적이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의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서 운용하고 있어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사회복지의 체감도에도 영향을 미침.

○ 다양한 부처에서 사회보장급여 사업이 증가하고 각 부처가 별도의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 특히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급여 사업이 대상, 급여 등에서 유사·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처 간 분절로 인해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부정수급의 가능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정수급은 사회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며,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의 가능성 존재함.

- 각 부처에서 대상을 특정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보험과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급여를 보완하는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사업 간 유사 중복과 부정수급의 문제가 대두되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2020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하면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음.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부정이의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2022년 505억 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수치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으로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명문화되었음.

- 보건복지부 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이에 근거한 첫 번째 실태조사가 2020년에 이뤄졌음(임완섭 외, 2020).

○ 실태조사는 부정수급의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조사(행정조사)와 실태조사,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병행함.

- 이 연구는 부정수급을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정의하였음. 다만, 사후관리 파악 및 조사 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오류나 실수 등 비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수급’을 함께 조사하였음.

〈표 1-1〉 부정수급 분류

부정수급 정의	부정행위 주체		예시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	수급자	서비스 수요자	소득 재산 미신고, 서류 조작 등으로 부정수급 수요자와 제공자 간 담합에 의한 부정수급 수요자와 행정담당자 간 공모
		서비스 제공자	인력기준 위반 및 서비스 일수 등을 늘려서 청구 수요자와 제공자 간 담합에 의한 부당청구 제공자와 행정담당자 간 공모
	행정담당자		행정 부패 수요자 및 제공자와 행정담당자 간 공모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보고. 사회보장위원회, p. 8.

- 기본조사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급여 사업 전수(316개)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2019년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함. 실태조사는 100억 원 이상 39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 FGI는 기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8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혹은 제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성적이고 맥락적인 부정수급 발생 원인을 조사함.

○ 2020년 부정수급은 실태조사, 2019년 기준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는 316개 사업이며, 이 중 부정수급과 오류 수급을 포함하는 부적정 지출에 따른 환수 결정이 있는 사업은 198개임. 이들 사업에서 부정수급은 약 292억 원으로 나타남. 이는 부적정 지출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약 944억 원)의 약 31% 수준이며, 해당 사업 예산(약 96조 원)의 0.03% 수준임.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 근거 법령 또는 관련 지침 등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②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③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로, 2022년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음. 본 연구는 2020년에 수행된 제1차 실태조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조사 결과에서 제기되었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험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음.

○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기본조사, 심층 조사, FGI, 델파이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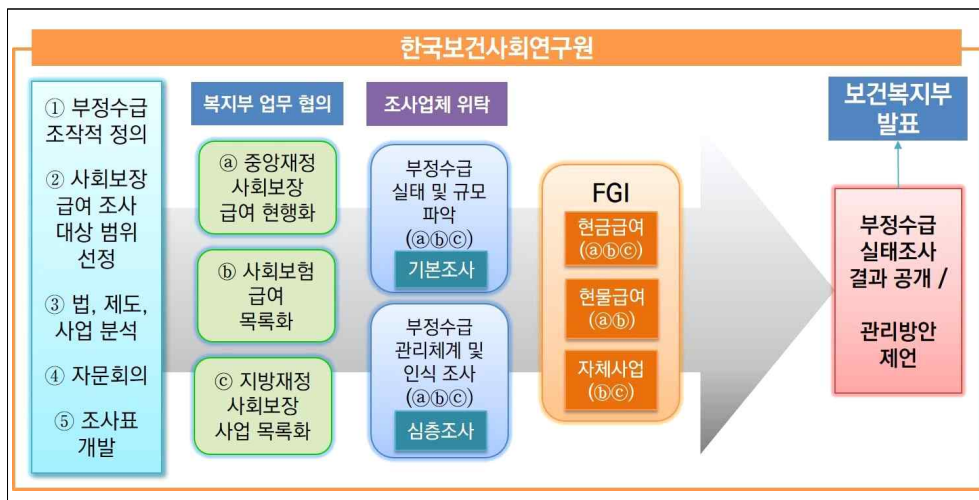
- 기본조사의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의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심층 조사는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사업에 대한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 FGI는 공급자(5그룹)와 수혜자(3그룹), 사례관리(1그룹)의 9그룹으로 구성했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하여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 분류를 검토하였음.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됨.

- 첫째,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단계로, 부정수급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명료화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조사 대상 범위를 선정함. 부정수급과 관련한 법, 제도, 사업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조사표를 개발함.
- 둘째, 실태조사 단계로,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업체(Research & Research)가 협업하였음. 보건복지부는 기본조사 중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를 주관했으며, 그 외 기본조사(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험)와 심층 조사, FGI, 델파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조사업체가 수행하였음.
- 셋째,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는 각 조사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2020년 실태조사와 이후 실태조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기본조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올해 시범 조사를 통해 사회보험과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가능성을 검토함. 이와 함께 보장기관에 대한 심층 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델파이 조사 등을 수행함.

[그림 1-6] 본 연구의 추진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됨.

○ 첫째, 조사표의 개발을 위해 국가재정, 사회보장사업,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련 법과 제도, 사업 지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았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2020년 실태조사 이후의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험 관련 조사표 개발을 위해 국가재정,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사회보험제도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함.

○ 둘째,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내용은 실태조사임. 실태조사는 기본조사, 심층 조사, FGI, 델파이로 구성됨.

- 기본조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조사로 구성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주관하였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해당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참여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표 회신은 공문과 메일(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의 업무 담당자의 on-메일과 korea 메일)을 통해 회신하였음. 기본조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인지와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조사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응하였음. 조사업체는 공문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을 독려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 제출된 자료를 이관받아 데이터를 입력하였음.
-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조사는 2020년 실태조사에서 일부 수행되었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보험 중 사회보험 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는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재정의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었음. 다만,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고,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았음. 이러한 이유로,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현금 급여(국민연금, 구직급여 등 일부)를 중심으로 분석에 포함되었음.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보험을 별도로 분석하였으며, 개별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음. 올해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조사에 포함하였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기금에 포함되지 않음.

- 심층 조사는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사업에 대한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 대상은 중앙부처의 사업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관서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조사방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문을 활용하여 조사업체에서 조사를 수행함.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연락과 이메일을 통한 조사표 발신, 조사표의 회신과 조사 참여 독려 등을 진행하였고, 조사결과를 자료화하였음. 2020년에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관서의 조사 대상 명단을 제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사했다면, 2023년에는 중앙부처와 별개로 공개된 자료(예, 조직도 등)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를 수행함. 조사 진행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여 조사의 법적 근거, 조사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문의와 많았으며, 조사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등) 제공에 대해 불편함으로 인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 FGI는 기본조사와 심층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액이 많거나 부정수급 관리 기반이 취약한 사업을 대상으로 4개의 사업군을 도출한 후 각 사업군에 대해서 수혜자와 공급자를 구분하여 8개의 사업군을 구성하였음. 이에 더하여 수혜자와 공급자 중간에서 급여를 맞춤형으로 계획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욕구 대비 이용의 성과를 측정하는 사례관리 사업군을 추가하여 총 9개 그룹에 대해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함.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및 FGI 진행은 조사업체에서 수행하였음. 일부 조사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음.
 - 이 외에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살펴보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회보장급여 관리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 셋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실시함.

〈표 1-2〉 조사별 대상과 조사 방법 요약

조사 내용	조사범위	조사대상 기관	조사방법
기본 조사	중앙부처 사회보장급여 (전수)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한 기본조사표 집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표본)	시도 및 시군구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한 기본조사표 집계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한 기본조사표 집계 (사회보험 별도 조사표)
심층 조사	보장기관이 지자체(시도, 시군구)인 경우	17개 시도 및 시군구	조사업체가 직접 컨택한 후 심층조사표 집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문)
	보장기관이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인 경우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조사업체가 직접 컨택한 후 심층조사표 집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문)
	보장기관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 보건소, 보훈청 등	조사업체가 직접 컨택한 후 심층조사표 집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문)
면접 조사	부정수급 금액과 부정수급 패턴을 기준으로 대상 사업 선정	수혜자 공급자	조사업체가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직접 컨택한 후 면접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문)
델파이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력풀을 기반으로 전문가를 모집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조사업체가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직접 컨택한 후 온라인 조사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됨.

○ 첫 번째 부분은 서론에 해당하며, 2개의 장을 포함.

- 제1장 서론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증가와 사회보장 사업의 증가로 유사·중복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제2장 조사 설계에서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살펴보고, 조사표를 개발하였음.

- 두 번째 부분은 각 조사에 대한 기본 분석으로, 5개의 장을 포함.
 - 제3장은 중앙부처의 기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제4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회보험의 기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제5장 역시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 제6장은 심층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심층 조사는 2020년 실태조사에서 수행했으나, 조사 대상의 선정과 조사 방식을 변경함.
 - 제7장은 정성 조사 자료를 분석함. 올해 정성 조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사회보장급여 관련 대상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조사로 수행함.
- 세 번째 부분은 결론 및 시사점으로 1개의 장으로 구성함.
 - 각 절에서는 조사 대상별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실태조사의 추진 방향을 제안함.



제2장

조사 설계

제1절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제2절 조사표 개발 및 구성

제2장 조사 설계

제1절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1.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대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50호)」 제2조에 근거한 ‘사회보장급여’임.

○ 이 법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8215호)」 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뜻함.

○ 다만, 4호에서 정의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개별 부처에서 이를 수용하는 데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제1호에서 명시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즉, 각 부처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는 교육, 문화, 환경 등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을 때만 사회보장급여로 포함함.

〈표 2-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8215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204&ancYnChk=0#0000>)에서 2023년 9월 10일 인출.

2. 사회보장급여 사업 목록 분석

□ 사회보장급여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실행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사업 목록을 조사 대상으로 함.

○ 법적 근거는 OECD에서 생산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범위와 유사하며, 한국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생산하고 있음. 즉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일반재정에 포함된 사업 목록을 고려할 수 있음.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교육 및 주거, 문화, 환경 등의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 목적과 재분배 등을 고려하여 사회지출에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음.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취합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포털임. 이때,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범부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 중 중앙부처와 함께 운영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회보장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게 됨.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업도 목록화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출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보장 사업 목록을 사회보장급여로 간주하였음.

-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 사업 목록과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업 목록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는 별도로 수행하지 못하였음.

가.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 2023년 범부처 중앙정부 사회보장급여 사업 목록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는 22개 부처 367개 사업임(부록 1).

○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부처별 빈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139개, 여성가족부 40개, 국가보훈처 39개, 고용노동부 35개, 교육부 24개 순으로 나타남.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는 정부 기능 중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주요 4개 부처임.

〈표 2-2〉 중앙부처별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단위: 개)

부처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부처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보건복지부	139	금융위원회	6
여성가족부	40	질병관리청	5
국가보훈처	39	산업통상자원부	5
고용노동부	35	산림청	4
교육부	24	해양수산부	4
국토교통부	15	행정안전부	2
통일부	11	환경부	2
농림축산식품부	9	방송통신위원회	1
중소벤처기업부	9	기획재정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외교부	1
문화체육관광부	7	대검찰청	1

주: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를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a), 2023 범부처 중앙정부 사업. 내부자료.

○ 사회보장급여 사업을 국가재정의 기능 분류로 재구성하면, 대부분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243개)와 ‘보건(31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 교육(25개), 농림수산(17), 산업 및 에너지(14개) 순으로 나타남.

〈표 2-3〉 분야별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단위: 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분야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사회복지	243	문화및 관광	7
보건	31	통신	5
교육	25	공공질서및안전	2
농림수산	17	과학기술	2
산업 및 에너지	14	환경	2
통일외교	10	국토및지역개발	1
일반지방행정	8		

주: 분야별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를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a), 2023 범부처 중앙정부 사업. 내부자료.

○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정보시스템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대부분 사업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부처 기관 정보시스템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2개 시스템 모두 이용하고 있는 사업은 2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앙부처의 소관부처 및 부서 담당자를 기준으로 한 것임.

〈표 2-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부처 소관 정보시스템 활용 사업 수

(단위: 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없음	있음	계
부처 개별 정보시스템	없음	212	69	281
	있음	59	27	86
	계	271	96	367

주: 분야별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를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a), 2023 범부처 중앙정부 사업. 내부자료.

○ 한편, 367개 모든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급여는 4,012개임.

○ 시도별 사회보장급여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99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경남, 전남, 강원, 서울 순으로 나타남.

〈표 2-5〉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사회보장급여 현황

(단위: 개)

시도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시도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강원도	366	세종특별자치시	34
경기도	599	울산광역시	94
경상남도	433	인천광역시	169
경상북도	247	전라남도	400
광주광역시	64	전라북도	267
대구광역시	107	제주특별자치도	93
대전광역시	77	충청남도	278
부산광역시	205	충청북도	253
서울특별시	326		

주: 시도명을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내부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를 정부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3,505개, 보건 분야 445개, 그 외 62개로 나타남.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사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이 가장 많고, 보육·가족 및 여성, 사회복지 일반, 노인·청소년, 보훈, 보건의료 순으로 나타남.

24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표 2-6〉 지방자치단체 분야·부문¹⁾별 사회보장급여 현황

(단위: 개)

분야, 부문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분야, 부문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기초생활보장	150	보건의료	413
취약계층지원	864	건강보험	24
공적연금	4	식품의약품안전	8
보육·가족 및 여성	710	보건(계)	445
노인·청소년	473	그 외	62
노동	64	전체(계)	4,012
주택	110		
보훈	450		
사회복지 일반	680		
사회복지(계)	3,505		

주: 1) 정부 기능상 분야와 부문은 행정안전부(2022. 6.30),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근거함.

2) 그 외는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를 제외한 정부 기능임.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내부자료.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도 직접 사업은 330개, 시도-시군구 매칭 사업 334개, 시군구 사업 3,348개에 달함.

〈표 2-7〉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별 사회보장급여 현황

(단위: 개)

분야, 부문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시도사업	330
시군구사업	3,348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334

주: 1) 정부 기능상 분야와 부문은 행정안전부(2022. 6.30),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근거함.

2) 그 외는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를 제외한 정부 기능임.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내부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는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으나, 자격 변동관리와 중복수급을 관리하지 않는 사업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사후관리, 자격변동, 중복수급은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임.

〈표 2-8〉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의 사후관리 현황

(단위: 개)

	사후관리	자격변동 관리	중복관리
없음	1,754	3,494	3,834
있음	2,258	518	178
계	4,012	4,012	4,012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내부자료.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547개이며, 그 외 별도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2,374개임. 반면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이 1,091개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사후관리, 자격변동, 중복수급 등을 사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해당 사업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표 2-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

(단위: 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별도 자체시스템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계
활용	547	2,374	1,091	4,012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내부자료.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근거를 살펴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근거한 사업은 1,193개이며, 시도의 조례 및 규칙 335개, 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 2,101개, 그 외 지침 383개 순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의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급여 수준 등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경향이 있음.

〈표 2-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의 근거

(단위: 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도조례 등	시군구조례 등	지침	계
1,161	15	17	335	2,101	383	4,012

주: 시도와 시군구는 조례와 규칙을 포함함.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내부자료.

3. 조사 대상 사업

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급여

□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2020년 첫 번째 실태조사에 참여했으므로, 2023년 실태조사에서도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함(부록 1 참조).

○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사회보험 급여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사회보험으로 분리하고 건강보험을 추가하여 별도로 분석함. 특히 사회보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2020년에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와 사회보험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급여의 사후관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각 기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부정수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포함되었던 일부 사회보장급여는 변경 혹은 일몰되기도 하였으며, 2020년 이후 신설된 사회보장급여도 존재함. 이러한 이유로, 2020년과 2023년에 연속 조사된 사회보장급여는 219개임.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는 2023년 실태조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전수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올해는 시범 조사로 수행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대상 선정(안)을 세 가지로 제안함.

○ (1안: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사업 중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전체 56개 사업이며, 사회보장급여는 시도 본청사업 22개,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30개, 시군구 사업 4개로 구성됨.

- 전체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만 조사에 포함됨.
- 사회보장급여의 예산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시도의 이익 제기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됨.

○ (2안: 급여형태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사업 중 ‘현금 급여’은 2,050개이며, 이 중 시도 본청 사업은 149개임. 이들 사업의 중위값인 25억 원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36개 사업이 해당됨.

- 전체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만 조사에 포함됨.
-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와 중복가능성이 높아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으나, 현금급여 외에 바우처와 지역화폐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또한 현금급여 사업 중 다수가 일회성 사업으로 조사의 실익을 담보하기 어려움.

○ (3안: 부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사업 중 예산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부문은 ‘보육·가족 및 여성’임. 다만, 최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슈가 크므로, 보육과 청소년만 구분한다면, 2022년 기준 24개 사업임.

- 전체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만 조사에 포함됨.
- 유보통합 이슈로 보육사업의 존치가 불가능하며, 저출산 대책의 대부분이 일회성 출산장려금과 장학금으로, 조사의 실익을 담보하기 어려움.

○ (최종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의 시범 조사 대상은 “100억 원 이상 사업(56개)과 시도 본청 현금 급여 사업(147개) 중 10억 원 이상 사업(56개)으로 선정함. 이들 사업을 목록화한 후 중복(12개)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0개 사업을 선정함(부록3).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조사 대상 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됨. 사업 수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음.

- 이에 따라 시도별 자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현황을 탐색할 수 있음.

〈표 2-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조사 대상 사업: 시도

(단위: 개)

시도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시도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강원도	3	세종특별자치시	5
경기도	21	울산광역시	4
경상남도	3	인천광역시	11
광주광역시	5	전라남도	4
대구광역시	7	전라북도	2
대전광역시	5	제주특별자치도	4
부산광역시	10	충청남도	4
서울특별시	11	충청북도	1

주: 조사 대상 사업에 경상북도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16개 시도에 대해서만 제시함.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내부 자료.

○ 조사 대상 사업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22개) 사업이 가장 많고, ‘보육·가족 및 여성’(21개), ‘사회복지 일반’(15개) 순으로 나타남.

〈표 2-1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조사 대상 사업: 시도

(단위: 개)

분야, 부문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분야, 부문명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
기초생활보장	3	보건의료	5
취약계층지원	22	보건(계)	5
공적연금	1	그 외	1
보육·가족 및 여성	21	전체(계)	100
노인·청소년	12		
노동	2		
주택	4		
보훈	14		
사회복지 일반	15		
사회복지(계)	94		

주: 조사 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내부 자료.

- 조사 대상 사업을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현금 급여가 65개로 가장 많고, 바우처(11개), 지역화폐(9개) 등으로 나타남.

〈표 2-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조사 대상 사업: 급여 유형

(단위: 개)

현금급여	지역화폐	현물급여	바우처	중복 ¹⁾	감면	기타 ²⁾
65	9	3	11	2	3	7

주: 1) 현금지급 및 지역화폐, 현금과 현물 지급이 결합된 사업임.

2) 프로그램 지원, 시설 입소, 자원봉사 등 기타 급여유형임.

자료: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내부자료.

제2절 조사표 개발 및 구성

1. 선행연구 검토

- 부정수급은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재정 관리의 측면에서 부정수급에 관한 관심이 높음.

- 우리나라에서 부정정 지출³⁾에 관한 연구는 예산 낭비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재정지출 전반에 걸친 비효율성 연구,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의 부정정 지급의 연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권오성, 2021, p.25). 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정정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실증적 근거하기보다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분야의 예산 지출을 효율화함으로써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믿음에서 비롯됨.

-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론적 접근방식을 취함. 부정정 정부지출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원인 특성별 유형화 또는 예산/정책과정별 유형화를 시도하는데 전자는 불충분한 원인

3) '부정정지출'은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게 지출되어 바르지 않은 상태를 포괄하고 있어 고의, 기만에 의한 수급자의 부정수급 외에 행정담당자의 단순 실수와 행정오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행정오류 및 서비스 공급을 포함함(임완섭 외, 2020, pp. 27~29; 김문길 외, 2015; 권오성 외, 2013).

분석 때문에 현실적 대안 제시가 어렵고, 후자는 이론적 가이드라인 없이 예산/정책 과정에서 관찰되는 비효율적 지출 원인을 나열하여 효과적 대안 제시가 어려움. 대부분의 연구가 사례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연구자가 모든 경우의 부정적 사례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권오성, 2021, p.26).

□ 권오성(2021)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활용하여 부정적 지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함.

○ 니스카넨의 연구: 본 연구에서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전제함. 본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효율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질 때보다 예산을 더 높게 편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된 예산 규모를 부정적 정부지출로 정의함(권오성, 2021, p.12).

○ 권오성은 이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한 3가지 평가 기준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시하고, 부정적 지출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위법한 지출, 비효율적 지출, 비효과적 지출'을 부정적 지출의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함.

- 위법한 지출: 지출의 근거가 부재한 경우와 근거가 되는 법규가 불명확, 불분명한 경우 모두 법적 근거가 미흡 또는 부재한 지출로서 위법한 지출임. 규정 위반 지출,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은 법규 위반 지출임.
- 비효율적 지출: 투자 대비 편익의 극대화를 이루지 못한 지출을 의미함. 이러한 비효율 지출은 과다 지출과 유사, 중복 지출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집행 미흡과 특정 시기 편중 지출을 비효율 지출에 포함함.
- 비효과적 지출: 비효과적 지출은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출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 지출하는 것도 비효과적 지출에 포함함.

○ 또한, 감사원 결산감사보고서의 주요 재정사업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 부정적 지출유형별 부정적 지출이 발생하는 원인을 6가지로 제시함.

- 부정적 지출유형별로 도출된 발생원인: ① 정치적 요인(무리한 공약이행, 포크배럴, 로그롤링 등) ② 설계적 요인(사업설계의 실패) ③ 구조적 요인(사

업구조의 복잡성, 이해당사자 간 조정비용 등) ④ 관리적 요인(편성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과정의 문제) ⑤ 행태적 측면의 요인(정책 집행자와 수혜자가 예산에 대해 보이는 행태) ⑥ 예산과정을 둘러싼 환경, 맥락적 요인(거시 및 미시적 환경 변화)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기본조사의 조사표는 유지하고, 부정정지출의 범위에서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비고의적인 ‘행정 오류’를 포괄하여 조사하되, 부정수급액을 별도로 산출함.

○ 본 연구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한정함. 이는 수급자와 공급자를 포함하되, ‘고의성’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20년 실태조사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부정정지출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후,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지출을 구분함. 이때, 부정정지출은 고의와 비고의를 포함하며, 행위 주체로써 수급자와 공급자를 포함함. 다만, 부정정지출 중 단순 실수나 시간 차 등을 제외하기 위해서 부정정지출 중 대상자를 정하여 일정 금액을 반납하는 ‘환수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또한, 부정정지출에 대한 발생 요인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함. 즉 심층조사는 급여를 다루는 보장기관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것이고, 전문가 델파이는 사회보장급여를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무원과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한편, 부정정지출 발생유형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위해 부정수급의 위험성 연구를 심층조사와 델파이조사에 포함하였음.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함. 즉 심층조사는 급여를 다루는 보장기관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부정수급의 위험성을 뜻하며, 전문가 델파이는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무원과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의 부정수급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

□ 국고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 징후를 탐지한 후, 그 내용을 각 부처 사업 담당 부서로 회람함. 사업 부서는 일정 기간 내에 부정 징후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 결과도 등록함. 또한, 일정 기간 내에 부정 징후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적절한 조치를 수행했는지 파악하여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예산에 반영함.

○ 권오성(2020)은 부정수급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 기망,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과오와 과실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협의의 부정수급(기망 및 부패, 광의의 부정수급(오류와 과실 등으로 인한 부적정 지출을 포함)로 구분함.

-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공통적으로 ‘고의성을 가진 협의의 부정수급’만 정의하고 있음(권오성, 2020, p.13).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도적 불법 행위, 상습적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며, 건강보험에서 부정수급액은 청구된 급여자 공급자인 요양기관에게 제공된 이후 다시 환수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뜻함(권오성, 2020, p.16).

- 특히 e나라도움과 같이 소분류 방식은 예외 사례가 많아 정교화가 필요함,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부정수급 유형과 복지로의 부정수급 유형은 사례를 모아 제시하여 객관적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권오성, 2020, p.19).

○ 권오성(2020)은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유형화하고, 부정수급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제안함.

- 부정수급 위험성이 높은 보조사업 특성: ① 보조금 사업관리가 미흡 ②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③ 적발 시 처벌 미흡 ④ 정보공유 미흡 ⑤ 바우처 부정 사용 ⑥ 사적 관계 형성 ⑦ 민간기관의 특성

- 부정수급 위험성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특성: ① 재화의 성격이 현금급여 방식인 경우 ② 수급주체가 개인인 경우 ③ 보조사업자가 민간인 경우 ④ 전달체계의 단계수와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⑤ 예산구조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우 ⑥ 비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경우 ⑦ 관행적 선정관리에서 계

속적으로 동일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⑧ 주무부처의 관리 역량이 낮은 경우 ⑨ 특수관계에 있어 주무 부처 출신의 보조사업자가 수행

- 단, 보조사업 분야와 수급자 자격기준 유형에서는 각 특성의 차이가 부정수급 위험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국고보조사업 역시 부정 징후 탐지에는 부정수급과 과오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부서 업무 소관임.

나. 사회보험 기본조사

□ 고용보험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스템을 활용한 프로파일링 방법을 적용한 조사와 수사체계를 가지고 있음.

○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산하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고용보험 전반에 관한 정책 및 운영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각 지방 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에서 실제 부정수급 조사를 담당하고 있음(김유근, 2015, p. 89)

- 부정수급조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특정 정책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부정수급조사의 기획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음

○ 조사·방지 체계: 우리나라 조사·방지체계를 크게 구분해 본다면 조직적·인적 방지 체계와 물적방지 체계로 구분됨. 그리고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조직적·인적 방지체계: ①수급절차에서의 적발시스템의 합리화 ②전문적 조사에서의 집중과 조사 및 적발의 효율성 제고
- 물적방지체계: 자동화된 적발 시스템과 위험 관리 시스템

□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 부정수급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조화: 고용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제한 한에서만 수집, 관리, 가공, 제공이 가능한 만큼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수급조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긴장관계에 있음. 부정수급의 효율적인 적발을 위해서는 수급자가 제공한 개인정

보를 바탕으로 구축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정부유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상호교차분석이 필수적임. 따라서 장래 다른 정부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상호교차분석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함(김유근, 2015, p.103).

- 자동경보시스템: 자동경보시스템은 다른 정부유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고용보험의 개인정보 간의 데이터 매칭을 통하여 부정수급의 의심이 있는 사람을 직접 적발하고 자동경보를 발하는 시스템임. 이 때 고용보험의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교차분석됨(김유근, 2015, p.105)
- 부정수급 위험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위험등급관리시스템은 일종의 부정수급 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임. 기획조사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특별히 높은 고위험군 산업 또는 직군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할 때 비로소 효율적인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음(김유근, 2015, p.108).

□ 고용보험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사례·유형별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하여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탐색하고 기획조사하고 있음.

○ 김유근(2015)은 "사기 범죄는 그 행위가 가해지는 방식에 있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가해졌다는 특징과 그 행위가 종종 합리화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사기범죄의 예로 "공공부문에서의 사기,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팅 사기, 세금 포탈, 보험 사기, 사회보장금 사기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기죄(fraud)'로 분류하고 있음.

-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사기 범죄 프로파일링은 사기 행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임. 통계적 사기 탐지 기법은 '관리형'과 '비관리형'이 있음. '관리형'은 사기 기록을 가진 사람들과 사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사용하여 두 집단의 모델을 구축한 다음 새로운 관측을 이 두 유형 중 하나에 할당하는 방식임. '비관리형'은 정상적 방법과 가장 다른 계좌나 고객 등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다 정밀한 관측을 요할 때 사용됨(김유근, 2015, p.28p).

- 부정수급 조사관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부정수급 조사 과정과 기획조사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부정수급 적발률 제고 방안으로 ① 시스템적 개선 방안(업무의 구분 및 재편, 전산상 키의 마련, 평가, 업무의 배분)과 ②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김유근, 2015, p.76)
 - 기획조사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① 타겟팅의 합리화, ② 프로세스의 연계, ③ 제보 루트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음(김유근, 2015, p.79)
 - 또한 선의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처벌 단계에서 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및 홍보: 부정수급 건수의 크기 자체만 고려하면 제도에 대한 홍보나 교육 측면에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앙-지방간 소통 및 지역 간 공유: 고용노동부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운영 지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우고 각 지방마다 그것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함.
 - 기관장의 리더쉽: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에 있어서 기관장의 풍부한 사전 준비 작업과 중요한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2022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부정수급 규모는 각각 22건, 54건으로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그 규모는 크지 않음. 그러나,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급여 지급 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여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함.
 -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20개 기관 70종의 외부 자료를 연계하고,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의 외부자료를 입수하여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함.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하여 보다 정밀한 확인 대상자 선정 등 적정 급여 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음.

○ 차경엽(2010)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함. 이는 의사결정나무 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측정하였고, 이중 예측력이 우수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심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이 논문에서 소개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 모형은 손해배상금 불성실 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 방법의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실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용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음.

○ 한편, 국민연금공단 내부 조직인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단기과제로 2016년에 수행된 「공단 내·외부 데이터를 융합한 가치 창출 및 업무 활용 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방안」은 2017년 4월에 발간하였음(김성욱 외, 2018, p.112).

□ 한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다원화된 주체가 부적정 지출을 관리하고 있음.

○ Donald & Andrew(2012)는 보건의료지출의 상승 요인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의 실패, 의료서비스 조정의 실패, 과잉진료, 행정적 복잡성, 가격책정 실패, 부정 및 남용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으며, 이 중 ‘부정 및 남용(fraud and abuse)’은 ‘관리·감독·규제 절차가 불투명하여 의료기관/의료인이 허위 또는 함부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정의함.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3자 지불제도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부당 청구 관리에 중점을 두었음. 특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 기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공단은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현지 조사를 통해 부정과 남용을 확인하고 법적인 처벌을 하고 있음(신영석 외, 2015, p.29).

○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①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을 조회하고, ② 진료비를 확인하며, ③ 건강보험증을 통한 자격을 확인하고 있음.

-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① 전산 청구자료에 대한 오류 점검을 통해 지급 전 심사 단계에서 부적정 지출을 예방하며,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진료비 조정을 통한 부적정 지출을 차단하며,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된 급여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함(이는 현지 조사를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칭함). ④ 심평원과공단 모두 축적된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적정 지출을 예방, 감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때 공단 역시 급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내역, 요양기관 현황, 자격, 건강검진 등 공단이 보유한 자료에 급여 사후 업무에서 도출된 노하우와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이라고 칭하기도 함).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제도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선정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제도임.
-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기관, 대외기관 검·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의뢰기관, 민원제보 기관, 이 외에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분야 또는 기관임.

[그림 2-1] 건강보험 부적정지출 관리체계



자료: 신영석 외(2015). 건강보험 부적정지출 관리방안 연구. p.41.

다. 심층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

□ 권오성(2021)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2022년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변경에는 포괄성과 배타성이 있음.

○ 여전히 포괄성과 배타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연구의 한계에서도 모든 종류의 부정수급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을 유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표 2-1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변경: 2018 vs 2022

2018년				2022년	
고의여부	행위주체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고의성	수급자	기망	허위	허위신청	허위인력
			공모		허위소득재산
			임의처리		기타
			가족간 거래	허위출결	
	행정담당자	부패	허위	가격 부풀리기	
			공모	자부담 회피·대납	
			임의처리	바우처 카드 허위결제	
			가족간거래	목적 외 사용	
비고의성	수급자	수급자오류	관리미비	중요재산 임의처분	
			업무미숙	기타	
			증빙미비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착오		행정시차
			중복처리		사정변경
			관리미비		기타
	행정담당자	행정오류	업무미숙		
			증빙미비		
			착오		
			중복처리		

자료: 권오성 외(2021) 재구성

□ 본 연구에서는 권오성 외(2021), 감사원(2015), 감사원(2020) 등에서 제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위험성 분석을 위한 조사 항목을 검토함.

〈표 2-1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위험성 분석 조사항목

연번	항목	세부 내용
1	재화의 성격	① 현물급여 ② 서비스 급여 ③ 현금급여
2	보조사업 수급자	① 개인 ② (민간)기관
3	보조사업자 유형	① 지자체 ② 공공기관 ③ 민간사업자
4	전달체계 복잡성	① 5단계 이상 ②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
5	예산구조	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 ② 물건비(시설장치비) 비중이 높은 사업 ③ 예산규모가 큰 보조사업
6	보조사업 분야	① 보건복지 ② 고용 ③ 농림수산 ④ 산업중소기업 ⑤ 국토교통SOC ⑥ 문화관광 ⑦ 환경
7	자격 기준 유형	① 소득 또는 자산과 같은 경제적 기준 ② 비경제적 기준
8	공모 여부	① 공모방식 ② 비공모방식
9	관행적 선정관리	① 계속적으로 동일한 보조사업자 선정 ② 일몰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 ③ 보조금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
10	주무부처 관리 여건	① 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낮은 사업 ② 세부적인 내역사업 수가 많은 보조사업 ③ 주무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변경된 보조사업 ④ 주무부서와 물리적 거리가 먼 곳에서 수행되는 사업 ⑤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
11	특수관계	① 주무부처 출신의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② 주무부처와 연관성이 높은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자료: 권오성 외(2021) 재구성

□ 본 연구에서 심층 조사⁴⁾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문항을 수정함.

○ 2020년 실태조사 중 (보장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보장기관(시도, 시군구, 교육청, 지방관서 등)에 대해 부정수급을 위한 업무 현황,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 2020년에는 현금 급여에 한정하였으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상 선정 기준(소득재산), 변동(자격, 소득재산, 거주지, 인적, 학적), 중복수혜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음. 그러나 자격과 변동 같은 부정수급 발생 요인은 보편적인 서비스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금 급여 사업으로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관계부처 협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기에 용이함.

○ 2023년 ‘(보장기관에 대한) 심층 조사’는, 2023년 중앙부처 기본조사에서 확인된 보장기관에 대한 조사로 전환함.

2. 기본조사표

가. 중앙부처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중앙부처 대상 기본조사표는 2020년 실태조사를 일부 수정·보완함(부록 3 참조).

4) 2020년에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조사와 동일함. 다만 전체 조사(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와 중앙부처의 기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장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의 혼동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보장기관에 대한 심층조사로 명명하였음.

〈표 2-16〉 기본조사(1): 중앙부처

항목	세부항목	주요 사항	비고
사회보장사업명		사회보장급여목록(지방)	
세부사업명(코드)		e-호조 및 지자체 예산설명서에 등록된 코드	
사업 담당자	소속	부처, 실·국, 과(팀)	
	대상자	과장, 사무관, 주무관	연락처 포함
사업 및 예산 정보	회계명		
	사업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목	목, 세목	
	집행액	국비, 지방비	
사업지원형태	급여유형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감면/용자, 그 외 (프로그램, 시설임소, 자원봉사)	세부항목 변경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유무, 법령명, 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외
	실제 대응 조치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벌금 등, 명단공표, 기타, 없음	
	지침	유무, 지침명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유형	지자체, 소속·산하기관, 그 외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시스템명	
	신고체계	운영여부, 신고체계 명칭	
부정수급 파악 및 부정수급 유형	파악방법	감사원, 자체감사, 경찰수사, 권익위, e나라도움, 개별 부처 시스템, 내부고발 등	세부항목변경
	파악하지 않는 이유	부정수급 미발생 등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환수결정	건수, 국비, 지방비, 고의성, 고의 유형	신규 도입 기망, 부패,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
	환수실적	건수, 국비, 지방비, 고의성, 고의 유형	
	미환수	건수, 국비, 지방비	
(별첨) 부정수급 유형별 상세 금액	유형	고의(가족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 비고의(증빙미비, 중복처리, 업무착오, 관리미비)로 구분	세부항목 변경
	금액	환수결정액, 환수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주: 음영 부분은 2020년 실태조사에서 수정하거나 신규도 도입함.

나. 사회보험기관

□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기본조사표는 2020년 실태조사에서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었던 일부 내용을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였음.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를 추가하였음.

○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험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표로 조사를 수행함.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현금급여에 대해서만 조사에 포함되었고, 정부 예산액은 보고되지 않음. 즉 정부 예산액에서는 모수에서 빠지고 부적정지출금액(환수 결정)과 부정수급액(고의적 부정수급액)은 분자에 포함되어 있어 일관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에 대한 기본조사에서 사회보험급여를 분리하여 사회보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 개발을 추진하였음.

- 분석에 포함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며, 각 기관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을 파악하는 방법 및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부정수급 관리지표 등을 고려하였음.

□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기본조사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조사표와 공통 항목을 가지며, 부정수급 파악 및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사회보험 부정수급 추이 등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조사표를 각각 개발하였음(부록 4 참조).

○ 이에 더하여 개별 사회보험기관에서 국회 등에 제출하고 있는 사회보험 부정수급 추이를 각 기관의 급여유형과 특성에 근거하여 자료를 구득함.

○ 이는 시계열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조사표와 일관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음.

〈표 2-17〉 기본조사(2): 사회보험

항목	세부항목	주요 사항	비고
사회보험급여명		사회보험 개별 법령에 따름	
사업 담당자	소속	부처, 실·국, 과(팀)	
	대상자	과장, 사무관, 주무관	
사회보험기관 담당자	소속	기관명, 실·국, 과(팀)	사회보험기관 대상
	대상자	과장, 담당자	
사업 및 예산 정보	회계명		
	급여종류	사회보험의 세부급여	위치 변경
	급여형태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 중 선택	
	예산목	목, 세목	
	집행액	집행액	

항목	세부항목	주요 사항	비고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유무, 법령명, 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외
	실제 대응 조치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벌금 등, 명단공표, 기타, 없음	
	지침	유무, 지침명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유형	부처 직접 수행, 사회보험기관 수행, 그 외	
부정수급 관리 방법	전수조사	대상선정기준, 대상 수	사회보험기관 대상
	표본조사	표본 선정기준, 표본 수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시스템명	
	신고체계	운영여부, 신고체계 명칭	
		결과공개 여부, 공개 방법	사회보험기관 대상
부정수급 파악 및 부정수급 유형	사회보험별 상이	급여별, 대상별, 사례별	사회보험기관 대상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국민연금	수급자 수, 부정수급 적발대상자 수, 청구지급액, 부당청구액, 환수금액, 환수율	사회보험별 급여종류 및 세부항목 상이
	고용보험	(부당청구 및 환수) 대상기관 수, 조사대상기관수, 부당청구기관수, 청구지급액, 부당청구액, 환수금액, 환수율 (지급제한) 부정수급 적발, 지급제한	
	산재보험		
	장기요양		
	건강보험	(요양급여) 고지건수, 고지금액, 환수금액, 환수율 (요양기관) 환수결정, 징수	
(별첨1) 부정수급 유형별 상세 금액	유형	고의(가족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 비고의(증빙미비, 중복처리, 업무착오, 관리미비)로 구분	세부항목 변경
	금액	환수결정액, 환수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별첨2) 사회보험 부정수급 추이	국민연금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건수, 부정수급 적발 사례, 국민연금 연도별 부당이득 적발 건수 및 환수 결정 금액, 국민연금 연도별 부당이득 환수 금액	사회보험별 상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자 현황,	
	산재보험	별첨2 없음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면허대여약국 부정수급 현황,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현황	
	장기요양	현지조사 결과, 부당행위 적발 현황,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유형, 행정처분 통보, 수사의뢰 (고발)현황	

주: 음영 부분은 2020년 실태조사표를 변경하거나 신규 도입한 문항임.

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는 올해 신규 도입되어 새롭게 개발하였음.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규모와 유형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측정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표는 중앙정부의 기본조사표와 유사하게 구성함(부록 5 참조).

〈표 2-18〉 기본조사(3): 지방자치단체

항목	세부항목	주요 사항	비고
사회보장사업명		사회보장급여목록(지방)	
세부사업명(코드)		e-호조 및 지자체 예산설명서에 등록된 코드	
사업 담당자	소속	시도(시군구), 실국, 과(팀)	
	대상자	과장, 사무관, 주무관	
사업 및 예산 정보	회계명		
	사업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목	목, 세목	
	집행액	국비, 지방비	
사업지원형태	급여유형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감면/용자, 그 외(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유무, 법령명, 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실제 대응 조치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벌금 등, 명단공표, 기타, 없음	
	지침	유무, 지침명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유형	지자체, 소속·산하기관, 그 외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시스템명	
	신고체계	운영여부, 신고체계 명칭	
부정수급 파악 및 부정수급 유형	파악방법	감사원, 자체감사, 경찰수사, 권익위, 지방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통보, 내부고발 등	세부항목 변경
	파악하지 않는 이유	부정수급 미발생 등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환수결정	건수, 국비, 지방비, 고의성, 고의 유형	
	환수실적	건수, 국비, 지방비, 고의성, 고의 유형	
	미환수	건수, 국비, 지방비	
부정수급 관리체계 유무	감사전담 조직	유무, 인원, 지침, 실적	단독 문항
(별첨) 부정수급 유형별 상세 금액	유형	고의(가족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 비고의(증빙미비, 중복처리, 업무착오, 관리미비)로 구분	
	금액	환수결정액, 환수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주: 음영 부분은 중앙부처 기본조사표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에만 활용하는 문항임.

2. 심층조사표

□ 심층조사표는 2020년 ‘보장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정·보완하였음. 이는 사회보장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보장기관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현황과 유형, 사후 관리, 관리조직 운영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부록 6 참조).

○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100억 원 이상 현금 급여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함. 이 조사는 선정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공문을 통해 조사를 수행함.

○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현금 급여 36개 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되, 중앙부처에 관한 기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업의 보장기관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고, 개인 단위 서베이 조사방식으로 수행함.

〈표 2-19〉 심층조사표: 보장기관

항목	주요 사항	비고
응답부서 및 사업현황과 업무량	구성원 수, 사회보험 사업수, 업무담당자 수, 월평균 신청자 수 및 신청건수, 부정수급 관리자 수	세부항목 간단화
응답부서의 부정수급 적발노력 및 관리에 관한 업무량	(변동사항, 확인조사, 중복확인 등 항목 제시) 시간 할애 순위, 효과 순위, 추가 필요사항, 어려운 항목 순위, 업무량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감사부서 여부, 감사실 업무 현황, 감사부서의 부서원, 자체 운영 중인 부정수급 신고 접수 체계, 부정수급 전담조직 여부, 설치 형태, 부서원	
부정수급 관리 현황과 실적	부정수급 현황 정기 관리, 부정수급 현황 관리 방법, 부정수급 인지 경로, 규정된 조치,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 환수, 환수 중 어려움	신고체계 현행화
부정수급 위험성 유형	재화 성격, 수급주체, 보조사업의 유형, 전달체계, 예산 구조, 자격기준, 사업 선정방식, 부정수급 발생 원인(개인 단위 이유, 기관 단위 이유, 조직 단위 이유),	신규 항목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활동	초기 상담, 부정수급 안내, 초기 상담 담당 기관, 수급자에게 부정수급 안내, 안내 대상 범위, 안내대상에 대한 평균 안내 횟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안내,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확인 조사의 대상 범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부정수급 교육 참석 여부 및 횟수, 부정수급 교육의 주체,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에 도움	
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 조사 항목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일반현황	고용상태, 직급, 공무원 경력, 종사 기간	

주: 음영 부분은 2020년 실태조사표를 변경하거나 신규 도입한 문항임.

3. 정성조사표

가. 델파이 조사표

-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기본조사표와 함께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두 개의 정성 조사함(부록 7과 부록 8 각각 참조).
-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인식,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표에 대한 의견, 부정수급 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조사로 구성함(부록 7 참조).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표와 보장기관에 대한 심층조사 모두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한정함.
 - 심층조사에서는 공무원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전문가 델파이에서는 본인의 취급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자유성을 높였음.

〈표 2-20〉 전문가 델파이 조사

항목	주요 사항	비고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인식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인지, 지급방식, 보장기관, 실태조사의 주기 적정성 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표에 대한 의견	실태 해석을 위해 추가해야 하는 변수, 부정수급 유형 적절성 여부, 심층조사 대상 확장에 대한 의견 등	
부정수급 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	급여유형, 수급주체, 사업자 유형, 사업 선정방식 등 개인차원, 기관차원, 조직차원	심층조사 문항과 동일
부정수급 인식조사	부정수급 정도, 부정수급이 많은 유형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등	

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표임.

나. 초점집단면접조사표

□ 초점집단면접조사(FGI)는 사회보장급여 공급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현황과 유형, 사후관리, 관리조직 운영에 대해 파악하고, 제도의 이용 실태 및 부정수급 가능성을 진단하여 향후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규모(금액)와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면접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음.

- 다만, 중앙부처 기본조사표에 대한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 비율과는 다를 수 있음.
-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현금급여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선별주의 현금급여와 함께 아동수당과 대학생 대상 장학사업 등 보편적인 현금급여 등은 예산액도 크고 부정수급액도 큰 편임. 이와 함께 의료급여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현물급여로 부정수급액이 높은 편임.

〈표 2-21〉 초점집단면접조사 대상자

연번	구분	진행인원	대상사업
1	공급자	6명	주거급여, LH 관련 주거복지사업
2	공급자	6명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공급자	4명	청년 장학사업
4	수혜자	7명	주거급여, LH 관련 주거복지사업
5	수혜자	7명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6	수혜자	6명	청년 장학사업
7	공급자	4명	생계급여
8	공급자	5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	공급자	4명	의료급여 사례사 및 의료급여담당자

○ 조사항목은 부정수급 가능성 및 적발 가능성,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업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음. 이에 더하여 공급자는 기본적인 업무 파악을 추가로 조사함(부록 8 참조).

〈표 2-22〉 초점집단면접조사

항목	세부항목	주요 사항
공급자	기본업무 파악	사회보장급여 업무, 부정수급 관리 업무, 정보 접근 권한
	부정수급 가능성 및 적발 가능성	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행태 파악, 부정수급 적발 및 적발 가능성 파악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유형 및 구분
	부정수급 업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방식 및 주체, 도움이 되는 관리 방안 등
수급자	기본업무 파악	제도 신청에 대한 이해도 및 신청절차 파악
	부정수급 가능성 및 적발 가능성	급여의 부정수급 규모, 행태 파악, 부정수급 적발 및 적발 가능성 파악
	부정수급 업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사회보장 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방식 및 관리 주체



제3장

중앙부처 기본조사

-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 제2절 기초분석
- 제3절 기준변수의 선정
- 제4절 부정수급 현황 분석
- 제5절 부정수급 환수 실적 분석

제3장 중앙부처 기본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2개 부처 367개 사회보장급여 사업을 대상으로 주관 부처와 담당자 정보를 확인함.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발신의 공문을 통해 기본조사표를 송부함.
- 사업별 소관 부처 담당자는 공문, 이메일, 온메일 등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의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 담당자에게 조사표를 회신함.
- 사회보장급여 기본조사표의 작성 기준 연도 : 2022년

□ 중앙부처 기본조사에 걸린 기간은 총 15주임.

- 중앙부처 기본조사를 위한 공문에는 당초 조사 기간을 9일로 계획함.
- 최종 조사표 회신일 기준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약 14주임.
- 제출된 조사표에 대해서 예산 등을 점검하고,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격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오류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보완에 2주가 추가로 소요됨.

2. 조사 응답 현황

□ 중앙부처 기본조사 대상은 22개 부처 367개 사업이며, 조사에 응답한 사업은 320개 사업(응답율 87.2%)임.

- 미회신 조사 사업은 총 47개이며, 범부처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앙부처 소관 사업이 아니라고 응답함(부록 9 참조).

- 교육부 WEE 클래스 상담 지원 등 다수의 사업이 범부처 사회보장급여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
- 중앙부처 기본조사 대상 중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16개는 예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표 3-1〉 중앙부처 조사 대상 및 응답율

부처명	조사 대상 사업 수	조사 회신 사업 수	응답율
고용노동부	35	32	9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5	71.4
교육부	24	13	54.2
국가보훈처	39	39	100.0
국토교통부	15	7	46.7
금융위원회	6	3	50.0
기획재정부	1	1	100.0
농림축산식품부	9	9	100.0
대검찰청	1	1	100.0
문화체육관광부	7	5	71.4
방송통신위원회	1	1	100.0
보건복지부	139	125	89.9
산림청	4	4	100.0
산업통상자원부	5	5	100.0
여성가족부	40	40	100.0
외교부	1	1	100.0
중소벤처기업부	9	6	66.7
질병관리청	5	5	100.0
통일부	11	11	100.0
해양수산부	4	4	100.0
행정안전부	2	1	50.0
환경부	2	2	100.0
계	367	320	87.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분석 대상 자료

- 회수된 조사 대상 사업(320개) 중 사업 및 예산 정보에 관한 확인이 완료되어, 중앙부처 기본조사 분석에 포함된 최종 사업은 298개임.

- 범부처 사회보장급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보험 급여 22개 사업은 중앙부처에 대한 기본조사 분석에서 제외하고, 제4장 사회보험에 포함하여 분석함.
- 시도교육청 소관 사업이나, 지방이양된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 등 9개는 분석에서 제외함.

□ 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

○ (사업 정보)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집행액을 조사하였음(기본조사표 2번 항목). 분석 대상 사업(298개)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의 합이 전체 집행 실적과 일치하지 않거나, 세목별 집행액과 전체 집행 실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 확인 후에 수정하였음.

- 2022년 집행액을 수정한 사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업 등 5개 사업임.
- 2022년 사업 정보 중 회계명을 수정한 사업은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사업 등 6개 사업임.

○ (급여 형태) 본 연구에서 중앙부처 사회보장급여의 급여 형태는 7가지 형태로 조사했으며, 급여 형태가 여러 가지면 집행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두도록 하였음.

- 급여 형태는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용자금면,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 기타로 구성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약계층취업촉진사업,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교통시설 이용지원,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은 ‘기타’로 응답했으나, 급여 형태를 밝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사업별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과 교통시설 이용지원은 ‘현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바우처’로,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시설입소’로 수정함.

-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약계층취업촉진사업,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기타’로 분류하였음. 특히 취업촉진 및 알선사업은 현금급여(예, 구직 급여)와 현물급여(예, 취업알선)가 결합하여 ‘기타’로 분류함. OECD 사회 지출통계(SOCX)에서도 이들 사업(ALMP)에 대해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음.
-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은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현물’로 수정함.

○ (집행액 및 부정수급액) 사회보장급여사업이 세부사업과 내역사업보다 하위(예, 내역사업)인 경우, 집행액과 부정수급액을 세부사업 혹은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제출한 사업은 중복 계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변수를 두어 이를 통제함.

- 집행액 및 부정수급액을 통합하여 제출한 사업군은 총 16개이며, 이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60개임.

〈표 3-2〉 집행액 조정 사업

연번	사업연번	사업유형
1	61/62	집행액 통합 제출
2	83/84	집행액 통합 제출
3	94/97	집행액 통합 제출
4	149/150	집행액을 통합 제출했으나, 집행액과 부정수급액이 상이하여 분리
5	154/155/156/157/158/159/160/161	집행액 통합 제출
6	162/163/164	집행액 사회보장급여 사업별로 분리 부정수급은 통합 제출
7	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	집행액 통합 제출
8	180/181	집행액 통합 제출
9	189/190/199	집행액은 분리 제출했으나, 부정수급액은 통합 제출
10	215/216/217/218/219/220	집행액 통합 제출
11	305/317	집행액 통합 제출
12	313/314/315	집행액 통합 제출
13	320/323	집행액 통합 제출
14	324/325	집행액 통합 제출
15	346/347	집행액 통합 제출
16	352/354/355/356/357/358/359	집행액 통합 제출

자료: 저자 작성.

- (근거 법령)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유무를 조사하였고(기본조사표 4번 항목),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보장급여 또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하였음. 또한,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근거 법령을 명시하지 않으면, '없음'으로 수정함.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회신 내용과 관계없이 '없음'으로 수정함.
- (관련 지침)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지침을 조사했는데(기본조사표 4번 항목), 부정수급 관리지침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관련 지침의 이름을 작성하지 않으면, '없음'으로 수정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부정수급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 없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포함되어 있음.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므로, 회신 내용과 관계없이 '없음'으로 수정함.
- (전산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의 활용 여부를 조사했는데(기본조사표 6번 항목),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전산시스템의 명칭을 작성하지 않으면, '없음'으로 수정함.
- (신고체계)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신고체계를 운영하는지를 조사했는데(기본조사표 6번 항목), 신고체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신고체계의 명칭을 작성하지 않으면, '없음'으로 수정함.
- (부정수급)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사 항목은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임. 이는 기본조사표 8번 항목과 붙임(부정수급 적발원인별 상세현황)을 대차 대조하였음.
 - 부정수급 적발(환수결정)은 건수와 국비, 지방비로 구분하여 조사했으며, 붙임 자료의 환수결정 합계액과 국비, 지방비의 합이 붙임 자료의 합계와 일치하는지를 이중으로 확인함. 각 항목의 금액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수정함. 부정수급 환수 실적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함.
 - 생계급여는 붙임자료를 해산장제급여와 통합하여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기본조사표 8번 항목의 환수 결정(국비, 지방비)과 붙임 자료의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의 규모가 다름. 본 연구에서는 환수 결정은 급여별로 분리하여 적용하였고, 부정수급 적발은 급여를 통합하여 분석함.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불임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이에 따라 기본조사표 8번 항목의 부정수급 적발액과 환수 실적의 총액은 작성하였으나, 불임 자료를 활용한 부정수급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외함.

□ 중앙부처의 기본조사 분석 대상 사업(298개)에 대해 부적정지출(환수 결정) 파악 여부와 2022년 부정수급(오류 포함) 규모를 제출한 사업은 174개임.

○ 174개 사업 중 부정수급 규모가 '0원'보다 큰 사업은 87개이며, 부정수급이 0원인 사업은 87개임.

- 부정수급 규모가 '0원'보다 큰 경우는 87개
- 부정수급 규모가 '0원(또는 발생건수가 0건)'인 경우 87개

○ 한편,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아 2022년 '부정수급 규모' 현황이 없는 사업은 총 115개임.

- 이는 전체 조사 대상(367개)의 31.3%에 해당하며, 중앙부처 기본조사 분석 대상 사업(298개)의 약 38.6%에 해당함.
 -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는 사업의 약 93.0%는 '사업 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아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조사 대상의 약 1/3이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 및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 연구 결과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음.

제2절 기초분석

1. 사업 담당 분석

□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1번 항목에서 사업 담당에 대한 정보는 소관 부처, 실·국, 과(팀)과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였음.

○ 분석 대상에 포함된 298개 중앙부처 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117개), 여성가족부(40개), 국가보훈부(39개), 고용노동부(18개), 교육부(13개), 통일부(11개) 순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능 중 ‘사회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4개 부처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표 3-3〉 분석 대상 사업 현황: 중앙부처

(단위: 개, %)

부처명	분석 사업 수	부처명	분석 사업 수
보건복지부	117	질병관리청	5
여성가족부	40	산업통상자원부	5
국가보훈부	39	산림청	4
고용노동부	18	해양수산부	4
교육부	13	금융위원회	3
통일부	11	환경부	2
농림축산식품부	9	행정안전부	1
국토교통부	7	방송통신위원회	1
중소벤처기업부	6	기획재정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외교부	1
문화체육관광부	5	대검찰청	1

주: 중앙부처의 분석대상 사업 수를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2. 사업 및 예산 정보 분석

□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2번 항목에서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정보는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구분(목, 세목), 2022년 집행 실적(계, 국비, 지방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분석 대상 사업의 회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이 117개(57.4%)로 가장 높고, 기금 97개(32.5%), 특별회계 22개(7.4%), 그 외 8개(2.7%)로 나타남.

-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후대응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복권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

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응급의료기금,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략산업기반기금, 주택도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20개 기금이 나타남.

-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나타남.
- 그 외에는 보전부담금(1개)을 활용하는 사업(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과 회계 정보를 응답하지 않은 사업(7개)이 포함됨. 회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급식비,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버팀목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근로·자녀장려금,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 사업임.
- 교육부 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지출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을 활용하지 않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됨. 또한, 대한민국 정부(2023)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의 회계는 소득세임(대한민국 정부, 2023, p. 77).

〈표 3-4〉 분석 대상 사업 현황: 회계기준

(단위: 개, %)

구분	빈도	비율
일반회계	171	57.4
특별회계	22	7.4
기금	97	32.5
그 외 ^{주)}	8	2.7
계	298	100.0

주: 그 외는 '보전부담금' 사업과 '회계 정보 미제출 사업'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분석 대상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1,200만 원부터 20조 원까지 상당히 넓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집행액이 가장 적은 사업은 '의사상자 지원' 사업이며, 집행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기초연금' 사업임.

- 집행액을 제시하지 않은 사업은 급식비,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장기복무제대군인취업지원, 버팀목대출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근로자녀장려금,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임.
- 대한민국 정부(2023)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의 2022년 실적은 4,977억 원임(대한민국 정부, 2023, p. 77).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표 3-5〉 분석 대상 사업 현황: 집행액(분위)

(단위: 원)

구분	사업 수	분위값	평균
1분위	65	2,648,235,500	877,359,056
2분위	64	11,526,000,000	5,694,264,497
3분위	76	74,013,236,000	33,689,717,678
4분위	84	20,091,235,000,000	1,451,396,127,470
집행 실적 없음	9	-	-
계	298	92,449,073,341,846	361,129,192,742

주: 분위값과 평균은 예산 통합 제출 사업을 조정하여 산출함(〈표 3-2〉 참조).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한편, 전체 298개 사업 중 국비만 집행하는 사업이 151개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결합한 사업은 138개임.

〈표 3-6〉 분석 대상 사업 현황: 집행액(국비, 지방비)

(단위: 원)

구분	사업 수	국비	지방비
국비 사업	151	31,088,011,285,705	-
지방비 부담 사업	138	45,393,598,891,621	15,967,463,164,520
집행 실적 없음	9	-	-
계	298	92,449,073,341,846	

주: 국비와 지방비는 예산 통합 제출 사업을 조정하여 산출함(〈표 3-2〉 참조).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3. 사업지원 형태 분석

□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3번 항목에서 사업지원 형태는 ‘급여 형태’를 뜻하며, 7가지로 구분함.

○ 사업지원형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등록된 해당 급여의 ‘지원형태’를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함. 조사표의 별첨 2에서 지원형태에 대한 설명자료를 추가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급여의 지원형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또한 해당 사회보장급여에 2개 이상의 지원 형태가 있다면, 2순위까지만 기재하도록 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지원형태를 1순위로 작성하게 함.

□ 전체 298개 사업 중 248개 사업은 단일 급여 형태이며(83.2%), 50개 사업은 2가지 이상의 급여 형태가 결합한 것으로 나타남(16.8%).

○ 1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단일 급여 포함), 현금의 비중이 가장 높고(40.9%), 현물(24.5%), 프로그램(14.8%), 바우처(8.4%)와 대여·용자·감면(7.4%) 순으로 나타남.

○ 2가지 이상의 급여 형태가 결합한 50개 사업에서 2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금 급여(46.0%) 현물(36.0%), 시설 입소(10.0%), 프로그램(6.0%), 대여·용자·감면(2.0%) 순으로 나타남.

〈표 3-7〉 분석 대상 사업 현황: 급여 형태

(단위: 개, %)

구분	1순위		2순위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현금	122	40.9	23	46.0
현물	73	24.5	18	36.0
바우처	25	8.4	-	-
대여용자감면	22	7.4	1	2.0
프로그램	44	14.8	3	6.0
시설입소	8	2.7	5	10.0
자원봉사	1	0.3	-	-
기타	3	1.0	-	-
전체	298	100.0	5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4. 부정수급 관리 근거

□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4번 항목에서 부정수급 관리 근거는 법령과 지침으로 구분하였음.

○ 근거 법령의 유무와 법령명, 법령에 수록된 대응조치,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주요 대응조치를 조사함.

- 법령에 수록된 대응조치는 모두 포함하되, 주요 대응조치는 순위를 두어 2순위까지만 응답하도록 함.
- 이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외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은 제외하였음.

○ 관련 지침의 유무와 지침명을 조사함.

□ 전체 298개 사업 중 155개 사업(51.3%)은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근거 법령이 있으나, 이 중 25개 사업(8.4%)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훈령과 여성가족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훈령 등은 ‘없음’으로 수정함.

- 단,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은 개별 사업에 대한 별도 훈령을 뜻하므로, ‘있음’에 포함함.

○ 실제로 개별 법령에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근거가 있는 사업은 128개임 (43.0%).

- 128개 사업 중 부정수급에 따른 대응조치로 가장 빈번한 것은 ‘금전적 제재 (83.6%)’로 나타남. 이 외에 ‘지원중단(46.9%)’, ‘행정처분(31.3%)’, ‘명단 공표(16.4%)’ ‘벌금, 징역 등 형벌(14.1%)’ 순으로 나타남.
- ‘기타’에 해당하는 사업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이력을 조회하는 등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별도 고시한다고 응답함.
- 대응조치에 대해 1순위를 조사한 결과, 금전적 제재(58개)를 취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지원 중단(42개)과 행정처분(12개) 순으로 나타남.

〈표 3-8〉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의 법령 근거와 대응조치

(단위: 개, %)

구분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벌금, 징역 등 형벌	명단공표	기타
사업 수 ¹⁾	60	107	40	18	21	6
비율 ²⁾	46.9	83.6	31.3	14.1	16.4	4.6
1순위 사업 수 ³⁾	42	58	12	2	-	4

주: 1) 부정수급에 관한 법령 근거가 있는 128개 사업에 대해 분석함.

2) 중복응답 항목이므로, 128개 사업 중 각 대응조치의 비중을 나타냄.

3) 대응조치의 1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수를 나타냄. 10개 사업이 무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전체 298개 사업 중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지침이 ‘있음’으로 응답한 사업은 188개(63.1%)이며, ‘없음’으로 응답한 사업은 105개(35.2%), 무응답 사업은 5개임.

○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지침이 있는 사업은 대부분 업무지침이나 관리지침, 사업 안내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무응답 사업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장애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 등임.

○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근거 법령이 있는 사업(128개)에 대해서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지침이 있는지 조사함. 109개 사업(85.2%)은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19개 사업은 별도 지침이 없음(14.8%).

- 유사하게,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령이 있는 사업(128개) 중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된 지침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은 19개임(14.8%).

○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는 사업 (170개) 중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된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은 79개임(46.5%).

〈표 3-9〉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 지침

(단위: 개, %)

구분		지침 근거		
		있음	없음	무응답
법적 근거	있음	109	19	-
	없음	79	86	5
	계	188	105	5

주: 분석 대상 298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5. 부정수급 관리주체

□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5번 항목에서 부정수급 관리주체는 지자체와 소속·산하기관, 그 외로 구분하였음. 이러한 응답은 모두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연구진에서 기준을 정해 재구조화하였음.

○ 임완섭 외(2020)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기타’로 구분하고, 보장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을 별도로 제시함(임완섭 외, 2020, pp. 54-55).

- ‘지자체 및 교육청’은 보장기관이 보통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인 사업을 의미함.

- ‘특별행정기관’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 업무를 해당 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들로, 지방고용청, 지방보훈

청, 지방검찰청, 지방산림청, 지방국세청 등이 있으며, 국가 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부분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됨.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 및 분류 기준에 따른 공기업,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의미함.

□ 부정수급 관리주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158개)지만, 보장기관의 소속 산하 기관(124개), 그 외(43개) 순으로 나타나며, 2개 이상의 응답이 중복되기도 함. 한편, 부정수급 관리주체를 ‘없음’으로 응답한 사업이 34개로 나타남.

〈표 3-10〉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주체

(단위: 개, %)

	지자체	소속 산하기관	그 외	없음
사업 수	158	124	43	34
비율	53.0	41.6	14.4	11.4

주: 분석 대상 298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중복응답 항목이므로, 298개 사업 중 각 관리주체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보장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은 보통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을 포함함.

- 광역자치단체는 10개, 기초자치단체 91개(보건소 15개, 읍면동 1개 포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 사무 36개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공동 사무 1개, 지방교육청 1개 사업으로 구성됨.
- 다만, 일부 광역자치단체 3개, 일부 기초자치단체 3개,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 사무로는 12개를 응답함.

○ 보장기관이 부처 소속 산하기관으로 포함된 사업은 특별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 특별행정기관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사업은 34개에 해당됨.
- 그 외 부처 소속 산하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토지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

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46개이며, 그 외 부처 산하 민간기관(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타로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적십자사 등) 6개가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그 외’로 구분한 사업의 주관식 응답을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39개 사업이며, 그 외 4개 사업은 사업 수행자와 수협중앙회가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부정수급 관리주체가 없는 사업은 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사업임.

□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 부서에 응답한 주관식 항목을 바탕으로 부정수급 관리주체를 재분류하였음. 각 항목은 중복응답이 가능하나, 사업 안내에 제시된 부정수급 관리의 주체를 우선으로 분류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은 155개(52.0%)로 가장 높고, 정부 소속 산하 기관(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49개(16.4%), 특별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34개(11.4%) 순으로 나타남.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도 19개(6.4%)임.

- 중복응답의 경우 집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재정 전달체계(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우선으로 작성함.

〈표 3-11〉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주체(상세)

(단위: 개,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	특별행정기관	그 외 산하기관 (공공기관)	기타	없음
사업 수	19	155	34	49	7	34
비율	6.4	52.0	11.4	16.4	2.3	11.4

주: 분석 대상 298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6.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6번 항목에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운영 여부와 시스템 이름, 신고 체계의 운영 여부와 신고 체계의 명칭을 조사하였음.

○ 전산시스템과 신고 체계를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 모두 작성하도록 함.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사업은 151개이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이 50개로 가장 많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도 29개로 나타남.

〈표 3-12〉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단위: 개)

	있음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 법정부)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장애인고용 업무시스템	그 외
사업 수	151	50	29	18	8	49

주: 3개 사업은 2개 이상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은 163개이며,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의존하는 사업은 11개,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26개,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13개 등 범부처 신고 체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부처(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센터가 별도로 제시된 사업과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부정수급 신고 센터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여 38개 사업이 있음.

○ 그 외 레드휠슬 헬프라인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 고객의 소리(VOC)를 활용하는 사업 등이 존재함.

〈표 3-13〉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신고체계

(단위: 개)

	있음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부처 등 홈페이지	그 외
사업 수	163	11	26	13	38	110

주: 부처 홈페이지는 청렴 포털이나 국민신문고와 연동되기도 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7. 부정수급 파악 및 부정수급 유형

□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7번 항목에서 부정수급의 파악 여부와 파악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음.

○ 부정수급을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개면, 중복해서 응답하도록 함.

□ 부정수급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응답한 174개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본 결과, 부처 플랫폼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는 사업이 92개로 가장 많고,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이 71개, 보조사업자 등 내부고발이 55개, 부처 자체 감사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이 44개,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신고 내용을 이관받는 사업이 42개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관리 기제와 부처 자체 관리 기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표 3-14〉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파악 방법

(단위: 개)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감사 결과 통보	부처 자체 감사 결과	경찰수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신고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부처 플랫폼 및 전산시스템	보조사업자 등 내부고발
27	44	26	42	71	92	55

주: 부처 홈페이지는 청렴 포털이나 국민신문고와 연동되기도 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는 사업(119개)은 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고 (107개), 집행기관 소관 사항이므로 부정수급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9개),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거나(2개), 부정수급 규모가 작아(1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로 응답한 사업은 주로, 공문서, 전화 및 방문 확인을 통해 지속해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수급자 자격관리 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직접 고용 사업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함.

〈표 3-15〉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는 사유

(단위: 개)

사업 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	부정수급 규모가 작음	집행기관 소관 사항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음	기타
119	107	1	9	2	5

주: 1) 중복응답한 사업이 5개 있음.

2) 보기 항목 중 '그동안 계속 관리하지 않아서'와 '업무 과중으로 부정수급의 현황을 파악할 여력이 없음'에 대한 응답은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합계)

□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8번 항목에서 부정수급 실적은 적발액(환수 결정)과 환수 실적, 미환수 내용으로 구분하고, 제재부가금은 제외하였으며, 건수는 적발 대상 (사람, 기관)을 기준으로 순계로 작성하도록 함.

○ 환수 결정은 건수와 국비, 지방비를 원 단위로 기재하고, 고의성 유무와 주된 유형을 조사함.

- 그러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조사표는 제출하지 않고, 붙임 자료만 제출함.

○ 환수 실적 역시 건수와 국비, 지방비를 원 단위로 기재하고, 고의성 유무와 주된 유형을 조사함.

○ 주요 미환수 내역은 건수와 금액을 입력하고, 상세 사유를 작성하도록 함.

□ 부정수급으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사업은 91개 사업이며, 부정수급의 적발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506억 원으로 나타남. 부정수급 환수 결정은 국비가 435억 원, 지방비가 71억 원으로 나타남.

〈표 3-16〉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단위: 원)

구분	국비	지방비	계
금액(계)	43,518,419,597	7,107,112,947	50,625,532,544

주: 1)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8번 항목에 제시된 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기본조사표는 작성하지 않고 불입자료만 제출한 사업(2개)이 포함되어 있어 〈표 3-21〉의 환수 결정 금액과 차이가 있음.

2) 일부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부정수급 실적 자료를 통합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정수급 환수 금액 분석에 포함된 사업은 71개임.

3) 지자체 환수 결정 후 환수를 진행 중인 건이 있어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나, 환수 결정은 0원인 사업은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을 적발한 사업이 고의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은 32개에 불과함. 실제로, 부정수급 적발 사업의 주된 유형으로 혐의의 부정수급인 ‘기망과 부패’(27개)는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광의의 부정수급인 ‘오류’(83개)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는 응답(32개)과 고의성에 해당하는 ‘기망’과 ‘부패’ 유형을 합한 사업 수(27개)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관적인 인식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예, 부정수급 상세 자료 등)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3-17〉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의 고의성과 유형

(단위: 개)

	환수 결정 ¹⁾	고의성 있음 ¹⁾	주된 유형 ²⁾			
			기망	부패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
사업 수	91	32	26	1	27	56

주: 1)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함.

2) 사업 담당 부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 응답이 가능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으로 인해 환수가 이뤄진 사업은 73개 사업이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는 261억 원으로 나타남. 환수 금액은 국비가 225억 원, 지방비가 36억 원으로 나타남.

〈표 3-18〉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환수 실적

(단위: 원)

구분	국비	지방비	계
금액(계)	22,539,889,131	3,617,629,154	26,157,288,535

주: 1)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8번 항목에 제시된 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기본조사표는 작성하지 않고 불입자료만 제출한 사업(2개)이 포함되어 있어 〈표 3-21〉의 환수 결정 금액과 차이가 있음.
2) 일부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부정수급 실적 자료를 통합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정수급 환수 금액 분석에 포함된 사업은 64개임.
3) 지자체 환수 결정 후 환수를 진행 중인 건이 있어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나, 환수 결정은 0원인 사업은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으로 인해 환수한 73개 사업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는 응답은 23개 사업에 불과함. 환수한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의 주된 유형으로 혐의의 부정수급인 ‘기망과 부패’(18개)는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광의의 부정수급인 ‘오류’(56개)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음.

〈표 3-19〉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의 고의성과 유형

(단위: 개, 원)

	환수 실적 ¹⁾	고의성 있음 ¹⁾	주된 유형 ²⁾			
			기망	부패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
사업 수	73	23	17	1	17	39

주: 1)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함.

2) 사업 담당 부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 응답이 가능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으나,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은 43개이며, 미환수 금액은 164억 원으로 나타남. 미환수 사유로는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분할 납부 중인 사업이 많아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 간에 시간 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계 곤란으로 인한 체납과 환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존재함. 또한 일부 사업은 소송 중임.

-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사업이 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업들은 주로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은퇴 이후 노인에 대한 현금 지원 사업임.
- 4건의 사업은 고발 및 수사의뢰, 배상 명령 등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

〈표 3-20〉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적발(미환수 내역)

(단위: 개, 원)

구분	미환수 대상
사업 수	43
금액(계)	16,469,013,66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9.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 상세 현황(붙임 자료 분석)

□ 본 연구는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부정수급 규모와 실태는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붙임에 제시된 2022년 부정수급 원인별 상세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함.

-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을 뜻함. 즉, 부정 징후가 있는 지출을 적발하고 환수를 결정하는 부정수급 관리는 ‘기망과 부패’ 같은 협의의 부정수급과 ‘수급자 오류와 행정 오류’ 같은 광의의 부정수급을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망과 부패에 의한 협의의 부정수급’의 현황에 초점을 맞춤.

- 기본조사표 8번 항목은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총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비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의 상세 원인에 기반을 두어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비고의적인 부정수급을 구분함.

- 부정수급의 적발 원인은 가족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 등의 ‘고의성’과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업무착오, 관리 미비 등 ‘비고의성’으로 구분함.

○ 부정수급액은 반환 결정액과 부정수급액으로 세분화했으며, 반환 금액은 환수 실적을 뜻함. 이 외에도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을 확인하였음.

- 다만,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은 부정수급 적발 후 대응조치로 환수 외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올해 시범 조사하였음. 그러나, 사전 정보의 한계와 검증 절차의 한계 등으로 올해 연구 결과에는 수록하지 않음.

□ 2022년 기준 고의·비고의를 포함한 부적정 지출이 발생하여 환수가 결정된 사업은 93개이며, 반환 결정액은 512억 원임. 이 중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182억 원(35.6%), 비고의적인 오류로 인한 부적정 지출은 330억 원(64.4%)임.

○ 고의·비고의를 포함한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 2022년에 환수가 이뤄진 사업은 75개이며, 환수 금액은 278억 원임. 이 중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는 80억 원(28.7%), 비고의적인 오류로 인한 환수는 194억 원(69.8%)임.

-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비교할 때 오류 등 부적정 지출로 인한 환수 결정과 환수 실적이 높게 나타났음.

〈표 3-21〉 분석 대상 사업 현황: 상세자료를 활용한 부정수급 환수 결정과 환수 실적

(단위: 원, %)

구분	계	고의적인 부정수급	비고의적인 오류
환수 결정	51,262,394,623	18,230,436,385	33,031,958,089
	100.0	35.6	64.4
환수 실적	27,838,683,775	8,008,165,625	19,425,963,382
	100.0	28.7	69.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환수 결정과 환수 사업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원인을 살펴보면, 허위로 인한 부정수급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환수 결정은 전체 71,381건이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12,774건임(17.9%). 환수는 전체 63,414건이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는 10,858건(17.1%)임.

〈표 3-22〉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원인별 부정수금액

(단위: 개, 원)

구분		부정수급(환수결정액)		반환 금액	
		건수	반환결정액	건수	환수 실적
고의성	가족간 거래 ¹⁾	8	17,240,600	10	12,990,090
	공모 ²⁾	43	95,164,588	42	95,164,588
	임의처리 ³⁾	452	91,696,930	447	67,651,100
	목적 외 사용	29	229,630,147	27	226,838,480
	허위 ⁴⁾	12,242	17,796,704,120	10,332	8,008,165,625
비고의성	증빙미비 ⁵⁾	160	228,909,039	151	131,700,053
	중복처리 ⁶⁾	715	2,358,312,382	639	145,819,182
	업무착오 ⁷⁾	31,631	17,870,310,777	29,480	12,121,782,767
	관리미비 ⁸⁾	26,101	12,574,425,891	22,286	7,026,661,380
합계		71,381	51,262,394,474	63,414	27,836,773,265

주: 1) 가족등록 채용, 가족간 거래에서 부정수급(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2) 내부공모, 외부공모에서 부정수급(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3) 무단담보·양도, 무단임대·인출, 임의사용에서 부정수급(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4)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등에서 부정수급(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5)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입금 정보 등이 미비한 경우 등 부적정지출(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6) 중복등록, 중복신청 등 수급자와 행정 오류로 인한 부적정지출(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7) 규정미숙, 절차 미숙 등 행정 오류로 인한 부적정지출(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8) 자격관리, 평가관리, 신청관리, 과다집행 등으로 부적정지출(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제3절 기준변수의 선정

1. 2020년 실태조사 기준변수의 활용: 사업지원형태, 보장기관

□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사업지원형태(1,2)와 자산조사기준, 보장기관으로 구분하였음(임완섭 외, 2020, p.52).

○ 사업지원형태는 급여유형을 뜻하며,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거나(1), 현금과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시설입소, 대여/감면(2)으로 세분화하였음. 본 연구에도 2020년과 동일하게 급여유형을 조사했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분석은 현금과 현물(바우처 포함), 그 외로 구분함.

〈표 3-23〉 기준변수 1: 2020년 기준변수

(단위: 개, %)

	현금	현물 ¹⁾ (바우처 포함)	그 외 ²⁾
사업 수	122	98	78
비율	40.9	32.9	26.2

주: 1) 현물 급여와 바우처 급여를 합산함.

2) 대여/용자·감면,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 기타를 포함함.

3) 급여유형이 중복되면 1순위에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보장기관에 대한 문항은 2020년과 같고, 세부 항목은 지자체(교육청 포함), 특별행정기관, 그 외 산하기관(공공기관), 기타로 구분한다는 점에는 같음. 다만, 본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기관을 응답하면 ‘부정수급 관리’를 주관하거나 가장 먼저 관리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음(〈표 3-11〉 참조).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실태조사의 기준변수인 ‘자산조사’를 적용하지 않았음. 이는 기본조사표에 근거한 문항이 아니고,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항목을 활용한 것으로,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함.

○ 본 연구는 기본조사표에 포함된 변수를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변수를 설정함.

2. 본 연구에서 추가한 기준변수: 회계, 법적 근거, 집행액, 관리시스템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기준변수에 더하여 회계,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집행액 분포, 전산시스템과 신고 체계를 추가하였음.

○ 2023년 실태조사에 추가된 기준변수의 구분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회계기준) 일반회계, 일반회계 외, 그 외(무응답)로 구분함.
- (부정수급 관리 근거) '있음'과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분함.
- (예산)은 1사분위~4사분위로 구분하고, 그 외(무응답)를 추가함.
-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부처 내부 시스템, 홈페이지로 구분하고, '없음'을 추가함.
- (신고체계) 범부처시스템 및 신고체계, 부처 및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활용(부정신고 관리가 별도로 있음), 부처 및 사업수행기관(부정신고 관리가 별도로 없음)으로 구분하고, '없음'을 추가함.

〈표 3-24〉 기준변수 2: 2023년 신규 기준변수

구분	회계기준	부정수급 관리 근거	집행액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변수값	1. 일반회계 2. 일반회계 외 3. 그 외(무응답)	1. 없음 2. 있음 3. 보조금법	1. 1사분위 2. 2사분위 3. 3사분위 4. 4사분위 5. 그 외(무응답)	1. 국고보조금관리 시스템 2.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3. 부처 내부 시스템 4. 홈페이지 5. 없음	1. 범정부시스템 및 신고체계 2. 부처/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부정신고 별도) 3. 부처 및 사업수행기관 4. 없음

자료: 저자 작성.

□ 본 연구에서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하는 기준변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5〉 부정수급 현황 분석을 위한 기준변수

(단위: 개, %)

분류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98	100.0
회계	일반회계	122	40.9
	일반회계 외	98	32.9
	그 외(무응답)	78	26.2
집행액	1사분위	63	24.6
	2사분위	62	24.2
	3사분위	60	23.4
	4사분위	62	24.2
	없음	9	3.5
급여유형	현금	122	40.9
	현물(바우처 포함)	98	32.9
	그 외	78	26.2
법적 근거	없음	144	48.3
	있음	129	43.3
	보조금법	25	8.4
보장기관	중앙정부	19	6.4
	지방자치단체	155	52.0
	특별행정기관	34	11.4
	그 외 산하기관(공공기관)	49	16.4
	기타	7	2.3
전산시스템	없음	34	11.4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50	16.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6	8.7
	부처 내부 시스템	60	20.1
	홈페이지	15	5.0
신고체계	없음	147	49.3
	법정부시스템 및 신고체계	94	31.5
	부처/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부정신고 별도)	39	13.1
	부서 및 사업수행기관	30	10.1
없음		135	45.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제4절 부정수급 현황 분석

1. 기준변수를 활용한 부정수급 현황 분석

□ 환수 결정 규모는 512억 6,239만 원으로, 집행 실적의 0.055%임.

○ (회계) 일반회계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476억 5,960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71%에 해당함.

- 일반회계 외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36억 278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14% 수준임.

○ (집행 실적) 집행 실적 4사분위의 환수 결정 금액은 491억 8,357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55% 수준임.

- 집행 실적 2사분위의 환수 결정 금액은 11억 4,583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325%로 가장 높음.

○ (급여유형) 현금 급여의 환수 결정 금액은 413억 3,511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85%임.

- 현물급여의 환수 결정 금액은 65억 2,953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현금과 현물급여 외 프로그램 등 기타 급여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33억 9,774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29%로 낮은 수준임.

○ (부정수급 관리 근거) 개별 급여에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근거가 있는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492억 2,204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63%임.

-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가 없는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15억 9,059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12%로 낮은 수준임.

-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4억 4,974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48%임.

○ (부정수급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445억 8,806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62%임.

- 반면에,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부처거나 그 외 기관인 경우 환수 결정 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 (전산시스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359억 4,126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116%임.
 - 부처 내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70억 8,332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37%임.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12억 6,266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11%임.
- (신고체계) 부정 징후를 신고하는 범부처 시스템 및 신고체계를 가진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404억 7,938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70%임.
 - 신고체계가 없는 사업의 환수 결정 금액은 76억 6,535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36%임.
- 환수 결정 금액이 있는 사업의 64.5%는 오류에 의한 것이며, 35.5%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나타남.
 - (회계) 일반회계 사업은 비고의적인 오류의 비중이 66.9%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회계 외 사업은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비중이 67.9%로 높게 나타남.
 - (집행 실적) 3사분위 사업은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비중이 85.1%로 높게 나타났고, 4사분위 사업은 부정수급의 비중이 35.4%로 높게 나타났음.
 - 1사분위 사업(90.8%)과 2사분위 사업(96.8%)은 반환 결정 중 오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급여유형) 급여 유형에 관계없이 전부 비고의적인 오류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현금 급여의 반환 결정 금액 중 오류 비중은 63.0%, 부정수급 비중은 37.0%임.
 - 현물급여의 반환 결정 금액 중 오류는 68.1%, 부정수급은 32.1%임.

- 그 외 사업의 반환 결정 금액 중 오류는 75.2%, 부정수급은 24.8%임.

○ (부정수급 관리 근거)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에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33.5%로 낮은 편이며, 오류(66.5%)의 비중이 높음.

-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80.3%로 높게 나타나고, 오류는 19.7%로 낮은 편임.

○ (부정수급 관리주체) 부정수급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에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35.6%이며, 오류(64.4%)는 높은 편임.

- 반면에, 부정수급 관리주체가 특별행정기관인 사업에서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비중이 61.7%로 매우 높고, 오류는 38.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부정수급 관리주체가 부처 소속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사업에서 오류가 79.4%로 높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20.6%로 낮은 편임.

○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69.8%로 매우 높고, 오류는 30.2%로 낮은 편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부처 내부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사업은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30~40% 수준이고, 오류가 60~70% 수준으로 높은 편임.

- 한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 역시 고의적인 부정수급(31.4%)보다 오류(68.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고 체계) 범부처의 신고 체계와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의 비중(38.0%)보다 오류의 비중(62.0%)이 높음.

- 부처와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별도의 신고센터가 있는 사업에서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 비중(44.4%)보다 오류의 비중(55.6%)이 높음.

- 부서와 수행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사업에서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 비중(72.7%)이 오류의 비중(27.3%)보다 높음.

- 한편, 신고 체계가 없는 사업에서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의 비중(85.9%)이 높은 편이며,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의 비중(14.1%)은 낮은 편임.

〈표 3-26〉 사회보장급여 환수 결정과 부정수급

(단위: 백만 원, %)

분류	구분	집행 실적(A)	환수결정		부정수급(고의성)		오류(비고의성)	
			금액 (B)	(B/A)*100	금액 (C)	(C/B)*100	금액 (D)	(D/B)*100
회계	일반회계	67,425,951	47,660	0.071	15,765	33.1	31,895	66.9
	일반회계 외	25,023,123	3,603	0.014	2,446	67.9	1,157	32.1
집행분위	1사분위	54,396	42	0.077	4	9.2	38	90.8
	2사분위	353,044	1,146	0.325	36	3.2	1,109	96.8
	3사분위	2,055,073	891	0.043	759	85.1	132	14.9
	4사분위	89,986,560	49,184	0.055	17,412	35.4	31,772	64.6
급여유형	현금	48,630,515	41,335	0.085	15,278	37.0	26,057	63.0
	현물	32,259,680	6,530	0.020	2,092	32.0	4,438	68.0
	그 외	11,558,878	3,398	0.029	841	24.8	2,557	75.2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	없음	13,282,529	1,591	0.012	1,277	80.3	313	19.7
	있음	78,233,780	49,222	0.063	16,484	33.5	32,738	66.5
	무응답	932,764	450	0.048	450	100.0	-	0.0
부정수급 관리주체	중앙부처	228,665	0	0.000	-	0.0	-	0.0
	지방자치단체	71,360,489	44,588	0.062	15,854	35.6	28,734	64.4
	특별행정기관	5,068,256	1,319	0.026	814	61.7	505	38.3
	그 외 산하기관	14,844,008	4,683	0.032	967	20.6	3,717	79.4
	기타	202,871	0	0.000	-	0.0	-	0.0
	없음	744,784	672	0.090	576	85.7	96	14.3

분류	구분	집행 실적(A)	환수결정		부정수급(고의성)		오류(비고의성)	
			금액 (B)	(B/A)*100	금액 (C)	(C/B)*100	금액 (D)	(D/B)*100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11,893,264	1,263	0.011	882	69.8	381	30.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1,098,590	35,941	0.116	12,188	33.9	23,754	66.1
	부처 내부 시스템	19,292,307	7,083	0.037	2,905	41.0	4,179	59.0
	홈페이지	6,075,812	560	0.009	223	39.9	337	60.1
	없음	24,089,100	6,415	0.027	2,014	31.4	4,401	68.6
신고체계	범부처시스템 및 신고체계	57,974,602	40,479	0.070	15,372	38.0	25,107	62.0
	부처/수행기관 홈페이지	10,044,877	1,800	0.018	799	44.4	1,000	55.6
	부서/수행기관	3,366,724	1,318	0.039	958	72.7	360	27.3
	없음	21,062,869	7,665	0.036	1,081	14.1	6,584	85.9
계		92,449,072	51,262	0.055	18,211	35.5	33,052	64.5

주: (A)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것이며, 일부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집행 실적을 세부사업 수준으로 통합하여 제출여 이를 조정함.

(B) 환수 결정은 별첨 자료의 금액을 활용했으며, 8번 문항에서 조사한 부정수급액과 차이가 있음.

(C) 고의성은 별첨 자료의 부정수급 원인을 활용했으며, 가족 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 등을 포함

(D) 비고의성은 별첨 자료의 부정수급 원인을 활용했으며, 증빙미비, 중복처리, 업무착오, 관리미비 등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2. 기준변수를 활용한 부정수급 원인 분석

- 고의성이 있는 혐의의 부정수급 사유로는 허위(177억 77백만 원), 목적 외 사용(2억 29백만 원), 공모(95백만 원), 임의처리(91백만 원), 가족 간 거래(17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 (회계) 일반회계 사업의 부정수급 사유로는 허위(154억 원)가 높게 나타났고, 목적 외 사용, 공모,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 외 사업의 부정수급 사유는 허위,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 목적 외 사용 순으로 나타남.
- (집행 실적) 예산 4사분위 사업의 부정수급 사유로는 허위(170억 11백만 원), 목적 외 사용, 공모,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나타남.
 - 예산 1사분위는 허위, 예산 2사분위는 임의처리와 허위, 예산 3사분위는 허위와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부정수급의 사유가 나타남.
- (급여 형태) 현금 급여의 부정수급 사유로는 허위(152억 62백만 원), 가족 간 거래, 공모, 목적 외 사용 순으로 나타남.
 - 현물급여는 허위(16억 73백만 원), 목적 외 사용, 공모와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의 사유로는 허위(154억 97백만 원), 목적 외 사용, 공모,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나타남.
 - 특별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허위와 임의처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음.
 - 그 외 산하기관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사업은 허위와 목적 외 사용에서 부정수급이 나타남.
-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부정수급 사유로는 허위(121억 85백만 원)가 가장 많고,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나타남.
- (신고 체계) 범부처 신고 체계 및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부정수급 사유로는 허위(153억 54백만 원), 가족 간 거래(11만 원), 공모, 목적 외 사용 순으로 나타남.

〈표 3-27〉 사회보장급여 환수 결정 금액¹⁾: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사유²⁾

(단위: 백만 원)

분류	구분	가족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
회계	일반회계	12.7	95.2	17.5	227.1	15,412.3
	일반회계 외	4.5	-	74.2	2.5	2,364.8
집행 실적 (분위)	1사분위	-	-	-	-	3.9
	2사분위	-	-	33.1	-	3.4
	3사분위	0.5	-	-	-	758.2
	4사분위	16.8	95.2	58.6	229.6	17,011.6
급여유형	현금	9.4	3.5	-	2.4	15,262.8
	현물	7.8	91.7	91.7	227.2	1,673.1
	그 외	-	-	-	-	841.1
부정수급 관리 법령	없음	8.4	3.5	74.2	-	1,191.4
	있음	7.0	91.7	17.5	227.1	16,140.3
	무응답	1.9	-	-	2.5	445.3
부정수급 관리주체	중앙부처	-	-	-	-	-
	지방자치단체	15.1	95.2	17.5	229.5	15,497.0
	특별행정기관	-	-	33.1	0.0	780.7
	그 외 산하기관	-	-	-	0.1	966.4
	기타	-	-	-	-	-
	없음	2.2	-	41.1	-	532.9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1.8	-	-	202.4	677.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5	-	-	0.0	12,185.2
	부처 내부 시스템	7.6	3.5	-	2.5	2,891.0
	홈페이지	-	-	-	-	223.4
	없음	5.3	91.7	91.7	24.7	1,800.2
신고체계	범부처 신고체계	11.9	3.5	-	2.5	15,354.5
	부처/수행기관 홈페이지	2.7	-	-	-	796.8
	부서/수행기관	-	91.7	17.5	24.7	823.9
	없음	2.6	-	74.2	202.4	802.0
계		17.2	95.2	91.7	229.6	17,777.1

주: 1)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것임.

2) 부정수급의 원인 중 가족 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는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고의적이지 않은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의 사유로는 업무착오(178억 70백만 원), 관리 미비(125억 84백만 원), 중복 처리(23억 67백만 원), 증빙 미비(2억 28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 (회계) 일반회계 사업의 오류 사유로는 업무착오(170억 79백만 원), 관리 미비(124억 33백만 원),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 외 사업의 오류 사유로는 업무착오, 증빙 미비, 관리 미비, 중복 처리 순으로 나타남.
- (집행 실적) 예산 2사분위 사업의 오류 사유로는 중복 처리, 관리 미비, 업무착오 순으로 나타남.
- (급여 형태) 현금 급여의 오류 사유로는 업무착오, 관리 미비,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현물급여는 관리 미비, 업무착오,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급여는 중복 처리, 증빙 미비, 관리 미비, 업무착오 순으로 나타남.
- (법적 근거)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은 오류는 업무착오, 관리 미비,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사업의 오류 사유는 업무착오, 관리 미비,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산하기관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사업은 중복 처리, 업무착오, 관리 미비,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오류로는 업무착오, 관리 미비,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순으로 나타남.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오류는 관리 미비, 업무착오,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부처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오류는 중복 처리, 업무착오, 관리 미비 순으로 나타남.

○ (신고 체계) 범부처 신고 체계 및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오류는 업무 착오, 관리 미비,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표 3-28〉 사회보장급여 환수 결정 금액¹⁾: 비고의적인 부정수급의 사유²⁾

(단위: 백만 원)

분류	구분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업무 착오	관리 미비
회계	일반회계	44.9	2,336.9	17,079.6	12,433.4
	일반회계 외	184.0	31.1	790.7	151.0
집행 실적 (분위)	1사분위	-	28.1	3.7	6.1
	2사분위	-	1,090.9	7.4	11.0
	3사분위	-	54.3	37.1	41.0
	4사분위	228.9	1,194.6	17,822.1	12,526.3
급여유형	현금	44.8	160.5	17,518.2	8,333.4
	현물	3.0	31.1	301.2	4,102.6
	그 외	181.1	2,176.3	50.8	148.4
부정수급 관리 법령	없음	3.0	19.2	126.3	164.6
	있음	225.9	2,348.7	17,744.1	12,419.8
	무응답	0.0	0.0	0.0	0.0
부정수급 관리주체	중앙부처	-	-	-	-
	지방자치단체	44.9	160.5	16,297.4	12,231.0
	특별행정기관	0.0	28.1	440.3	36.8
	그 외 산하기관	181.0	2,178.8	1,095.0	262.0
	기타	-	-	-	-
	없음	3.0	0.5	37.6	54.7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1.1	15.2	152.4	21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3.8	17.5	15,888.0	7,804.3
	부처 내부 시스템	-	2,239.2	1,605.9	333.6
	홈페이지	181.0	30.9	2.5	122.7
	없음	3.0	65.1	221.5	4,111.4
신고체계	범부처 신고체계	44.9	116.9	16,771.1	8,174.2
	부처/수행기관 홈페이지	-	27.7	797.6	174.8
	부서/수행기관	-	27.2	171.7	161.5
	없음	184.0	2,196.2	129.9	4,074.0
계		228.9	2,367.9	17,870.3	12,584.4

주: 1)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것임.

2) 부정수급의 원인 중 가족 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는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제5절 부정수급 환수 실적 분석

1. 기준변수를 활용한 부정수급 환수 실적 분석

□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실적 규모는 278억 3,868만 원으로, 집행 실적의 0.030%임.

○ (회계) 일반회계 사업의 환수 실적은 258억 4,889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38%에 해당함.

- 일반회계 외 사업의 환수 실적은 19억 8,978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08% 수준임.

○ (집행 실적) 집행 실적 4사분위의 환수 실적은 275억 4,990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31% 수준임.

- 집행 실적 1사분위의 환수 실적은 2,347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43%로 가장 높음.

○ (급여유형) 현금 급여의 환수 실적은 240억 6,612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49%임.

- 현물급여의 환수 실적은 32억 8,350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1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현금과 현물급여 외 프로그램 등 기타 급여사업의 환수 실적은 4억 8,905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04%로 낮은 수준임.

○ (부정수급 관리 근거) 개별 급여에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근거가 있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262억 9,872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34%임.

-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가 없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13억 3,191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10%로 낮은 수준임.

- 개별 법령에는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법에 근거하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2억 804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22%임.

○ (부정수급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251억 3,538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35%임.

- 그 외 산하기관의 환수 실적은 14억 7,322만 원이고, 집행 실적 대비 0.010%로 낮은 편임.
 - 반면에,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부처거나 기타이면 환수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
- (전산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206억 6,169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66%임.
- 부처 내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30억 6,441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16%임.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6억 3,152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11%임.
- (신고체계) 부정 징후를 신고하는 범부처 신고 체계를 가진 사업의 환수 실적은 231억 8,591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40%임.
- 신고 체계가 없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22억 7,222만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11%임.
- 환수 실적이 있는 사업 중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84억 2,720만 원으로 환수 실적의 30.2%에 해당하며,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은 194억 2,596억 원으로 환수 실적의 69.8%로 나타남.
- (회계) 일반회계 사업은 비고의적인 오류의 비중이 71.6%로 높고, 일반회계 외 사업은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비중이 54.1%로 높게 나타남.
- (집행 실적) 1사분위와 4사분위 사업에서 오류에 의한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2사분위와 3사분위 사업에서 고의적인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2사분위 사업의 환수 실적 중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62.1%, 오류에 의한 부정수급은 37.9%임
- (급여유형) 현금 급여의 환수 실적 중 오류의 비중이 73.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26.7%로 낮음.

- 현물급여의 환수 실적 중 오류 비중은 46.4%, 고의 비중은 53.6%임.
 - 그 외 사업의 환수 실적 중 오류 비중은 52.6%, 고의 비중은 47.4%임.
- (부정수급 관리 근거)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에서 고의 비중은 27.0%, 오류 비중은 73.0%.
-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서 고의 비중은 82.4%, 오류는 17.6%로 낮음.
 -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어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환수를 결정한 사업에서 고의 비중이 100%에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주체) 부정수급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에서 환수 실적 중 오류 71.0%, 고의 29.0% 수준으로 나타남.
- 특별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고의 74.2%, 오류 25.8%임. 그 외 산하기관의 환수 실적은 오류 88.6%, 고의 11.4%임. 부정수급 관리주체가 별도로 없는 사업의 환수 실적은 고의 84.8%로 매우 높음.
-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과 부처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고의 비중은 57.3%, 오류 비중은 42.7%임. 부처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고의 비중은 50.8%, 오류 비중은 49.2%임. 한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 역시 고의적인 부정수급(51.0%)이 오류(49.0%)보다 높음.
- (신고 체계) 부서나 수행기관을 통해 신고하는 사업의 고의 비중(77.4%)이 오류 비중(22.6%) 보다 높지만, 그 외 신고 체계를 가진 사업의 고의 비중은 낮은 편임.
- 범부처 신고 체계 및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73.5%)과 부처/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사업(53.8%)의 환수 실적에서 오류 비중이 높음.
 - 신고 체계가 없는 사업의 오류 비중(64.1%)이 높음.

〈표 3-29〉 사회보장급여 환수 실적과 부정수급

(단위: 백만 원, %)

분류	구분	집행 실적(A)	환수 실적		부정수급(고의성)		오류(비고의성)	
			금액 (B)	(B/A)*100	금액 (C)	(C/B)*100	금액 (D)	(D/B)*100
회계	일반회계	67,425,951	25,849	0.038	7,335	28.4	18,514	71.6
	일반회계 외	25,023,123	1,990	0.008	1,077	54.1	912	45.9
집행분위	1사분위	54,396	23	0.043	4	16.0	20	84.0
	2사분위	353,044	56	0.016	35	62.1	21	37.9
	3사분위	2,055,073	209	0.010	117	56.1	92	43.9
	4사분위	89,986,560	27,550	0.031	8,257	30.0	19,293	70.0
급여유형	현금	48,630,515	24,066	0.049	6,423	26.7	17,643	73.3
	현물	32,259,680	3,284	0.010	1,758	53.6	1,525	46.4
	그 외	11,558,878	489	0.004	232	47.4	257	52.6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	없음	13,282,529	1,332	0.010	1,097	82.4	235	17.6
	있음	78,233,780	26,299	0.034	7,108	27.0	19,191	73.0
	무응답	932,764	208	0.022	208	100.0	-	0.0
부정수급 관리주체	중앙부처	228,665	0	0.000	-	0.0	-	0.0
	지방자치단체	71,360,489	25,135	0.035	7,282	29.0	17,854	71.0
	특별행정기관	5,068,256	744	0.015	552	74.2	192	25.8
	그 외 산하기관	14,844,008	1,473	0.010	167	11.4	1,306	88.6
	기타	202,871	0	0.000	-	0.0	-	0.0
	없음	744,784	486	0.065	412	84.8	74	15.2

분류	구분	집행 실적(A)	환수 실적		부정수급(고의성)		오류(비고의성)	
			금액 (B)	(B/A)*100	금액 (C)	(C/B)*100	금액 (D)	(D/B)*100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11,893,264	632	0.005	362	57.3	270	42.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1,098,590	20,662	0.066	4,760	23.0	15,902	77.0
	부처 내부 시스템	19,292,307	3,064	0.016	1,557	50.8	1,508	49.2
	홈페이지	6,075,812	322	0.005	124	38.6	197	61.4
	없음	24,089,100	3,159	0.013	1,610	51.0	1,549	49.0
신고체계	범부처시스템 및 신고체계	57,974,602	23,186	0.040	6,140	26.5	17,046	73.5
	부처/수행기관 홈페이지	10,044,877	1,234	0.012	570	46.2	664	53.8
	부서/수행기관	3,366,724	1,147	0.034	888	77.4	259	22.6
	없음	21,062,869	2,272	0.011	815	35.9	1,457	64.1
계		92,449,072	27,839	0.030	8,413	30.2	19,426	69.8

주: (A)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것이며, 일부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집행 실적을 세부 사업 수준으로 통합하여 제출하여 이를 조정함.

(B) 환수 실적은 별첨 자료의 금액을 활용했으며, 8번 문항에서 조사한 부정수금액과 차이가 있음.

(C) 고의성은 별첨 자료의 부정수급 원인을 활용했으며, 가족 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 등을 포함

(D) 비고의성은 별첨 자료의 부정수급 원인을 활용했으며,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업무착오, 관리 미비 등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2. 기준변수를 활용한 부정수급 환수 원인 분석

□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있는 사업 중 고의성이 있는 사업으로는 허위(80억 816만 원), 목적 외 사용(2억 2,683만 원), 공모(95백만 원), 공모(9,516만 원), 임의처리(6,765만 원), 가족 간 거래(1,490만 원) 순으로 나타남.

○ (회계) 일반회계 사업은 허위(69억 8,799만 원), 목적 외 사용(2억 2,434만 원), 공모(9,516만 원), 임의처리(1,750만 원), 가족 간 거래(1,035만 원) 순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 외 사업은 허위,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 목적 외 사용 순으로 나타남.

○ (집행 실적) 예산 4사분위 사업은 허위(788억 4,279만 원), 목적 외 사용, 임의처리, 공모,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나타남.

- 예산 1사분위는 허위, 예산 2사분위는 임의처리와 허위, 예산 3사분위는 허위와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반환 실적이 있음.

○ (급여 형태) 현금 급여의 반환 실적은 허위(64억 980만 원), 가족 간 거래, 공모, 목적 외 사용 순으로 나타남.

- 현물급여는 허위(13억 6,675만 원), 목적 외 사용, 공모,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사업에서 환수 실적은 허위(69억 2,946만 원), 목적 외 사용, 공모,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 순으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의 환수 실적으로는 허위(47억 5,716만 원)가 가장 많고, 가족 간 거래가 있음

○ (신고 체계) 범부처 신고 체계를 활용하는 사업에서 환수 실적은 허위(61억 2,398만 원)가 가장 높고, 가족 간 거래, 공모, 목적 외 사용 순으로 나타남.

- 신고 체계가 없는 사업에서 허위, 목적 외 사용, 임의처리, 가족 간 거래 순임.

〈표 3-30〉 사회보장급여 환수 실적 금액¹⁾: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사유²⁾

(단위: 백만 원)

분류	구분	가족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
회계	일반회계	10.4	95.2	17.5	224.3	6,988.0
	일반회계 외	4.5	-	50.1	2.5	1,020.2
집행 실적 (분위)	1사분위	-	-	-	-	3.8
	2사분위	-	-	31.6	-	3.4
	3사분위	0.5	-	-	-	116.7
	4사분위	14.4	95.2	36.1	226.8	7,884.3
급여유형	현금	7.1	3.5	-	2.4	6,409.8
	현물	7.8	91.7	67.7	224.4	1,366.8
	그 외	-	-	-	-	231.6
부정수급 관리 법령	없음	7.8	3.5	50.1	-	1,035.7
	있음	5.2	91.7	17.5	224.3	6,768.8
	무응답	1.9	-	-	2.5	203.6
부정수급 관리주체	중앙부처	-	-	-	-	-
	지방자치단체	12.7	95.2	17.5	226.7	6,929.5
	특별행정기관	-	-	31.6	0.0	520.1
	그 외 산하기관	-	-	-	0.1	167.3
	기타	-	-	-	-	-
	없음	2.2	-	18.6	-	391.3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0.0	-	-	199.6	16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5	-	-	0.0	4,757.2
	부처 내부 시스템	7.1	3.5	-	2.5	1,543.6
	홈페이지	-	-	-	-	124.3
	없음	5.3	91.7	67.7	24.7	1,420.8
신고체계	범부처 신고체계	9.6	3.5	-	2.5	6,124.0
	부처/수행기관 홈페이지	2.7	-	-	-	567.4
	부서/수행기관	-	91.7	17.5	24.7	754.2
	없음	2.6	-	50.1	199.6	562.6
계		14.9	95.2	67.7	226.8	8,008.2

주: 1)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것임.

2) 부정수급의 원인 중 가족 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는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고의적이지 않은 오류로 인한 환수 실적은 업무착오(121억 21백만 원), 관리 미비(70억 26백만 원), 중복 처리(1억 45백만 원), 증빙 미비(1억 45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 (회계) 일반회계 사업 중 오류로 인한 환수 실적은 업무착오(114억 23백만 원), 관리 미비(69억 16백만 원),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 외 사업의 오류로 인한 환수 실적은 업무착오, 관리미비,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순으로 나타남.

○ (집행 실적) 예산 4사분위 사업의 오류로 인한 반환은 업무 착오(120억 82백만 원), 관리미비,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순으로 나타남.

○ (급여 형태) 현금 급여의 오류로 인한 반환은 업무착오(118억 46백만 원), 관리 미비,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현물급여는 관리 미비, 업무착오,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급여는 관리 미비, 증빙 미비, 업무착오, 중복 처리 순으로 나타남.

○ (법적 근거)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에서 오류로 인한 반환은 업무착오(120억 31백만 원), 관리 미비,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사업에서 오류로 인한 반환은 업무착오(109억 19백만 원), 관리 미비,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산하기관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사업은 업무착오, 관리 미비,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순으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오류로 인한 반환은 업무착오(106억 18백만 원), 관리 미비,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순으로 나타남.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에서 오류로 인한 반환은 관리미비, 업무 착오, 중복처리, 증빙미비 순으로 나타남.

○ (신고 체계) 범부처 신고 체계 및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오류로 인한 반환은 업무착오(113억 84백만 원), 관리 미비, 중복 처리, 증빙 미비 순으로 나타남.

〈표 3-31〉 사회보장급여 환수 실적 금액¹⁾: 비교의적인 부정수급의 사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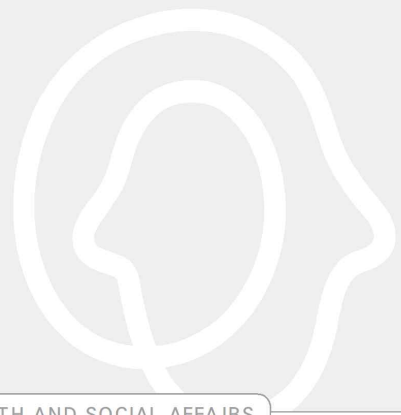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분류	구분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업무 착오	관리 미비
회계	일반회계	42.2	131.7	11,423.5	6,916.2
	일반회계 외	89.5	14.2	698.3	110.5
집행 실적 (분위)	1사분위	-	11.3	3.4	5.0
	2사분위	-	2.9	7.4	11.0
	3사분위	-	41.0	28.6	22.2
	4사분위	131.7	90.6	12,082.4	6,988.4
급여유형	현금	42.1	115.0	11,846.8	5,639.5
	현물	3.0	30.5	224.1	1,267.5
	그 외	86.6	0.3	50.8	119.7
부정수급 관리 법령	없음	3.0	13.3	90.1	128.3
	있음	128.7	132.5	12,031.6	6,898.3
	무응답	0.0	0.0	0.0	0.0
부정수급 관리주체	중앙부처	-	-	-	-
	지방자치단체	42.2	131.3	10,919.9	6,760.4
	특별행정기관	0.0	11.3	155.7	25.3
	그 외 산하기관	86.5	2.8	1,008.0	208.5
	기타	-	-	-	-
	없음	3.0	0.4	38.2	32.5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1.1	14.5	80.5	173.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1.1	14.5	10,618.9	5,227.5
	부처 내부 시스템	-	33.1	1,208.1	266.6
	홈페이지	86.5	24.7	1.6	84.7
	없음	3.0	59.0	212.7	1,274.4
신고체계	범부처 신고체계	42.2	95.1	11,384.6	5,524.5
	부처/수행기관 홈페이지	-	10.8	513.0	139.7
	부서/수행기관	-	27.1	171.3	60.3
	없음	89.5	12.7	52.8	1,302.2
계		131.7	145.8	12,121.8	7,026.7

주: 1)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것임.

2) 부정수급의 원인 중 가족 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는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제4장

사회보험 기본조사(시범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제2절 고용보험

제3절 산재보험

제4절 국민연금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6절 건강보험

제4장 사회보험 기본조사(시범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2020년 실태조사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일부가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회보장급여 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중앙정부 기본조사에서 조사되었음(임완섭 외, 2020).
-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기관 혹은 소관 부처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의 법적 근거와 부정수급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사전 조사표를 작성한 후 사회보험 담당부서 혹은 기관에 의뢰하였고, 조사표에 대한 수정 보완을 진행함.
 - 각 사회보험의 급여유형과 부정수급 관리방식에 차이가 있어 일관된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표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각 보험의 특성과 생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발신의 공문으로 해당 부처 및 사회보험 기관으로 발송하였고, 조사표는 조사업체(R&R)로 회신함.

□ 사회보험 기본조사에 걸린 기간은 총 14주임.

- 사회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사표 초안을 마련한 후, 사회보험 담당 부처 및 사회보험 기관에 조사 취지 및 조사표 작성을 안내함.
- 조사표 발송 후 최종 조사표 회신일 기준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약 4주임.

2. 조사 응답 현황

□ 사회보험 기본조사 대상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임.

○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8개 사업이 조사에 포함되었음. 조사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부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부임.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자가 국가이며 대부분 현금 급여 사업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직급여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국민연금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4개의 현금 급여는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음.

○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개별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급여를 목록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의 규모와 관리 방법을 조사함. 이에 따라 각 사회보험의 주요 급여가 조사에 포함되었으며, 사회보험기관이 소관 부처와 함께 직접 수행하는 부정수급 관리 방법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음.

-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일반 재정과 달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산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다만,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급여대상자 수와 급여액을 예상하여 잠정적인 급여의 총규모를 산출할 수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성 기금으로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 총규모에 대한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단 측에서 급여별 총규모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힘.

□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회보험의 사회보장급여는 총 42개이며, 41개 사회보장급여를 분석에 포함함.

○ 수급자에 직접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급여(42개)가 혼재해 있으며, 사회보험 급여와 사회보험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포함됨.

○ 건강보험은 현물급여로 구성되어 급여가 목록화되지 않은 특징이 있음.

〈표 4-1〉 사회보험 기본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연번	사회보험	급여구분	2020년	2023년
1	고용보험	구직급여	-	○
2		조기재취업수당	-	○
3		훈련비 등	-	○
4		고용장출장려금	-	○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
6		고용유지지원금	-	○
7		고용안정장려금	○	○
8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	○
9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
10		직장어린이집 지원	○	○
1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
12		청년내일채움공제	-	○
1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
14		출산전후휴가급여	○	○
15		유산사산휴가급여	○	○
16		육아휴직급여	○	○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18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
19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	○
2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
21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	○
22		산재보험 재활사업	-	○
23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	○
24		산재근로자직업훈련	○	○
25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	○
26		산재근로자합병증등 예방관리	○	○
27		산재보험 요양급여	○	○
28		진폐근로자보호	○	× ¹⁾
29	국민연금	노령연금	-	○
30		장애연금	-	○
31		유족연금	-	○
32		일시금	-	○
33		노후연금자금 대부사업	○	○
34		노후준비서비스	○	× ²⁾
35	건강보험	요양급여	-	○
36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지원	-	○
37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
3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
39		재가급여	○	○
40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4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	○
42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	○

주: 1) 산업재해보상보험 담당 부처 및 담당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음.

2) 임원섭 외(2020)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일반회계 사업이므로 중앙부처 기본조사에 포함됨.

자료: 1) 2020년 자료는 임원섭 외. (2020), p. 402에 제시된 부록 10. 「기본조사 포함 사회보험 사업」임.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제2절 고용보험

1. 고용보험 관리 및 급여 집행액 현황

□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표 4-2〉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사업 담당 부처 및 기관	실·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팀

□ 2022년 고용보험 급여의 집행액은 16,231,843백만 원임.

〈표 4-3〉 2022년 고용보험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단위: 백만 원)

회계명	급여 내역 ¹⁾	급여 유형 ²⁾	집행액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현금	10,910,504
고용보험기금	조기재취업수당	현금	468,018
고용보험기금	훈련비 등	현금	288,540
고용보험기금	훈련비 등	현금	462,837
고용보험	고용창출장려금	현금	343,731
고용보험	고용창출장려금	현금	125,669
고용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현금	375,282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현금	119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현금	43,297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현금	420,960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	현금	57,020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	현금	149,520
고용보험	세대간상생고용지원	현금	1,151
고용보험	직장어린이집지원	현금	19,711
고용보험	직장어린이집지원	현금	81,276
고용보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현금	19,287
고용보험	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	343,737
고용보험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현금	50,177

회계명	급여 내역 ¹⁾	급여 유형 ²⁾	집행액
고용보험기금	출산전후휴가급여	현금	304,849
고용보험기금	유산사산휴가급여	현금	1,595
고용보험기금	육아휴직급여	현금	1,657,230
고용보험기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현금	107,330
계			16,231,843

주: 1) 급여 내역의 사업명은 같으나, 내역사업의 명칭이 다름.

2) 급여 유형은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2.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리 현황⁵⁾

□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 부정수급 관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의 대응 조치는 ‘지원 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벌금, 징역 등 형벌’을 동시에 취하고 있음.

○ 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지침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업무매뉴얼에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음.

〈표 4-4〉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구분		내용
근거법령	법령명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1조, 제62조, 제73조 및 제116조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 지원중단 • 금전적 제재 • 행정처분 • 벌금, 징역 등 형벌
	주요 대응 조치	• 동시진행
관리지침	지침명	「고용보험 부정수급 업무매뉴얼」

주: 1) 근거 법령에 근거한 대응 조치로 ①지원중단, ②금전적 제재(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③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 취소 등), ④벌금, 징역 등 형벌, ⑤명단공표, ⑥기타, ⑦대응 조치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2) 다수의 대응조치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의 주요 대응 조치로 조사함.

3)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사업안내 및 매뉴얼에 별도로 있는 경우이며,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되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도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5)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리 주체 및 관리 방법

-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관리는 부처 사업부서와 전담조직(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 조사과(팀))에서 관리하고 있음.
- 부정수급 관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등 추출하여 134,779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표 4-5〉 부정수급 관리 주체 및 관리방법

부정수급 관리 주체	부처 사업부서, 전담조직(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 조사과(팀))	
부정수급 관리 방법	표본조사	
	표본 선정기준	표본 수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등 추출	134,779건

주: 1)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①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사업부서/전담조직/감사부서)와 ②사회보험기관에서 수행(사업부서/전담조직/감사부서)하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상시조직 또는 임시조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2) 부정수급 관리 방법으로는 ①전수조사, ②표본조사 ③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 체계 운영

- 고용보험급여는 ‘고용보험시스템’, ‘자동경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관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표 4-6〉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 체계 운영

	여부	방법
전산시스템	운영	고용보험시스템, 자동경보시스템
신고체계	운영	부정수급조사과(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고용보험 급여 관리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항목 기준

- 부정수급 분류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모성보호의 급여별로 구분하며, 부정수급 사례 원인은 취업 사실 미신고, 위장 고용 등 피보험 단위 허위 신고, 이직 사유 거짓 신고 등에서 발생함.

〈표 4-7〉 부정수급 분류 기준과 항목 기준

분류기준	내용
급여별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모성보호
사례별(원인별)	유형별 분류(취업사실미신고, 위장고용 등 피보험단위 허위 신고, 이직사유 거짓신고 등)

□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 고용보험 부정수급 고지 건수는 25,536건이며, 고지 금액은 46,722백만 원임.
- 환수 금액은 72,173백만 원으로, 고지 금액 대비 환수 금액을 나타내는 환수율(%)은 69.9%임.

〈표 4-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부정수급 (건)	부정수급액 (백만 원)	반환명령액 (백만 원)	환수	
				환수금액 (백만 원)	환수율 ¹⁾ (%)
실업급여	23,879	26,843	51,568	43,304	84.0
직업능력개발	41	259	340	209	61.4
고용안정	1,278	18,453	49,608	27,194	54.8
모성보호	338	1,167	1,756	1,466	83.5
계	25,536	46,722	103,272	72,173	69.9

주: 환수율: 환수금액/반환명령액×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제3절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 및 급여 집행액 현황

□ 산재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 산재보험 급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

〈표 4-9〉 산재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사업담당 부처 및 기관	실·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 2022년 산재보험 급여의 집행액은 산재보험 회계,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으로부터 1,394,191백만 원이 집행됨.

〈표 4-10〉 2022년 산재보험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단위: 백만 원)

회계명	급여 내역	세부사업	급여 유형 ^{주)}	집행액
산재보험회계	산재보험위탁사업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감면	2,472
산재보험회계	산재보험위탁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대여/용자	15,636
산재보험회계	산재보험위탁사업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대여/용자	-
산재보험회계	산재보험위탁사업	산재보험재활사업	현물	53,279
산재보험회계	산재보험위탁사업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현금	208
산재보험회계	산재보험위탁사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현금	309
산재보험회계	산재보험위탁사업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현물	2,675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케어센터 지원	프로그램	3,156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	현금	1,316,456
	계		-	1,394,191

주: 급여 유형은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2.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현황⁶⁾

□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 부정수급관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의 대응 조치는 ‘금전적 제재’, ‘지원 중단’, ‘행정처분’ 등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산재 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음.

○ 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지침은 ‘산재 근로자 일상 복귀 지원 규정’ 및 ‘산재근로자 생활 지원 규정’,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업무 처리 규정’과 ‘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표 4-11〉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세부 사업	근거법령			관리지침 ⁴⁾
	법령명 ¹⁾	법령 상 대응 조치 ²⁾	주요 대응 조치 ³⁾	지침명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시행령 제79조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1: 금전적 제재 2: 지원중단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없음	-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시행령 제79조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1: 금전적 제재 2: 지원중단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시행령 제79조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1: 금전적 제재 2: 지원중단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산재보험재활사업	법 제84조/ 시행령 제79조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1: 금전적 제재 2: 지원중단	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시행령 제79조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1: 금전적 제재 2: 지원중단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법 제73조, 제74조 시행령 제79조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1: 금전적 제재 2: 지원중단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법 제75조, 시행령 제79조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1: 금전적 제재 2: 지원중단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6)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세부 사업	근거법령			관리지침 ⁴⁾
	법령명 ¹⁾	법령 상 대응 조치 ²⁾	주요 대응 조치 ³⁾	지침명
요양급여	법 제43조, 제84조 및 제84조의 2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명단공표	1: 금전적 제재 2: 행정처분	부당이득 징수 업무처리 규정

주: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표기함.

2) 근거법령에 근거한 대응조치로 ①지원중단, ②금전적 제재(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③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벌금, 징역 등 형벌, ⑤명단공표, ⑥기타, ⑦대응 조치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3) 다수의 대응조치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의 주요 대응 조치로 조사함.

4)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사업안내 및 매뉴얼에 별도로 있는 경우이며,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되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도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부정수급 관리 주체 및 관리 방법

○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사회보험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문항에 응답하지 않음.

- 최근 보도자료 및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최근 5년 간 153억 원에 달하고, 81%는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주환 의원실, 2023.8.28.).

□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 산재보험급여는 '노동보험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고, 부정수급예방부를 활용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 주관 부서에서 조사표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산재보험부정수급 신고센터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 등을 운영하였음.

〈표 4-12〉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 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시스템명
	운영	노동보험시스템
신고체계	운영여부	신고체계 명칭
	운영	부정수급예방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 산재보험 부정수급 고지 건수는 169건이며, 고지 금액은 54백만 원임.

○ 환수 금액은 54백만 원으로, 고지 대비 환수 금액을 나타내는 환수율(%)은 97.4%임.

〈표 4-13〉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부정수급 (건)	부정수금액	반환명령(결정)액	환수	
				환수금액	환수율 ¹⁾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3	6	6	6	100.0
(산재근로자)케어센터 지원	-	-	-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응자)	-	-	-	-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	-	-	-	-
산재보험재활사업	144	40	40	39	97.5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	-	-	-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3	2	2	2	100.0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	-	-	-	-
요양급여	19	4	4	4	92.2
계	169	54	54	52	97.4

주: 1) 환수율= 환수금액/반환명령(결정)액×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제4절 국민연금

1. 국민연금 급여 관리 및 급여 집행 현황

-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연금정책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수행하고 있음.

〈표 4-14〉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사업담당 부처 및 기관	실·국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 2022년 국민연금 급여의 집행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에 대해 전체 34,020,076백만 원이 집행됨.

〈표 4-15〉 2022년 국민연금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단위: 백만 원)

급여 내역	급여 유형	집행액
노령연금	현금	29,544,090
장애연금	현금	441,230
유족연금	현금	2,881,759
일시금	현금	1,152,997
계	-	34,020,076

주: 급여 유형은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2.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⁷⁾

-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 부정수급관리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의 대응 조치는 ‘금전적 제재’와 ‘벌금, 징역 등 형벌’을 취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급여의 환수 지침>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7)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표 4-16〉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구분		내용
근거법령	법령명	「국민연금법」 제57조, 57조의 2, 128조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 금전적 제재 • 벌금, 징역 등 형벌
	주요 대응 조치	• 1순위 : 금전적 제재 • 2순위 : 벌금, 징역 등 형벌
관리지침	지침명	「급여의 환수 지침」

주: 1) 근거법령에 근거한 대응조치로 ①지원중단, ②금전적 제재(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법칙금 등), ③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벌금, 징역 등 형벌, ⑤명단공표, ⑥기타, ⑦대응 조치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2) 다수의 대응조치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의 주요 대응 조치로 조사함.

3) 국민연금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사업안내 및 매뉴얼에 별도로 있는 경우이며,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되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도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부정수급 관리주체 및 관리 방법

○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관리주체는 사회보험기관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 부정수급 관리 방법으로는 내·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당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표본으로 선정(67,000명)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표 4-17〉 부정수급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부정수급 관리 주체	사회보험기관 사업부서	
부정수급 관리 방법	표본조사	
	표본 선정기준	표본 수
	• 내·외부자료를 활용한 확인대상자 선정	67,000명

주: 1)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①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사업부서/전담조직/감사부서)와 ②사회보험기관에서 수행(사업부서/전담조직/감사부서)하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상시조직 또는 임시조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2) 부정수급 관리 방법으로는 ①전수조사, ②표본조사 ③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 국민연금은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활용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표 4-18〉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운영여부	시스템명
	운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체계	운영여부	신고체계 명칭
	운영	부정수급 신고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국민연금급여 관리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항목 기준

- 부정수급 분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의 급여별로 구분하며, 부양가족연금 제외(미해당), 수급권 소멸(사망/재혼/기타), 손해배상금 및 산재급여수령, 수급권 취소에서 발생함.

〈표 4-19〉 부정수급 분류 기준과 항목 기준

분류기준	내용
급여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사례별(원인별)	부양가족연금 제외(미해당), 수급권 소멸(사망/재혼/기타), 손해배상금 및 산재급여수령, 수급권 취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국민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 국민연금 부정수급 고지 명수는 22명이며, 부당청구액은 78백만 원임.
- 환수 금액은 40백만 원으로, 고지 대비 환수 금액을 나타내는 환수율(%)은 51.0%임.

〈표 4-20〉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단위: 명, 천 원, %)

구분	수급자 수	부정수급 적발대상자 수	청구지급액	부당청구액	환수	
					환수금액	환수율 ¹⁾
노령연금	5,396,729	15	180,823	53,980	29,591	54.8
장애연금	76,718	-	-	-	-	-
유족연금	951,470	6	95,719	24,837	10,596	42.7
일시금	217,726	1	7	7	7	100.0
계	6,642,643	22	276,549	78,824	40,193	51.0

주: 1) 환수율: 환수금액/부당청구액×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 관리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담당자가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표 4-2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사업담당 부처 및 기관	실·국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관리 현황⁸⁾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 부정수급 관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의 대응 조치는 ‘금전적 제재’와 ‘행정처분(안) 지자체 송부’를 취하고 있음.
 - 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지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및 행정 처분지침과 현지조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음.

8)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표 4-22〉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 및 지침

구분	법령명	내용
근거법령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 금전적 제재 • 기타 : 행정처분(안) 지자체 송부
	주요 대응 조치	• 1순위 : 금전적 제재 • 2순위 : 기타 : 행정처분(안) 지자체 송부
관리지침	지침명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지침 • 현지조사지원 업무처리지침

주: 1) 근거법령에 근거한 대응조치로 ①지원중단, ②금전적 제재(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③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벌금, 징역 등 형벌, ⑤명단공표, ⑥기타, ⑦대응 조치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2) 다수의 대응조치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의 주요 대응 조치로 조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사업안내 및 매뉴얼에 별도로 있는 경우이며,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되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도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주체 및 관리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상시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음.

○ 부정수급 관리 방법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사, 위반신고 및 민원접수 사항, 적정 청구관리시스템(FDS) 청구경향분석 결과 부당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표본조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표-4-23〉 부정수급 관리 주체 및 관리방법

부정수급 관리 주체	상시조직	
부정수급 관리 방법	표본조사	
	표본 선정기준	표본 수
	• 보건복지부 기획조사 • 위반신고·민원 접수 •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청구경향분석 결과 부당개연성이 높은 경우	1,133개소

주: 1)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①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사업부서/전담조직/감사부서)와 ②사회보험기관에서 수행(사업부서/전담조직/감사부서)하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상시조직 또는 임시조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2) 부정수급 관리 방법으로는 ①전수조사, ②표본조사 ③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 노인요양보험급여는 ‘적정청구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결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표 4-24〉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운영여부	시스템명
전산시스템	운영	적정청구관리시스템 (FDS, Fair Detection System)
신고체계	운영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장기요양보험 급여 관리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항목기준

- 부정수급 분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의 급여별로 구분하며, 부정수급 사례 원인은 허위청구, 수가가감산위반, 산정기준위반, 자격기준위반에서 발생함.

〈표 4-25〉 부정수급 분류 기준과 항목 기준

분류기준	내용
급여별	시설급여, 재가급여
사례별(원인별)	허위청구, 수가가감산위반, 산정기준위반, 자격기준위반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사회보험 급여 지출액 및 부정수급 현황

- 2022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는 11조 7,803억 원이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26〉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단위: 백만 원)

급여 내역	급여 유형	집행액
재가급여	현물	7,253,811
시설급여	현물	4,505,919
가족요양비	현금	1,499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현물	17,956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현물	847
계		11,780,034

주: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집행액을 제출하지 않음.

자료: 건강보험공단.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통계 연보에서 '급여비'를 추출하여 연구진 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고지 건수는 15,499건이며, 고지 금액은 53,241
백만 원임.

○ 환수 건수는 12,769건이며, 환수 금액은 43,424백만 원으로, 고지 대비 환수
금액을 나타내는 환수율(%)은 81.5%임.

〈표 4-27〉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내용	세부항목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고지건수	고지금액	환수건수	환수결정	환수금액	환수율 ³⁾
부당 이득의 징수 (제43조)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경우	기관 환수 ¹⁾	120	20	120	19	17	90.7
		수급자 환수 ²⁾	12,851	652	11,265	650	649	99.8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대상이 급여를 받은 경우	-	521	174	239	90	85	94.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여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83	52,368	1,083	52,477	42,671	81.3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	924	28	62	28	2	6.3
계			15,499	53,241	12,769	53,264	43,424	81.5

주: 1) 기관환수 기준: 고지는 환수에 결정통보된 기관수 및 금액, 환수는 환수결정통보된 기관수 및 금액, 환수금액은 결정통보된 금액 중 납부된 금액, 환수율은 (환수금액/환수결정금액)*100, 둘째자리 절사

2) 수급자환수 기준: 고지는 사실확인통보된 수급자수 및 금액, 환수는 환수결정통보된 수급자수 및 금액, 환수금액은 결정통보된 금액 중 납부된 금액, 환수율은 (환수금액/환수결정금액)*100, 둘째자리 절사

3) 환수율: 환수금액/환수결정 × 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제6절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급여 지출 관리 현황

□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 건강보험 급여는 건강보험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의 영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

〈표 4-28〉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기관 사업담당자

구분	사업담당 부처	실·국	담당기관	실·국
건강보험급여 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국민건강 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지원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비지원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비지원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의료기관지원실

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부당이득의 징수, 급여의 정지, 급여의 제한

2.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현황⁹⁾

□ 건강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근거

- 부정수급관리는 전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외에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법」과 「출국입국관리법」에 근거하며, 자격상실 후 수급은 「국적법」, 「해외이주법」에 근거함.
-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이외에 「의료법」, 「약사법」에 근거함.

9)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

〈표 4-29〉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

구분		유무	근거법령명
건강 보험 급여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57조, 제115조 • 형법 제347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 출입입관리법 제33조의3
	자격상실 후 수급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57조, 제109조 • 국적법 제18조 • 해외이주법 제4조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민법 제741조, 제750조
	급여의 정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제한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령 26조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지원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민법 제741조, 제750조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있음	• 의료법 제33조의 3, 제61조, 제61조의 2 • 약사법 제6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근거 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의 대응 조치는 ‘금전적 제재’이며, 장애인 보조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조치는 ‘금전적 제재’와 ‘행정처분’ 조치를 취함.
- 불법개설기관 행정 조사의 경우 ‘금전적 제재’와 ‘벌금, 징역 등 형벌’, ‘명단 공표’의 대응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금전적 제재’와 ‘명단공 표’를 우선 취하고 있음.

〈표 4-30〉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조치 및 주요 대응조치

구분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조치	주요 대응조치
건강보험급여	• 금전적 제재	• 1순위: 금전적 제재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지원	• 기타	• 기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금전적 제재 • 행정처분	• 1순위: 금전적 제재 • 2순위: 행정처분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 금전적 제재 • 벌금, 징역 등 형벌 • 명단공표	• 1순위: 금전적 제재 • 2순위: 명단공표

주: 1) 근거법령에 근거한 대응조치로 ①지원중단, ②금전적 제재(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③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벌금, 징역 등 형벌, ⑤명단공표, ⑥기타, ⑦대응조치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2) 다수의 대응조치에 대해 1순위와 2순위의 주요 대응 조치로 조사함.

3)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사업안내 및 매뉴얼에 별도로 있는 경우이며,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되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도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지침

○ 건강보험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지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수급, 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 부당이득의 징수, 급여의 정지, 급여의 제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음.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부정수급 관련 관리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음.

〈표 4-31〉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관련 지침

구분	유무	지침명
건강 보험 급여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있음 • 부당수급,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업무처리
	자격상실 후 수급	있음 •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수급 업무처리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있음 • 부당수급, 급여정지기간(출국) 중 수급 업무처리
	부당이득의 징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급여의 정지	있음 • 부당수급, 보험급여비정산, 기타징수금 징수관리
	급여의 제한	있음 • 부당수급, 기타징수금 징수관리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지원		있음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있음 • 장애인보조기기 업무처리지침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있음 • 의료기관지원 업무처리지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관리주체는 사회보험기관의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사회보험기관 전담조직(임시조직)에서 그리고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는 상시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음.
-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방식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①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당수급 가능자를 발췌하여 부당여부를 조사하거나, ② 특정 상병코드, 자격사항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발췌하여 부당결정하는 두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표본 수는 수급자 중 13,843명임.
- 불법개설기관 행정 조사의 부정수급 관리는 인지 → 사전분석 → ‘행정조사 대상 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 조사하며, 이때 표본 수는 2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표 4-32〉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관리 주체

구분		부정수급 관리 주체
건강 보험 급여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 사회보험기관 사업부서
	자격상실 후 수급	• 사회보험기관 사업부서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 사회보험기관 사업부서
	부당이득의 징수	• 사회보험기관 사업부서
	급여의 정지	• 사회보험기관 사업부서, 전담조직
	급여의 제한	• 사회보험기관 사업부서, 전담조직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지원		• 사회보험기관 사업부서, 위탁금융기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사회보험기관 전담조직 • 임시조직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 상시조직

주: 1)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①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사업부서/전담조직/감사부서)와 ②사회보험기관에서 수행(사업부서/전담조직/감사부서)하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상시조직 또는 임시조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2) 부정수급 관리 방법으로는 ①전수조사, ②표본조사 ③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표 4-33〉 부정수급 관리 방법

구분	부정수급 관리방법	부정수급 관리방법 상세	
건강보험급여	기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당수급 가능자를 발췌하여 부당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부당수급 가능자 색출은 특정 상병코드, 자격사항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발췌하여 부당결정하므로 두가지 방법이 혼재하여 있음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지원	무응답	국민행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 자격 박탈 및 민·형사상 책임 조치 • 바우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사용 카드 매출전표를 취소, 일반카드로 재 결제하도록 조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표본조사	표본 선정기준	분기별 장애인보조기기 전산화면을 통해 보험급여 수급자 발췌
		표본 수	13,843명(수급자 유선전화조사 인원)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표본조사	표본 선정기준	인지 → 사전분석 →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행정조사 실시
		표본 수	250개 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 건강보험 급여는 '통합급여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의 신고센터를 활용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표 4-34〉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구분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 여부	시스템명	운영 여부	신고체계 명칭
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운영	통합급여관리시스템	운영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센터(앱, 홈페이지)
	자격상실 후 수급	운영	통합급여관리시스템	미운영	-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운영	통합급여관리시스템	미운영	-
	부당이득의 징수	운영	통합급여관리시스템	운영	진료받은내용, 공익신고 등
	급여의 정지	운영	통합급여관리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급여의 제한	운영	통합급여관리시스템	운영	급여제한여부 조회, 홈페이지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지원		미운영	-	운영	홈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운영	통합급여정보시스템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운영	불법개설기관신고센터	운영	문서 접수 및 제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주: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지원은 바우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사용 카드 매출전표를 취소, 일반 카드로 재결제하도록 조치하고 기 사용된 바우처 재 생성되므로, 공단은 부정수급 관리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 및 부정수급 현황

○ 2022년 기준 건강보험의 급여비는 11조 7,803억 원이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35〉 2022년 건강보험 급여 내역별 결산(집행액)

(단위: 백만 원)

급여 내역	급여 유형	집행액
요양급여비	현물	81,145,009
장제비	현물	-
본인부담액보상금	현금	-
건강검진비	현물	1,986,907
임신·출산 진료비	현물	334,863
계		

주: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의 집행액을 제출하지 않음.

자료: 건강보험공단. (2022). 건강보험 급여 통계 연보에서 '급여비'를 추출하여 연구진 작성.

○ 건강보험공단은 ‘고의, 오류 등 부적정지출’에 대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면, 급여의 제한과 급여의 정지, 부당이득의 징수 등을 모두 포함.

- 건강보험 부정수급 고지 건수는 1,057,224건이며, 고지 금액은 258,657백만 원이며, 환수 건수는 932,696건이며, 환수 금액은 158,552백만 원으로, 고지 대비 환수 금액을 나타내는 환수율(%)은 61.3%임.

○ 본 연구에서 다른 사회보험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기망, 부패 등 고의의 부정수급’을 적용하면, 부당이득의 징수만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건강보험 부정수급 고지 건수는 23,637건이며, 고지 금액은 3,956백만 원이며, 환수 건수는 18,717건이며, 환수 금액은 20,249백만 원임.

〈표 4-36〉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단위: 건,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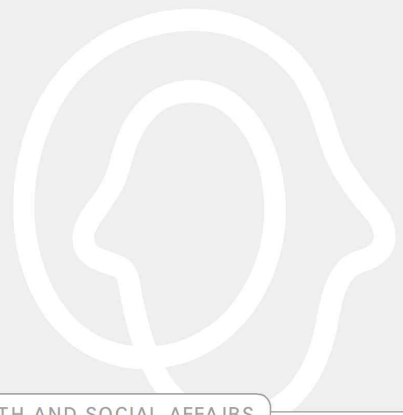
구분	내용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³⁾					
		고지건수	고지금액	환수건수	환수결정	환수금액	환수율 ²⁾
급여의 제한 (제53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관련	13,150	28,330	10,240	-	15,759	55.6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보상	7,910	7,345	7,146	-	6,276	85.4
	보험료 체납	114,538	102,440	6,671	-	1,673	1.6
급여의 정지 (제54조)	국외 체류	6,688	1,048	6,072	1,034	904	86.2
	현역병, 전환복무, 군간부 후보생	773,546	94,152	766,101	-	92,372	98.1
	교도소, 그 밖에 준하는 시설	117,755	21,386	117,749	-	21,319	99.7
부당이득의 징수 (제57조)	무면허의료기관개설	-	-	55	103,768	10,926	-
	무면허약국개설	-	-	29	195,366	6,682	-
	2개이상의료기관개설	-	-	-	-	58	-
	2개 이상약국개설	-	-	-	-	317	-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524	546	369	546	298	54.6
	요양기관 거짓 진단	-	-	-	-	-	-
	그 밖의 부당한 방법 ¹⁾	23,113	3,410	18,264	3,410	1,968	57.7
계(광의 기준)		1,057,224	258,657	932,696	304,123	158,552	61.3
계(협의 기준)		23,637	3,956	18,717	303,090	20,249	112.3

주: 1) 그 밖의 부당한 방법: 건강보험급여의 ‘자격상실 후 수습’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가 해당됨

2) 환수율: 환수금액/고지금액×100 (단, 고지금액이 없는 경우는 계산 불가)

3)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은 건강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만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임.



제5장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시범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제2절 기준변수의 선정

제3절 부정수급 규모

제5장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시범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록된 17개 시도 4,012개 사회보장사업 중 100개 사업에 대해서 시도 및 사업 담당자 정보를 확인함.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발신의 공문을 통해 기본조사표를 송부함.
- 사업별 소관 부처 담당자는 공문, 이메일, 온메일 등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의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 담당자에게 조사표를 회신함.
- 사회보장급여 기본조사표의 작성 기준 연도 : 2022년

□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에 걸린 기간은 총 8주임.

-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를 위한 공문에는 당초 조사 기간을 10일로 계획함.
- 최종 조사표 회신일 기준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약 4주임.
- 제출된 조사표에 대해서 예산 등을 점검하고, 전체 사회보장급여 중 예산 규모가 매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오류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보완에 2주가 추가로 소요됨.

2. 조사 응답 현황

-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 대상은 16개 시도 100개 사업이며, 모든 사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됨(응답율 100.0%).

제2절 기준변수의 선정

1. 기준변수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변수는 사업유형, 사업주체, 지급기관, 취득자격, 시스템 활용여부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해당 기준변수는 기본조사와 socx(지방)자료를 활용하여 반영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금성 사업인 경우, 전달체계 복잡한 경우, 지자체의 관리 소홀할수록 부정수급의 발생확률이 높아짐(권오성, 탁현우, 2020). 이를 반영하여 지자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변수를 적용하여 분석함.

- 사업유형은 현금, 지역화폐, 바우처, 기타(감면, 현물 포함)으로 구분함.
- 사업주체는 시도본청, 시도-시군구 매칭, 시군구로 구분함.
- 지급기관별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공기관, 민간으로 구분함.
- 취득자격은 수급자격(저소득, 차상위)을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음을 구분함
- 시스템 활용여부는 별도 자체 시스템,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사회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지를 구분함.

〈표 5-1〉 기초분석을 위한 기준변수

구분	사업유형	사업주체	지급기관	취득자격	시스템 활용여부
변수 값	1. 현금 2. 지역화폐 3. 바우처 4. 기타(감면, 현물)	1. 시도 본청 2. 시도-시군구 매칭 3. 시군구	1. 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4. 공공기관 5. 학교 6. 민간	1. 수급자격 반영하지 않음 2. 수급자 반영	1. 별도자체 시스템 2.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3. 사회정보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

○ 사업유형으로는 현금사업이 68개(68.0%)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2개(12.0%), 바우처는 11개(11%), 지역화폐가 9개(9%)순으로 나타남. 기타를 세분화하면, 현물사업은 2개(2%), 감면이 3개(3%), 기타 7개(7%)임.

○ 사업주체는 시도본청이 66개(66.0%)로 가장 많았고, 시도-시군구 매칭 사업이 30개(30.0%), 시군구 사업이 4개(4.0%)로 나타남.

- 지급기관은 시군구가 52개(52.0%), 공공기관이 17개(17%), 시군구가 16개(16%), 읍면동이 9개(9%), 민간이 6개(6%)로 대부분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의 취득자격은 수급자를 고려한 사업이 22개(22.0%)이고,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78개(78%)인 것으로 나타남.
- 시스템 활용여부를 살펴보면, 별도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59개(59.0%)이고,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24개(24.0%),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사업은 17개(17.0%)인 것으로 나타남.

〈표 5-2〉 기준변수 기술통계량: 지자체 사업(100개)

분류	빈도	비율
합계	100	100.0
사업유형		
현금	68	68.0
지역화폐	9	9.0
바우처	11	11.0
기타	12	12.0
사업주체		
시도 본청	66	66.0
시도-시군구 매칭	30	30.0
시군구	4	4.0
지급기관		
시도	16	16.0
시군구	52	52.0
읍면동	9	9.0
공공기관	17	17.0
민간	6	6.0
취득자격		
수급자반영하지 않음	78	78.0
수급자 반영	22	22.0
시스템 활용 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59	59.0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17	17.0
사회정보시스템활용	24	24.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2. 사업 지원 형태 및 부정수급 관리주체(보장기관)

□ 사업 지원 형태

- 사업주체별 사업지원형태를 살펴보면, 시도 본청 사업인 경우 현금사업이 우세하였고(87.9%), 시도-시군구 매칭사업은 사업지원형태가 골고루 분포되었고, 시군구는 현금과 바우처로 구성됨.
- 지급기관별에 관계없이 현금사업이 대부분 우세하였음(44.4%~83.3%). 상대적으로 읍면동(33.3%)과 공공기관(23.5%)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시군구(17.3%)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지급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득자격별로는 수급자격을 반영한 사업은 현금 사업(77.3%)의 비중이 높았고 기타(13.6%), 바우처(9.1%) 순으로 나타남.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도 현금 사업이(65.4%) 높았으나, 지역화폐, 바우처, 기타 등 사업(11.5%)이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남.
- 시스템활용여부는 별도자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현금 사업(64.4%), 기타(16.9%), 지역화폐(10.2%), 바우처(8.5%)순으로 나타남.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사업은 현금 사업(76.5%), 지역화폐(11.8%), 바우처(5.9%), 기타(5.9%)순으로 나타남. 사회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현금 사업(70.8%), 바우처(20.8%), 지역화폐, 기타(4.2%)순으로 나타남.

〈표 5-3〉 사업 지원 형태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현금	지역화폐	바우처	기타	계
전체		68 (68.0)	9 (9.0)	11 (11.0)	12 (12.0)	100 (100.0)
사업 주체	시도 본청	58 (87.9)	3 (4.5)	1 (1.5)	4 (6.1)	66 (100.0)
	시도-시군구 매칭	8 (26.7)	6 (20.0)	8 (26.7)	8 (26.7)	30 (100.0)
	시군구	2 (50.0)	0 (0.0)	2 (50.0)	0 (0.0)	4 (100.0)
지급 기관	시도	13 (81.3)	1 (6.3)	0 (0.0)	2 (12.5)	16 (100.0)
	시군구	36 (69.2)	1 (1.9)	9 (17.3)	6 (11.5)	52 (100.0)
	읍면동	4 (44.4)	3 (33.3)	1 (11.1)	1 (11.1)	9 (100.0)
	공공기관	10 (58.8)	4 (23.5)	0 (0.0)	3 (17.6)	17 (100.0)
	민간	5 (83.3)	0 (0.0)	1 (16.7)	0 (0.0)	6 (100.0)
취득 자격	수급자 반영	17 (77.3)	0 (0.0)	2 (9.1)	3 (13.6)	22 (100.0)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51 (65.4)	9 (11.5)	9 (11.5)	9 (11.5)	78 (100.0)
시스템 활용 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38 (64.4)	6 (10.2)	5 (8.5)	10 (16.9)	59 (100.0)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13 (76.5)	2 (11.8)	1 (5.9)	1 (5.9)	17 (100.0)
	사회정보시스템활용	17 (70.8)	1 (4.2)	5 (20.8)	1 (4.2)	24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관리주체

- 사업유형별로 부정수급 관리주체를 살펴보면, 현금사업인 경우 '지자체(76.5%)', '지자체+그외(11.8%)'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정수급 관리주체가 '없음'은 4.4%인 것으로 나타남. 사업유형이 '지역화폐'인 경우 '지자체(55.6%)'와 '지자체+산하기관(44.4%)'에서 관리함. '바우처'는 '지자체나 혹은 그 외에서 관리하며 '기타'사업은 다양한 부정수급 관리주체를 가지며, 부정수급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사업이 1개(8.3%)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체별로 살펴보면 시도본청 사업은 지자체(68.2%), 지자체+그외(12.1%), 지자체+소속기관(10.3%)순으로 나타났고, 시도-시군구매칭도 지자체(79.4%), 지자체+그외(10.3%)이고, 시군구 사업은 지자체에서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급기관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지급하는 사업인 경우, 지자체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지자체와 함께 소속기관, 그 외 기관이 관리하는 형태로 나타남.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업은 지자체 단독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비율이 각각 94.1%, 88.9%로 나타나 대부분 지자체 내에서 관리함. 공공기관사업은 지자체(41.2%), 지자체+소속산하기관(35.3%)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11.8%인(2개 사업) 것으로 나타남. 민간사업은 지자체(33.3%), 지자체+그외(33.3%), 소속 산하기관(33.3%)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취득자격별로는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지자체(67.5%)의 비중이 높았고, 지자체+그외(11.7%), 지자체+소속산하기관(10.4%)순임. 부정수급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는 5.2%인 것으로 나타남. 수급자격 반영한 사업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지자체와 함께 그 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스템활용여부는 별도자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 단독으로 64.4%가 관리하였고, 지자체+그외 기관(13.6%), 지자체+소속 산하기관(10.2%)순으로 나타남. 시스템미활용(수기관리)는 지자체 단독으로 관리하거나(70.6%)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대부분 지자체 단독(95.7%)인 것으로 나타남.

〈표 5-4〉 부정수급 관리 주체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지자체	지자체+소속 산하기관	지자체+그외	소속산하기관	없음	계
전체		72 (72.7)	8 (8.1)	11 (11.1)	4 (4.0)	4 (4.0)	99 (100.0)
사업 유형	현금	52 (76.5)	2 (2.9)	8 (11.8)	3 (4.4)	3 (4.4)	68 (100.0)
	지역화폐	5 (55.6)	4 (44.4)	0 (0.0)	0 (0.0)	0 (0.0)	9 (100.0)
	바우처	9 (90.0)	0 (0.0)	1 (10.0)	0 (0.0)	0 (0.0)	10 (100.0)
	기타	6 (50.0)	2 (16.7)	2 (16.7)	1 (8.3)	1 (8.3)	12 (100.0)
사업 주체	시도 본청	45 (68.2)	7 (10.6)	8 (12.1)	3 (4.5)	3 (4.5)	33 (100.0)
	시도-시군구 매칭	23 (79.3)	1 (3.4)	3 (10.3)	1 (3.4)	1 (3.4)	29 (100.0)
	시군구	4 (10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지급 기관	시도	7 (43.8)	2 (12.5)	6 (37.5)	0 (0.0)	1 (6.3)	16 (100.0)
	시군구	48 (94.1)	0 (0.0)	2 (3.9)	0 (0.0)	1 (2.0)	51 (100.0)
	읍면동	8 (88.9)	0 (0.0)	1 (11.1)	0 (0.0)	0 (0.0)	9 (100.0)
	공공기관	7 (41.2)	6 (35.3)	0 (0.0)	2 (11.8)	2 (11.8)	17 (100.0)
	민간	2 (33.3)	0 (0.0)	2 (33.3)	2 (33.3)	0 (0.0)	6 (100.0)
취득 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52 (67.5)	8 (10.4)	9 (11.7)	4 (5.2)	4 (5.2)	77 (100.0)
	수급자 반영	20 (90.9)	0 (0.0)	2 (9.1)	0 (0.0)	0 (0.0)	22 (100.0)
시스템 활용 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38 (64.4)	6 (10.2)	8 (13.6)	4 (6.8)	1 (4.3)	59 (100.0)
	시스템 미활용 (수기관리)	12 (70.6)	1 (5.9)	3 (17.6)	0 (0.0)	1 (5.9)	17 (100.0)
	사회정보시스템 활용	22 (95.7)	1 (4.3)	0 (0.0)	0 (0.0)	0 (0.0)	23 (100.0)

주: 무응답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함(해당 건: 경기도 장애인 활동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3. 부정수급 관리 근거

가. 근거법령 유무 및 대응 조치

□ 근거법령 유무

- 전체 99개 사업 중 55개(55.6%) 사업은 개별적 성격의 근거법령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가 있고, 44개(44.4%) 사업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 근거가 있는 경우, 사업유형별로 바우처(90.0%), 지역화폐(66.7%), 기타(58.3%), 현금(48.5%)순임.
- 사업주체별로는 시도-시군구매청(72.4%) 시군구(50.0%), 시도본청(48.5%)순임.
- 지급기관별로는 읍면동(77.8%), 시군구(64.7%), 시도(56.3%), 민간(33.3%), 공공기관(23.5%)순임.
- 취득자격별로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은 55.8%, 수급자격을 반영한 사업은 54.5%임.
- 시스템 활용여부별로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76.5%,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56.5%, 별도 자체 시스템을 가진 사업은 49.2%임.

〈표 5-5〉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 유무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55 (55.6)	44 (44.4)	99 (100.0)
사업유형	현금	33 (48.5)	35 (51.5)	68 (100.0)
	지역화폐	6 (66.7)	3 (33.3)	9 (100.0)
	바우처	9 (90.0)	1 (10.0)	10 (100.0)
	기타	7 (58.3)	5 (41.7)	12 (100.0)
사업주체	시도 본청	32 (48.5)	34 (51.5)	66 (100.0)
	시도-시군구 매칭	21 (72.4)	8 (27.6)	29 (100.0)
	시군구	2 (50.0)	2 (50.0)	4 (100.0)
지급기관	시도	9 (56.3)	7 (43.8)	16 (100.0)
	시군구	33 (64.7)	18 (35.3)	51 (100.0)
	읍면동	7 (77.8)	2 (22.2)	9 (100.0)
	공공기관	4 (23.5)	13 (76.5)	17 (100.0)
	민간	2 (33.3)	4 (66.7)	6 (100.0)
취득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43 (55.8)	34 (44.2)	77 (100.0)
	수급자 반영	12 (54.5)	10 (45.5)	22 (100.0)
시스템 활용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29 (49.2)	30 (50.8)	59 (100.0)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13 (76.5)	4 (23.5)	17 (100.0)
	사회정보시스템활용	13 (56.5)	10 (43.5)	23 (100.0)

주: 무응답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근거 법령에 따른 주요 대응 조치

○ 전체 100개 사업 중, 부정수급 관리 근거법령이 있다고 응답한 54개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대응 조치를 분석함.

- 54개 사업에서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의 금전적 제재 조치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34개(63.0%) 사업은 급여 지원중단, 7개(13.0%) 사업은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의 순으로 나타남.

○ 기준변수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경향과 유사하게 금전적 제재, 지원중단, 행정처분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 중에서 현금사업은 금전적 제재가 81.8%, 지원중단이 63.3% 순으로 나타남. 지역화폐는 금전적 제재가 83.3%, 지원중단이 50.0%. 바우처, 기타 사업 모두 금전적 제재는 100%인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본청사업은 금전적 제재가 81.3%, 지원중단이 65.6%였고, 시도-시군구매칭사업은 금전적 제재가 95.0%, 지원중단이 60.0%, 시군구 사업은 금전적 제재가 100%인 것으로 나타남.
- 지급기관별로 살펴보면, 시도 사업은 금전적 제재, 지원중단이 100.0%임. 시군구 사업과 읍면동 사업은 금전적 제재, 지원중단 순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은 금전적 제재(75.0%)와 기타(25.0%)임. 민간사업은 행정처분이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취득자격별로 수급자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금전적 제재가 90.7%, 지원중단은 65.1% 순임. 수급자격이 반영된 사업은 금전적 제재가 72.7%, 지원중단이 54.5%임.
- 시스템활용여부별 금전적 제재는 시스템미활용(수기관리)은 91.7%, 별도 자체 시스템 사업은 86.2%, 사회정보시스템활용 사업은 84.6% 순임.

〈표 5-6〉 근거법령에 제시된 대응 조치(다중응답)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행정처분	벌금, 징역 등 형벌	명단공표	기타	계
전체		34 (63.0)	47 (87.0)	7 (13.0)	4 (7.4)	2 (3.7)	6 (11.1)	54 (100.0)
사업 유형	현금	21 (63.6)	27 (81.8)	3 (9.1)	1 (3.0)	1 (3.0)	4 (12.1)	33 (100.0)
	지역화폐	3 (50.0)	5 (83.3)	0 (0.0)	0 (0.0)	0 (0.0)	1 (16.7)	6 (100.0)
	바우처	6 (66.7)	9 (100.0)	3 (33.3)	2 (22.2)	0 (0.0)	0 (0.0)	9 (100.0)
	기타	4 (66.7)	6 (100.0)	1 (16.7)	1 (16.7)	1 (16.7)	1 (16.7)	6 (100.0)
사업 주체	시도 본청	21 (65.6)	26 (81.3)	3 (9.4)	1 (3.1)	1 (3.1)	3 (9.4)	32 (100.0)
	시도-시군구 매칭	12 (60.0)	19 (95.0)	3 (15.0)	2 (10.0)	1 (5.0)	3 (15.0)	20 (100.0)
	시군구	1 (50.0)	2 (10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지급 기관	시도	9 (100.0)	9 (100.0)	0 (0.0)	0 (0.0)	0 (0.0)	0 (0.0)	9 (100.0)
	시군구	21 (65.6)	28 (87.5)	5 (15.6)	4 (12.5)	2 (6.3)	4 (12.5)	32 (100.0)
	읍면동	4 (57.1)	6 (85.7)	0 (0.0)	0 (0.0)	0 (0.0)	1 (14.3)	7 (100.0)
	공공기관	0 (0.0)	3 (75.0)	0 (0.0)	0 (0.0)	0 (0.0)	1 (25.0)	4 (100.0)
	민간	0 (0.0)	1 (5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취득 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28 (65.1)	39 (90.7)	6 (14.0)	4 (9.3)	2 (4.7)	5 (11.6)	43 (100.0)
	수급자 반영	6 (54.5)	8 (72.7)	1 (9.1)	0 (0.0)	0 (0.0)	1 (9.1)	11 (100.0)
시스템 활용 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20 (69.0)	25 (86.2)	4 (13.8)	4 (13.8)	2 (6.9)	3 (10.3)	29 (100.0)
	시스템 미활용 (수기관리)	6 (50.0)	11 (91.7)	0 (0.0)	0 (0.0)	0 (0.0)	2 (16.7)	12 (100.0)
	사회정보시스템 활용	8 (61.5)	11 (84.6)	3 (23.1)	0 (0.0)	0 (0.0)	1 (7.7)	13 (100.0)

주: 무응답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나. 관련 지침 유무

- 관련 지침(사업 안내, 매뉴얼 등 포함)에 부정수급 관리 근거가 있는 사업 현황 분석함. 무응답을 제외한 99개 사업 중 64개(64.6%) 사업이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개(35.4%)의 사업에는 부정수급 관련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 관련 지침이 있는 경우, 사업유형별로 바우처(80.0%), 지역화폐(77.8%), 현금(63.2%), 기타(50.0%)순임.
- 사업주체별로 시도-시군구매칭(69.0%), 시도 본청(63.6%), 시군구(50.5%)순임.
- 지급기관별로는 읍면동(100.0%), 민간(83.3%), 시군구(66.7%), 시도(56.3%), 공공기관(41.2%)순임.
- 취득자격별로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은 63.6%, 수급자격을 반영한 사업은 68.2%임.
- 시스템 활용여부별로는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69.6%,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64.7%, 별도 자체 시스템을 가진 사업은 62.7%임.

〈표 5-7〉 부정수급 관리 관련 지침 유무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64 (64.6)	35 (35.4)	99 (100.0)
사업유형	현금	43 (63.2)	25 (36.8)	68 (100.0)
	지역화폐	7 (77.8)	2 (22.2)	9 (100.0)
	바우처	8 (80.0)	2 (20.0)	10 (100.0)
	기타	6 (50.0)	6 (50.0)	12 (100.0)
사업주체	시도 본청	42 (63.6)	24 (36.4)	66 (100.0)
	시도-시군구 매칭	20 (69.0)	9 (31.0)	29 (100.0)
	시군구	2 (50.0)	2 (50.0)	4 (100.0)
지급기관	시도	9 (56.3)	7 (43.8)	16 (100.0)
	시군구	34 (66.7)	17 (33.3)	51 (100.0)
	읍면동	9 (100.0)	0 (0.0)	9 (100.0)
	공공기관	7 (41.2)	10 (58.8)	17 (100.0)
	민간	5 (83.3)	1 (16.7)	6 (100.0)
취득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49 (63.6)	28 (36.4)	77 (100.0)
	수급자 반영	15 (68.2)	7 (31.8)	22 (100.0)
시스템활용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37 (62.7)	22 (37.3)	59 (100.0)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11 (64.7)	6 (35.3)	17 (100.0)
	사회정보시스템활용	16 (69.6)	7 (30.4)	23 (100.0)

주: 무응답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4.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가.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 무응답을 제외한 99개 사업 중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은 30개(30.3%), 운영하지 않는 사업은 69개(69.7%)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은 바우처 6개(60.0%), 기타 5개(41.7%), 현금 18개(26.5%) 지역화폐 1개(11.1%)순임.
- 사업주체 중 전산시스템 운영비율은 시군구가 2개(50.0%), 시도-시군구매칭이 11개(37.9%), 시도본청이 11개(25.8%)순임.
- 지급기관 중 읍면동이 5개(55.6%)로 사업의 절반 정도가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시군구 20개(39.2%), 민간 2개(33.3%), 시도 3개(18.8%)순임. 공공기관에서 전산시스템 운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취득자격별로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은 26.0%, 수급자격을 반영한 사업은 45.5%임.
- 시스템 활용여부별로는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39.1%, 별도 자체 시스템을 가진 사업은 30.5%,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17.6%임.

〈표 5-8〉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유무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30 (30.3)	69 (69.7)	99 (100.0)
사업유형	현금	18 (26.5)	50 (73.5)	68 (100.0)
	지역화폐	1 (11.1)	8 (88.9)	9 (100.0)
	바우처	6 (60.0)	4 (40.0)	10 (100.0)
	기타	5 (41.7)	7 (58.3)	12 (100.0)
사업주체	시도 본청	17 (25.8)	49 (74.2)	66 (100.0)
	시도-시군구 매칭	11 (37.9)	18 (62.1)	29 (100.0)
	시군구	2 (50.0)	2 (50.0)	4 (100.0)
지급기관	시도	3 (18.8)	13 (81.3)	16 (100.0)
	시군구	20 (39.2)	31 (60.8)	51 (100.0)
	읍면동	5 (55.6)	4 (44.4)	9 (100.0)
	공공기관	0 (0.0)	17 (100.0)	17 (100.0)
	민간	2 (33.3)	4 (66.7)	6 (100.0)
취득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20 (26.0)	57 (74.0)	77 (100.0)
	수급자 반영	10 (45.5)	12 (54.5)	22 (100.0)
시스템활용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18 (30.5)	41 (69.5)	59 (100.0)
	시스템 미활용 (수기관리)	3 (17.6)	14 (82.4)	17 (100.0)
	사회정보시스템활용	9 (39.1)	14 (60.9)	23 (100.0)

주: 무응답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나. 부정수급 관리 신고체계 운영 여부

-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를 운영하는 사업은 44개(44.4%), 운영하지 않는 사업은 55개(55.6%)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신고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은 바우처 7개(70.0%), 기타 6개(50.0%), 지역화폐 4개(44.4%), 현금 27개(39.7%) 순임.
- 사업주체별로는 시군구사업은 100%(4개)로 신고체계를 운영하였고 시도-시군구매칭은 15개(51.7%)로 절반이상이 운영하고, 시도본청은 25개(37.9%)로 나타남.
- 지급기관 중 시군구 56.9%(29개), 읍면동이 55.6%(5개), 민간50.0%(3개)로 사업의 절반 정도가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시도가 37.5%, 공공기관이 5.9%로 신고체계를 가짐
- 취득자격별로는 수급자격을 반영한 사업은 63.6%가 신고체계를 운영하였고,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은 39.0%가 운영함
- 시스템 활용여부별로는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56.5%,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56.5%, 별도 자체 시스템을 가진 사업은 37.3%가 사용함.

〈표 5-9〉 부정수급 관리 신고체계 운영 유무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44 (44.4)	55 (55.6)	99 (100.0)
사업유형	현금	27 (39.7)	41 (60.3)	68 (100.0)
	지역화폐	4 (44.4)	5 (55.6)	9 (100.0)
	바우처	7 (70.0)	3 (30.0)	10 (100.0)
	기타	6 (50.0)	6 (50.0)	12 (100.0)
사업주체	시도 본청	25 (37.9)	41 (62.1)	66 (100.0)
	시도-시군구 매칭	15 (51.7)	14 (48.3)	29 (100.0)
	시군구	4 (100.0)	0 (0.0)	4 (100.0)
지급기관	시도	6 (37.5)	10 (62.5)	16 (100.0)
	시군구	29 (56.9)	22 (43.1)	51 (100.0)
	읍면동	5 (55.6)	4 (44.4)	9 (100.0)
	공공기관	1 (5.9)	16 (94.1)	17 (100.0)
	민간	3 (50.0)	3 (50.0)	6 (100.0)
취득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30 (39.0)	47 (61.0)	77 (100.0)
	수급자 반영	14 (63.6)	8 (36.4)	22 (100.0)
시스템활용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22 (37.3)	37 (62.7)	59 (100.0)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9 (52.9)	8 (47.1)	17 (100.0)
	사회정보시스템활용	13 (56.5)	10 (43.5)	23 (100.0)

주: 무응답 1건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제3절 부정수급 규모

1. 부정수급 파악 여부

- 전체 100개 사업 중 60개(60.0%) 사업에서 부정수급(오류 수급 포함) 현황을 파악(기본조사의 ‘부정수급 규모’ 현황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0개 사업(40.0%)에서는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음.
- 기본조사에서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다고 사업은 49개로 응답하였으나, 부정수급 파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 중 11개 사업에서 부정수급 규모 현황을 응답함에 따라 총 60개 사업에서 부정수급을 분석대상으로 함.
- 사업유형별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는 사업은 바우처 10개(90.9%), 현금 39개(57.4%), 지역화폐 5개(55.6%), 기타 6개(50.0%) 순임.
- 사업주체별로는 시도-시군구 매칭이 23개(76.7%), 시군구사업이 3개(75.0%)이고, 시도본청이 34개(51.5%)순임.
- 지급기관별로는 읍면동이 8개(8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시군구 35개(67.3%), 시도는 8개(50.0%), 민간 3개(50.0%)로 사업의 절반 정도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의 6개(35.3%)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함.
- 취득자격별로는 수급자격을 반영한 사업은 17개(77.3%)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였고,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은 43개(55.1%)가 파악함.
- 시스템 활용여부별로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12개(70.6%),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16개(66.7%), 별도 자체 시스템을 가진 사업은 32개 (54.2%)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함.

〈표 5-10〉 부정수급 규모 파악 여부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파악 ¹⁾	미파악	계
전체		60 (60.0)	40 (40.0)	100 (100.0)
사업유형	현금	39 (57.4)	29 (42.6)	68 (100.0)
	지역화폐	5 (55.6)	4 (44.4)	9 (100.0)
	바우처	10 (90.9)	1 (9.1)	11 (100.0)
	기타	6 (50.0)	6 (50.0)	12 (100.0)
사업주체	시도 본청	34 (51.5)	32 (48.5)	66 (100.0)
	시도-시군구 매칭	23 (76.7)	7 (23.3)	30 (100.0)
	시군구	3 (75.0)	1 (25.0)	4 (100.0)
지급기관	시도	8 (50.0)	8 (50.0)	16 (100.0)
	시군구	35 (67.3)	17 (32.7)	52 (100.0)
	읍면동	8 (88.9)	1 (11.1)	9 (100.0)
	공공기관	6 (35.3)	11 (64.7)	17 (100.0)
	민간	3 (50.0)	3 (50.0)	6 (100.0)
취득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43 (55.1)	35 (44.9)	78 (100.0)
	수급자 반영	17 (77.3)	5 (22.7)	22 (100.0)
시스템활용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32 (54.2)	27 (45.8)	59 (100.0)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12 (70.6)	5 (29.4)	17 (100.0)
	사회정보시스템활용	16 (66.7)	8 (33.3)	24 (100.0)

주: 기본조사에서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은 49개로 응답하였으나, 부정수급 미파악 사업 중 11개 사업에서 부정수급 현황을 응답함에 따라 총 60개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2. 부정수급 파악 방법(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는 60개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파악 방법을 분석함.

○ 파악방법으로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가 45.8%로 가장 높고,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37.3%), ‘지방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통보’(33.9%), ‘기타(지자체 관리, 시스템 교차검증 등)(16.9%)’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신고’(11.9%), ‘감사원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6.8%), ‘경찰수사결과 통보’(3.4%)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로는 현금사업은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43.6%), ‘지방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통보’(30.8%), 지역화폐는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가 80.0%임. 바우처는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66.7%),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55.6%), 기타는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66.7%)임.
- 사업주체별로는 시도본청은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44.1%), 시도-시군구매청사업과 시군구사업은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가 각각 54.5%, 66.7%로 가장 높음
- 지급기관별로는 시도와 시군구는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가 각각 50.0%, 52.9%로 가장 높았고, 읍면동과 공공기관은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가 각각 62.5%, 33.3%로 가장 높고, 민간기관은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와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가 66.7%로 높게 나타남.
- 취득자격별 부정수급파악은 수급자 반영한 사업과 반영하지 않은 사업 모두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가 가장 높았고 각각 47.6%, 41.2%인 것으로 나타남.
- 시스템 활용여부별로는 별도 자체 시스템을 가진 사업은 지방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통보’(46.9%),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37.5%)가 높았고,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66.7%) 월등히 높음.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통보’와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가 53.3%로 비율이 높음.

〈표 5-11〉 부정수급 파악 방법(다중응답)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감사원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 통보	경찰수사 결과 통보	지방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통보	국민권익 위원회 대국민 신고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	기타	계
전체		4 (6.8)	27 (45.8)	2 (3.4)	20 (33.9)	7 (11.9)	22 (37.3)	10 (16.9)	59 (100.0)
사업 유형	현금	3 (7.7)	17 (43.6)	0 (0.0)	12 (30.8)	4 (10.3)	10 (25.6)	9 (23.1)	39 (100.0)
	지역화폐	1 (20.0)	1 (20.0)	1 (20.0)	1 (20.0)	1 (20.0)	4 (80.0)	1 (20.0)	5 (100.0)
	바우처	0 (0.0)	5 (55.6)	0 (0.0)	4 (44.4)	1 (11.1)	6 (66.7)	0 (0.0)	9 (100.0)
	기타	0 (0.0)	4 (66.7)	1 (16.7)	3 (50.0)	1 (16.7)	2 (33.3)	0 (0.0)	6 (100.0)
사업 주체	시도 본청	2 (5.9)	15 (44.1)	1 (2.9)	12 (35.3)	5 (14.7)	8 (23.5)	8 (23.5)	34 (100.0)
	시도-시군구 매칭	1 (4.5)	11 (50.0)	1 (4.5)	8 (36.4)	1 (4.5)	12 (54.5)	2 (9.1)	22 (100.0)
	시군구	1 (33.3)	1 (33.3)	0 (0.0)	0 (0.0)	1 (33.3)	2 (66.7)	0 (0.0)	3 (100.0)
지급 기관	시도	0 (0.0)	4 (50.0)	0 (0.0)	3 (37.5)	0 (0.0)	1 (12.5)	2 (25.0)	8 (100.0)
	시군구	1 (2.9)	18 (52.9)	1 (2.9)	12 (35.3)	4 (11.8)	12 (35.3)	6 (17.6)	34 (100.0)
	읍면동	1 (12.5)	2 (25.0)	1 (12.5)	3 (37.5)	2 (25.0)	5 (62.5)	1 (12.5)	8 (100.0)
	공공기관	1 (16.7)	1 (16.7)	0 (0.0)	1 (16.7)	0 (0.0)	2 (33.3)	1 (16.7)	6 (100.0)
	민간	1 (33.3)	2 (66.7)	0 (0.0)	1 (33.3)	1 (33.3)	2 (66.7)	0 (0.0)	3 (100.0)
취득 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3 (7.1)	20 (47.6)	2 (4.8)	15 (35.7)	4 (9.5)	17 (40.5)	6 (14.3)	42 (100.0)
	수급자 반영	1 (5.9)	7 (41.2)	0 (0.0)	5 (29.4)	3 (17.6)	5 (29.4)	4 (23.5)	17 (100.0)
시스템 활용 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3 (9.4)	11 (34.4)	2 (6.3)	15 (46.9)	4 (12.5)	12 (37.5)	4 (12.5)	32 (100.0)
	시스템 미활용 (수기관리)	0 (0.0)	8 (66.7)	0 (0.0)	1 (8.3)	0 (0.0)	2 (16.7)	3 (25.0)	12 (100.0)
	사회정보시스템 활용	1 (6.7)	8 (53.3)	0 (0.0)	4 (26.7)	3 (20.0)	8 (53.3)	3 (20.0)	15 (100.0)

주: 무응답 을 제외하고, 2개 이상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총 92건을 분석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3.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의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0개 사업의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를 분석함.

○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 ‘사업 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이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기타사항으로는 ‘실질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부정수급 규모 미파악 사유로는 현금사업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89.7%), ‘집행기관 소관사항’(6.7%)이거나 또는 ‘기타’(3.4%)의 사유로 파악됨. 지역화폐, 바우처 사업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100.0%)이라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응답함.
- 사업주체별로는 시도본청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아서(90.6%), ‘집행기관 소관사항’(6.3%)이거나 또는 ‘기타’(3.1%)였고, 시도-시군구매청과 시군구 사업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아서’가 100%인 것으로 나타남.
- 지급기관이 시도, 읍면동, 민간인 경우, 부정수급 미파악사유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아서(100.0%)인 것으로 응답함. 공공기관 사업에서 기타 사유로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은 비율이 18.2%로 나타남.
- 취득자격별로 살펴보면,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은 91.4%, 수급자격을 반영한 사업은 100.0%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을 미파악 사유로 응답함.
- 시스템 활용여부별로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를 제외하면 수기관리 사업은 ‘집행기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20.0%),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기타 사유’(12.5%)로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 5-12〉 부정수급 미파악 사유(다중응답)

(단위: 사업 수, (괄호) %)

구분		사업 성격상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	집행기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계
전체		37 (92.5)	2 (5.0)	2 (5.0)	40 (100.0)
사업유형	현금	26 (89.7)	2 (6.9)	1 (3.4)	29 (100.0)
	지역화폐	4 (100.0)	0 (0.0)	0 (0.0)	4 (100.0)
	바우처	1 (100.0)	0 (0.0)	0 (0.0)	1 (100.0)
	기타	6 (100.0)	0 (0.0)	1 (16.7)	6 (100.0)
사업주체	시도 본청	29 (90.6)	2 (6.3)	1 (3.1)	32 (100.0)
	시도-시군구 매칭	7 (100.0)	0 (0.0)	1 (14.3)	7 (100.0)
	시군구	1 (100.0)	0 (0.0)	0 (0.0)	1 (100.0)
지급기관	시도	8 (100.0)	0 (0.0)	0 (0.0)	8 (100.0)
	시군구	16 (94.1)	1 (5.9)	0 (0.0)	17 (100.0)
	읍면동	1 (100.0)	0 (0.0)	0 (0.0)	1 (100.0)
	공공기관	9 (81.8)	1 (9.1)	2 (18.2)	11 (100.0)
	민간	3 (100.0)	0 (0.0)	0 (0.0)	3 (100.0)
취득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32 (91.4)	2 (5.7)	2 (5.7)	35 (100.0)
	수급자 반영	5 (100.0)	0 (0.0)	0 (0.0)	5 (100.0)
시스템활용여부	별도 자체시스템 활용	26 (96.3)	1 (3.7)	1 (3.7)	27 (100.0)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4 (80.0)	1 (20.0)	0 (0.0)	5 (100.0)
	사회정보시스템 활용	7 (87.5)	0 (0.0)	1 (12.5)	8 (100.0)

주: 2개 이상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총 41건을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4.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현황

가. 환수 현황

- 기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환수결정액과 환수실적액을 집계함.
 - 환수결정액은 지급된 급여에 대해 보장기관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의미 하며, 기본조사에서는 각 급여별로 2022년(1년 동안)에 발생한 환수결정액의 합계를 조사하였음.
 - 기본조사에서 환수실적액은 각 급여별로 2022년(1년 동안)에 보장기관이 실제 환수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환수실적액은 2022년 환수결정액은 물론 그 이전에 환수가 결정되었다가 2022년에 실제로 환수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조사)¹⁰⁾
- 2022년 기준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 사업(60개) 중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제출한 사업은 41개임(전체 시범사업 대비 41%, 부정수급 파악 규모 대비 68.3%). 환수가 발생한 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로는 2016~2020년 시작한 사업이 22개(53.7%)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2010년 이전 사업이 9개(22.0%), 2011~2015년 사업이 7개(17.1%), 2021년 이후 사업이 3개(7.3%)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으로는 현금사업이 29개(70.7%)로 가장 많았고, 바우처는 6개(14.6%), 지역화폐가 4개(9.8%), 기타가 2개(4.9%)순으로 나타남.
 - 사업주체는 시도본청이 26개(63.4%)로 가장 많았고, 시도-시군구 매칭 사업이 14개(34.1%), 시군구 사업이 1개(2.4%)로 나타남.
 - 지급기관은 시군구가 25개(61.0%), 읍면동이 6개(14.6%), 시도가 5(12.2%), 공공기관이 3개(7.3%), 민간이 2개(4.9%)로 대부분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10) 환수실적액을 '22년 환수결정액만을 대상으로 파악할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과 환수 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환수실적 각 건별로 환수결정 연도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업들과 조사기간과 조사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2년에 발생한 환수실적을 모두 조사하였음.

- 사업의 취득자격은 수급자를 고려한 사업이 10개(24.4%)이고, 수급자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31개(75.6%)인 것으로 나타남.
- 시스템 활용여부를 살펴보면, 별도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23개(56.1%)이고,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사업은 10개(24.4%)인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8개(19.5%)인 것으로 나타남.
- 생애주기별로는 전생애 사업이 21개(51.2%), 영유아 사업 8개(19.5%), 노년 사업 4개(9.8%), 아동, 청년 사업 각각 3개(7.3%), 청소년 사업 2개(4.9%)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3〉 부정수급 규모 파악을 위한 기준변수

(단위: 개, %)

분류	구분	빈도	비율
전체		41	100.0
연도	~ 2010년	9	22.0
	2011~2015년	7	17.1
	2016~2020년	22	53.7
	2021년~	3	7.3
사업유형	현금	29	70.7
	지역화폐	4	9.8
	바우처	6	14.6
	기타	2	4.9
사업주체	시도 본청	26	63.4
	시도-시군구 매칭	14	34.1
	시군구	1	2.4
지급기관	시도	5	12.2
	시군구	25	61.0
	읍면동	6	14.6
	공공기관	3	7.3
	민간	2	4.9
취득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31	75.6
	수급자 반영	10	24.4
시스템활용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23	56.1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10	24.4
	사회정보시스템활용	8	19.5

분류	구분	빈도	비율
생애주기	전생애	21	51.2
	영유아	8	19.5
	아동	3	7.3
	청소년	2	4.9
	청년	3	7.3
	중장년	0	0.0
	노년	4	9.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규모

○ 환수규모가 파악된 개 사업을 기준으로 환수결정액 규모는 3억원으로 예산집행액 총액(약 10,371억 원) 대비 약 0.035%로 나타남.

- 세부 기준변수별 금액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이 2016~2020년(약 2억 원), 사업유형이 현금인 경우(약 2억 9천만 원), 사업주체가 시도본청인 경우(약 1억 8천만 원), 지급기관이 시군구인 경우(약 2억 원), 수급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인 경우(약 2억 8천만 원), 수기관리 사업인 경우(약 1억 2천만 원), 생애주기가 전생애(약 2억 3천만 원)인 경우, 환수결정액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음.
- 세부 기준변수별 예산집행액 대비로 보면, 사업시행이 2010년 이전(0.064%), 사업유형이 현금인 경우(0.048%), 사업주체가 시도본청인 경우(0.046%), 지급기관이 민간인 경우(0.154%), 수급자 반영한 사업인 경우(0.088%),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0.067%), 생애주기가 전생애(0.057%)인 경우, 환수결정액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음.

○ 환수실적액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예산집행액 총액 대비 약 0.027%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 기준변수별로 보면, 금액 및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수결정액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5-14〉 사회보장급여 환수 규모:41개

(단위: 백만원,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		환수실적	
			금액 (B)	(B/A)*100	금액 (C)	(C/A)*100
	전체	1,037,130.1	360.8	0.035	284.4	0.027
연도	~ 2010년	139,757.4	89.6	0.064	84.0	0.060
	2011~2015년	118,970.9	31.2	0.026	19.1	0.016
	2016~2020년	602,101.7	204.1	0.034	145.8	0.024
	2021년~	176,300.1	35.8	0.020	35.5	0.020
사업 유형	현금	611,946.7	292.1	0.048	217.5	0.036
	지역화폐	180,427.9	52.6	0.029	52.6	0.029
	바우처	182,469.1	15.7	0.009	13.9	0.008
	기타	62,286.4	0.4	0.001	0.4	0.001
사업 주체	시도 분청	411,658.8	189.6	0.046	155.6	0.038
	시도-시군구 매칭	614,372.1	166.3	0.027	124.4	0.020
	시군구	11,099.2	4.9	0.045	4.4	0.040
지급 기관	시도	101,056.6	15.1	0.015	12.3	0.012
	시군구	462,617.8	206.7	0.045	173.0	0.037
	읍면동	383,961.4	125.0	0.033	88.7	0.023
	공공기관	81,804.2	2.2	0.003	2.2	0.003
	민간	7,690.1	11.9	0.154	8.2	0.107
취득 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946,593.2	281.4	0.030	216.8	0.023
	수급자 반영	90,536.9	79.4	0.088	67.6	0.075
시스템 활용 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541,701.6	115.6	0.021	93.2	0.017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189,529.9	127.4	0.067	125.1	0.066
	사회정보시스템활용	305,898.6	117.8	0.038	66.1	0.022
생애 주기	전생애	408,584.1	232.2	0.057	204.0	0.050
	영유아	406,029.5	85.5	0.021	47.8	0.012
	아동	26,495.5	5.7	0.021	2.3	0.009
	청소년	43,874.5	0.3	0.001	0.3	0.001
	청년	117,487.7	22.3	0.019	15.8	0.013
	중장년					
	노년	34,658.8	14.7	0.043	14.0	0.04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환수규모가 파악된 41개 사업을 기준으로 부정수급 규모는 7천5백만 원으로 예산집행액 총액(약 10,371억 원) 대비 약 0.007%로 나타남.

- 세부 기준변수별 금액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이 2016~2020년(약 5천만 원), 사업유형이 현금인 경우(약 6천 8백만 원), 사업주체가 시도본청인 경우(약 5천만 원), 지급기관이 시군구인 경우(약 7천 5백만 원), 수급자 반영한 사업인 경우(약 5천만 원), 별도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약 5천만 원), 생애주기가 전생애(약 7천 5백만 원)인 경우, 부정수급액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음.
- 세부 기준변수별 환수결정액 대비로 보면, 사업시행이 2016~2020년 (24.4%), 사업유형이 바우처인 경우(46.6%), 사업주체가 시도본청인 경우 (26.3%), 지급기관이 시군구인 경우(36.6%), 수급자 반영한 사업인 경우 (62.8%), 별도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43.1%), 생애주기가 전생애(32.6%)인 경우, 부정수급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음.

〈표 5-15〉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규모: 41개 사업 대상

(단위: 백만원,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B)	부정수급(C)	(C/B)*100	(C/A)*100
연도	전체	1,037,130.1	360.8	75.7	21.0	0.007
	~ 2010년	139,757.4	89.6	18.6	20.7	0.013
	2011~2015년	118,970.9	31.2	7.3	23.4	0.006
	2016~2020년	602,101.7	204.1	49.9	24.4	0.008
	2021년~	176,300.1	35.8	-	-	-
사업 유형	현금	611,946.7	292.1	68.4	23.4	0.011
	지역화폐	180,427.9	52.6	-	-	-
	바우처	182,469.1	15.7	7.3	46.6	0.004
	기타	62,286.4	0.4	-	-	-
사업 주체	시도 본청	411,658.8	189.6	49.9	26.3	0.012
	시도-시군구 매칭	614,372.1	166.3	25.9	15.6	0.004
	시군구	11,099.2	4.9	-	-	-
지급 기관	시도	101,056.6	15.1	-	-	-
	시군구	462,617.8	206.7	75.7	36.6	0.016
	읍면동	383,961.4	125.0	-	-	-
	공공기관	81,804.2	2.2	-	-	-
	민간	7,690.1	11.9	-	-	-

분류	구분	예산(A)	환수결정(B)	부정수급(C)	(C/B)*100	(C/A)*100
취득 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946,593.2	281.4	25.9	9.2	0.003
	수급자 반영	90,536.9	79.4	49.9	62.8	0.055
시스템 활용 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541,701.6	115.6	49.9	43.1	0.009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189,529.9	127.4	-	-	-
	사회정보시스템활용	305,898.6	117.8	25.9	22.0	0.008
생애 주기	전생애	408,584.1	232.2	75.7	32.6	0.019
	영유아	406,029.5	85.5	-	-	-
	아동	26,495.5	5.7	-	-	-
	청소년	43,874.5	0.3	-	-	-
	청년	117,487.7	22.3	-	-	-
	중장년	-	-	-	-	-
	노년	34,658.8	14.7	-	-	-

주: 부정수급 금액은 고의성이 있으며, 환수결정 유형 중 수급자 '기망'과 공급자 '부패'를 기준으로 산출

□ 부정수급의 규모를 신고포상금 중 수급자 또는 행정 담당자의 고의(기망과 부패)로 인해 발생한 부문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파악함.

○ 부정수급을 가족간 거래, 공모, 목적 외 사용, 임의처리, 허위, 기타의 6개 유형별로 구분함.

- (가족간 거래) 가족등록 채용, 가족간 거래
-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 (임의처리) 무단담보·양도, 무단임대·인출, 임의사용
-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 (기타) 증빙미비, 중복처리, 업무착오, 관리미비 등

○ 다만, 가족간 거래, 임의처리에 관한 부정수급은 발생하지 않아 총 4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기술함.

□ 부정수급의 유형

○ 공모는 0.4백만 원, 목적외 사용은 4.4백만 원, 허위는 5.3백만 원, 기타가 6천 5백만 원으로 나타나, 주로 기타의 영역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2020년 사업중 기타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이 약 50백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사업유형별로 현금사업 중 기타유형의 부정수급액이 6천 5백만 원임.
- 사업주체별로 시도 본청의 사업중 기타유형의 부정수급액이 약 50백만원 임.
- 지급기관별로 보면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사업 중 기타유형의 부정수급액이 6천5백만 원임.
- 취득자격별로 보면, 수급자를 반영한 사업중 기타 유형이 약 50백만 원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함.
- 시스템 활용여부별로는 별도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 중 기타 유형의 부정수급액이 약 50백만 원정도 발생함.
- 생애주기별로는 전생애의 사업에서만 부정수급액이 발생하여 기타에서 6천 5백만 원 부정수급이 발생함.

〈표 5-16〉 지자체 부정수급 유형별 규모

(단위: 천원)

분류	구분	공모	목적외 사용	허위	기타
연도	전체	401	4,403	5,351	65,561
	~ 2010년	-	3,000	-	15,557
	2011~2015년	401	1,403	5,051	444
	2016~2020년	-	-	300	49,560
	2021년~	-	-	-	-
사업 유형	현금	-	3,000	300	65,117
	지역화폐	-	-	-	-
	바우처	401	1,403	5,051	444
	기타	-	-	-	-
사업 주체	시도 본청	-	-	300	49,560
	시도-시군구 매칭	401	4,403	5,051	16,001
	시군구	-	-	-	-
지급 기관	시도	-	-	-	-
	시군구	401	4,403	5,351	65,561
	읍면동	-	-	-	-
	공공기관	-	-	-	-
	민간	-	-	-	-

분류	구분	공모	목적외 사용	허위	기타
취득 자격	수급자 반영하지 않음	401	4,403	5,051	16,001
	수급자 반영	-	-	300	49,560
시스템 활용 여부	별도 자체시스템활용	-	-	300	49,560
	시스템 미활용(수기관리)	-	-	-	-
	사회정보시스템활용	401	4,403	5,051	16,001
생애 주기	전생애	401	4,403	5,351	65,561
	영유아	-	-	-	-
	아동	-	-	-	-
	청소년	-	-	-	-
	청년	-	-	-	-
	중장년	-	-	-	-
	노년	-	-	-	-

주: 부정수급 금액은 고의성이 있으며, 환수결정 유형 중 수급자 '기망'과 공급자 '부패'를 기준으로 산출



제6장

보장기관 심층분석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심층조사 주요 결과

제6장 보장기관 심층분석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심층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통과한 48개 사업의 보장기관 업무담당자 5,404명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후 조사표를 발송함.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표에 자기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심층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은 사회보장급여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조사 대상자는 사회보장기관에 소속된 개인을 대상으로 함.
- 조사에 걸린 기간은 총 2개월 임.

2. 응답자 특성

□ 심층 조사 대상 46개 사업의 보장기관 업무담당자 1,923명이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전체 응답자의 98.5%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1.5%임.
 - 정규직 공무원은 전체 응답자의 96.8%에 해당하며,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1.7%, 민간 인력은 약 1.5%(정규직 0.9%, 계약직 0.6%)로 나타남.
- 근무 경력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의 44.7%를 차지하며,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는 68.8%로 나타남
 - 민간 인력의 경우 5년 미만의 경력자가 86.2%인 것으로 나타나, 민간 인력의 경우 공무원 인력에 비해 경력과 관련한 숙련도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성별은 여성이 67.6%, 남성이 32.4%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대가 44.5%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40대(30.5%)인 것으로 나타남.

〈표 6-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923	100.0
공무원 여부	공무원	1,894	98.5
	비공무원	29	1.5
고용상태	정규직 공무원	1,862	96.8
	(무기)계약직 공무원	32	1.7
	정규직 민간인력	17	0.9
	계약직 민간인력	12	0.6
근무경력 (공무원)	3년 미만	446	23.5
	3~5년 미만	402	21.2
	5~10년 미만	456	24.1
	10~15년 미만	312	16.5
	15년 이상	278	14.7
근무경력 (비공무원)	3년 미만	15	51.7
	3~5년 미만	10	34.5
	5~10년 미만	2	6.9
	10~15년 미만	1	3.4
	15년 이상	1	3.4
성별	남	623	32.4
	여	1,300	67.6
연령대	20대	372	19.3
	30대	855	44.5
	40대	587	30.5
	50대	109	5.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사업 현황을 응답자 소속을 통해 살펴보면, 보장기관별로 전체 응답자의 92.0%는 지자체(군청 36.5%, 시청 30.7%, 구청 24.8%)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청은 4.4%, 고용센터, 보훈(지)방청 등 특별행정기관은 3.2%로 나타남.

-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본 심층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6-2〉 응답자 소속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923	100.0
보장기관	교육청	84	4.4
	지자체	시	591
		군	702
		구	476
	특별행정기관	62	3.2
	공공기관	8	0.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심층 조사에 응답한 46개 사업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인 사업이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국가보훈부와 고용노동부로 각각 8개인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시군구청 1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4개, 시도교육청 7개, 공공기관 6개, 기타 2개(민간 경상 보조 사업자, 부처 직접 관리)인 것으로 나타남.

- 여기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 업무를 해당 구역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들로, 국가 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부분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됨(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2020. 11. 인출; 임완섭 외, 2020 재인용).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임.
 - 공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경우며,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되며,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의미(국회예산정책처, 2019; 임완섭 외, 2020 재인용)¹¹⁾

○ 자산 기준 또는 진단 기준 등 수급 조건에 대한 기준을 통해 사업 현황을 분류해 보면, 자산 및 진단 기준이 없는 사업은 46개 사업 중 12개로, 자산 기준 및 진단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사업은 4개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은 21개였으며, 진단 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은 9개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상적 기준을 적용한 사업은 10개인 것으로 나타남.
 - 보상적 기준은 사회보장사업의 대상이 보훈대상자, 의사상자와 같이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희생하고 공헌한 집단, 경제적으로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회보험가입자, 사회적 편견과 부당한 폭력 등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 등인 경우에 해당됨(임완섭 외, 2020, p.103). 본 연구에서 보상적 기준은 주로 심층 조사 데이터 유형화에 사용함.

〈표 6-3〉 대상 사업의 유형별 현황

사회보장사업명	소관부처명	보장기관	자산 및 진단 기준	보상적 기준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고용노동부	시군구청	4.없음	2.비보상적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4.없음	2.비보상적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4.없음	2.비보상적
어린이집 지원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4.없음	2.비보상적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장애수당(기초)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3.자산및진단기준	2.비보상적
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3.자산및진단기준	2.비보상적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일반형 일자리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2.진단기준	2.비보상적
장제급여,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11) 보장기관 형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임완섭 외(2020, pp.54-55)을 참조하기 바람.

사회보장사업명	소관부처명	보장기관	자산 및 진단 기준	보상적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교육급여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민간경상 보조사업자	4.없음	2.비보상적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진단기준	2.비보상적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자산기준	2.비보상적
6.25자녀수당	국가보훈부	보훈지(방)청	4.없음	1.보상적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부	소속산하기관	2.진단기준	1.보상적
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	국가보훈부	소속산하기관	2.진단기준	1.보상적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소속산하기관	1.자산기준	1.보상적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부	보훈지(방)청	1.자산기준	1.보상적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보훈지(방)청	4.없음	1.보상적
보상금	국가보훈부	소속산하기관	2.진단기준	1.보상적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보훈지(방)청	4.없음	1.보상적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자산기준	2.비보상적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진단기준	1.보상적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없음	2.비보상적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없음	2.비보상적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진단기준	2.비보상적
진폐근로자보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진단기준	1.보상적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없음	2.비보상적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자산기준	2.비보상적
근로·자녀장려금	기획재정부	국세청 산하 세무서	1.자산기준	2.비보상적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1.자산기준	2.비보상적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금융위원회	부처 직접관리 (실제관리는 농수협 등)	1.자산기준	2.비보상적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2.진단기준	2.비보상적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3.자산및진단기준	2.비보상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자산기준	2.비보상적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3.자산및진단기준	2.비보상적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4.없음	2.비보상적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심층조사 주요 결과

1. 부서 및 사업 현황과 업무량

가. 구성원 수, 담당 사회보장사업 수, 월평균 신청자

□ 조사 대상 사업의 보장기관별 응답부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응답부서 평균 구성원 수는 25.2명이며, 관리자를 제외하면 20.5명임.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시의 경우 평균 구성원 수가 2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이 7.4명으로 가장 규모가 작았음.

○ 응답부서가 담당하는 사회보장사업 수는 평균 7.2개임.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평균 8.3개로 담당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중 ‘군지역’의 경우 8개로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같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군 지역’이 ‘구 지역’보다 담당하는 사회보장사업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은 1.5개로 담당하는 사업의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 사업의 월평균 신청자 수는 954명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조사 또는 진단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에서 신청자 수가 좀 더 많았으며, 자산 및 진단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신청자 수가 가장 적음,
 - 진단 기준과 자산 기준 둘 다 적용하지 않는 사업에서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지만, 자산 기준만 적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는 나지 않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중 군의 경우가 신청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같은 지자체라 하더라도 군이 시나 구에 비해 신청자 수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군의 경우 담당하는 사회보장사업 수는 많지만, 신청자 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음.

〈표 6-4〉 구성원 수, 담당 사회보장사업 수, 월평균 신청자

(단위: 명, 건)

구분		사례수	부서의 구성원 수(평균)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수 (평균)	해당사업 월평균 신청자 수	
			관리자 포함	관리자 제외			
전체		1,923	25.2	20.5	7.2	954.0	
자산 조사	적용	1,350	25.4	20.6	7.1	934.3	
	미적용	573	24.8	20.2	7.5	1,000.8	
진단적 기준	적용	354	23.6	19.1	9.7	667.0	
	미적용	1,569	25.6	20.8	6.7	1,018.7	
자산 및 진단기준	자산기준	1,124	25.6	20.8	6.6	1,005.7	
	진단기준	128	22.2	18.0	9.3	819.4	
	자산 및 진단기준	226	24.5	19.8	10.0	584.0	
	없음	445	25.5	20.9	7.0	1,051.7	
보장 기관	교육청		84	24.1	20.6	3.4	1,384.9
	지 자 체	시	591	26.0	21.1	7.2	1,077.7
		군	702	25.4	20.4	8.0	510.6
		구	476	25.8	21.1	6.9	1,265.7
	특별행정기관		62	16.5	12.5	8.3	1,141.5
	공공기관		8	7.4	6.3	1.5	6,432.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나.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은 전체 업무량의 약 19.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 기준만 적용하는 경우(19.7%) 진단적 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21.6%)보다 부정수급 관련 업무 투입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자산 및 진단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17.5%) 보다는 업무 투입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 분류에서는 특별행정기관이 26.5%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의 구(21.4%)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지자체의 군은 18%로 그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는 물론 전체 보장기관에서 구와 군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해당 사업 월평균 신청자 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자 규모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6-5〉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평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평균)
전체		1,923	19.6
선정 기준	자산기준		19.7
	진단기준		21.6
	자산 및 진단기준		17.5
	없음		19.7
	교육청		18.7
보장 기관	지 자 체	시	19.5
		군	18.0
		구	21.4
	특별행정기관		26.5
	공공기관		18.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2.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가.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1)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여부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보장기관의 감사부서에서도 관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로 나타남. 감사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5.3%이며, 감사부서가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0.1%로 나타남.

○ 해당 사업에 진단적 기준만 적용하면 50.8%로 나타났으며, 둘 다 적용되는 경우 48.2%로 나타남. 자산조사만 적용될 경우는 4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공공기관(75.0%)과 특별지방행정기관(67.7%)의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정부 대신 공공재(특정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감사부서는 해당 급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 이와 비교할 때 복지업무를 포괄한 광범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비해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관리가 더 용이함(임완섭 외, 2020).

- 교육청의 응답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41.7%), 지자체 중에서는 구의 응답 비중이 가장 낮았지만, 시와 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6-6〉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 관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정수급 관리함		부정수급 관리하지 않음		해당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23	858	(44.6)	871	(45.3)	194	(10.1)	
선정 기준	자산기준		1,124	473	(42.1)	539	(48.0)	112	(10.0)
	진단기준		128	65	(50.8)	48	(37.5)	15	(11.7)
	자산 및 진단기준		226	109	(48.2)	90	(39.8)	27	(11.9)
	없음		445	211	(47.4)	194	(43.6)	40	(9.0)
	교육청		84	35	(41.7)	25	(29.8)	24	(28.6)
보장 기관	지 자 체	시	591	259	(43.8)	276	(46.7)	56	(9.5)
		군	702	315	(44.9)	335	(47.7)	52	(7.4)
		구	476	201	(42.2)	227	(47.7)	48	(10.1)
	특별행정기관		62	42	(67.7)	6	(9.7)	14	(22.6)
	공공기관		8	6	(75.0)	2	(25.0)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감사부서에서 해당 사업 외의 다른 복지 및 사회 보장 분야 사업의 부정수급도 관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관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6%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81.3%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시(70.7%)와 구(66.1%) 등의 순서로 나타남. 한편 교육청은 55%로 해당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감사부서에서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관리한다는 응답 비율은 두 번째로 높고, 해당 사업 외의 부정수급을 관리한다는 응답 비율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부정수급 관리에서 감사부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자체의 경우 감사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관리한다는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다른 사업을 관리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7〉 감사부서에서 해당 사업 외의 다른 사회보장사업 관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함		관리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729	1,144	(66.2)	585	(33.8)
보장 기관	교육청		60	33	(55.0)	27	(45.0)
	지 자 체	시	535	378	(70.7)	157	(29.3)
		군	650	406	(62.5)	244	(37.5)
		구	428	283	(66.1)	145	(33.9)
	특별행정기관		48	39	(81.3)	9	(18.8)
	공공기관		8	5	(62.5)	3	(37.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2) 감사부서 구성원 수

□ 감사부서 평균 구성원 수는 8.5명, 감사부서 중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평균 구성원 수는 2.3명으로 조사됨.

○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 중 시와 구는 감사부서 평균 구성원 수가 각각 10.9명, 10.7명, 군은 4.7명으로 절반 수준임.

- 감사부서에서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평균 구성원 수는 시청과 구청은 각 2.7명이며, 군청은 1.7명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은 감사부서 평균 구성원 수가 6.5명으로 전체평균보다 낮았으나, 감사부서에서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평균 구성원 수는 4.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6-8〉 감사부서 구성원 수(평균)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감사부서 구성원 수(평균)	복지분야 부정수급 관리하는 구성원의 수(평균)
전체		1,726	8.5	2.3
보장 기관	교육청	60	12.4	2.1
	지 자 체	시	10.9	2.7
		군	4.7	1.7
		구	10.7	2.7
	특별행정기관	48	9.9	3.0
	공공기관	8	6.5	4.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나.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자체 운영 여부 및 자체 운영 신고·접수 운영 형태

□ 응답자가 속한 보장기관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약 38%가 있지만 약 62%는 없다고 응답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특별지방행정 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64.5%, 8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체 운영 신고·접수 체계의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유선전화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현장 창구 운영(39.7%), 이메일을 통한 신고 및 접수(21.6%), 온라인(11.4%) 순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71.4%), 유선전화의 경우는 교육청과 공공기관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메일 역시 공공기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현장 창구 운영의 경우 특별행정기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군구의 경우, 시와 구는 온라인과 유선전화의 응답 비율이 군보다 높았지만, 현장 창구 운영의 경우 군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9〉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 자체 운영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운영함		운영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23	728	(37.9)	1,195	(62.1)	
보장 기관	교육청		84	22	(26.2)	62	(73.8)
	지 자 체	시	591	224	(37.9)	367	(62.1)
		군	702	250	(35.6)	452	(64.4)
		구	476	185	(38.9)	291	(61.1)
	특별행정기관		62	40	(64.5)	22	(35.5)
	공공기관		8	7	(87.5)	1	(12.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6-10〉 자체 운영 신고/접수 운영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온라인		유선(전화)		이메일		현장 창구 운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28	83	(11.4)	586	(80.5)	157	(21.6)	289	(39.7)	
보장 기관	교육청	22	2	(9.1)	22	(100.0)	7	(31.8)	8	(36.4)	
	지 자 체	시	224	25	(11.2)	186	(83.0)	44	(19.6)	65	(29.0)
		군	250	22	(8.8)	198	(79.2)	56	(22.4)	108	(43.2)
		구	185	27	(14.6)	151	(81.6)	42	(22.7)	68	(36.8)
	특별행정기관	40	2	(5.0)	23	(57.5)	4	(10.0)	36	(90.0)	
	공공기관	7	5	(71.4)	6	(85.7)	4	(57.1)	4	(57.1)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다. 감사부서 외 부정수급 전담 조직 여부와 설치 형태

□ 보장기관 내에 감사부서를 제외한 부정수급 전담 조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4%가 자체적인 조직이 있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부서 외에 부정수급 전담 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50%로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자체의 경우 ‘구’가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행정기관 16.1%로 전체 응답 비율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담 조직과 사업 부서의 업무 분장과 유기적 협조가 필요함.

〈표 6-11〉 감사부서를 제외한 부정수급 전담 조직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정수급 전담 조직 있음		부정수급 전담 조직 없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23	258	(13.4)	1,665	(86.6)
보장기관	교육청	84	9	(10.7)	75	(89.3)
	지자체	시	591	73	518	(87.6)
		군	702	79	623	(88.7)
		구	476	83	393	(82.6)
	특별행정기관	62	10	(16.1)	52	(83.9)
	공공기관	8	4	(50.0)	4	(5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전담 조직의 설치 형태에 대해 사업 부서가 속한 국·실에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감사조직에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은 20.9%로 나타남. 한편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부서)로 설치된 경우는 16.3%로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감사조직에 설치하는 형태는 교육청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의 경우 감사조직에 설치하는 형태는 군에서 해당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부서)에 설치한다는 응답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12〉 부정수급 전담 조직 설치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감사조직에 설치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부서)로 설치		사업부서들이 속한 국·실에 설치		기타	
			빈도	비율	비율	빈도	비율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58	54	(20.9)	42	(16.3)	101	(39.1)	61	(23.6)
보장기관	교육청	9	4	(44.4)	2	(22.2)	3	(33.3)	0	(0.0)
	지자체	시	73	13	15	(20.5)	29	(39.7)	16	(21.9)
		군	79	25	8	(10.1)	27	(34.2)	19	(24.1)
		구	83	10	16	(19.3)	36	(43.4)	21	(25.3)
	특별행정기관	10	2	(20.0)	0	(0.0)	5	(50.0)	3	(30.0)
	공공기관	4	0	(0.0)	1	(25.0)	1	(25.0)	2	(5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해당 사업이 부정수급 관련 전담 조직의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는 72.9%로 나타남.

○ 자산 조사와 진단적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 및 진단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100% 전담 조직의 관리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의 경우 100% 전담 조직의 관리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경우 군이 시와 구보다 전담 조직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포함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각각 90.0%, 100%로 전담 조직의 관리 대상 사업에 포함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6-13〉 전담 조직에 해당 사업 포함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대상 사업		관리대상 사업 아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258	188	(72.9)	70	(27.1)
선정 기준	자산기준		147	102	(69.4)	45	(30.6)
	진단기준		22	15	(68.2)	7	(31.8)
	자산 및 진단기준		32	32	(100.0)	0	(0.0)
	없음		57	39	(68.4)	18	(31.6)
보장 기관	교육청		9	9	(100.0)	0	(0.0)
	지 자 체	시	73	51	(69.9)	22	(30.1)
		군	79	59	(74.7)	20	(25.3)
		구	83	56	(67.5)	27	(32.5)
	특별행정기관		10	9	(90.0)	1	(10.0)
	공공기관		4	4	(100.0)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전담 부서 부서원 수는 평균 5.4명으로 나타남. 보장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평균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행정기관은 1.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중에서는 구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이 3.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6-14〉 전담 부서 부서원(평균)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전담부서 부서원(평균)
전체		258	5.4
보장기관	교육청	9	3.8
	지자체	시	5.9
		군	3.7
		구	7.1
	특별행정기관	10	1.2
	공공기관	4	9.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3. 부정수급 관리 현황과 실적

가. 부정수급 관련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정기적 관리 여부 및 관리 방법

- 해당 사업 부정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은 59.4%로 나타남.
- 자산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이 진단적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과 두 기준 모두 적용하는 사업보다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관련 현황을 관리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부정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각각 82.3%, 87.5%로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지자체에서는 구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15〉 부정수급 관련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정기적 관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기적 관리함		정기적 관리 안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23	1,143	(59.4)	780	(40.6)
선정 기준	자산기준		1,124	685	(60.9)	439	(39.1)
	진단기준		128	74	(57.8)	54	(42.2)
	자산 및 진단기준		226	126	(55.8)	100	(44.2)
	없음		445	258	(58.0)	187	(42.0)
보장 기관	교육청		84	44	(52.4)	40	(47.6)
	지 자 체	시	591	337	(57.0)	254	(43.0)
		군	702	387	(55.1)	315	(44.9)
		구	476	317	(66.6)	159	(33.4)
	특별행정기관		62	51	(82.3)	11	(17.7)
	공공기관		8	7	(87.5)	1	(12.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현황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전산시스템 이용(45.1%), 전산시스템과 수기 관리를 병행(34.3%), 수기 관리(17.5%) 순으로 나타남.

○ 선정 기준 측면에서, 자산 및 진단 기준이 모두 적용된 사업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49.6%로 나타났으며, 전산시스템과 수기 관리를 병행하는 비중과 합치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이 약 83%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진단 기준만 적용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진단 기준만 적용하는 경우 전산시스템과 수기 관리를 병행하여 관리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음.

- 보장기관별로 공공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기 관리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 중 시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정수급 현황 관리 방법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표 6-16〉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관리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산시스템		수기관리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 병행		기타		
			빈도	비율	비율	빈도	비율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23	868	(45.1)	337	(17.5)	660	(34.3)	58	(3.0)	
선정 기준	자산 기준		1,124	499	(44.4)	206	(18.3)	377	(33.5)	42	(3.7)
	진단 기준		128	45	(35.2)	30	(23.4)	47	(36.7)	6	(4.7)
	자산 및 진단 기준		226	112	(49.6)	35	(15.5)	76	(33.6)	3	(1.3)
	없음		445	212	(47.6)	66	(14.8)	160	(36.0)	7	(1.6)
	교육청		84	21	(25.0)	21	(25.0)	33	(39.3)	9	(10.7)
보장 기관	지 자 체	시	591	262	(44.3)	124	(21.0)	190	(32.1)	15	(2.5)
		군	702	370	(52.7)	107	(15.2)	208	(29.6)	17	(2.4)
		구	476	183	(38.4)	80	(16.8)	197	(41.4)	16	(3.4)
	특별행정기관		62	26	(41.9)	4	(6.5)	31	(50.0)	1	(1.6)
	공공기관		8	6	(75.0)	1	(12.5)	1	(12.5)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나. 부정수급 인지(접수) 경로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접수 건수는 응답자 평균 16.1건으로 나타났는데,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정기조사로 인지하는 것이 8.4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연계(2.7건), 비정기조사(2.0건) 순으로 나타남.
- 선정 기준 측면에서는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정기조사를 통한 확인이 13.1건, 정보연계로 인한 확인이 3.6건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의 구와 시가 33.8건, 20.5건으로 나타나 다른 보장기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인지가 주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부정수급의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점검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현장점검으로 발생하는 인력과 시간 등 비용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정보연계 등의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6-17〉 부정수급 인지(접수) 경로

(단위: 명, 건)

구분		사례수	총계 (접수 건수)	제보 내부	제보 외부	감사	현장 점검	정기 조사	비정기 조사	정보 연계	타기관 조사 의뢰	기타
전체		1,922	16.1	0.4	0.5	0.1	0.2	8.4	2.0	2.7	0.7	1.1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123	23.1	0.5	0.7	0.1	0.2	13.1	3.0	3.6	0.8	1.1
	진단기준	128	3.8	0.2	0.1	0.2	0.1	0.8	0.1	2.3	0.0	0.0
	자산 및 진단기준	226	2.2	0.3	0.1	0.2	0.1	0.6	0.5	0.3	0.0	0.1
	없음	445	8.9	0.2	0.3	0.2	0.2	2.6	0.6	1.7	1.2	2.0
보장 기관	교육청	84	0.2	0.0	0.0	0.0	0.0	0.1	0.0	0.0	0.1	0.0
	지 자 체	시	591	20.5	0.5	0.7	0.2	0.2	11.8	2.9	4.1	0.1
		군	702	3.7	0.1	0.1	0.1	0.1	1.5	0.4	0.8	0.1
		구	475	33.8	0.8	0.9	0.1	0.3	17.0	3.7	4.5	4.2
	특별행정기관	62	2.0	0.1	0.0	0.2	0.1	0.1	0.1	1.1	0.0	0.1
	공공기관	8	1.1	0.1	1.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다.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

□ 심층 조사 대상 사업들의 2022년 1년 동안 이뤄진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환수 결정, 환수실적, 비금전적 조치 실적)을 살펴보았음.

○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정수급의 규모로 볼 수 있지만, 응답률이 낮으므로, 해석과 적용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을 통해 부정수급 수준과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부정수급을 고의적인 부문과 비고의적인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고의적인 부문은 ‘부정수급’으로 표기하였고 비고의적인 부문은 ‘오류 수급’으로 표기하였음.

1) 부정수급(고의적) : 환수 결정

□ 심층 조사 대상 사업들의 환수 결정 건수와 환수 결정 금액 규모는 응답자 1인당 평균 1.6건, 환수 결정 금액은 1,713백만 원임.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건수는 응답자 당 평균 1.6건이며, 전체 응답자의 합계 건수는 2,871건으로 나타남.

- 환수결정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정 기준 측면에서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합계 건수가 2,695건(응답자 당 2.5건)으로 전체 결정 건수의 대부분(약 94%)을 차지하고 있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구’의 경우 합계 건수는 2,120건(응답자 당 4.7건)으로, 이는 전체 결정 건수의 약 74%에 해당됨. 반면 지자체 ‘군’의 경우 합계 건수가 124건(응답자 당 0.2건)으로 ‘구’와는 큰 차이가 발생함.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은 응답자 당 평균 941.6천 원이며, 합계액은 1,713백만 원으로 나타남.

- 선정 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환수결정액의 합계액은 1,444백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환수 결정 금액의 약 84% 수준임.
 -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1,367.7천 원)가 가장 컸으며, 두 번째로는 진단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1,047.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구’의 환수결정 금액 합계액이 872,968천 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금액의 약 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지자체의 ‘시’로(601,539천 원) 나타남.
 - 평균 금액의 경우 공공기관이 4,051.4천 원으로 가장 컸으며, 두 번째는 지자체의 ‘구’(1,944.2천 원)로 나타남.
- ‘구’의 환수결정 금액과 건수가 많은 것은 앞서 월평균 신청자 수에서 제시되었듯이, 대상자 수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6-18〉 부정수급(고의적) 관련 조치 실적 : 환수 결정

(단위: 명, 건, 천원)

구분			환수결정(건)			환수결정(금액)		
			사례수(A)	합계(B)	평균(B/A)	사례수(A)	합계(B)	평균(B/A)
전체			1,824	2,871	1.6	1,820	1,713,707	941.6
선정 기준	자산기준		1,058	2,695	2.5	1,056	1,444,313	1,367.7
	진단기준		122	28	0.2	122	127,779	1,047.4
	자산 및 진단기준		209	29	0.1	209	6,645	31.8
	없음		435	119	0.3	433	134,970	311.7
보장 기관	교육청		64	0.0	0.0	64	0.0	0.0
	지 자 체	시	563	592	1.1	562	601,539	1,070.4
		군	678	124	0.2	678	96,817	142.8
		구	451	2,120	4.7	449	872,968	1,944.2
	특별행정기관		60	29	0.5	59	109,972	1,863.9
	공공기관		8	6	0.8	8	32,411	4,051.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위의 표에서 평균 값은 응답자별 평균으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응답 보장기관 한 개가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환수 결정 건수와 결정 금액의 평균값을 의미함. 즉 환수결정 건당 평균 금액과는 그 의미가 다름.

- 환수 결정 건당 평균 환수결정 금액은 597.9천 원으로 나타남¹²⁾. 보장기관 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5401.8천 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나타남.
- 지자체의 경우 구가 412천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앞의 표에서는 구가 지자체 중 응답자 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구의 경우 해당 보장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수결정 건수가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많고 환수결정 금액도 지자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만, 개별 건당 환수결정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12) 해당 값은 환수결정금액과 환수결정건수 모두 응답된 경우를 산출하였으므로 위 표에 나타난 환수결정금액을 환수결정건수로 나눈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

2) 부정수급(고의적) : 환수실적

□ 부정수급 규모를 환수실적 건수와 환수실적 금액의 평균과 합계액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실적 건수는 응답자 1인당 평균 1.3건이며, 합계 건수는 2,358건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정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합계 건수가 2,226건(응답자 당 평균 2.1건)으로, 전체 환수실적 건수의 대부분(약 94%)을 차지하고 있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구의 경우 합계 건수는 1,719건으로 전체 환수실적 건수의 약 73%에 해당되며, 응답자 당 평균 환수실적 건수도 3.8건으로 나타나, 다른 보장기관의 평균 환수실적 건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실적 금액은 응답자 당 평균 505.3천 원이며, 합계액은 918,620원으로 나타남. 환수실적금액의 평균값은 앞서 살펴본 환수결정 금액 평균값의 약 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 금액을 선정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환수실적 금액의 합계액은 740,640천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환수실적 금액의 약 81% 수준임.
-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701.4천 원으로 가장 컸으며, 두 번째는 진단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496.2천 원)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구의 환수실적 금액 합계액이 491,243천 원으로 가장 컸으며, 평균 금액에서는 약 1,097천 원으로 공공기관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평균 금액은 공공기관이 약 1,671천 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사례 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6-19〉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_환수실적_고의적

(단위: 명, 건, 천원)

구분			사례수	환수실적(건)		사례수	환수실적(금액)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1,821	2,358	1.3	1,818	918,620	505.3
선정 기준	자산기준		1,057	2,226	2.1	1,056	740,640	701.4
	진단기준		121	27	0.2	121	60,038	496.2
	자산 및 진단기준		209	20	0.1	209	4,685	22.4
	없음		434	85	0.2	432	113,257	262.2
보장 기관	교육청		64	0.0	0.0	64	0.0	0.0
	지 자 체	시	563	411	0.7	563	252,518	448.5
		군	676	194	0.3	676	100,217	148.3
		구	450	1,719	3.8	448	491,243	1,096.5
	특별행정기관		60	28	0.5	59	61,275	1,038.6
	공공기관		8	6	0.8	8	13,367	1,670.9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위의 표에서 평균 값은 응답자별 평균이므로, 환수 실적 건당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례 수보다 실적 건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건당 평균액이 응답자 당 평균액보다 더 높게 나타남. 전체 응답자를 살펴보면, 건당 평균 환수금액은 약 390천 원으로 나타남(응답자 당 평균은 약 505천 원임).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2,269천 원으로 가장 컸으며,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286천 원). 이는 앞서 살펴본 환수결정 금액과 유사한 양상으로 볼 수 있음.

3) 오류수급(비고의적) : 환수결정

□ 심층조사 대상 사업들의 오류 수급 규모를 환수결정 건수와 환수결정 금액 수준을 통해 살펴보면, 응답자 1인당 평균 8.2건이며, 환수결정금액은 응답자 1인당 평균 2,488천 원으로 나타남.

○ 오류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건수는 응답자 당 평균 8.2건이며, 합계건수는 14,973건으로 나타남.

- 환수결정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정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합계건수가 13,622건(응답자 당 평균 12.8건)으로 전체 결정건수의 대부분(약 91%)을 차지하고 있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구'의 경우 합계건수는 8,406건으로 전체 결정 건수의 약 56%에 해당되며, 평균 환수결정 건수도 18.6건으로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부정수급(고의적)의 환수결정 건수와 비교해 보면, 전체 환수결정건수는 오류수급이 부정수급에 비해 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오류수급의 경우에도 구의 환수결정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의 경우 전체 환수결정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정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환수결정 금액은 응답자 당 평균 2,488.5천 원이며, 합계액은 4,551,516천 원으로 나타남.

- 환수결정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정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두 기준 모두 적용되는 경우 환수결정액의 합계액은 81,339천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환수결정액의 합계액은 3,981,955천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서 살펴본 부정수급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의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자산 및 진단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 385.5천 원,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는 3,753천 원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구'의 환수결정 금액 합계액이 2,335,162천 원(평균 5,154.9천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 금액의 약 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앞서 살펴본 부정수급의 경우 '구'의 합계액과 평균이 가장 컸는데, 오류수급 역시 '구'의 합계액과 평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환수결정 금액을 부정수급(고의적)과 비교해 보면, 전체 환수결정 금액은 약 2.7배 정도 컸음. 한편, 부정수급에 비해 환수결정 건수가 약 5.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오류수급의 건당 규모가 부정수급보다 적음을 보여줌.

〈표 6-20〉 오류수급 관련 조치 실적, 환수결정, 비교의적

(단위: 명, 건, 천원)

구분			사례수	환수결정(건)		사례수	환수결정(금액)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1,830	14,973	8.2	1,829	4,551,516	2,488.5
선정 기준	자산기준		1,061	13,622	12.8	1,061	3,981,9550	3,753.0
	진단기준		122	60	0.5	122	83,827	687.1
	자산 및 진단기준		211	274	1.3	211	81,339	385.5
	없음		436	1,017	2.3	435	404,395	929.6
보장 기관	교육청		64	12	0.2	64	4,284	66.9
	지 자 체	시	563	4,616	8.2	563	1,372,817	2,438.4
		군	682	1,863	2.7	682	747,876	1,096.6
		구	453	8,406	18.6	453	2,335,162	5,154.9
	특별행정기관		60	76	1.3	59	91,377	1,548.8
	공공기관		8	0.0	0.0	8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4) 오류수급(비교의적) : 환수실적

□ 오류 수급의 환수실적 건수는 평균 6.4건이며, 환수 실적 금액은 1,712.5천 원으로 나타남.

○ 오류수급에 대한 환수실적 건수는 평균 6.4건이며, 합계 건수는 11,651건으로 나타남.

- 환수실적 건수를 선정 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합계 건수가 10,610건(응답자 당 평균 6.4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구의 경우 합계 건수는 6,526건으로 전체 실적 건수의 약 56%에 해당하며, 평균 환수실적 건수도 14.4건으로 다른 보장기관과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오류수급 환수실적 금액은 평균 1,712.5천 원, 합계액은 3,130,381천 원임.

-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정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환수실적 금액의 합계액은 2,705,478천 원(평균 2,549.9천 원)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오류수급 환수실적 금액의 약 86%를 차지하는 규모임.

- 앞서 살펴본 부정수급과 유사하게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에 환수실적의 규모가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나, 자산 및 진단 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보다 그 규모가 월등히 큼을 알 수 있음.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구’의 환수실적금액 합계액은 1,698,925천 원(평균 3,758.7천 원)으로, 합계 금액과 평균 모두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앞서 살펴본 부정수급(고의적)의 경우에 비해 환수실적 금액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특별행정기관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표 6-21〉 오류수급 관련 조치 실적_환수실적_비고의적

(단위: 명, 건, 천 원)

구분		사례수	환수실적(단위: 건)		사례수	환수실적(단위: 천원)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1,829	11,651.0	6.4	1,828	3,130,381.0	1,712.5	
선정 기준	자산기준	1,061	10,610.0	10.0	1,061	2,705,478.0	2,549.9	
	진단기준	121	58.0	0.5	121	72,434.0	598.6	
	자산 및 진단기준	211	240.0	1.1	211	62,143.0	294.5	
	없음	436	743.0	1.7	435	290,326.0	667.4	
보장 기관	교육청		64	10.0	0.2	64	4,284.0	66.9
	지 자 체	시	563	3,522.0	6.3	563	848,610.0	1,507.3
		군	682	1,521.0	2.2	682	502,760.0	737.2
		구	452	6,526.0	14.4	452	1,698,925.0	3,758.7
	특별행정기관		60	72.0	1.2	59	75,802.0	1,284.8
	공공기관		8	0.0	0.0	8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5) 기타 주요 조치 실적

□ 그 외 부정수급 관련 기타 주요 조치를 살펴보면, 비금전적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지원중단의 경우 전체 3,311건으로 나타났는데, 선정 기준별로는 자산 기준 사업은 지원중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수사 의뢰와 형사고발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자산 기준만 적용되거나 자산 기준과 진단 기준이 없는 사업들에서 수사 의뢰와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가, 지자체 중에서는 ‘시’와 ‘구’에서 수사 의뢰와 형사고발이 상대적으로 많이 조치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처분의 경우 501건으로 나타났는데, 보장기관별로는 자산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장기관별로는 지자체의 구와 시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6-22〉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적: 지원중단, 수사의뢰, 형사고발, 행정처분

(단위: 건)

구분		지원중단 (n=1818)	수사의뢰 (n=1815)	형사고발 (n=1815)	행정처분 (n=1815)
전체		3,311.0	48.0	19.0	501.0
선정 기준	자산기준	3,015.0	29.0	8.0	417.0
	진단기준	12.0	0.0	1.0	10.0
	자산 및 진단기준	117.0	0.0	0.0	51.0
	없음	167.0	19.0	10.0	23.0
보장 기관	교육청		3.0	0.0	0.0
	지 자 체	시	1,094.0	22.0	6.0
		군	449.0	8.0	1.0
		구	1,746.0	17.0	10.0
	특별행정기관		14.0	1.0	1.0
	공공기관		5.0	0.0	1.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라. 환수 결정 이후 원활한 환수 여부 및 환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 환수 결정 이후 원활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5.1%가 환수 결정 후 원활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자산 및 진단 기준별로 원활하게 환수가 이뤄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진단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 및 진단 기준이 없는 경우가 6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는 50.3%로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청이 69%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시'의 응답 비율이 52.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구'도 5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표 6-23〉 환수결정 이후 원활한 환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환수함		환수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23	1,060	(55.1)	863	(44.9)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1,124	565	(50.3)	559	(49.7)
	진단기준		128	84	(65.6)	44	(34.4)
	자산 및 진단기준		226	132	(58.4)	94	(41.6)
	없음		445	279	(62.7)	166	(37.3)
보장 기관	교육청		84	58	(69.0)	26	(31.0)
	지 자 체	시	591	308	(52.1)	283	(47.9)
		군	702	401	(57.1)	301	(42.9)
		구	476	252	(52.9)	224	(47.1)
	특별행정기관		62	35	(56.5)	27	(43.5)
	공공기관		8	6	(75.0)	2	(25.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해당 사업의 환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 담당자가 꼽은 환수 과정이 어려운 사유는 다음과 같음(중복응답).

○ 전체적으로 볼 때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 대응'의 응답 비율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38.6%), '경제적 취약성 등 실제로 환수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24.8%) 순으로 나타남.

- 많은 보장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급여의 부정 및 오류 수급의 확인과 환수 업무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 대응'은 담당자들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환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 대응'으로 응답한 비율은 특별행정기관(66.7%)과 지자체의 시(61.8%)가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공공기관과 교육청의 응답율이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담당자들이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담당자들의 업무 과중과 부정수급 관련 민원 처리 및 권한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임완섭 외, 2020).
 - 사업담당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및 적발 등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경제적 취약성 등 실제로 환수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24.8%)로 응답한 비율도 낮은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급여수급자가 부정 또는 오류 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 상황에 있어,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환수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관련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음.

〈표 6-24〉 환수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	환수 대상자 소재 불분명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	환수 대상자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환수방법의 한계	서류상 무재산 등 대상자의 재산은닉	경제적 취약성 등 실제로 환수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기타	
전체		863	60.7	18.2	38.6	3.0	22.9	11.9	1.5	24.8	5.7	
자산 조사	적용	653	63.2	14.1	42.4	1.2	23.0	10.7	1.5	27.3	4.4	
	미적용	210	52.9	31.0	26.7	8.6	22.9	15.7	1.4	17.1	9.5	
진단적 기준	적용	138	65.2	12.3	37.7	2.9	28.3	9.4	0.0	22.5	6.5	
	미적용	725	59.9	19.3	38.8	3.0	21.9	12.4	1.8	25.2	5.5	
자산 및 진단 기준	자산기준	559	62.3	14.0	42.6	1.3	21.8	11.1	1.8	28.3	4.7	
	진단기준	44	56.8	6.8	29.5	6.8	25.0	11.4	0.0	25.0	13.6	
	자산 및 진단기준	94	69.1	14.9	41.5	1.1	29.8	8.5	0.0	21.3	3.2	
	없음	166	51.8	37.3	25.9	9.0	22.3	16.9	1.8	15.1	8.4	
보장 기관	교육청		26	42.3	11.5	50.0	0.0	7.7	15.4	.0	15.4	23.1
	지자체	시	283	61.8	19.8	41.0	3.5	19.4	11.0	1.1	25.1	4.6
		군	301	60.8	22.6	38.2	1.0	23.9	10.0	1.7	21.9	6.3
		구	224	60.7	13.4	37.9	3.6	28.1	15.6	2.2	25.4	4.5
	특별행정기관		27	66.7	0.0	11.1	14.8	18.5	11.1	0.0	59.3	3.7
	공공기관		2	50.0	0.0	50.0	50.0	50.0	0.0	0.0	0.0	0.0

4. 초기상담과 부정수급 관련 안내

- 해당 사업의 초기상담이 응답자가 속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1,077명)가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 초기상담이 수행되고 있다고 응답함. 이들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과 관련한 주의 사항 안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94%가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 선정 기준별로 살펴보면, 자산 및 진단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비율(97.4%)이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는 해당 사업의 초기상담 기관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군’인 경우, 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구’는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남.

〈표 6-25〉 해당 사업 보장기관의 초기 상담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의사항 안내함		주의사항 안내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77	1,010	(93.8)	67	(6.2)
선정 기준	자산기준	623	580	(93.1)	43	(6.9)
	진단기준	89	82	(92.1)	7	(7.9)
	자산 및 진단기준	115	112	(97.4)	3	(2.6)
	없음	250	236	(94.4)	14	(5.6)
보장 기관	교육청	45	41	(91.1)	4	(8.9)
	지 자 체	시	310	293	17	(5.5)
		군	431	412	19	(4.4)
		구	234	210	24	(10.3)
	특별행정기관	50	47	(94.0)	3	(6.0)
	공공기관	7	7	(100.0)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응답자가 속한 보장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초기상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1.3%가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 선정 기준 간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만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 및 진단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편 안내 대상에 대한 평균 안내 횟수를 살펴보면, 평균 2.3회로 나타났으며, 급여선정 기준별로는 차이가 없지만, 자산 기준과 진단 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은 경우 평균 2.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26〉 해당 사업의 초기상담 담당기관의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의사항 안내함		주의사항 안내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23	1,755	(91.3)	168	(8.7)
선정 기준	자산기준	1,124	1,029	(91.5)	95	(8.5)
	진단기준	128	119	(93.0)	9	(7.0)
	자산 및 진단기준	226	201	(88.9)	25	(11.1)
	없음	445	406	(91.2)	39	(8.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표 6-27〉 안내 대상에 대한 안내 횟수(평균)

(단위: 명, 회)

구분		사례수	안내 대상에 대한 안내 횟수(평균)
전체		1,755	2.3
선정 기준	자산기준	1,029	2.2
	진단기준	119	2.3
	자산 및 진단기준	201	2.2
	없음	406	2.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5.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실시 여부

□ 해상 사업에 대해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약 81%가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이 조사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선정기준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 기준과 진단 기준 모두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지만, 선정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음.

〈표 6-28〉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 실시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23	1,560	(81.1)	363	(18.9)
선정 기준	자산기준	1,124	912	(81.1)	212	(18.9)
	진단기준	128	105	(82.0)	23	(18.0)
	자산 및 진단기준	226	184	(81.4)	42	(18.6)
	없음	445	359	(80.7)	86	(19.3)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조사 대상 범위는 수급자 전부로 응답한 비율이 8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수급자 일부로 나타남. 하지만 수급자 전부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응답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급자 전부로 응답한 경우에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6-29〉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의 대상 범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급자 전부		부정수급 고위험자		수급자 일부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560	1,268	(81.3)	88	(5.6)	179	(11.5)	38	(2.4)
선정 기준	자산기준	912	753	(82.6)	50	(5.5)	104	(11.4)	13	(1.4)
	진단기준	105	83	(79.0)	12	(11.4)	7	(6.7)	5	(4.8)
	자산 및 진단기준	184	142	(77.2)	10	(5.4)	30	(16.3)	4	(2.2)
	없음	359	290	(80.8)	16	(4.5)	38	(10.6)	16	(4.5)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6. 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제도개선

-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7.7%가 교육에 참여한 적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1년 동안 평균 1.4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응답자의 참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62.5%),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의 군(33.9%)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교육청의 경우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련 교육에 참석한 응답자 중 지자체의 시에 속한 응답자의 경우 교육 참여 횟수가 1.5회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과 특별행정기관은 각 1회로 다른 보장기관에 비해 교육 참여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6-30〉 부정수급 교육 참석 횟수 여부 및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참석함		참석하지 않음		부정수급 교육 참석 횟수(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23	532	(27.7)	1,391	(72.3)	1.4
보장 기관	교육청	84	1	(1.2)	83	(98.8)	1.0
	지 자 체	시	591	160	431	(72.9)	1.5
		군	702	238	464	(66.1)	1.4
		구	476	121	355	(74.6)	1.4
	특별행정기관	62	7	(11.3)	55	(88.7)	1.0
	공공기관	8	5	(62.5)	3	(37.5)	1.2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에게 부정수급 관리 교육의 주최를 파악한 결과, 정부 부처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기관의 자체 교육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산 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의 담당자인 경우, 정부 부처가 교육의 주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진단 기준만 적용되는 사업에서 해당 기관 자체 교육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산 및 진단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사업에서 광역 시도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시의 경우 자체 교육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군의 경우 정부 부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구의 경우 정부 부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31〉 부정수급 교육 주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부부처		광역시도		특별지방행정 기관		해당 기관 자체 교육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32	222	(41.7)	188	(35.3)	19	(3.6)	214	(40.2)	14	(2.6)	
선정 기준	자산기준	293	134	(45.7)	103	(35.2)	6	(2.0)	116	(39.6)	8	(2.7)	
	진단기준	40	10	(25.0)	15	(37.5)	0	(0.0)	24	(60.0)	1	(2.5)	
	자산 및 진단기준	57	18	(31.6)	21	(36.8)	5	(8.8)	20	(35.1)	2	(3.5)	
	없음	142	60	(42.3)	49	(34.5)	8	(5.6)	54	(38.0)	3	(2.1)	
보장 기관	교육청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지 자 체	시	160	66	(41.3)	51	(31.9)	2	(1.3)	76	(47.5)	3	(1.9)
		군	238	105	(44.1)	92	(38.7)	13	(5.5)	84	(35.3)	5	(2.1)
		구	121	51	(42.1)	45	(37.2)	4	(3.3)	41	(33.9)	6	(5.0)
	특별행정기관		7	0	(0.0)	0	(0.0)	0	(0.0)	7	(100.0)	0	(0.0)
	공공기관		5	0	(0.0)	0	(0.0)	0	(0.0)	5	(100.0)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이러한 교육이 부정수급 교육 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 결과,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4%로 나타남.

○ 선정 기준별로는 큰 차이 없이 부정수급 교육 및 예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했지만, 진단 기준과 자산 및 진단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장기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보장기관에서 해당 교육이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지만,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구’와 ‘시’의 경우 응답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남.
- 부정수급 관련 교육이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에 도움 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교육에 참여한 비율(27.7%)이 매우 낮으므로, 해당 기관들과 소속 담당자들에 대해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6-32〉 부정수급 교육 관리 및 예방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532	156	(29.3)	325	(61.1)	48	(9.0)	3	(0.6)	
선정 기준	자산기준	293	87	(29.7)	181	(61.8)	23	(7.8)	2	(0.7)	
	진단기준	40	13	(32.5)	20	(50.0)	6	(15.0)	1	(2.5)	
	자산 및 진단기준	57	11	(19.3)	37	(64.9)	9	(15.8)	0	(0.0)	
	없음	142	45	(31.7)	87	(61.3)	10	(7.0)	0	(0.0)	
	교육청	1	1	(100.0)	0	(0.0)	0	(0.0)	0	(0.0)	
보장 기관	지 자 체	시	160	47	(29.4)	95	(59.4)	17	(10.6)	1	(0.6)
		군	238	74	(31.1)	146	(61.3)	18	(7.6)	0	(0.0)
		구	121	30	(24.8)	76	(62.8)	13	(10.7)	2	(1.7)
	특별행정기관		7	0	(0.0)	7	(100.0)	0	(0.0)	0	(0.0)
	공공기관		5	4	(80.0)	1	(20.0)	0	(0.0)	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6%는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1.4%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라고 응답하였음.
- 자산 및 진단 기준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보장기관별로는 특별행정기관에서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보장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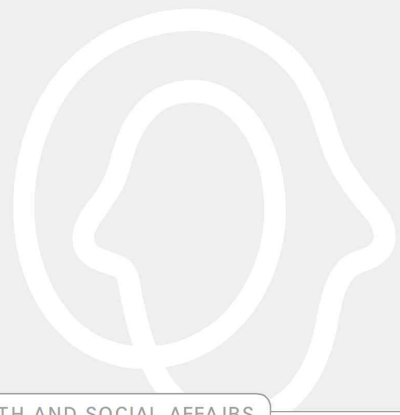
- 담당자들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사후적 처벌 또는 제재 강화보다는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과 상담을 통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등을 통한 인식 전환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기고 있음(임완섭 외, 2020).

〈표 6-33〉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정 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	초기 상담 시 안내 강화	선정과 정의 엄격성 강화	확인 조사 강화	부정수급 적발 강화	보다 강력한 환수 조치	처벌 강화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부정수급 관련 인력 확대	담당자의 전문성 및 지속성	신고 포상금 도입 또는 확대	관련 규정 정비	기타	
전체		1,923	44.6	16.1	14.7	11.4	16.3	11.4	16.1	4.3	21.4	15.7	10.7	1.5	9.0	1.7	
자산 조사	적용	1,350	44.8	17.2	15.7	12.4	16.2	11.3	16.3	3.9	19.3	17.2	9.6	1.0	8.7	1.7	
	미적용	573	44.0	13.4	12.4	9.2	16.4	11.9	15.7	5.2	26.4	12.2	13.3	2.4	9.9	1.7	
진단적 기준	적용	354	44.4	13.6	18.6	16.1	15.0	11.6	15.0	4.5	19.8	15.8	11.9	1.4	5.9	1.1	
	미적용	1,569	44.6	16.6	13.8	10.4	16.6	11.4	16.4	4.3	21.7	15.7	10.4	1.5	9.8	1.8	
선정 기준	자산기준	1,124	45.3	18.1	14.9	10.9	16.3	11.4	16.2	4.2	19.3	17.3	8.9	1.1	9.5	1.9	
	진단기준	128	47.7	14.8	16.4	10.2	13.3	13.3	11.7	7.8	21.1	14.1	10.2	2.3	8.6	1.6	
	자산 및 진단기준	226	42.5	12.8	19.9	19.5	15.9	10.6	16.8	2.7	19.0	16.8	12.8	0.9	4.4	0.9	
	없음	445	42.9	13.0	11.2	9.0	17.3	11.5	16.9	4.5	27.9	11.7	14.2	2.5	10.3	1.8	
보장 기관	교육청	84	47.6	19.0	20.2	9.5	16.7	9.5	13.1	3.6	22.6	17.9	6.0	1.2	1.2	6.0	
	지 자 체	시	591	43.5	15.9	12.5	11.7	17.6	10.8	15.4	4.1	20.5	19.0	10.3	1.9	10.7	1.9
		군	702	44.9	14.5	16.8	11.8	18.4	10.3	15.4	4.7	22.6	11.8	12.4	1.3	8.7	1.1
		구	476	43.3	18.1	14.9	10.5	12.8	12.8	20.2	3.6	18.1	17.0	10.3	1.1	9.7	1.9
	특별행정기관	62	56.5	17.7	4.8	16.1	6.5	21.0	4.8	6.5	40.3	14.5	4.8	0.0	4.8	0.0	
	공공기관	8	50.0	0.0	0.0	0.0	12.5	25.0	12.5	25.0	12.5	25.0	0.0	25.0	0.0	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제7장

정성 조사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제2절 초점집단면접조사

제 7 장 정성 조사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보건 및 사회복지, 사회복지재정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학계 전문가 집단과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대한 관리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신 명의의 공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가 기입한 후 조사수행 업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유선(전화)을 통해 조사를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한 후 전자메일로 설문지 송부했으며, 조사표의 회신 역시 전자메일로 이뤄짐.
- 조사 진행은 총 3주가 소요됨.

2. 응답자 현황 및 특성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델파이 조사의 전체 응답자는 80명임.

- 응답자는 교사 및 학자 36.3%, 공무원 31.3%, 연구원 및 박사 25.0%, 협회 및 종사자 7.5% 순으로 나타남.
- 전공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57.5%, 교육 17.5%, 행정 13.8%, 경제(재정) 7.5%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해당 분야 경력자는 15년 이상 38.8%, 5~10년 미만과 10~15년 미만 각각 22.5%, 3~5년 미만 10.0%, 3년 미만 6.3% 순으로 나타남.

〈표 7-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80	100.0
지위	교사, 학자	29	36.3
	연구원, 박사	20	25.0
	공무원	25	31.3
	협회, 종사자	6	7.5
전공 분야	사회복지	46	57.5
	경제(재정)	6	7.5
	교육	14	17.5
	행정	11	13.8
	그 외	3	3.8
경력	3년 미만	5	6.3
	3~5년 미만	8	10.0
	5~10년 미만	18	22.5
	10~15년 미만	18	22.5
	15년 이상	31	38.8
중앙정부 평가 참여	있음	21	26.3
	없음	59	73.8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3. 주요 결과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범위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구분이 명확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58.8%,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41.3%임.
- 사회보장급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로 사회보장급여로 제시된 3가지 급여(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에 대한 범위와 수준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사회서비스의 하위 영역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구성됨.
 - 첫째, 사회보장급여 중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수단이나 종류의 하나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부조는 최저층에 대한 하나의 독립된(독자적인) 제도처럼 보임.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대상과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2가지에 비해 구체성을 가짐. 한편, 각 제도들은 목적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일부 중복됨(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 둘째, 사회서비스의 영역이 복지부터 문화, 환경까지 광범위하고, 수단도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까지 매우 광범위함. 또한, 교육, 고용, 주거, 환경 등은 사회보장의 기능이 있지만, 독자적인 기능이 있고,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음. 교육은 포함하지 않고 다른 사회서비스는 포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조사표 설계와 결과 해석에 있어 제도별 구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보장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외 특별행정기관이 있음. 그러나 2020년과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교육’ 분야의 조사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회보장급여’ 범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았음.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목록과 보장기관인 시도교육청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을 살펴보았음.

○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 중에서 사회보장급여로써 범위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을 찾으라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교육’ 분야와 보훈보상, 주택대출, 직접일자리 사업 등을 주목함.

- 공공산립가꾸기와 산림보호지원단,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인문 100년 장학금,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경진대회 등을 지적하였음.

〈표 7-2〉 사회보험급여 목록에서 적절성 검토 대상 사업

(단위: 명)

연번	부처명	사회보장급여명	응답 수
1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사업	1
2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보호	1
3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4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요금감면	2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1
7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1
8	교육부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1
9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1
10	교육부	국가장학금(I, II)	1
11	교육부	인문100년 장학금	2
12	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1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1
14	국가보훈처	손자녀가계지원비	1
15	국가보훈처	애국지사특별예우금	1
16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대부지원	1
17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18	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19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20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1
21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인력지원	1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	1
23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2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연번	부처명	사회보장급여명	응답 수
25	보건복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1
26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1
27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6
28	산림청	산림보호지원단	6
29	여성가족부	청소년국제교류	1
30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판로지원	2
31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2
32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창업경진대회	2
33	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1
3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1
35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
36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료지원	1
37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1
38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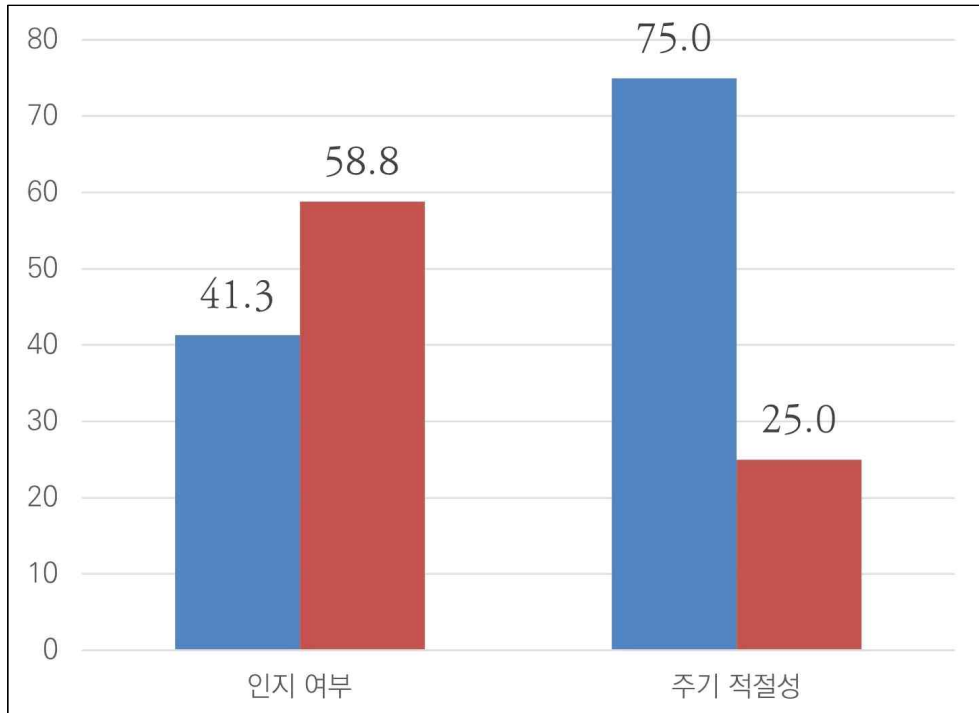
주: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지적된 주관식 문항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인지와 적절성

-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조사에서 전문가 41.3%는 알고 있다(‘예’)고 응답했지만, 절반 이상(58.8%)은 ‘모른다’고 응답함.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3년 주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의 75.0%는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25.0%는 ‘아니오’라고 응답함.
 - 3년 주기 미만으로 인식하는 전문가들(8명)은 그 이유로, “3년에 1번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매년 제공주체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로 소규모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보장급여가 매년 연 단위로 지급되므로, 2년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 “격년 주기로 조사하되, 조사 업무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일부 전문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등 통합전산망의 고도화에 따라 상시로 부정수급 등의 이상 사례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되, 무작위 선정으로 조사하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없앨 것을 제안함.

[그림 7-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인지와 주기에 대한 인식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과 사회보험 급여 포함에 대한 인식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험 급여를 포함하는 2023년 실태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71.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교사 및 학자(79.3%), 연구원 및 박사(60.0%), 공무원(68.0%), 협회 및 종사자(83.3%) 등 모든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도·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4,300여개)가 너무 많아 행정 비용이 과도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군구에 자체 감사가 존재하며,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자체 사업의 예산 규모 및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함.
- 사회보장급여가 너무 많아 한 번에 조사하기 어려울 때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액’, ‘급여유형(현금)’, ‘대상 범위의 포괄성’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각 지자체를 기준으로 대상 사업 선정)과 난수표에 의한 완전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제안하기도 함.

○ 사회보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함.

- 사회보험은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부정수급 사례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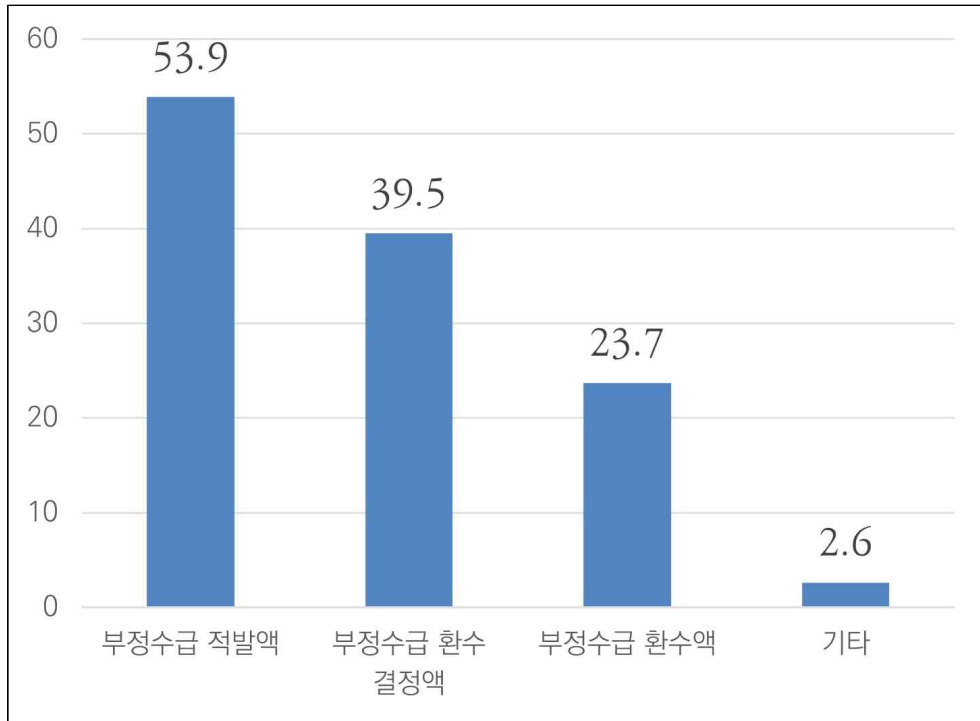
□ 기본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규모의 분석 기준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 규모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부정수급 적발액’(53.9%)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이에 비해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39.5%), 부정수급 환수액(23.7%)에 대한 응답은 낮음.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협의를 부정수급’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광의의 부정수급’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함.
- 광의의 부정수급까지 조사하는 경우, 조사명(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광의의 부정수급(예, 사회보장급여 부적정지출 규모)과 협의의 부정수급(부정수급 적발액)을 각각 제시할 것을 제안함.

[그림 7-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규모 분석 기준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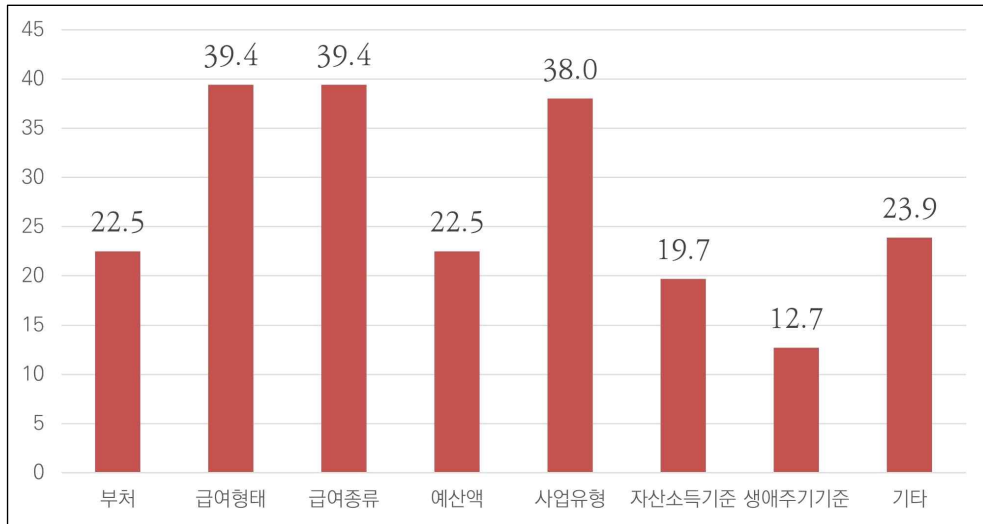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규모를 분석하는 세부 기준으로 급여유형과 급여 종류, 사업유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규모를 교차 분석하는 세부 기준으로 ‘급여 유형(39.4%)’, ‘급여 종류(39.4%)’, ‘사업유형(38.0%)’ 등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기타 의견으로, 수급 대상자를 유형화하거나(여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보장급여 보장기관의 인력 규모나 모니터링 체계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안, 수혜 범위와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
- 대표적인 사업(예,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제도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함.

[그림 7-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세부 분석기준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부처 외에 실제 사업에 책임이 있는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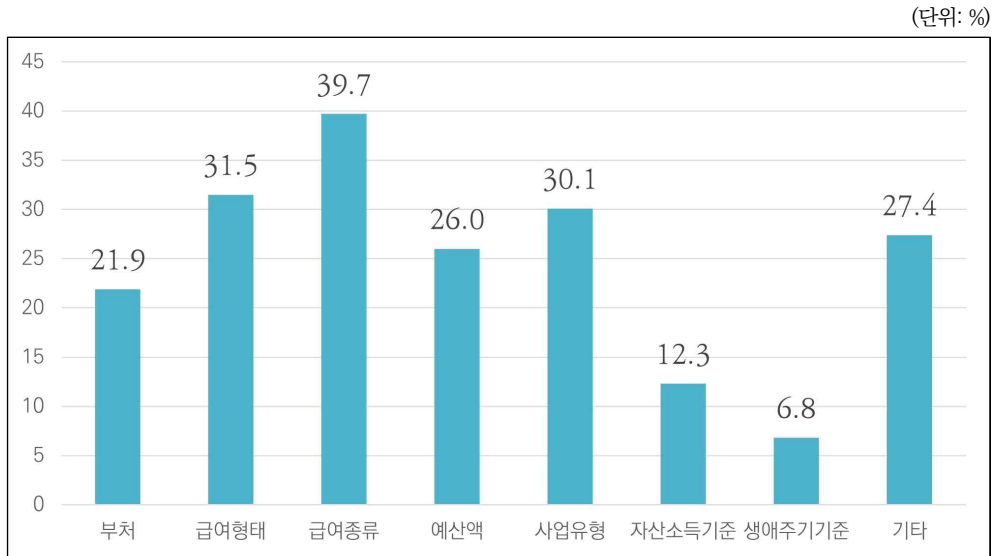
- 다만, 보장기관을 조사하는 것이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사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과 실제 위탁기관, 수급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심층 조사를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존재함.

○ 2023년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조사와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심층 조사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사 참여가 증가하였음. 이는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부정수급 관리에 가장 적절하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적절한 인력 지원 및 교육을 통한 부담 최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보조금 신청 남발과 과도한 보조금 요구 방지를 위해 자체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조금이 그냥 주는 돈, 혹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대상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지자체 사업을 기획할 때 사후관리를 계획하지 않는 사업이 많으므로, 심층 조사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관리 실태를 응답하다 보면, 미비한 점을 깨닫게 되어 지침을 더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도 주기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한편, 2020년 보장기관에 대한 심층 조사 대상을 현금 급여로 선정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급여 종류와 급여유형, 사업유형에 대해 높은 응답이 나타남.
- 급여 종류(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서비스의 범주가 매우 넓으므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부처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우 특정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정수급의 관리 형태나 방식 등을 조사하기 용이함.
 - 일부 전문가는 “현금 급여는 부패가 일어나기 가장 쉽고, 유용하기 가장 쉽고, 악용되기도 쉬우며 부정수급이 가장 빈번”하므로, 급여유형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찬성함.
 - 반면, 기타 의견으로 선행연구나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부정수급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특성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과 부처, 급여형태, 급여종류, 예산액 등을 기준으로 다층층화추출법을 사용하여 확률표집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함.

[그림 7-4] 사회보장급여 심층 조사 대상 사업 선정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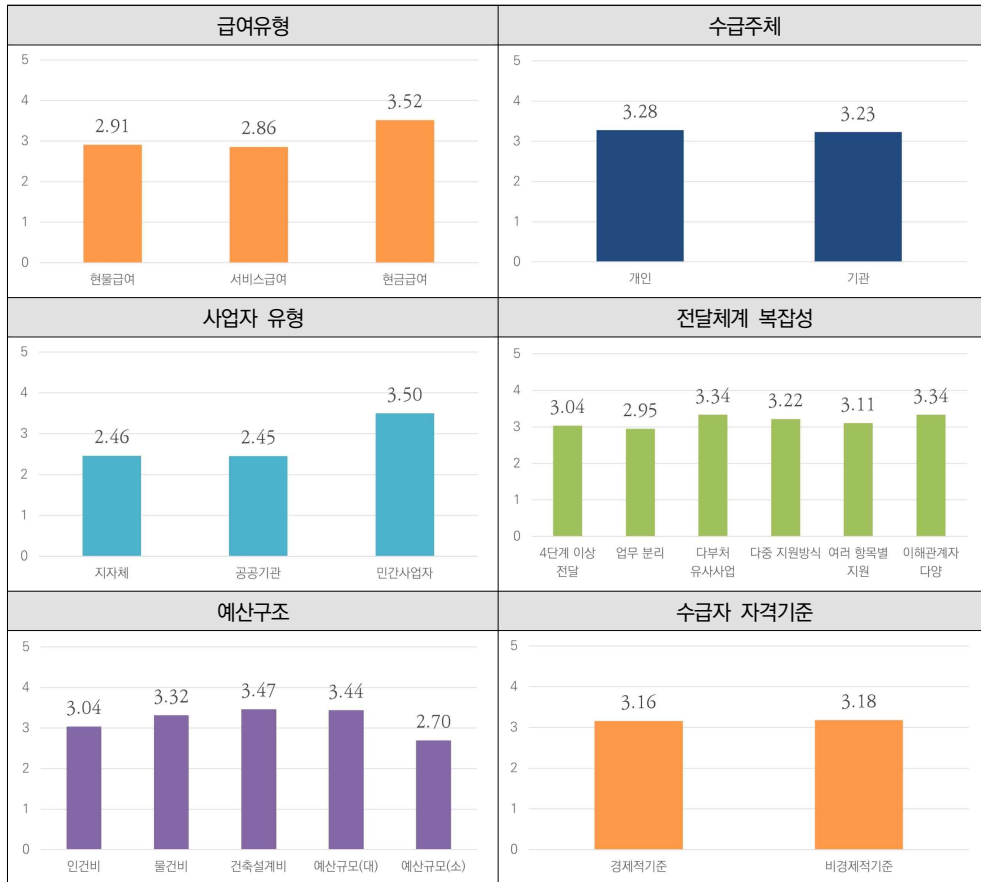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을 10가지로 유형화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일관되게 지정한 바와 같이 현금 급여(3.52점)와 민간 사업자(3.50점)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함.

-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3.28점)이 다소 높지만, 기관과 차이가 거의 없고, 수급자 자격 기준이 비경제적 지원(3.18점)이 다소 높지만, 차이가 없음.

○ 전달체계 복잡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다부처 유사 사업 수행과 이해관계자가 많을 때(3.34점) 부정수급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그림 7-5]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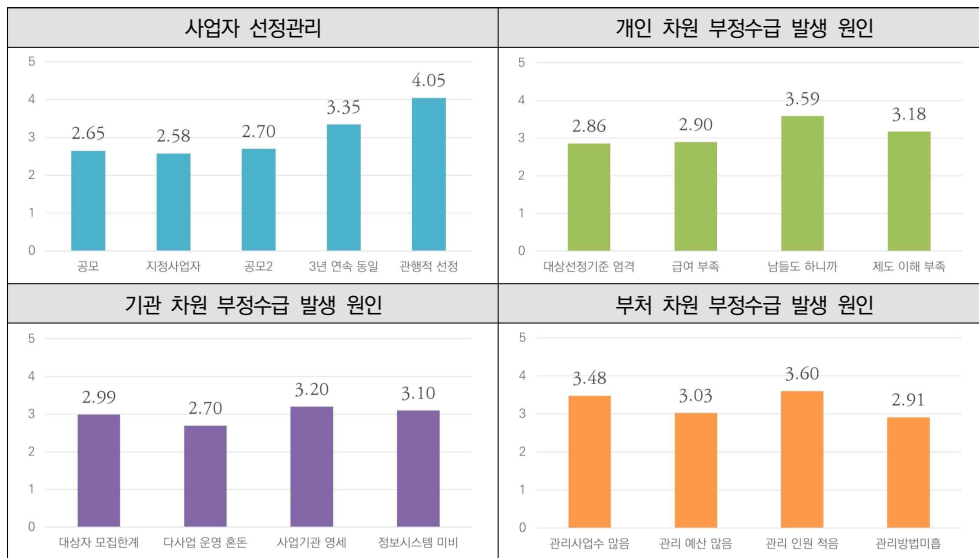
○ 사업자 선정관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행적 선정 (4.05점)에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음.

-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다고 해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자일 때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공모 절차가 있거나,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지정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남.

○ 개인 차원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남들도 하나까’ 특별히 잘못 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만연한 의식(3.5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3.18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 차원에서는 영세(3.20점)와 정보시스템 미비(3.10점) 등이 높음.
- 부처 차원에서는 관리 인원이 적거나(3.60점), 관리 사업 수가 많음(3.48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업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함.

[그림 7-5]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계속)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많다고 인식하는 제도는 공공부조가 가장 높지만 (44.3%),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인식도 높은 편임(40.5%).

○ 공공부조는 의료급여(40.8%)가 가장 높고, 생계급여(39.5%), 주거급여 (21.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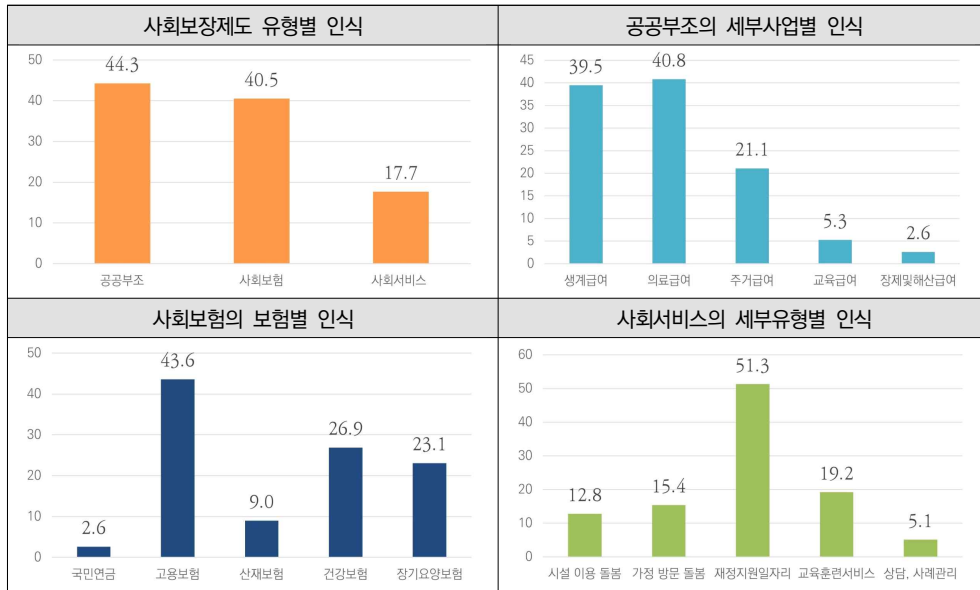
○ 사회보험은 고용보험(43.6%)이 가장 높고, 건강보험(26.9%)과 노인장기요양 보험(23.1%)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는 그 대상이나 범위가 방대하여 제도의 성격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였음. 재정지원 일자리(51.3%)에서 매우 높고, 교육훈련 서비스 (19.2%)와 가정방문 돌봄(15.4%), 시설 이용 돌봄(12.8%) 순으로 나타남.

- 앞서 사회보장급여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지원단, 취약농가인력지원 등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던 것과는 대조적임.

[그림 7-6]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발생이 빈번한 제도

(단위: %)



주: 중복응답을 분석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3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22.5%)’과 ‘담당자의 전문성 및 지속성(22.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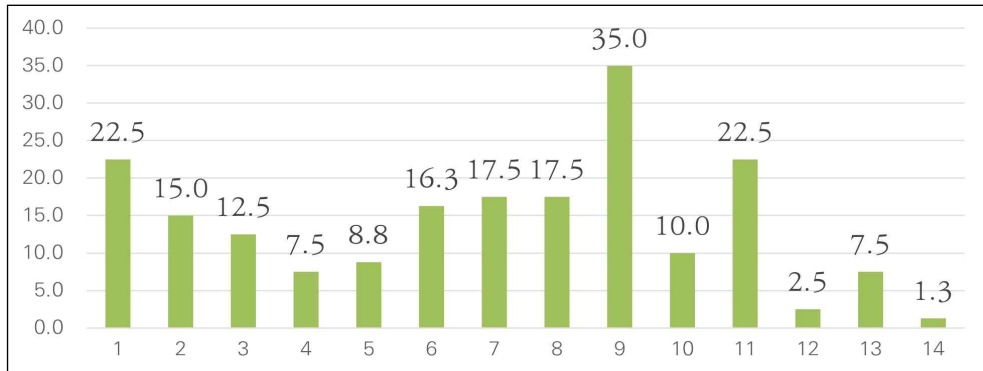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수급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고의적이지 않은 부적정지출을 예방하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자동화하고 모니터링 관련 인력을 증원하며, 수급자 선정 과정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또한,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을 단순화하여 사전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차원에서의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수급이 적발됐을 때 환수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그림 7-7]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주: ①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 ②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 사항 안내 강화 ③ 선정과정의 엄격성 강화 ④ 확인조사 강화 ⑤ 부정수급 적발 강화 ⑥ 보다 강력한 환수조치 ⑦ 처벌 강화 ⑧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⑨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⑩ 부정수급 관련 인력 확대 ⑪ 담당자의 전문성 및 지속성 ⑫ 신고포상금 도입 또는 확대 ⑬ 관련 규정 정비 ⑭ 기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제2절 초점집단면접조사

1. 대상 사업의 선정

□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대상 사업 선정은 중앙부처 기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규모와 추이, 전달체계 이슈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발생 원인과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와 저출산 대책, 청년 장학사업을 살펴보았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실태조사에서 한국의 사례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된 분야로, 수급이 결정된 후에도 수급자의 공적 자료 변동 등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는 등 부적정 지출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체계가 잘 구축된 분야임.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통적인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급여 종류(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임완섭 외, 2020, pp. 294-295).

○ 생계급여는 단일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2년 집행 실적이 6조 4,763억 원임. 2023년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은 38,779건이고,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은 272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으로 집계됨.

- 생계급여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관리, 사후관리의 보장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임.
- 생계급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있음.
-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은 주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허위 처리(10,784건)와 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업무착오(27,995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급여는 12개 내역 사업¹³⁾으로 구성되며, 2022년 집행 실적이 10조 4,845억 원임. 2023년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은 341건이고,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은 39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으로 집계됨.

- 의료급여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관리, 사후관리의 보장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임. 그러나, 실제로 현물급여인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이용과 이용 행태에 대한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의료급여는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신고 체계도 별도로 활용하지 않음.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급여의 급여 관리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플랫폼과 전산시스템(급여관리DB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신고자료와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및 신고 등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의료급여의 부정수급은 주로 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관리 미비(341건)에서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를 도입하였음.

13)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중증질환/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로 구성됨.

○ 주거급여는 2개 내역 사업(주거급여,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으로 구성되며, 주거 급여 기준 2022년 집행 실적이 2조 7,555억 원임. 2023년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은 19,913건이고,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은 65억 원(국비)으로 집계됨.

- 주거급여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관리, 사후관리의 보장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임. 그러나, 실제로 현물급여인 비주택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공급(공공임대, 민간 임대 등)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주거급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신고와 e나라도움 부정 징후 모니터링 통보, 부처 플랫폼 및 전산시스템,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음.
-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은 주로 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관리 미비(19,841건)에서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음.

□ 아동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되었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함.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별적 기준에 따른 현금 급여지만,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적인 현금 급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아동 수당은 단일 내역 사업으로, 2022년 집행 실적이 2,383억 원이고 국비 100% 지원 사업임. 보편적인 급여이므로,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침이 없으며,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지자체임.

- 아동수당은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며,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신고체계도 별도로 활용하지 않음. 실제로, 아동 수당은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건수나 환수 결정 금액도 없음.

○ 그러나 아동 수당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부가급여의 형태를 띠는 장애아동 수당은 2022년 집행 실적이 8,421억 원이고, 지방

자치단체 보조사업임. 이 사업은 인적 특성(장애, 아동 연령)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침이 명확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과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은 232건이며,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은 52백만 원 수준임.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3건)은 적으며 광의의 부정수급인 증빙미비(2건), 중복처리(46건), 업무착오(26건), 관리미비(156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사하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졌지만, 가족의 특수한 요건에 대응하는 부가급여의 형태를 띠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2022년 집행 실적이 5,520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임. 이 사업은 인적 특성(한부모가족, 아동 연령)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침이 명확하며, 청렴포털이나 국민신문고,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은 763건이며,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은 4억 원 수준임. 부정수급의 원인은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허위 처리(763건)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 장학사업은 주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국가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등) 지원사업임. 장학금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 현금급여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지금까지 교육 분야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및 실태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 대표 사업으로 청년 장학 사업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면접 조사를 실시함.

○ 국가장학금(I,II유형)은 2022년 집행 실적이 4조 1,049억 원이고 국비 100% 지원 사업임.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훈령)이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임.

- 한국교육재단은 국가장학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IT 선진화 시스템을 활용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VOC)와 전자민원 등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신고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은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지만, 경찰수사 결과 통보와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신고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실적이 없음.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022년 집행 실적이 528억 원이고 국비 100% 지원 사업임.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훈령)이며, <대통령과학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국가우수(이공계) 장학금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임.

- 한국교육재단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IT 선진화 시스템을 활용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VOC)와 전자민원 등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신고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부정수급을 파악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전산시스템과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에 의존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적발은 924건이며,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은 3억 원 규모임.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인 허위 처리(3건)의 비중은 적고, 광의의 부정수급인 업무 착오(921건)의 비중이 높은 편임.

○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은 2022년 집행 실적이 4,162억 원 국비 100% 지원 사업임.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훈령)이며, 국가근로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관리주체는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임.

- 한국교육재단은 국가장학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IT 선진화 시스템을 활용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VOC)와 전자민원 등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신고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 부정수급 적발은 151건이며,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은 1억 원 규모임. 부정수급은 협의의 부정수급인 허위 처리(4건)의 비중은 적고, 광의의 부정수급인 관리 미비(147건)의 비중이 높은 편임.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주로 고령자에게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배타적으로 설계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노인 대상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아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사업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22년 집행 실적이 2조 7,779억 원이고 지자체 보조사업임. 이 사업은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일반적인 지자체 보조사업과 달리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며,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을 활용하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이 384건이며, 부정수급 적발(환수결정) 금액은 8,364억 원임.
- 부정수급의 적발 유형은 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중복처리(30건), 업무 착오(92건), 관리미비(209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고의로 인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가족 등록 및 채용(3건), 가족간 거래(1건), 내부공모(2건), 허위처리(47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고의 부정수급이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음.

2. 조사 개요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FGI 조사는 공급자, 수혜자를 총 2개의 구분으로 현직 담당자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개의 구분 내에서 공급자 6그룹, 수혜자 3그룹으로 나뉘어 총 9개의 그룹으로 진행함.

〈표 7-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FGI 추진내역

구분	일시	대상자	주요 질의 내용
1Gr	2024년 1월 23일(화)	주거급여 공급자	부정수급 및 업무현황, 제도 부정수급 가능성 및 적발 가능성,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업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Gr	2024년 1월 24일(수)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공급자	
3Gr	2024년 1월 25일(목)	청년 장학사업 공급자	
4Gr	2024년 1월 30일(화)	주거급여 수혜자	사회보장급여 신청과정 및 정보탐색 제도 부정수급 가능성 및 적발 가능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견
5Gr	2024년 1월 31일(수)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수혜자	
6Gr	2024년 2월 2일(금)	청년 장학사업 수혜자	
7Gr	2024년 2월 5일(월)	생계급여 공급자	부정수급 및 업무현황, 제도 부정수급 가능성 및 적발 가능성, 현금급여의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업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8Gr	2024년 2월 7일(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혜자	
9Gr	2024년 2월 14일(수)	의료급여사례관리단	

□ FGI에 참여한 인원은 공급자 29명, 수혜자 21명으로 총 50명임.

- 공급자는 사회보장급여 보장기관의 시도·시군구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
되,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여 등의 업무
를 다루는 대학교 교직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을 추가하였음.
- 수혜자는 주거급여와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장학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

3. 주요 조사 결과

가. 공급자

□ 부정수급 경험 및 원인은 사회보장급여별로 차이가 있음.

- 주거급여에서 부정수급은 주거급여에 대한 지침이 부재하고, 전대차 계약, 허
위 임대, 임대료 현금 납부 증빙 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함.
 -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대응 권
한이 없어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어려움.
- 아동수당은 보편적이지만, 부정수급이 발생함. 주로 해외 입출국, 전입 전출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해외 입출국 정보 미일치로 인한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함.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부정수급은 혼인 관계 증명 불가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며, 사실혼과 교제 여부 등은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음.
- 국가장학금은 민간 장학금, 해외 소득 등 부정수급 관리시스템에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부정수급이 발생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기도 함.
-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은 일용 근로에 현금 직접 지급으로 인해 소득신고 누락으로 발생하며, 구조적 인력 문제로 인해 과오 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공적 자료의 정보 누락과 업무 조직적 문제로 부정수급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노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여, 주요 원인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과 출결 누락, 비자의적 대리 출결 등의 원인에 따름.
 - 또한, 현장 활동 모니터링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하기도 함.
- 의료급여의 부정수급은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발생하며, 특히 한방병원에서의 장기 입원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많음
 - 또한, 의료기관과 수급자 개인의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하기도 하며, 결핵 환자 대상 산정 특례는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의료급여가 종료되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구조적 사유도 있음.
-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 나 모니터링 인원의 부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기도 함.
 - 주거급여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관리는 사업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관리팀, 조사팀에서 추가 관리를 진행하기도 함.
 - 행정적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부정수급 적발·환수 조치는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음.

- 아동 대상 현금 급여에서 부정수급 적발·관리는 기본적으로 사업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아동 현금 급여는 수급자의 불응으로 인해 적발·환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청년 장학사업에서 부정수급 적발·관리는 대학별 사업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부정수급을 전담하고 있는 팀이 따로 없어,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 생계급여에서 부정수급 적발·관리는 사업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부정수급 확인조사를 통해 의심되는 경우에도 관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기도 함.
 -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부정수급 적발·관리는 사업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함
 - 의료급여에서 부정수급 적발·관리는 의료급여법, 상해급여 매뉴얼, 의료급여 정보 시스템을 참고하여 부정수급 관리 및 적발 업무를 수행함. 상당히 복잡한 업무이므로, 누락의 가능성이 존재함.
-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시스템은 주로 '행복e음'을 활용하고 있지만, 각 사업별로 독립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함. 이러한 시스템이 행복e음과 연계될 때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변동 자료 등을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음.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주로 행복e음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 및 적발하며, 전입 전출 확인, 소득 변화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 및 적발함
 - 아동 대상 현금 급여 역시 행복e음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지만, 추가로 출입국 기록 등을 활용함.
 - 청년 장학 사업은 장학재단 시스템,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 및 적발함.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과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 및 적발함.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수급을 관리 및 적발함.
- 부정수급 관리·적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보장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등을 주로 요구하였음.
- 생계급여 부정수급 관리·적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관리가 필요하며,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수급 사례 공유 및 교육 시간을 통한 담당자 교육이 필요함.
-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적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거급여 관리·적발에 대한 담당자 권한 부여가 필요함
- 아동에 대한 현금성 급여는 보편적인 수당이라고 해도 부정수급 관리·적발까지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개별 업무량이 과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적발 후 환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아동에 대한 현금 급여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함.
- 청년 장학 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점심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장학재단 내 고객센터 직원과 사업담당자의 안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일관성이 필요함.
 - 청년 장학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부정수급 관리·적발 부서와 장학감사가 이루어져야 함.
- 노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가이드가 필요함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부정수급 조사 전담 기관이 필요하며, 현장활동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환수 금액 추정, 결핵 산정특례 기간 한정 등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통합 관리하는 조사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부정수급 관련 교육이 필요함.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또는 영상교육으로 진행이 필요함.

□ 부정수급 관리·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으로는 시스템 상 변동사항의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해서 제공하고, 소득 정보 변동의 반영이 신속하게 제공되며, 의심대상자 및 중점 대상자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관리·적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시스템 내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

- 부정수급 관리·적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소득 정보 변동 반영 신속화, 의심 대상자 및 중점 대상자 관리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함.
- 시스템상 변동사항의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여 제시해야 함.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아동 현금성 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연동 정보 자동화 및 주기적 전달 등 기능 개선이 필요함.

- 아동 현금성 급여 부정수급 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학재단 시스템의 통합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의 해외 입출국 관련 자동화, 변동 알람, 주기적 전달 등 기능적 개선과 국가장학금의 사설/민간 장학금의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조화를 위한 기록 의무화 및 통합관리가 필요함.

- 청년 장학사업 신청 시 부정수급에 관한 간결하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함

○ 노인 일자리 업무시스템 변동 사항 최신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함.

- 부정수급 관리·예방을 위하여 사업 진행 전 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 의약품 시스템(DUB: 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해 부담 남용의 방지가 필요함.

-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입원·퇴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장기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체계가 필요함.
- 의료급여 부정수급 적발 업무에 대한 인건비 및 보상 제도를 체계화가 필요함.

나. 수혜자

□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탐색하여 내게 맞는 급여를 선택해야 함. 따라서 정보 탐색 경로는 정확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주거급여 수혜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탐색하고 있으며, 복지로, 유튜브,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주민센터 공무원 등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 최근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 검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아동에 대한 현금 급여 수혜자 역시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탐색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지자체 SNS, 지자체 문자, 주민센터 공무원, 소식지 등을 통해 정보를 탐색함.
-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와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젊은 부모들의 정보 유입 경로가 주로 블로그나 맘카페 등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나 주의사항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고, 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춤.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류의 허위 작성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함.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대부분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읽은 기억도 있음. 그러나, 온라인 신청 방법 중 일부는 이용자에게 어렵게 느껴짐.

- 주거급여 수혜자는 신청 시 과정의 어려움이 적었으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았음.
- 아동 현금성 급여 수혜자는 신청 시 전자식 서류 신청에 편리함을 경험했으며, 신청 서류 내 작은 글씨로 부정수급 관련 안내 문구를 확인한 응답자도 있었음.

- 청년 장학사업 수혜자는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했으며, 부모님 동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함.

○ 한편,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때의 불편함을 호소함.

- 일부 주거급여 수혜자는 수급 시 주민센터의 행정착오, 실업급여, 소득 변경 등으로 주거급여가 누락되어 중단되는 경험이 있었음.
- 청년 장학사업의 경우, 국가장학금은 학교 및 유형에 따르 지급 방식이 다르게 수급되었으며,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교외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이용이 불편하였음.

□ 이들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비교적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었으며, 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경험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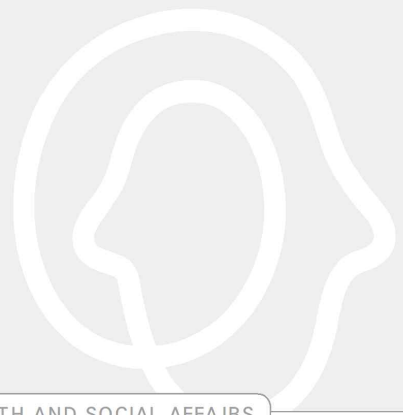
○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 습득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 주거급여 수혜자는 소득, 장애인 등 신청자격 관련 부정수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현금 소득 미신고, 소득 변동 미신고, 장애인 주택 내 장애인 비거주 등 사례가 있음.
- 아동에 대한 현금 급여 수혜자는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 습득이 쉽게 일어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청년 장학사업의 경우, 국가장학금은 소득·자산을 속여 부정수급을 받는 학생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국가장학금은 근로시간 관리 유연화, 근로 시 업무 미이행 등으로 부정수급을 간접 경험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일부 수급자는 보장기관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노력을 경험함.

- 주거급여 수혜자는 담당 지자체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적발한다고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금융 조회 시스템 사용을 경험함.
- 아동 현금성 급여 수혜자는 담당 지자체의 방문 조사를 경험하였으며, 연도별 또는 반기별로 소득 조회에 관한 우편을 수신한다고 함.
- 청년 장학사업 중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 기관의 관리자가 진행하였으며, 관리기관마다 관리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수혜자들은 근로시간이나 업무에 대해 유연하게 관리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한 정부나 기관 단위 노력으로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등을 제안하였고, 수혜자가 할 수 있는 부정수급 관리 노력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제안함.
- 주거급여의 경우, 전담 감사부서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전화 유선 확인 병행, 빅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중복 급여 확인 강화, 부정수급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함.
 - 주거급여 수혜자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필요함.
- 아동 현금성 급여의 경우, 주기적인 현장점검 모니터링, 사회보장 담당 공급자의 전문성 증가가 필요함.
 - 아동 현금성 급여 수혜자는 정확한 신고 가이드라인과 신고 매뉴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허위신고를 줄일 수 있음.
- 청년 장학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 다르게 사업 담당자 현장방문 및 모니터링에 대한 수혜자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사업 특성상 학생에 대한 배려 및 시간의 융통성 보장 등이 필요함.
 - 청년 장학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홍보 방식으로는 교내 장학 관련 부서 익명 신고, 국가장학금 연계 안내, 학교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홍보 등을 통한 안내가 필요함.



제8장

결론: 주요 결과와 함의

- 제1절 기본조사 주요 결과
- 제2절 사회보험 시범 조사 주요 결과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범 조사 주요 결과
- 제4절 심층 조사 주요 결과 및 함의
- 제5절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제 8 장 결론: 주요 결과와 함의

제1절 기본조사 주요 결과

1. 기본조사 개요

□ 사회보장급여 기본조사는 중앙부처의 일반재정을 대상으로 함.

○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2개 소관 부처 367개 사회보장급여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발신 명의의 공문을 활용하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22개 사회보험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에 포함하여 조사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과 사회보험을 구분하였음.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중 320개 사업이 회신하였으나, 사회보험 급여는 분리하여 분석함.
- 중앙부처 기본조사 대상 사업 중 조사에 회신한 사업 중 사업 및 예산 정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어 분석에 포함된 최종 사업은 298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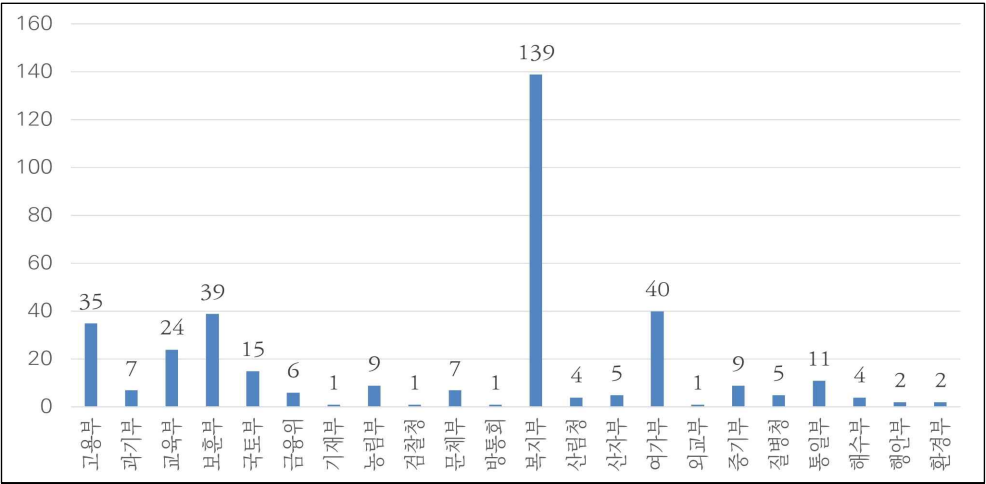
2. 기본조사 대상

가. 조사 대상 사업(모집단) 현황

□ 중앙정부의 기본조사 대상 사업(367개)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사업이 가장 많고(139개), 여성가족부(40개), 국가보훈부(39개), 고용노동부(35개), 교육부(24개) 순으로 나타남.

[그림 8-1]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소관 부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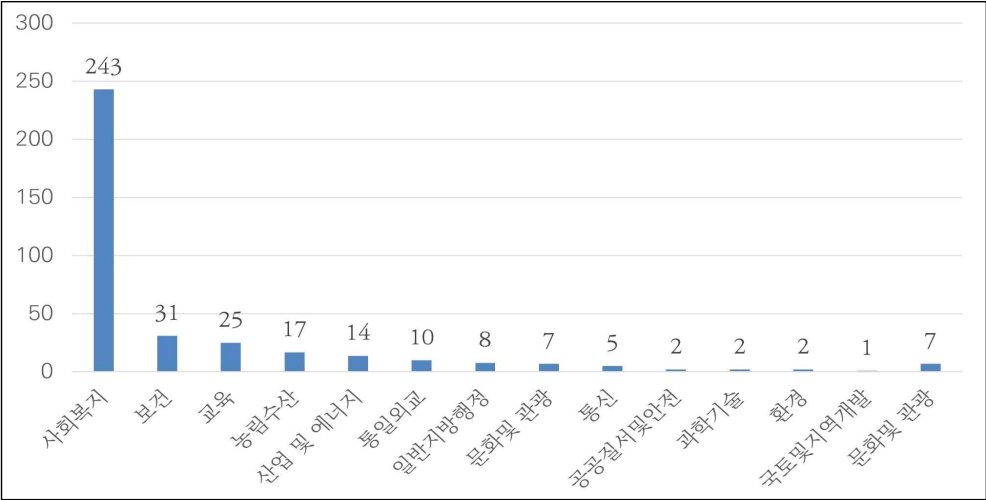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사업을 정부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243개로 가장 많고, 보건 분야가 31개, 교육 25개, 농림수산 17개, 산업 및 에너지 14개 순으로 나타남.

[그림 8-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현황: 정부 기능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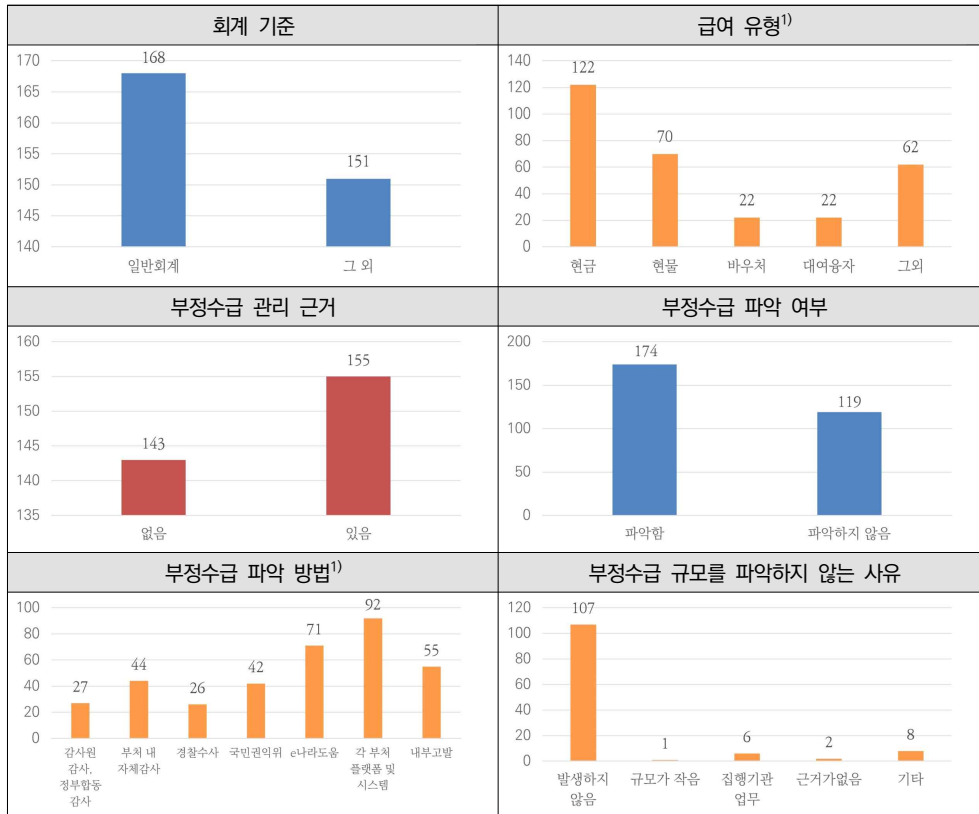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나. 조사 사업(분석 대상 사업) 현황

- 중앙정부의 기본조사 결과(298개), 일반회계(171개)와 현금 급여(1순위 기준, 122개) 사업이 많으며,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가 있고(155개), 부정수급을 파악하는 사업은 174개임.
- 일반회계 사업이 171개이며, 특별회계 22개, 기금 97개, 그 외 8개임.
- 급여 형태는 현금 급여가 122개이며, 현물 73개, 바우처 25개, 대여용자감면 22개, 프로그램 44개, 그 외 12개임.
-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응답한 사업은 155개지만, 이 중 25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근거가 있는 사업은 128개임.
 -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사업은 109개이며, 별도 지침이 없는 사업이 19개임.
 - 한편,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사업(170개) 중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한 지침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은 79개임.
- 부정수급 관리주체는 부처 직접(19개), 지방자치단체(155개), 특별행정기관(34개), 그 외 산하기관(49개), 기타(7개), 없음(34개)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 주체는 중복 응답을 허용했으나, 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재정 전달체계(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를 우선으로 하고, 법령과 지침에서 권한과 책무를 기준으로 단일 응답으로 조정함.
- 부정수급을 파악하는 174개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파악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부처 플랫폼과 전산 시스템(92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71개), 보조사업자 등 내부 고발(55개), 부처 자체 감사 결과 활용(44개),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신고(42개)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 사업(119개)이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 사유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임(107개).

[그림 8-3] 중앙부처 기본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현황

(단위: 개)



주: 1) 급여유형 중 '그 외'는 프로그램 지원(43개), 시설 입소(8개), 자원봉사(1개), 기타(10개) 등으로 구성됨.

2) 부정수급을 파악하는 사업(174개)에 대한 중복응답을 고려함.

3)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 사업(119개)에 대한 중복응답을 고려함.

4) 상세 통계는 제3장에 제시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3. 기본조사 결과

가.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규모

□ 2022년 중앙부처 사회보장급여(298개)의 집행 실적은 92조 4,490억 원이며, 환수 결정 금액은 512억 원(0.055%), 환수 실적은 278억 원(0.030%)으로 나타남.

○ 환수 결정 금액 중 '협의를 부정수급'은 182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20%이며, 환수 실적 중 '협의를 부정수급'은 84억 원으로, 집행 실적 대비 0.009%임.

〈표 8-1〉 2023년 중앙부처 사회 보장 급여 사업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단위: 백만 원, %)

	집행 실적(A) ¹⁾	환수 결정(B) ²⁾		환수 실적(C) ²⁾	
			부정수급(B1) ³⁾		부정수급(C1) ³⁾
금액	92,449,072	51,262	18,211	27,839	8,413
비율	100.0	0.055	0.020	0.030	0.009

주: 1) 2022년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2)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을 포함한 부적정지출에 따른 환수 결정과 환수 실적을 뜻함.

3) 중앙부처 기본조사표의 8번 문항(부정수급액 합계)과 불입 자료(상세 자료)에 차이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부정수급 원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자료(불입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부적정 지출이 발생하여 환수가 결정된 사업 중 고의성이 있다는 응답은 32개 사업이며, 부정수급의 주된 유형으로는 협의의 부정수급인 ‘기망과 부패’(27개)보다 광의의 부정수급인 ‘오류’(83개)가 많다고 인식함(중복 응답).

- 그러나, 실제 부정수급 원인별 환수 결정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면(불입), 고의성 부정수급(38개)보다 비고의적 부정수급(63개)이 높고,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비고의적인 부정수급 모두 나타나는 사업(30개)도 있음. 즉 사업 담당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실제 부정수급을 비교하면, 고의성은 더 높고, 오류는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부적정 지출에 대한 환수가 이뤄진 사업 중 고의성이 있다는 응답은 23개 사업임. 환수한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의 주된 유형 역시 ‘기망과 부패’는 18개, 오류는 56개 사업으로 나타남(중복 응답).

- 그러나, 실제 부정수급 원인별 환수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39개)보다 비고의적인 부정수급(57개)이 높고,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비고의적인 부정수급 모두 나타나는 사업(30개)도 있음. 즉 사업 부서의 주관적인 인식과 실제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실적을 비교하면, 고의성은 더 높아졌고, 오류는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부정수급 환수 결정과 비교해도, 부정수급 환수 실적은 고의성이 증가하고 비고의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8-2〉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원인별 부정수금액

(단위: 건, 원)

구분		부정수급(환수결정액)		반환 금액	
		건수	반환결정액	건수	환수 실적
고의성	가족간 거래 ¹⁾	8	17,240,600	10	14,900,600
	공모 ²⁾	43	95,164,588	42	95,164,588
	임의처리 ³⁾	452	91,696,930	447	67,651,100
	목적 외 사용	29	229,630,147	27	226,838,480
	허위 ⁴⁾	12,242	17,796,704,120	10,332	8,008,165,625
	소계	12,774	18,230,436,385	10,858	8,412,720,393
비고의성	증빙미비 ⁵⁾	160	228,909,039	151	131,700,053
	중복처리 ⁶⁾	715	2,358,312,382	639	145,819,182
	업무착오 ⁷⁾	31,631	17,870,310,777	29,480	12,121,782,767
	관리미비 ⁸⁾	26,101	12,574,425,891	22,286	7,026,661,380
	소계	58,607	33,031,958,089	52,556	19,425,963,382
합계		71,381	51,262,394,474	63,414	27,863,7773,265

주: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건수는 중복응답이 포함된 것이며, 환수 결정액은 순계 기준임.

조사 항목(8번)과 상세 자료(붙임)를 모두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것임.

1) 가족등록 채용, 가족간 거래에서 부정수급(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2) 내부공모, 외부공모에서 부정수급(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3) 무단담보·양도, 무단입대·인출, 임의사용에서 부정수급(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4)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등에서 부정수급(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5)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입금 정보 등이 미비한 경우 등 부적정지출(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6) 중복등록, 중복신청 등 수급자와 행정 오류로 인한 부적정지출(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7) 규정미숙, 절차 미숙 등 행정 오류로 인한 부적정지출(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8) 자격관리, 평가관리, 신청관리, 과다집행 등으로 부적정지출(광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한편, 부적정 지출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나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은 43개이며, 미환수 금액은 164억 원으로 나타남.

- 미환수 사유로는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분할 납부 중인 사업이 많아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과 환수 사이에 시간 차가 존재함.
-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급여사업에서 생계 곤란으로 인한 체납과 환수할 재산이 없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었으나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드물게,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결정과 실제 환수 사이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배상 명령 등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음.

나. 기준변수를 활용한 부정수급 원인분석

-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기준변수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원인을 분석한 결과, 현물급여일 때,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때, 부정수급 관리주체가 부처의 특별행정기관일 때, 사업 수행부서나 수행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를 갖췄을 때 부정수급의 적발에 따른 환수 결정 중 고의의 부정수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급여 유형) 현물급여는 고의적인 ‘부정수급(53.6%)’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현금 급여(73.3%)와 그 외 급여(52.6%)는 비고의적인 ‘오류’의 비중이 높음.
- (법적 근거)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서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이 높고(82.4%),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에서는 비고의적인 오류에 의한 부적정 지출이 높게 나타남(73.0%).
 - 한편, 보조금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사업은 모두 고의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나타남.
- (관리 주체) 부정수급 관리 주체가 특별행정기관일 때 고의적인 부정수급(74.2%)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 산하기관이 부정수급을 관리할 때는 비고의적인 오류(지자체 71.0%, 그 외 산하기관 88.6%)
 - 한편, 부정수급 관리 주체가 별도로 없는 사업에서 고의적인 부정수급(84.8%)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부처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에서는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정보시스템이 없는 사업에서 고의로 인한 부정수급(51.0%)과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49.0%)은 유사한 수준임.
- (신고체계) 부서와 수행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를 갖춘 사업에서 고의로 인한 부정수급의 비율이 77.4%로 나타났고, 범부처 신고체계나 부처 및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사업에서는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신고체계를 별도로 갖추지 않은 사업에서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64.1%).

〈표 8-3〉 2023년 기준변수와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¹⁾

(단위: 원, %)

기준변수	구분 항목	부정수급(고의성)		오류(비고의성)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급여유형	현금	6,422,762,156	26.7	17,643,360,900	73.3
	현물	1,758,352,687	53.6	1,525,153,787	46.4
	그 외	231,605,550	47.4	257,448,695	52.6
부정수급 관리근거 (법령)	없음	1,097,137,940	82.4	234,780,669	17.6
	있음	7,107,541,913	27.0	19,191,182,713	73.0
	보조금법	208,040,540	100.0	-	-
부정수급 관리주체	중앙부처	-	-	-	-
	지방자치단체	7,281,615,678	29.0	17,853,770,788	71.0
	특별행정기관	551,638,040	74.2	192,266,330	25.8
	그 외 산하기관	167,416,675	11.4	1,305,810,625	88.6
	기타	-	-	-	-
	없음	412,050,000	84.8	74,115,639	15.2
전산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361,964,173	57.3	269,560,841	42.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759,640,891	23.0	15,902,049,318	77.0
	부처 내부 시스템	1,556,603,435	50.8	1,507,812,885	49.2
	홈페이지	124,338,960	38.6	197,381,750	61.4
	없음	1,610,172,934	51.0	1,549,158,588	49.0
신고체계	범부처시스템 및 신고체계	6,139,502,071	26.5	17,046,417,082	73.5
	부처/수행기관 홈페이지	570,105,075	46.2	663,567,585	53.8
	부서/수행기관	888,135,594	77.4	258,732,661	22.6
	없음	814,977,653	35.9	1,457,246,054	64.1

주: 1) 부정수급 적발(환수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부정수급 상세 원인(불입)을 기준으로 고의성과 비고의성으로 재분류함. 이때, 고의성은 가족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목적 외 사용, 허위가 포함되며, 비고의성은 증빙미비, 중복처리, 업무착오, 관리 미비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4. 시사점

□ 2023년 중앙부처 기본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 일반회계 사업에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부정수급 관리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급여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의 하나로 자체 점검표를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와 교육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행정기관 등에서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타 부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가 선순환(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 현금 급여에서 부적정 지출이 높게 나타났지만,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이 높음. 반면에, 현물급여에서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최근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현물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보편적인 현금 급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성, 연령과 같은 보편적인 특성과 한부모가족, 장애 등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는 현금 급여 역시 사후관리가 필요함. 다만, 부정수급과 함께 사각지대 관리(예, 아동수당 미수급 아동의 생존 및 거주 확인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에서 부적정 지출이 높게 나타났지만,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각 법령에서 부정수급을 포함한 사후관리를 적시하도록 개정하거나,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은 144개이나, 이 중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하여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부정수급 실태조사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부정수급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면 대부분 지자체 보조사업이거나 보장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임. 보조금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부정 징후를 발견하여 통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대응 조치를 취함. 그러나, 그 외 전달체계에서 재정과 운영이 분리되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폐쇄형 사업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 e나라도움 시스템 외 특별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의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비 사업이나 출연기관이나 민간 위탁 사업에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이 증빙 미비, 중복 처리, 업무착오, 관리 미비 등 오류로 인한 부적정 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사회보험 시범 조사 주요 결과

1. 사회보험 조사 개요

-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과 사업 지침, 사회보험 관계 전문가와 사회보험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목록화한 사회보험 급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발신 명의의 공문을 활용하여 사회보험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함.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부는 현금 급여로 이뤄져 관계 법령에 사회보험 급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다만, 일부 사회보험 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법령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나, 범정부 사회보장시스템에 명시된 사업과 각 부처 및 사업 부서에서 응답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급여명을 목록화하였음.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물급여로 관계 법령에 사회보험 급여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또한,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나 상태(등급) 등을 바탕으로 이원화된 유사 제도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사업이라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운영이나 관리 등을 담당하기도 함(예,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노인통합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2020년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일부가 범정부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기본조사에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을 별도로 분리하였음.
 - 본 연구에서 사회보험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회보험 급여를 목록화한 결과 총 42개 급여가 있으며, 이 중 41개 사업을 분석 대상에 포함.
 - 조사 대상 42개 급여 중 1개 급여는 조사에 회신하지 않음.

2. 사회보험 조사 대상

가. 조사 대상 사업 현황

-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조사는 5대 사회보험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총 42개 급여를 대상으로 함. 이 중 산재보험 1개 급여만 조사에 회신하지 않음.

〈표 8-4〉 사회보험 기본조사 대상

주관부처	사회보험	급여 구분	사회보험	급여 구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조기재취업수당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훈련비 등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고용창출장려금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산재보험 재활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합병증등 예방관리
		직장이린이집 지원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진폐근로자보호
		청년내일채움공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노령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설급여
		장애연금		재가급여
		유족연금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일시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노후준비서비스		
	건강보험	요양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은 담당 부처 및 담당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현황 조사(원자료)

□ 사회보험을 주관하는 부처와 사회보험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내부 고발과 외부 신고 등도 활용하고 있음.

○ 건강보험 일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서 표본조사를 활용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 표본 선정 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 징후를 사전적으로 탐색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내부고발과 외부 신고 등으로 인지된 대상자를 포함함.
- 사회보험기관은 대부분 별도의 전산시스템과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건강보험은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함께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센터 등을 활용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함.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시스템과 자동경보시스템을 활용하며, 산재보험은 고용보험시스템을 활용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신고 체계는 없다고 응답함.
 - 최근 산재보험에서 부정수급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부정수급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함. 이는 당초 임시조직이었으나, 민원센터 내 상시업무로 전환됨.
 - 국민연금은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은 활용하지 않으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활용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나.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사회보험의 환수 결정 규모는 4,607억 원이며, 이 중 부정수급은 4,032억 원임(환수 결정 대비 87.5%)
 - 고용보험은 법률에 근거한 반환 명령액이 1,032억 원이며, 이 중 부정수급 규모는 467억 원임.
 - 산재보험은 반환 명령액은 54백만 원이며, 부정수급은 54백만 원임.
 - 국민연금은 부당청구액으로 확정된 78백만 원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른 환수 결정 규모는 532억 원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환수 결정 규모와 부정수급 규모가 같음.

○ 건강보험은 법률에 근거하여 급여의 제한, 급여의 정지, 부당이득의 징수를 포함한 환수 결정 규모는 3,041억 원이나, '부당이득의 징수'만 포함하는 경우 3,030억 원임.

- 부당이득은 무면허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2개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요양기관 거짓 진단, 그 밖의 부정한 방법(예, 자격 상실 후 수급,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을 포함하므로, 수급자와 요양기관에 대한 기망, 부패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음.

〈표 8-5〉 2023년 사회보험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단위: 백만 원)

	환수 결정	부정수급
고용보험 ¹⁾	103,272	46,722
산재보험 ²⁾	54	52
국민연금 ³⁾	78	78
노인장기요양보험 ⁴⁾	53,264	53,264
건강보험 ⁵⁾	304,123	303,090
사회보험(계)	460,791	403,206

주: 사회보험은 개별 보험별로 별도의 근거법령에 근거하여 부적정지출을 관리하고 있음.

1) 부적정지출에 따른 반환명령액을 '환수 결정'에 작성하고, 부정수급은 보험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로 작성함.

2) 부적정지출에 따른 반환명령액을 '환수 결정'에 작성하고, 부정수급은 보험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로 작성함.

3) 부당 청구로 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당청구액은 환수 결정이자 부정수급액임.

4) 부당이득의 징수로 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환수결정액과 부정수급액을 동일하게 적용함.

5) 급여의 제한, 급여의 정지, 부당이득의 징수를 포함하여 환수 결정액을 작성하였으며, 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한 환수 결정만 부정수급액에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3. 시사점

□ 2023년 사회보험에 대한 시범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 각 사회보험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일반 재정과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이며, 사회보험은 일부 부처(예, 고용노동부)의 일부 사업(주로, 현금 급여)만 등록되어 있음.

-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본 조사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목록을 정례화하고, 각 급여에 대한 소관 부처와 소관 부서를 명시해야 함.
 - 건강보험은 현물급여로 법령에는 사회보장급여의 명칭이 ‘요양급여’로 제시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행위별(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등), 방법별(빅데이터 분석, 현지 조사, 행정조사 등), 법령(제57조, 제54조, 제53조 등)으로 분리되어 있음. 이런 이유로, 1개의 조사표를 총괄 작성할 담당 부서가 없고, 누락 혹은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함.
 - 그 외 사회보험에서도 관계 법령에 급여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이나 사회보험 기금에서 수행 혹은 사회보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중앙부처 일반 재정사업으로 포함할 것인지, 사회보험기관 사회보험 급여사업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 필요함.
- 개별 사회보험의 법령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부정수급의 적발이나 환수 등에 관한 근거도 다르므로, 개별 보험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은 대부분 ‘고의’로 부정수급을 하는 수급자 혹은 제공기관을 적발하고 있으며,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함.
 - 각 사회보험의 법령에 근거하여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중앙정부의 일반 재정과 공통의 형식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범 조사 주요 결과

1. 지방자치단체 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정을 활용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를 시범 조사함.
-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록된 17개 시도 4,012개 사회보장급여 사업 중 100개 사업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발신의 공문을 통해 조사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대상은 100억 원 이상 예산사업과 시도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10억 원 이상 현금 급여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16개 시도 100개 사회보장급여 사업 중 조사 회신은 100% 완료됨.

2. 지방자치단체 조사 대상

가. 조사 대상 사업(모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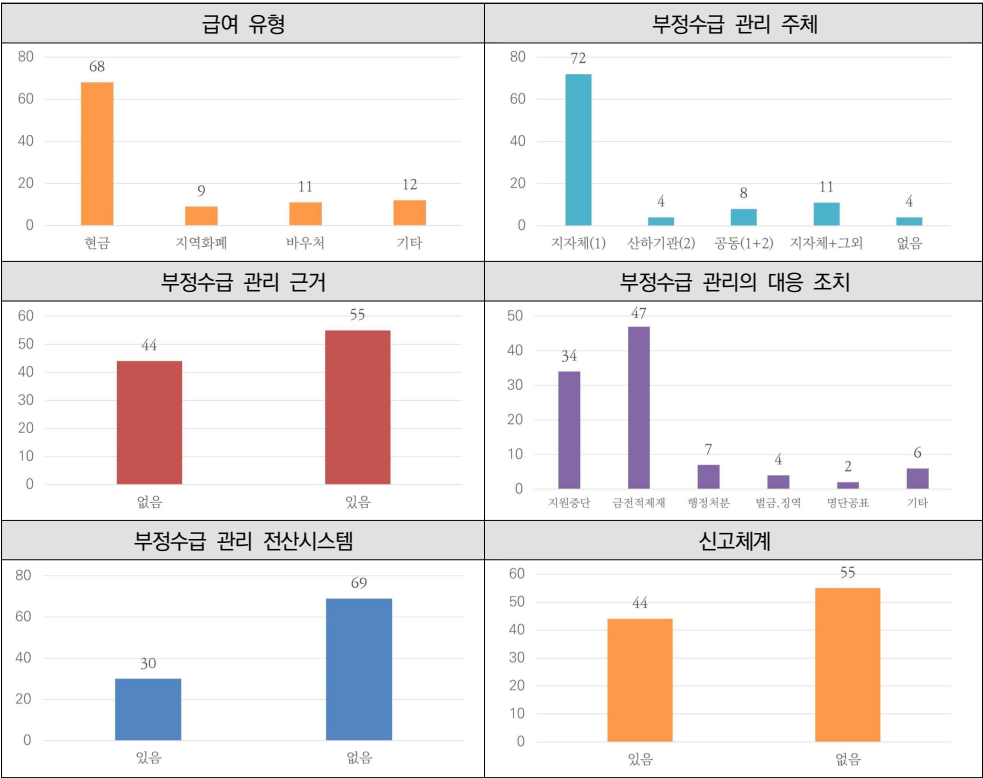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집행 실적은 2022년 기준 1.8조 원임.
- 사회보장급여 사업 수행 기관은 시군구(3,348개)가 가장 많고, 시도-시군구 매칭 사업(334개), 시도 사업(330개) 순으로 나타남.

나. 조사 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현금 급여(68개)가 많으며, 부정수급 관리주체는 대부분 지자체(72개)임.
-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은 55개이며,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조치로는 금전적 제재(47개), 지원중단(34개)에서 높게 나타남.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은 69개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체계를 갖춘 사업은 55개로 나타남.

[그림 8-4]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 결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현황

(단위: 개)



주: 급여유형 중 '그 외'는 현금, 프로그램 지원, 시설 입소, 자원봉사, 기타 등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3. 지방자치단체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규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급여(100개) 중 고의와 오류 등을 포함하는 부적정 지출의 환수 결정 규모는 3억 6천만 원이며, ‘고의, 기망으로 인한 부정수급’ 규모는 75백만 원임.

<표 8-6> 2023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환수 및 부정수급 규모

(단위: 백만 원)

	예산(A)	환수 결정(B)	
			부정수급(B1)
지방자치단체	1,037,130.1	360.8	75.7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원자료).

- 환수 결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사업(약 2억 4천만 원), 현금급여(2억 92백만 원), 시도 본청 사업(1억 89백만 원)과 시도-시군구 매칭 사업(1억 66백만 원)과 지급기관이 시군구(2억 6백만 원)일 때 높게 나타남.
 - 또한, 수급자 자격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2억 81백만 원), 자체시스템을 활용(1억 15백만 원)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 관리(1억 27백만 원)하는 사업에서 높게 나타남.
 - 전 생애 사업(2억 32백만 원)에서 높게 나타남.
- 고의적인 기망과 부패를 포함하는 부정수급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2020년 도입된 사업, 현금 급여, 시도 본청 사업, 시군구 지급, 전 생애 주기를 포함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수급자 자격을 반영하는 사업과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환수 결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4. 시사점

-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시범 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의 사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는 교육부 사업이 시도교육청으로 재정이 이관되어 운영되기 때문임.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는 교육부 사업이 대부분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사업이 아니라 교육복지 사업에 해당함.
 - 향후, 교육부 사업 중 시도교육청 소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와 함께 조사될 필요가 있음.
 - 2023년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4,012개) 중 현금 급여와 예산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함. 원칙적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에 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 도입

3년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일시금 제외), 소액 사업(예, 1천만원 이하)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업무량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 사업을 전수의 10%, 30%, 50%, 70%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 중 50%를 임의 추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매칭 부담에 더하여 자체 사업을 추가 운영하는 경우, 부정수급 관리체계와 부정수급 적발 건수 등 실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 일부(69%)가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회보장급여의 사후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제4절 심층 조사 주요 결과 및 함의

1. 조사 개요

□ 심층 조사는 46개 급여의 보장기관 업무담당자 5,4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2020년 실태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실태조사의 대상 사업 선정 기준('예산 규모 100억 원 이상 현금급여' 사업)을 적용하여 39개 현금급여의 보장기관별 업무 담당자를 포함함.

○ 2023년 실태조사 대상에서 중앙부처가 기본조사의 응답을 거부한 사업을 심층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신 명의의 공문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별로 섭외한 후 이메일로 조사표를 발송하고 조사수행업체에서 조사표를 직접 회신하였음.

- 조사에는 1,923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 대부분은 공무(98.5%)임.
- 지자체 응답자가 92.0%를 차지했으며(군청 36.5%, 시청 30.7%, 구청 24.8%), 교육청 4.4%, 고용센터·보훈(지)방청 등 특별행정기관이 3.2%로 나타남.
- 심층조사 결과는 응답한 사업이나 기관의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와 프로세스,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2. 주요 조사 결과 및 함의

가. 부정수급 관리 실태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가 사업 부서 내에서 이뤄지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공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감사부서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공공기관(75.0%)과 특별행정기관(67.7%)은 정부 대신 공공재(특정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부서는 해당 급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 이와 비교할 때 복지업무를 포괄한 광범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부서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관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시청 41.7%, 군청 44.9%, 구청 42.2%, 교육청 41.7%).
- 보장기관에서 개별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가 있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약 38%).
- 지자체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신고·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64.5%, 8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접수 체계는 유선전화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현장 창구 운영(39.7%), 이메일을 통한 신고 및 접수(21.6%), 온라인(11.4%) 순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으나, 전담 조직은 사업 부서가 속한 국·실(39.1%), 감사조직(20.9%),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16.3%)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음.
- 보장기관에서는 부정수급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59.4%), 공공기관(87.5%)과 특별행정기관(82.5%)과 비교할 때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음.
- 종합적인 일반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시군구(시청 57.0%, 군청 55.1%, 구청 66.6%)와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52.4%)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기 관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부정수급에 대한 인지(접수) 경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이 ‘정기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조사의 비중이 매우 낮은 교육청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는 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45.1%)하지만, 전산시스템과 수기 관리를 병행(34.3%)하거나, 수기 관리(17.5%)만 하는 사업도 있음.

나.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 부정수급을 적발하더라도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과정이 사업 담당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환수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 대응’(60.7%)이 가장 높고,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38.6%), ‘경제적 취약성 등 실제로 환수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24.8%) 순으로 나타남.
 - 많은 보장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급여의 부정 및 오류 수급의 확인과 환수 업무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 대응’은 담당자들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은 초기 상담과 선정을 위한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해당 사업의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한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하지만, 1인당 평균 2.3회 정도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부분의 현금 급여는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없는 사업에서도 수급자격 변경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80.7%).
- 응답자들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는데(27.7%), 특히 교육청(1.2%)과 특별행정기관(11.3%)은 부정수급 예방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낮음. 반면에 시청(27.1%), 군청(33.9%), 구청(25.4%)과 공공기관(62.5%)은 부정수급 예방 교육에 참여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교육의 주체는 정부부처(41.7%), 보장기관 자체교육(40.2%), 광역시도(35.3%)로 나타남.

다. 시사점

-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 보장기관에 대한 심층 조사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실태와 업무 부담,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현금 급여 39개 사업에 대해서 심층 조사하였음. 특히 현금 급여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상 선정 기준’과 ‘보장기관’을 기준 변수로 분석함으로써 동질적인 속성을 가진 현금 급여지만 실제 관리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더하여 정해진 급여를 다루는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므로, 중앙부처의 부정수급 규모를 검증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음.
- 2023년 실태조사는 2020년과 동일한 사업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중앙부처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사업을 심층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이는 향후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조사 대상 선정과 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 심층조사 결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교부금 형태의 공공재정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상자에 대한 초기 상담과 급여 결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사회보장급여신청서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필요가 크지 않다고 인식함. 이와 함께 교육 분야 대부분 사업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이유로, ‘선정’과 ‘급여 적정성’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보편적인 대상에게 제공되는 수당과 서비스 역시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한 부정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시군구와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과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제5절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1. 실태조사 대상 사업 관리 개선 방안

□ 기본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안)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 대한 기본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짐.
 - 첫째, 일반 정부 지출을 기준으로 함.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지방재정,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포함하며, 사회보험기금과 사회보험재정을 포함함.
 - 둘째, 공기업 및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신용보증, 융자, 대환대출 등은 사회보장급여에 포함되지만, 부정수급 실태조사에는 포함하지 않음.
 - 셋째, 조세지출과 요금 감면은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포함하지 않음. 조세지출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자 중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식별하여 세액공제하거나(근로장려금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해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지방세 감면),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하지 않음.

○ 교육부 일부 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으로 목록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시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이 보장기관임.

- 이 사업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기본조사 대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표 8-7〉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외 대상 사업(안)

연번	사회보장급여명	주관부처	비고
1	이동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사업자
2	탈북학생 교육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4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보통교부금
5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6	급식비	교육부	지방이양
7	버팀목대출보증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진흥원보증기금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금융위원회	도시주택공사
9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10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youth 보증사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11	근로·자녀장려금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12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장학재단
1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종료
14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종료
15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종료
16	재가암환자관리	보건복지부	종료
17	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	조세지출

주: 저자 작성

□ 실태조사 사업 사전 정보관리(안)

○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사업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를 통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점검하고 있음¹⁴⁾.

-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은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정보를 수집하여, 가족 간 거래, 사망자 지급분, 지출증빙 미비 등 부정이 의심되는 집행 건을 탐지하는 시스템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
 - 부정징후 통보내역에는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부정징후패턴명, 부정징후 금액, 부정징후 통보일자, 점검 여부, 점검일자, 점검기한 준수 여부, 시스템 등록 여부 등이 포함되며,
 - 각 통보 내역에 대해서 사업 부서는 조치실적(점검방식, 점검기간, 조치실적)과 부정수급 확인 금액 등을 작성해야 함. 이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5월이며, 전년도에 부정 징후 통보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 징후 모니터링을 이관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음.

2. 기본조사 방식 개선 방안

- 보건복지부 발신의 조사 공문을 중앙부처 사회보장급여 담당 부서에 전송하고, 조사표의 회신은 온라인 URL을 활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함.
- 부처 및 사업 담당자가 직접 제출하여 기본조사표를 실시간으로 취합하면, 결과 자료 집계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조사표 검증 절차도 순연하여 이뤄지므로 자료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업무량이 경감될 수 있음.
- URL을 통한 온라인 조사의 LOG 파일을 통해 개별 부처의 조사 참여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이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함으로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예,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가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의 가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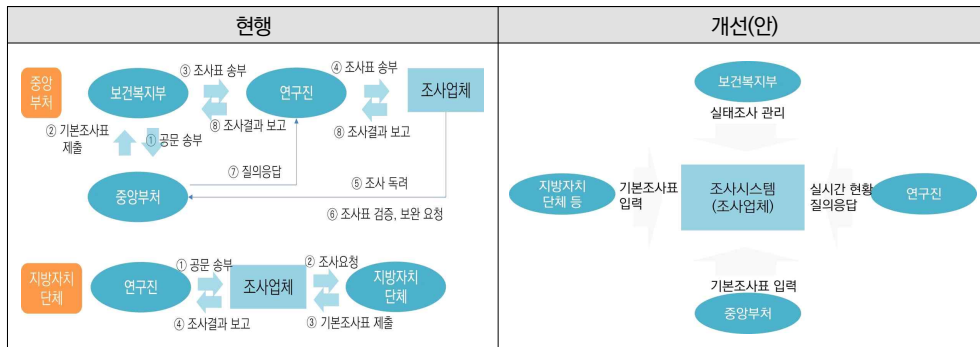
14) 2023년에 총 7,521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493건에 대해 699.8억 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하였음.

- 또한, 온라인 조사의 로그 기록을 활용하여, 최종 조사 완료 시간을 조사 제출 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응답자 배려의 관리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온라인 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능성도 있어, 공문에 근거한 조사표 자료의 제출을 조사업체로 명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복잡한 전달체계를 단순화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기본조사를 일원화함.

-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조사 등을 하나의 시스템(예, VPS)에서 수행함. 다만,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URL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개선하면, 입력 중 멈췄을 때 자동 저장이 가능하며, 잘못 기입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예산 등 오류가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8-5] 조사 방식 개선(안)



주: 저자 작성.

3. 심층 조사 개선 방안

□ 보장기관 심층 조사 문항 간소화(안)

○ 중앙부처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지방관서 포함)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공모

절차에 따른 민간기관 등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함. 따라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것임.

- 이런 이유로,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서는 중앙부처 단위의 취합된 자료 외에 실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가하였음.
- 그러나 심층조사 문항에 부정수급액 등 즉답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아 진입 장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보장기관에 대한 심층조사에서 중복적인 내용을 제거하고 즉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 현재 심층조사 문항의 구성은 활용하되, 타 부서(예, 감사부서 등)의 부서원이나 업무 범위, 업무량을 조사하는 문항은 삭제함.
- 다수의 문항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표 8-8〉 심층조사 문항 개선(안)

항목	개선(안)	개선 내용
조직 및 사업 현황	부서 현황(부서명, 구성원 수) 사회보장급여명(급여 담당자 수) 전년도 연말 기준 수급자(수혜기관) 수	부정수급 관리자 수, 취급하는 사회보장 급여 수 삭제
업무량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체크리스트)	시간 할애, 어려움 순위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방법	부정수급 관리 여부 및 방법 보장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 조직 여부 감사부서의 부정수급 관리 여부	감사부서 관련 문항 대폭 삭제
부정수급 적발 실적	부정수급 적발 실적(건수), 인지 경로 부정수급 조치 실적(건수), 미환수 사유 환수결정액, 환수실적액, 부정수급액	문항 간소화
부정수급 예방 활동	부정수급 예방 활동(체크리스트) - 업무상 활동, 교육 참여	동의 여부, 중요도
제도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체크리스트)	동의 여부, 중요도
일반현황	고용상태, 직급, 공무원 경력, 종사 기간	

주: 저자 작성.

□ 보장기관 심층 조사 대상 선정 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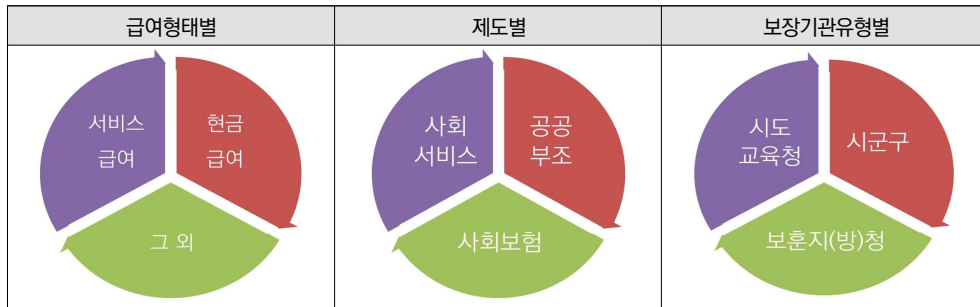
○ 2020년과 2023년의 중앙부처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분석한 결과, 예산 기준과 부정수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50% 사업은 일관됨.

- 이런 이유로, 자칫 3년 실태조사에서 심층조사 대상이 의무성 지출인 현금 급여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음.
- 물론, 예산액과 부정수급의 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중점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부정징후를 탐색하고 조치하는 업무를 수반함.

○ 보장기관 심층조사를 모듈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급여형태, 사회보장제도, 보장기관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식임.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예산액과 부정수금액을 제외하면, 이러한 구분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인식함.

[그림 8-6] 심층조사 대상 선정 기준: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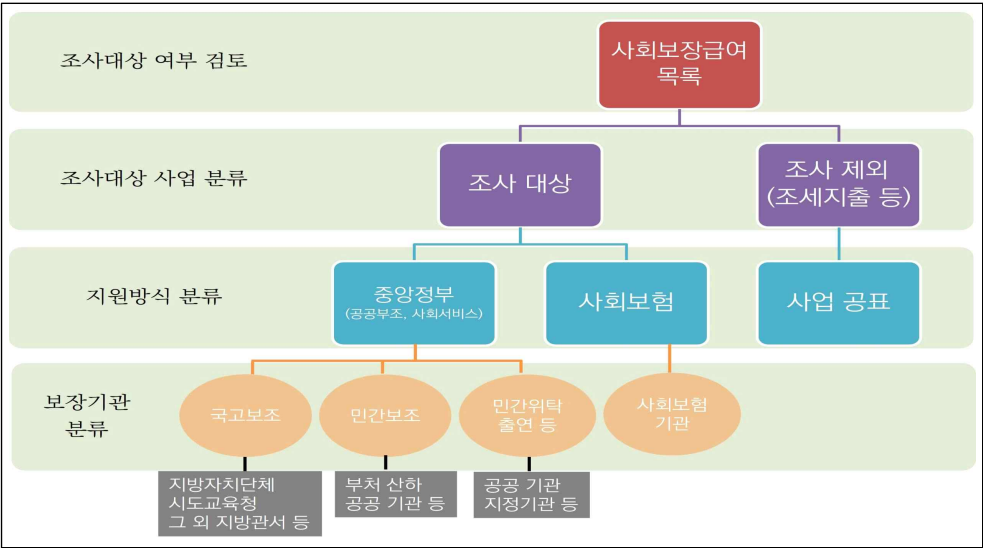


주: 저자 작성.

○ 다만, 순차적으로 모듈방식으로 집중 분석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둔다면, 각각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필요함.

- 기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층조사 대상을 체계적 표집함.

[그림 8-7] 심층조사 대상 선정 기준: 2안



주: 저자 작성.



- 감사원(2015). **감사보고서 -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 감사원(2020). **감사보고서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 I (보조금 분야)**.
- 고경환, 이기호, 신지영, 강지원, 신정우, 정영애(2017).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SOCX) 산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지표 체계 홈페이지(www.index.go.kr)
- 건강보험공단(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통계 연보**.
- 권오성(2021). **뉴노멀 시대의 부정적 지출의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한국행정연구원
- 권오성, 강정석, 김성근, 박상철, 민지혜, 김미곤 ... 신우경(2013).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안 수립**.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권오성, 탁현우(2020).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
- 김문길, 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오혜인(2015).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근, 탁희성, 안성훈, 윤정숙, 박학모, 박준희(2015). **부정수급 사례 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2023).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426호).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보고**. 사회보장위원회, 복지포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사회보장위원회(2023a). **2023 범부처 중앙정부 사업**.
- 사회보장위원회(2023b). **20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 현행화 자료**.
- 신영석, 강희정, 이기주, 박금령(2015). **건강보험 부정적 지출 관리방안 연구**. 한국정보통신(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열린 재정 홈페이지(<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8>)
- 이은영(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 방안**.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임완섭, 강지원, 고혜진, 김문길, 김태완, 안수란, 최혜진, 황도경, 황주희, 이지혜, 고경표, 구정진, 박형준, 정용문, 황정하(2020).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경엽(2010).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 -손해배상금 불성실 신고를 대상으로-**. 한국통계학회. 17(1), 1-8.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 Brief; 사회보장성 기금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

OECD SOCX 홈페이지(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Donald M. Berwick, Andrew D. Hackbarth(2012), Eliminating Waste in US Health Car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07(14): 1513-1516



[부록 1]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367개)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1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O	X
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고용노동부	O	O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O	O
4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고용노동부	O	O
5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X	X
6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X	X
7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고용노동부	O	O
8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고용노동부	O	X
9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용노동부	O	X
1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O	X
11	산재근로자 창업접포지원	고용노동부	O	X
12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O	X
13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고용노동부	O	X
14	산재근로자직업훈련	고용노동부	O	X
15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고용노동부	O	X
16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O	X
17	진폐근로자보호	고용노동부	X	X
1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O	O
19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 등 급여)	고용노동부	O	X
20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	O	X
2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O	X
22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용노동부	O	X
23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고용노동부	O	O
24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노동부	O	O
2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O	O
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고용노동부	O	O
27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용자·지원	고용노동부	O	O
28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고용노동부	O	O
29	장애인인턴제	고용노동부	O	O
3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O	O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31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
32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	○
33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고용노동부	○	○
34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고용노동부	○	○
35	생활안정자금(용자)	고용노동부	○	○
36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37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배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38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39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40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41	이동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X	X
42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X	X
43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부	X	X
44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	○
4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부	X	X
46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교육부	X	X
47	북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교육부	X	X
48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X	X
49	탈북학생 교육지원	교육부	X	X
50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	X	X
51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부	X	X
5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	X	X
53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X	X
54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	○
5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교육부	○	○
56	국가장학금(I, II 유형)	교육부	○	○
57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교육부	○	○
58	인문100년장학금	교육부	○	○
59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	○
60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	○	○
6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교육부	○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62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	○
63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부	○	○
64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부	○	○
65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부	X	X
66	급식비	교육부	○	○
67	영주귀국정착금	국가보훈처	○	○
68	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	○	○
69	간호수당	국가보훈처	○	○
70	고엽제환자2세수당	국가보훈처	○	○
71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국가보훈처	○	○
72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	○
73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처	○	○
74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처	○	○
75	보상금	국가보훈처	○	○
76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처	○	○
77	사망일시금	국가보훈처	○	○
78	재해보상금	국가보훈처	○	○
79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	○	○
80	고엽제특별지원	국가보훈처	○	○
81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보훈처	○	○
82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국가보훈처	○	○
83	보훈병원 진료	국가보훈처	○	○
84	위탁병원진료	국가보훈처	○	○
85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보훈처	○	○
86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처	○	○
87	양로지원	국가보훈처	○	○
88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국가보훈처	○	○
89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내항여객선,KTX등)	국가보훈처	○	○
90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처	○	○
91	재해위로금지급	국가보훈처	○	○
9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보훈처	○	○
9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보훈처	○	○
9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보훈처	○	○
95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처	○	○
96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보훈처	○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97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국가보훈처	○	○
98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국가보훈처	○	○
99	손자녀가계지원비	국가보훈처	○	○
100	애국지사특별예우금	국가보훈처	○	○
101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처	○	○
102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국가보훈처	○	○
103	제대군인 대부지원	국가보훈처	○	○
104	제대군인전직지원금	국가보훈처	○	○
105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국가보훈처	○	○
106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X	X
107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X	X
108	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X	X
109	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	X	X
110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X	X
111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국토교통부	○	○
112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	국토교통부	○	○
11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
114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
115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국토교통부	○	○
116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
11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	○
118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X	X
11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X	X
120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X	X
121	버팀목대출보증	금융위원회	○	○
122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금융위원회	○	○
12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금융위원회	○	○
124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금융위원회	X	X
125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youth 보증사업)	금융위원회	X	X
12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금융위원회	X	X
127	근로·자녀장려금	기획재정부	○	○
128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
129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
130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
131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
132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133	양곡합인	농림축산식품부	○	○
134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
135	농업인안전보험	농림축산식품부	○	○
136	학교우유급식	농림축산식품부	○	○
137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대검찰청	○	○
138	큰글자책 보급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X	X
139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	○
140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
141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
14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
143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X	X
144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	○
145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방송통신위원회	○	○
146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
147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보건복지부	○	○
14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	○
149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
150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
15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	○
15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	X
153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	○	X
154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
155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보건복지부	○	○
156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	○
157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보건복지부	○	○
158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	○
159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보건복지부	○	○
160	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	○
161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보건복지부	○	○
162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보건복지부	○	○
163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
164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
165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	○
166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
167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
168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169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보건복지부	○	○
170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보건복지부	○	○
171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	○
172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	○
173	의료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	○	○
174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	○	○
175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	○
176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보건복지부	○	○
177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
17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
179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	○
180	치매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	○
181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
18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	○
183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	○
18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	○
185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보건복지부	○	○
186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	○
187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보건복지부	X	X
18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
189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보건복지부	○	○
190	방과후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	○
191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	○
192	다문화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X	X
193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X	X
19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X	X
195	부모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	○
196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	○	○
197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보건복지부	X	X
198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X	X
199	장애아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	○
200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	X
20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보건복지부	○	○
20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
2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X	X
20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205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
206	의사상자지원	보건복지부	○	○
207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
208	경제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	○	○
20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	○
21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보건복지부	○	○
211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보건복지부	○	○
212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	○	○
213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	○
214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	○	○
215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	○
216	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
217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
218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	○
219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	○
220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
221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X	X
222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	○
22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보건복지부	○	X
224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	X
225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	X
226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보건복지부	○	X
227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	X
228	노후준비서비스	보건복지부	○	○
229	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	○	○
230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	○
231	노숙인등 복지지원	보건복지부	○	○
232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 II)	보건복지부	○	○
233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	○
234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
235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
236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X	X
237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
238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
239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X	X
240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241	장애인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	○
24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보건복지부	X	X
243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
24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	○
24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
2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X	X
24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
24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	○
249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	○
250	언어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
251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보건복지부	○	○
252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	○
253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	○
254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	○
255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
256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
257	장애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	○
258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보건복지부	○	○
259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보건복지부	○	○
260	시각장애인음악재활센터지원	보건복지부	○	○
261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
262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보건복지부	○	○
263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
264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보건복지부	○	○
265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보건복지부	○	○
266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	○
26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
26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
269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부	○	○
270	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	○
271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X	X
272	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	○
273	재가암환자관리	보건복지부	X	X
274	한센인 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	○
275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
27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27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	○
278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	○
27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	○
280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	○
28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
282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보건복지부	○	○
283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	○	○
284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	○
285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	○
28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청	○	○
287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	○
288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	○	○
28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
290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	○
291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산업통상자원부	○	○
292	공공(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지원(구 보급자리 주택 신재생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	○
293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회복지시설)	산업통상자원부	○	○
294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	○
295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여성가족부	○	○
29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	○	○
297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	○
298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여성가족부	○	○
299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여성가족부	○	○
300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여성가족부	○	○
30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	○
30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	○
3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여성가족부	○	○
304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여성가족부	○	○
30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여성가족부	○	○
30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여성가족부	○	○
307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	○
308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여성가족부	○	○
309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	○
31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	○
31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312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
313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여성가족부	○	○
31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여성가족부	○	○
31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	○
31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
317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여성가족부	○	○
318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	○
31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	○
320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	○
32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여성가족부	○	○
322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	○
32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	○
324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	○
325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여성가족부	○	○
32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가족부	○	○
327	청소년국제교류	여성가족부	○	○
32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여성가족부	○	○
329	청소년활동지원	여성가족부	○	○
330	내일이룸학교 운영	여성가족부	○	○
331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	○
332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	○
3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	○
334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외교부	○	○
335	소상공인지원(용자)	중소벤처기업부	○	○
336	여성기업 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X	X
33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중소벤처기업부	X	X
338	여성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X	X
339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
340	장애인기업 창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	○	○
34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
342	장애인창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	○	○
343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
344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	○
34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질병관리청	○	○
34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	○

연번	사업명	소관부처	자료 회신	분석 대상
347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	○
348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질병관리청	○	○
349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통일부	○	○
350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통일부	○	○
351	납북피해자 지원	통일부	○	○
352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통일부	○	○
353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통일부	○	○
354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통일부	○	○
355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통일부	○	○
356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통일부	○	○
357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통일부	○	○
358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통일부	○	○
359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통일부	○	○
36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해양수산부	○	○
361	어촌생활돌봄지원	해양수산부	○	○
362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해양수산부	○	○
363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	○
364	풍수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	○
365	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	X	X
366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부	○	○
367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	○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중 조사 대상 사업 목록(100개)

연번	사업명	시도	시군구명	부서명
1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경기도	본청	복지사업과
2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본청	복지정책과
3	출산지원금 지급	부산광역시	본청	출산보육과
4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	본청	복지정책과
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전광역시	본청	복지정책과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노인장애인과
7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서울특별시	본청	주택정책과
8	청년희망통장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본청	청년정책과
9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본청	복지정책과
10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본청	청년정책과
11	장애인 재활수당	부산광역시	본청	장애인복지과
12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보훈청
13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경기도	본청	주택정책과
14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여성가족과
15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본청	건축주택과
16	보훈가족 격려	인천광역시	본청	보훈과
17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인천광역시	본청	장애인복지과
18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대구광역시	본청	장애인복지과
19	보훈예우수당 지원	인천광역시	본청	보훈과
20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본청	복지정책과
21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본청	청년정책과
22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사업	경기도	본청	주택정책과
2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대전광역시	본청	복지정책과
24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일자리과
25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노인장애인과
26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강원도	본청	교육법무과
27	울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지원	강원도	본청	교육법무과
2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및 학용품비 지원	부산광역시	본청	여성가족과
29	출산 육아 지원금	인천광역시	본청	영유아정책과
30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광주광역시	본청	5·18선양과
31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광주광역시	본청	출산보육과
32	부산형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본청	노인복지과
33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복지정책과
34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부산광역시	본청	건강정책과
35	장애인생활지원금	광주광역시	본청	장애인복지과

연번	사업명	시도	시군구명	부서명
36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본청	건강증진과
37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산광역시	본청	아동청소년과
38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39	효행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노인장애인과
4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	대구광역시	본청	청소년과
41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울산광역시	본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42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울산광역시	본청	장애인복지과
43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본청	청년정책과
4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본청	영유아정책과
4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본청	주택정책과
46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광역시	본청	가족돌봄과
47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본청	복지정책과
48	광주출생육아수당	광주광역시	본청	출산보육과
4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대구광역시	본청	청소년과
50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본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5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서울특별시	본청	복지정책과
52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특별시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
53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경기도	본청	복지사업과
5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본청	보훈과
5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대구광역시	본청	복지정책과
56	참전명예수당 지급	부산광역시	본청	총무과
57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강원도	본청	농정과
5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강원도	본청	복지정책과
59	누리과정 운영	충청북도	본청	복지정책과
60	가정위탁 양육지원	경기도	본청	아동돌봄과
61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	본청	아동돌봄과
6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본청	건강증진과
6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본청	청년복지정책과
64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보조지원 (만 5세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충청남도	본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65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 (舊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경기도	본청	청년복지정책과
6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본청	버스정책과
67	경기도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본청	농업정책과

연번	사업명	시도	시군구명	부서명
68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기도	본청	복지정책과
69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본청	청년복지정책과
70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경기도	본청	노인복지과
71	누리고정 차액보육료 지원	경기도	본청	보육정책과
72	도비 장애수당	경기도	본청	장애인복지과
73	장애인활동지원	경기도	본청	장애인복지과
7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기도	본청	노인복지과
7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	본청	지역돌봄복지과
76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친환경농업정책과
77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	본청	청년복지정책과
78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본청	장애인복지과
79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3~5세 차액보육료 지원	부산광역시	본청	출산보육과
80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81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경기도	화성시	버스혁신과
82	경상남도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경상남도	본청	통합교육추진단
83	아동급식 지원	경상남도	본청	아동청소년과
84	창원시장예인활동지원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85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광주광역시	본청	출산보육과
86	공공근로사업	대구광역시	본청	일자리노동정책과
87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서울특별시	본청	보육담당관
88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인천광역시	본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89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인천광역시	본청	영유아정책과
90	인천형(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천광역시	본청	장애인복지과
9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인천광역시	본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92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	전라남도	본청	여성가족정책관
93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라남도	본청	장애인복지과
94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전라남도	본청	농업정책과
95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전라남도	본청	농업정책과
96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전라북도	본청	농산유통과
97	출산축하용품 지원	전라북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98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충청남도	본청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99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	충청남도	본청	장애인복지과
100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	충청남도	본청	교통정책과

[부록 3]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 ※ : 입력란(항목별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사업 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사업명 ('별첨1' 사회보장급여목록(중앙) 확인)	
세부사업명(0000-000) ※ 열린재정 및 부처별 예산설명서에 등록된 예산코드 작성	

① 사업 담당자

소관부처	실·국	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② 사업 및 예산 정보

- ※ 2022년 결산 공통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보장사업의 수행에 해당하는 예산 모두 기입(여비,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해당없는 항목 제외. 필요시 줄 추가)

연번 ¹⁾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²⁾	목	세목	2022년 집행액(단위 : 원)		
						계	국비 ³⁾	지방비 ⁴⁾
	일반 회계	00사업	▲▲사업	330	01			
			계					

- 1) 같은 부서에 여러 개의 사업을 작성하는 경우, 연번으로 구분
 2) 1개의 세부사업 내에 내역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내역사업별로 작성
 3) 국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4) 지방비는 국비에 매칭되는 비용만 포함

③ 사업 지원 형태 (기입란에 '1'로 표기, 지원형태에 대한 설명은 '별첨2' 참조)

- ※ 지원형태가 복수일 경우 표기란에 예산규모가 가장 큰 지원형태는 '1', 그 다음은 '2'로 기입 (2순위까지만 기입)

	현금	현물 (서비스 포함)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그 외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
선택							

④ 부정수급* 관리 근거

*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 모두를 포함

1. 근거법령

근거법령 ¹⁾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해당 모든 조치 '√'로 기입)	주요 대응 조치 (2순위까지 기입)			
			1순위		2순위	
유무 (○, ×)	법령명	() 지원중단 금전적 제재 ()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① 지원중단 ②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 벌금, 징역 등 형벌 () 명단공표 () 기타 : 기입	③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⑤ 명단공표 ⑥ 기타 : 기입 ⑦ 대응 조치 없음			

2. 관련 지침 등²⁾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사업안내 및 매뉴얼)

유무 (○, ×)	지침명

- 1)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2)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은 제외

⑤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지자체	소속·산하기관	그 외
(예시) 시군구, 보건소	00지청, 00공단	부처 직접 관리 등

※ 지자체와 소속·산하기관, 그 외 중 해당 난에 기재

⑥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여부 (○, ×)	시스템명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운영여부 (○, ×)	신고체계 명칭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예시) ○	00시스템	○	00시스템

※ 신고체계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

7 부정수급 파악 및 부정수급 유형

파악 여부 (○, ×)	부정수급 파악(○)→ 파악방법 ¹⁾	부정수급 파악(×)→ 미파악 사유(보기번호기입)
	☐ 감사원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 부처 내 자체감사 결과 통보 ☐ 경찰수사결과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신고 ☐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통보 ☐ 각 부처 플랫폼 및 전산시스템 ²⁾ (예, 복지로 등) ☐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	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 ② 부정수급 규모가 작음 ③ 그동안 계속 관리하지 않아서 ④ 집행기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⑤ 업무 과중으로 부정수급 현황 파악 노력 없음 ⑥ 부정수급 발생에 대한 환수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⑦ 기타 (기입:)

1) 해당하는 파악 방법에 '√'로 표기, 중복 표기 가능

2) e나라도움 외 각 부처 혹은 사업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플랫폼과 전산시스템이 있는 경우(예, 복지로)에 기입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합계)

※ 기획재정부 주관 부처별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실적 양식을 활용함.

※ 주된 유형은 '별첨3' 참조

(건, 원)

적발(환수결정) ¹⁾	건수 ⁴⁾	국비(원)	지방비(원)	고의성	주된 유형(√)
	불입파일 합계 A와 일치	국비+지방비의 합이 불입파일 합계 C와 일치		○, ×	☐ 기망 ☐ 부패 ☐ 수급자 오류 ☐ 행정 오류

환수실적 ²⁾	건수 ⁴⁾	국비(원)	지방비(원)	고의성	주된 유형(√)
	불입파일 합계 D와 일치	국비+지방비의 합이 불입파일 합계 E와 일치		○, ×	☐ 기망 ☐ 부패 ☐ 수급자 오류 ☐ 행정 오류

주요 미환수내역 ³⁾	건수 ⁴⁾	금액(원)	상세사유

1) 제재부가금 등을 제외한 부정수급 반환결정액(국비+지방비)만 작성

2) 제재부가금 등을 제외한 부정수급액 중 실제 환수 실적만 작성

3) 제재부가금 등을 제외한 부정수급 원금(국비+지방비) 중 미환수금과 미환수 사유 작성

4) 1인(혹은 1개소)이 10건 적발된 경우, 1건으로 작성

붙임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첨3 참조)별 상세현황

※ 한글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명 :

(단위 : 건, 원(국비+지방비))

구분			부정수금액 (환수 결정액 ¹⁾)			반환 금액 ²⁾ (환수 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부정 수금액	반환 결정액								
고 의 성	가족간 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담보·양도											
		무단임대·인출											
		임의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비 고 의 성	증빙미비(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중복처리(중복등록, 중복신청)												
	업무착오(규정미숙, 절차 미숙)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신청관리, 과다집행 등 관리 미흡)												
합계 ³⁾													
			A	B	C	D	E	F	G	H	I	J	K

1) 환수결정 기준 : '22년도에 발생한 반환결정액(부정수금액과 반환결정액이 상이한 경우 부정수금액과 반환결정액을 각각 작성/동일한 경우 반환결정액만 작성)

2) 환수실적 기준 : '22년도 내 반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3) 합계: 1) 부정수금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건수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건수와 동일해야함

1) 부정수금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금액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합계(국비+지방비)와 동일해야함

별첨2

지원형태 설명자료

※ '③ 사업 지원 형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에 등록된 해당 급여의 '지원형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수정 가능

○ 해당 사회보장급여에 2개 이상의 지원 형태가 있다면 2순위까지만 기입

* 복합적인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지원형태가 1순위가 됨

(예시1)

-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료 지원(전월세 비용 지원)은 수급자에게 현금이 직접 이전되는 현금급여지만 수선유지급여는 수선·보수 등이 제공되는 현물급여임
- ☞ 주거급여에서 현금급여의 예산규모가 현물급여보다 더 크므로 '③ 사업 지원 형태'의 '현금급여'란에 '1', '현물급여'란에 '2'로 표기

(예시2)

- 정부가 어떤 보험에 대해 가입비 지원을 하고자 할 때
 - 1) 가입비 일부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현금급여'
 - 2) 지원대상이 감면된 일부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 ☞ '대여/감면'
 - 3) 정부가 해당 사업의 가입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권을 지원대상에 발급 ☞ '바우처'

□ 현금급여

○ 본인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에게 화폐 형태(현금)로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형태로, 급여의 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

- 급여의 대상이 해당 급여(서비스)의 수요자인 개인 또는 가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현금형태(현금, 계좌이체 등)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

(예시)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금전으로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 주거급여 중 임차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를 현금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 현물급여

○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

- 예를 들어 교과서 지원사업에서 교육청이 학생에게 교과서대를 직접 이전하고 학생이 그 돈을 학교에 교과서대로 지불하게 되면 현금급여 사업이 되지만, 교육청이 학교에 교과서대를 지불하고 학교가 학생에게 교과서를 지급하게 되면 이는 현물급여가 됨

(예시)

- 학교우유급식 : 200ml 우유(현물)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 내외 무상지원
-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 대상이 되는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LH에서 공사를 시행)
-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가 대표적임.

□ 바우처

○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급여지원형태로서 바우처는 정해진 용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제공한 증표(이용권)를 의미함

* 선택의 폭이 현물급여에 비해 넓고, 현금급여에 비해 제한적

(예시)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대여/용자, 감면

○ (대여/용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 대상 집단에 대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해 주는 것**

(예시)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일정 요건의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등을 무보증 또는 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소득요건에 비해 낮은 이자로 대출 가능)

○ (감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급여 수혜자 집단에 대해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비용을 줄여주는 것(면제 포함)(수급자 지원)**

(예시)

- 이동통신요금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이동통신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
-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지원 :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를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지원

□ 시설입소

○ 지원 대상자가 **입소(거주) 형태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공급자가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운영비(인건비, 부식비, 관리비 등) 등에 대한 관련 지원을 의미**

- 관련 지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도 포함되므로 아래 제시된 ‘프로그램’과 구분하기 모호한 측면이 발생. 따라서 **급여 내용이 입소시설 운영과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된 경우 ‘시설입소’로 선택**

(예시) 노숙인 등 복지지원 :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프로그램비 지원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 프로그램

○ 급여 수혜자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사회서비스)을 제공하는 공급자(사회보장 관련 기관 포함)에게 **해당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서비스 제공비용, 운영비 등) 등을 지원**

* 사업(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지원형태 포함 가능

(예시)

-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희망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단기 연수사업,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수행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 청소년체험활동, 기초학습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활동, 귀가지도 등 프로그램 단위의 포괄적 지원 수행

□ 자원봉사

○ 자원봉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예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다문화/탈북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지원

별첨3		부정수급 상세 유형 설명
대분류	소분류	예시
가족 간 거래	가족등록*채용	법 및 지침, 사업 안내에 명시한 채용(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족을 채용(등록)한 경우
	가족간거래	법 및 지침, 사업 안내에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가족을 지정하여 거래하는 경우
공모	내부공모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개최한 것처럼, 야근을 하지 않고 야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단, 내부자로 한정된 경우)
	외부공모	급식업체가 식자재 비용을 부풀리기하여 결재하고, 차액을 기관장에게 제공하거나 차액만큼 기관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임의 처분	무단 대여	공공재정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중앙관서의 장 혹은 보장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여·양도·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무단 양도	
	무단 담보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중앙관서의 장 혹은 보장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인출하는 경우
	무단 인출	
목적 외 사용		보조금 등 목적이 정해진 공공재정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허위	허위신청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를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허위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대리출석을 한 경우
	허위결제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로 결제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과소하게 청구하는 경우
	자부담금 대납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당한 보조금 외 자부담금까지 수령한 경우
	가격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과다하게 수령하는 경우
증빙 미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카드영수증 미비	카드영수증을 미제출한 경우
	기타 증빙	기타 이용권, 입장권, 참석자 등을 미제출한 경우
중복 처리	중복 등록	서로 다른 공공재정사업에 중복해서 이용자로 등록하고, 각 사업의 배타적인 참여자로 처리한 경우(단, 각 사업별로 기간을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중복 신청	서로 다른 공공재정사업에 중복해서 이용을 신청한 경우(단, 각 사업별 기간을 다르게 설정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중복 증빙	하나의 증빙 서류를 서로 다른 공공재정사업의 사용으로 증빙한 경우
업무 착오	규정 미숙	규정이나 사업 안내에 제시된 내용(절차, 사용, 거래처 등)에 대한 인지가 미숙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거래처 착오	
관리 미비	자격관리 미흡	전산시스템의 오류나 정보 변동의 시차, 신청자의 사정 변경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경우
	평가관리 미흡	
	신청관리 미흡	
	과다 집행	예산을 초과한 집행, 집행과 정산의 단순 오류, 1개 사업을 쪼개 분리하여 계약하는 경우 등 관리소홀에 따른 부적정 지출
	집행 오류	
	정산 오류	
	분리 계약	

[부록 4] 사회보험기관 기본조사표

〈고용보험〉

※ : 입력란(항목별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사업 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급여명	
---------	--

① 사업 담당자(부처 기준)

소관부처	실·국	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② 사회보험기관 담당자(부정수급 관리 담당 기준)

기관명	실·국	부(팀)	부장	담당자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③ 사업 및 예산 정보

※ 2022년 결산 공통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보험 중 수급자 혹은 사회보험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사회보험급여의 예산을 모두 기입

연번 ¹⁾	회계명	급여 종류 ²⁾	급여 형태 ³⁾	목	세목	2022년 집행액(단위 : 원)
		▲▲급여		330	01	
계						

1) 하나의 보험에 여러 개의 급여가 있는 경우, 연번으로 구분

2) 급여별로 집행액 작성

3) 급여형태는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프로그램, 시설임소, 자원봉사 중 선택(별첨1 참조)

④ 부정수급* 관리 근거

*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 모두를 포함

1. 근거법령

근거법령 ¹⁾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해당 모든 조치 '√'로 기입)	주요 대응 조치 (2순위까지 기입)			
			1순위		2순위	
유무 (○, ×)	법령명	() 지원중단 () 금전적 제재 (환수, 장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① 지원중단 ② 금전적 제재 (환수, 장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 벌금, 징역 등 형벌 () 명단공표 () 기타 : 기입	③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⑤ 명단공표 ⑥ 기타 : 기입 ⑦ 대응 조치 없음			

2. 관련 지침 등²⁾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사업안내 및 매뉴얼)

유무 (○, ×)	지침명

1)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2)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은 제외

⑤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① 부처 직접 수행			② 사회보험기관에서 수행			③ 그 외 (부처-보험기관 공동, 타 기관)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상시조직	임시조직
(예시) ○							

※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로 표기

⑥ 부정수급 관리 방법(2022년 기준)

① 전수조사		② 표본조사	
대상선정 기준	대상 수(2022년)	표본 선정기준	표본 수(2022년)
(예시) 수급자, 제공기관	○○○○○명	DB를 활용한 표본 랜덤 추출	○○○○○명

※ 각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방법과 대상 선정 기준 작성

⑦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결과 공개 방법	
운영여부 (○, ×)	시스템명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운영여부 (○, ×)	신고체계 명칭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공개여부 (○, ×)	공개 방법
(예시) ○	00시스템	○	00시스템	○	정보공시, 홈페이지

※ 신고체계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

⑧ 고용보험급여 관리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세부 항목 기준

구분	급여별	대상별	사례별(원인별)
해당 여부 (○, ×)	○, ×	○, ×	○, ×
세부 항목 제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급여자, 제공기관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 개입형, 5인 이상 공모형 수급자 단독형

※ 해당하는 파악 방법 표시 후 세부 항목 기재 / 중복 표기 가능

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2022년 기준)

〈사업별 부당청구 및 환수〉

구분	대상 기관수 (개소)	조사 대상 기관수 (개소)	부당청구 기관 수 (개소)	청구 지급액 (원)	부당청구액 (원)	환수	
						환수금액 (원)	환수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육아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구분	부정수급 적발		지급제한	
	대상자(명)	금액(원)	대상자(명)	비율(%)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				

붙임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 상세현황

※ 한글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명 :

(단위 : 건, 원(국비+지방비))

구분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액 ¹⁾)		반환 금액 ²⁾ (환수 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부정 수급액	반환 결정액								
고 의 성	가족간 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담보·양도											
		무단임대·인출											
		임의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비 고 의 성	증빙미비(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중복처리(중복등록, 중복신청)												
	업무착오(규정미숙, 절차 미숙)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신청관리, 과다집행 등 관리 미흡)												
합계 ³⁾			<i>A</i>	<i>B</i>	<i>C</i>	<i>D</i>	<i>E</i>	<i>F</i>	<i>G</i>	<i>H</i>	<i>I</i>	<i>J</i>	<i>K</i>

1) 환수결정 기준 : '22년도에 발생한 반환결정액(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이 상이한 경우 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을 각각 작성/동일한 경우 반환결정액만 작성)

2) 환수실적 기준 : '22년도 내 반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3) 합계: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건수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건수와 동일해야함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금액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합계(국비+지방비)와 동일해야함

〈산재보험〉

※ : 입력란(항목별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사업 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급여명	
---------	--

① 사업 담당자(부처 기준)

소관부처	실·국	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② 사회보험기관 담당자(부정수급 관리 담당 기준)

기관명	실·국	부(팀)	부장	담당자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③ 사업 및 예산 정보

※ 2022년 결산 공통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보험 중 수급자 혹은 사회보험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사회보험급여의 예산을 모두 기입

연번 ¹⁾	회계명	급여 종류 ²⁾	급여 형태 ³⁾	목	세목	2022년 집행액(단위 : 원)
		▲▲급여		330	01	
계						

1) 하나의 보험에 여러 개의 급여가 있는 경우, 연번으로 구분

2) 급여별로 집행액 작성

3) 급여형태는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 중 선택(별첨1 참조)

④ 부정수급* 관리 근거

*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 모두를 포함

1. 근거법령

근거법령 ¹⁾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해당 모든 조치 '√'로 기입)	주요 대응 조치 (2순위까지 기입)			
			1순위		2순위	
유무 (○, ×)	법령명	() 지원중단 ()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① 지원중단 ②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 벌금, 징역 등 형벌 () 명단공표 () 기타 : 기입	③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⑤ 명단공표 ⑥ 기타 : 기입 ⑦ 대응 조치 없음			

2. 관련 지침 등²⁾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사업안내 및 매뉴얼)

유무 (○, ×)	지침명

- 1)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2)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은 제외

⑤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① 부처 직접 수행			② 사회보험기관에서 수행			③ 그 외 (부처-보험기관 공동, 타 기관)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상시조직	임시조직
(예시) ○							

※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로 표기

⑥ 부정수급 관리 방법(2022년 기준)

① 전수조사			② 표본조사	
대상선정 기준	대상 수(2022년)		표본 선정기준	표본 수(2022년)
(예시) 수급자, 제공기관	○○○○○명		DB를 활용한 표본 랜덤 추출	○○○○○명

※ 각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방법과 대상 선정 기준 작성

⑦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결과 공개 방법	
운영여부 (○, ×)	시스템명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운영여부 (○, ×)	신고체계 명칭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공개여부 (○, ×)	공개 방법
(예시) ○	00시스템	○	00시스템	○	정보공시, 홈페이지

※ 신고체계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

⑧ 산재보험급여 관리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세부 항목 기준

구분	급여별	대상별	사례별(원인별)
해당 여부 (○, ×)	○, ×	○, ×	○, ×
세부 항목 제시	평균임금 조작, 휴업급여 부정(부당)수급, 장해(폐질)상태 상이(조작), 장해연금 부정(부당)수급,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미신고, 간병급여 부정수급, 이송료 부당(부정)수급, 기타(보험급여관련)	사업주, 급여자, 제공기관	재해경위 조작, 근로자성 조작, 사업장 바뀌치기, 재해자 바뀌치기, 성립일 조작, 적용관계 조작(공사금액, 근로자수 등 조작), 기타(최초요양)

※ 해당하는 파악 방법 표시 후 세부 항목 기재 / 중복 표기 가능

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2022년 기준)

〈사업별 부당청구 및 환수〉

구분	대상 기관수 (개소)	조사대상 기관수 (개소)	부당청구 기관 수 (개소)	청구지급액 (원)	부당청구액 (원)	환수	
						환수금액(원)	환수율(%)
평균임금 조작							
휴업급여 부정(부당)수급							
장해(폐질)상태 상이(조작)							
장해연금 부정(부당)수급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미신고							
간병급여 부정수급							
이송료 부당(부정)수급							
재해경위 조작							
근로자성 조작							
사업장 바뀌치기							
재해자 바뀌치기							
성립일 조작							
적용관계 조작 (공사금액, 근로자수 등 조작)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요양관리 실패							

붙임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 상세현황

※ 한글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명 :

(단위 : 건, 원(국비+지방비))

구분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액 ¹⁾)		반환 금액 ²⁾ (환수 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부정 수급액	반환 결정액								
고 의 성	가족간 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담보·양도											
		무단임대·인출											
		임의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비 고 의 성	증빙미비(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중복처리(중복등록, 중복신청)												
	업무착오(규정미숙, 절차 미숙)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신청관리, 과다집행 등 관리 미흡)												
합계3)			<i>A</i>	<i>B</i>	<i>C</i>	<i>D</i>	<i>E</i>	<i>F</i>	<i>G</i>	<i>H</i>	<i>I</i>	<i>J</i>	<i>K</i>

1) 환수결정 기준 : '22년도에 발생한 반환결정액(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이 상이한 경우 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을 각각 작성/동일한 경우 반환결정액만 작성)

2) 환수실적 기준 : '22년도 내 반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3) 합계: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건수 합계는 ⑧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건수와 동일해야함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금액 합계는 ⑧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합계(국비+지방비)와 동일해야함

〈국민연금〉

※ : 입력란(항목별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사업 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급여명	
---------	--

① 사업 담당자(부처 기준)

소관부처	실·국	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② 사회보험기관 담당자(부정수급 관리 담당 기준)

기관명	실·국	부(팀)	부장	담당자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③ 사업 및 예산 정보

※ 2022년 결산 공통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보험 중 수급자 혹은 사회보험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사회보험급여의 예산을 모두 기입

연번 ¹⁾	회계명	급여 종류 ²⁾	급여 형태 ³⁾	목	세목	2022년 집행액(단위 : 원)
		▲▲급여		330	01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계						

1) 하나의 보험에 여러 개의 급여가 있는 경우, 연번으로 구분

2) 급여별로 집행액 작성

3) 급여형태는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융자, 감면, 프로그램, 시설임소, 자원봉사 중 선택(별첨1 참조)

4 부정수급* 관리 근거

*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 모두를 포함

1. 근거법령

근거법령 ¹⁾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해당 모든 조치 '√'로 기입)	주요 대응 조치 (2순위까지 기입)			
			1순위		2순위	
유무 (○, ×)	법령명	() 지원중단 ()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① 지원중단 ②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 벌금, 징역 등 형벌 () 명단공표 () 기타 : 기입	③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⑤ 명단공표 ⑥ 기타 : 기입 ⑦ 대응 조치 없음			

2. 관련 지침 등²⁾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사업안내 및 매뉴얼)

유무 (○, ×)	지침명

- 1)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2)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은 제외

5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① 부처 직접 수행			② 사회보험기관에서 수행			③ 그 외 (부처-보험기관 공동, 타 기관)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상시조직	임시조직
(예시) ○							

※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로 표기

6 부정수급 관리 방법(2022년 기준)

① 전수조사		② 표본조사	
대상선정 기준	대상 수(2022년)	표본 선정기준	표본 수(2022년)
(예시) 수급자, 제공기관	○○○○○명	DB를 활용한 표본 랜덤 추출	○○○○○명

※ 각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방법과 대상 선정 기준 작성

⑦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결과 공개 방법	
운영여부 (○, ×)	시스템명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운영여부 (○, ×)	신고체계 명칭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공개여부 (○, ×)	공개 방법
(예시) ○	00시스템	○	00시스템	○	정보공시, 홈페이지

※ 신고체계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

⑧ 국민연금급여 관리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세부 항목 기준

구분	급여별	대상별	사례별(원인별)
해당 여부 (○, ×)	○, ×	○, ×	○, ×
세부 항목 제시	(예시)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유족	

※ 해당하는 파악 방법 표시 후 세부 항목 기재 / 중복 표기 가능

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2022년 기준)

〈부정수급〉

구분	수급자 수 (명)	부정수급 적발대상자 수 (명)	청구지급액 (원)	부당청구액 (원)	환수	
					환수금액 (원)	환수율(%)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그 외						

붙임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 상세현황

※ 한글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명 :

(단위 : 건, 원(국비+지방비))

구분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액 ¹⁾)		반환 금액 ²⁾ (환수 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부정 수급액	반환 결정액									
고 의 성	가족간 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담보·양도											
		무단임대·인출											
		임의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비 고 의 성	증빙미비(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중복처리(중복등록, 중복신청)												
	업무착오(규정미숙, 절차 미숙)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신청관리, 과다집행 등 관리 미흡)												
합계 ³⁾			A	B	C	D	E	F	G	H	I	J	K

1) 환수결정 기준 : '22년도에 발생한 반환결정액(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이 상이한 경우 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을 각각 작성/동일한 경우 반환결정액만 작성)

2) 환수실적 기준 : '22년도 내 반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3) 합계: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건수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건수와 동일해야함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금액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합계(국비+지방비)와 동일해야함

〈장기요양보험〉

※ : 입력란(항목별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사업 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급여명	예시) 건강보험 급여조사, 건강보험 사후관리, 건강검진 등 대면조사에서 확인한 사업명으로 작성
----------------	---

① 사업 담당자(부처 기준)

소관부처	실·국	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② 사회보험기관 담당자(부정수급 관리 담당 기준)

기관명	실·국	부(팀)	부장	담당자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③ 사업 및 예산 정보

※ 2022년 결산 공통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보험 중 수급자 혹은 사회보험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사회보험급여의 예산을 모두 기입

연번 ¹⁾	회계명	급여 종류 ²⁾	급여 형태 ³⁾	목	세목	2022년 집행액(단위 : 원)
		▲▲급여		330	01	
계						

1) 하나의 보험에 여러 개의 급여가 있는 경우, 연번으로 구분

2) 급여별로 집행액 작성

3) 급여형태는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 중 선택(별첨1 참조)

4 부정수급* 관리 근거

*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 모두를 포함

1. 근거법령

근거법령 ¹⁾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해당 모든 조치 '√'로 기입)	주요 대응 조치 (2순위까지 기입)			
			1순위		2순위	
유무 (○, ×)	법령명	() 지원중단 ()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① 지원중단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②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	() 벌금, 징역 등 형벌	③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 명단공표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 기타 : 기입	⑤ 명단공표			
			⑥ 기타 : 기입			
			⑦ 대응 조치 없음			

2. 관련 지침 등²⁾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사업안내 및 매뉴얼)

유무 (○, ×)	지침명

- 1)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2)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은 제외

5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① 부처 직접 수행			② 사회보험기관에서 수행			③ 그 외 (부처-보험기관 공동, 타 기관)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상시조직	임시조직
(예시) ○							

※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로 표기

6 부정수급 관리 방법(2022년 기준)

① 전수조사		② 표본조사	
대상선정 기준	대상 수(2022년)	표본 선정기준	표본 수(2022년)
(예시) 수급자, 제공기관	○○○○○명	DB를 활용한 표본 랜덤 추출	○○○○○명

※ 각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방법과 대상 선정 기준 작성

⑦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결과 공개 방법	
운영여부 (○, ×)	시스템명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운영여부 (○, ×)	신고체계 명칭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공개여부 (○, ×)	공개 방법
(예시) ○	00시스템	○	00시스템	○	정보공시, 홈페이지

※ 신고체계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

⑧ 장기요양보험급여 관리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세부 항목 기준

구분	급여별	대상별	사례별(원인별)
해당 여부 (○, ×)	○, ×	○, ×	○, ×
세부 항목 제시	(예시) 시설급여, 재가급여	요양기관, 요양시설,요양병원	수급자의 기망

※ 해당하는 파악 방법 표시 후 세부 항목 기재 / 중복 표기 가능

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2022년 기준)

※ 한글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구분	내용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총계)					
		고지건수 (건)	고지금액 (원)	환수건수 (건)	환수결정 (원)	환수금액 (원)	환수율 (%)
급여의 제한 (제29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장기 요양 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그 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내 폭력, 성 등의 행위 발생						
	업무정지기간 내 급여를 제공한 경우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 고유번호 말소						
부당 이득의 징수 (제43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만들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대상이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여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붙임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 상세현황

※ 한글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명 :

(단위 : 건, 원(국비+지방비))

구분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액 ¹⁾)		반환 금액 ²⁾ (환수 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부정 수급액	반환 결정액								
고 의 성	가족간 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담보·양도											
		무단임대·인출											
		임의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비 고 의 성	증빙미비(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중복처리(중복등록, 중복신청)												
	업무착오(규정미숙, 절차 미숙)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신청관리, 과다집행 등 관리 미흡)												
합계 ³⁾			<i>A</i>	<i>B</i>	<i>C</i>	<i>D</i>	<i>E</i>	<i>F</i>	<i>G</i>	<i>H</i>	<i>I</i>	<i>J</i>	<i>K</i>

1) 환수결정 기준 : '22년도에 발생한 반환결정액(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이 상이한 경우 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을 각각 작성/동일한 경우 반환결정액만 작성)

2) 환수실적 기준 : '22년도 내 반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3) 합계: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건수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건수와 동일해야함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금액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합계(국비+지방비)와 동일해야함

〈건강보험〉

※ : 입력란(항목별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사업 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급여명	예시) 건강보험 급여조사, 건강보험 사후관리, 건강검진 등 대면조사에서 확인한 사업명으로 작성
----------------	---

① 사업 담당자(부처 기준)

소관부처	실·국	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② 사회보험기관 담당자(부정수급 관리 담당 기준)

기관명	실·국	부(팀)	부장	담당자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③ 사업 및 예산 정보

※ 2022년 결산 공통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보험 중 수급자 혹은 사회보험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사회보험급여의 예산을 모두 기입

연번 ¹⁾	회계명	급여 종류 ²⁾	급여 형태 ³⁾	목	세목	2022년 집행액(단위 : 원)
		▲▲급여		330	01	
계						

1) 건강보험 내 급여별 예산이 분리된 경우 예산 및 집행액 작성(예, 건강검진비)

2) 건강보험 내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부서별, 사업별 예산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예산은 작성하지 않음.

3) 급여형태는 현금, 현물,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프로그램, 시설임소, 자원봉사 중 선택(별첨1 참조)

4 부정수급* 관리 근거

*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 모두를 포함

1. 근거법령

근거법령 ¹⁾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해당 모든 조치 '√'로 기입)	주요 대응 조치 (2순위까지 기입)			
			1순위		2순위	
유무 (○, ×)	법령명	() 지원중단 ()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① 지원중단 ②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 벌금, 징역 등 형벌 () 명단공표 () 기타 : 기입	③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⑤ 명단공표 ⑥ 기타 : 기입 ⑦ 대응 조치 없음			

2. 관련 지침 등²⁾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사업안내 및 매뉴얼)

유무 (○, ×)	지침명

- 1)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2)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은 제외

5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① 부처 직접 수행			② 사회보험기관에서 수행			③ 그 외 (부처-보험기관 공동, 타 기관)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사업부서	전담조직 (예, 부정수급관리단)	감사부서	상시조직	임시조직
(예시) ○							

※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로 표기

6 부정수급 관리 방법(2022년 기준)

① 전수조사		② 표본조사	
대상선정 기준	대상 수(2022년)	표본 선정기준	표본 수(2022년)
(예시) 수급자, 제공기관	○○○○○명	DB를 활용한 표본 랜덤 추출	○○○○○명

※ 각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방법과 대상 선정 기준 작성

⑦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결과 공개 방법	
운영여부 (○, ×)	시스템명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운영여부 (○, ×)	신고체계 명칭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공개여부 (○, ×)	공개 방법
(예시) ○	00시스템	○	00시스템	○	정보공시, 홈페이지

※ 신고체계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

⑧ 건강보험급여 관리 차원에서 부정수급을 분류하는 기준과 세부 항목 기준

구분	급여별	대상별	사례별(원인별)
해당 여부 (○, ×)	○, ×	○, ×	○, ×
세부 항목 제시	(예시) 요양급여, 보조기기	요양병원, 수급자	기망

※ 해당하는 파악 방법 표시 후 세부 항목 기재 / 중복 표기 가능

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2022년 기준)

※ 한글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구분	내용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총계)					
		고지건수 (건)	고지금액 (원)	환수건수 (건)	환수결정 (원)	환수금액 (원)	환수율 (%)
급여의 제한 (제53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관련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보상						
	보험료 체납						
급여의 정지 (제54조)	국외 체류						
	현역병, 전환복무, 군간부후보생						
	교도소, 그 밖에 준하는 시설						
부당이득 의 징수 (제57조)	무면허의료기관개설						
	무면허약국개설						
	2개이상의료기관개설						
	2개 이상약국개설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요양기관 거짓 진단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붙임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 상세현황

※ 한글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명 :

(단위 : 건, 원(국비+지방비))

구분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액 ¹⁾)			반환 금액 ²⁾ (환수 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부정 수급액	반환 결정액								
고 의 성	가족간 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담보·양도											
		무단임대·인출											
		임의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비 고 의 성	증빙미비(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중복처리(중복등록, 중복신청)												
	업무착오(규정미숙, 절차 미숙)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신청관리, 과다집행 등 관리 미흡)												
합계 ³⁾			<i>A</i>	<i>B</i>	<i>C</i>	<i>D</i>	<i>E</i>	<i>F</i>	<i>G</i>	<i>H</i>	<i>I</i>	<i>J</i>	<i>K</i>

1) 환수결정 기준 : '22년도에 발생한 반환결정액(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이 상이한 경우 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을 각각 작성/동일한 경우 반환결정액만 작성)

2) 환수실적 기준 : '22년도 내 반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3) 합계: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건수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건수와 동일해야함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금액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합계(국비+지방비)와 동일해야함

[부록 5] 지방자치단체 기본조사표

※ : 입력란(항목별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정보를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사업 담당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사업명 ('별첨1' 사회보장급여목록(중앙) 확인)	
세부사업명(0000-000) ※ 열린재정 및 부처별 예산설명서에 등록된 예산코드 작성	

① 사업 담당자

소관부처	실·국	과(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② 사업 및 예산 정보

※ 2022년 결산 공통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보장사업의 수행에 해당하는 예산 모두 기입(여비,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해당없는 항목 제외. 필요시 줄 추가)

연번 ¹⁾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²⁾	목	세목	2022년 집행액(단위 : 원)		
						계	국비 ³⁾	지방비 ⁴⁾
	일반회계	00사업	▲▲사업	330	01			
			계					

1) 같은 부서에 여러 개의 사업을 작성하는 경우, 연번으로 구분

2) 1개의 세부사업 내에 내역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내역사업별로 작성

3) 국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4) 지방비는 국비에 매칭되는 비용만 포함

③ 사업 지원 형태 (기입란에 '1'로 표기, 지원형태에 대한 설명은 '별첨2' 참조)

※ 지원형태가 복수일 경우 표기란에 예산규모가 가장 큰 지원형태는 '1', 그 다음은 '2'로 기입 (2순위까지만 기입)

	현금	현물 (서비스 포함)	바우처	대여/용자, 감면	그 외		
					프로그램	시설입소	자원봉사
선택							

④ 부정수급* 관리 근거

* 부정수급은 수급자와 행정담당자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경우 모두를 포함

1. 근거법령

근거법령 ¹⁾		근거법령에 수록된 대응 조치 (해당 모든 조치 '√'로 기입)	주요 대응 조치 (2순위까지 기입)			
			1순위		2순위	
유무 (○, ×)	법령명	() 지원중단 ()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① 지원중단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② 금전적 제재 (환수, 징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법 제○○조 ○○법 시행령 제○○조	() 벌금, 징역 등 형벌	③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 명단공표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 기타 : 기입	⑤ 명단공표			
			⑥ 기타 : 기입			
			⑦ 대응 조치 없음			

2. 관련 지침 등²⁾ (부정수급 관리 지침이 있는 사업안내 및 매뉴얼)

유무 (○, ×)	지침명

1)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 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이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제외

2)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은 제외

⑤ 부정수급 관리 주체(보장기관)

지자체	소속·산하기관	그 외
(예시) 시군구, 보건소	00지청, 00공단	부처 직접 관리 등

※ 지자체와 소속·산하기관, 그 외 중 해당 난에 기재

⑥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전산시스템		신고체계	
운영여부 (○, ×)	시스템명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운영여부 (○, ×)	신고체계 명칭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
(예시) ○	00시스템	○	00시스템

※ 신고체계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 홈페이지, 신고담당부서 등)

7 부정수급 파악 및 부정수급 유형

파악 여부 (○, ×)	부정수급 파악(○)→ 파악방법 ¹⁾	부정수급 파악(×)→ 미파악 사유(보기번호기입)
	() 감사원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 부처 내 자체감사 결과 통보 () 경찰수사결과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신고 ()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통보 () 각 부처 플랫폼 및 전산시스템 ²⁾ (예, 복지로 등) () 보조사업자 등의 내부 고발 또는 신고	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음 ② 부정수급 규모가 작음 ③ 그동안 계속 관리하지 않아서 ④ 집행기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⑤ 업무 과중으로 부정수급 현황 파악 여력 없음 ⑥ 부정수급 발생에 대한 환수 규정 또는 지침이 없음 ⑦ 기타 (기입:)

1) 해당하는 파악 방법에 '√'로 표기, 중복 표기 가능

2) e나라도움 외 각 부처 혹은 사업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플랫폼과 전산시스템이 있는 경우(예, 복지로)에 기입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합계)

※ 기획재정부 주관 부처별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실적 양식을 활용함.

※ 주된 유형은 '별첨3' 참조

(건, 원)

적발(환수결정) ¹⁾	건수 ⁴⁾	국비(원)	지방비(원)	고의성	주된 유형(√)
	불입파일 합계 A와 일치	국비+지방비의 합이 불입파일 합계 C와 일치		○, ×	() 기망 () 부패 () 수급자 오류 () 행정 오류

환수실적 ²⁾	건수 ⁴⁾	국비(원)	지방비(원)	고의성	주된 유형(√)
	불입파일 합계 D와 일치	국비+지방비의 합이 불입파일 합계 E와 일치		○, ×	() 기망 () 부패 () 수급자 오류 () 행정 오류

주요 미환수내역 ³⁾	건수 ⁴⁾	금액(원)	상세사유

1) 제재부가금 등을 제외한 부정수급 반환결정액(국비+지방비)만 작성

2) 제재부가금 등을 제외한 부정수급액 중 실제 환수 실적만 작성

3) 제재부가금 등을 제외한 부정수급 원금(국비+지방비) 중 미환수금과 미환수 사유 작성

4) 1인(혹은 1개소)이 10건 적발된 경우, 1건으로 작성

9 부정수급 관리 체계 유무

시도/시군구 감사전담조직 유무(○, ×)	시도/시군구 감사전담조직 인원(명)	시도/시군구 감사지침 유무(○, ×)	2022년 감사 실적(적발건수)
(예시) ○	00명	○	

붙임

2022년 부정수급 적발 원인별 상세현황

※ 한글 양식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첨부된 엑셀 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명 :

(단위 : 건, 원(국비+지방비))

구분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액 ¹⁾)		반환 금액 ²⁾ (환수 실적)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대상자 수 (대상기관수)
				부정 수급액	반환 결정액								
고 의 성	가족간 거래	가족등록*채용											
		가족간거래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담보·양도											
		무단임대·인출											
		임의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비 고 의 성	증빙미비(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중복처리(중복등록, 중복신청)												
	업무착오(규정미숙, 절차 미숙)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신청관리, 과다집행 등 관리 미흡)												
합계 ³⁾			<i>A</i>	<i>B</i>	<i>C</i>	<i>D</i>	<i>E</i>	<i>F</i>	<i>G</i>	<i>H</i>	<i>I</i>	<i>J</i>	<i>K</i>

1) 환수결정 기준 : '22년도에 발생한 반환결정액(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이 상이한 경우 부정수급액과 반환결정액을 각각 작성/동일한 경우 반환결정액만 작성)

2) 환수실적 기준 : '22년도 내 반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3) 합계: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건수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건수와 동일해야함

1) 부정수급액과 2) 반환금액의 각 금액 합계는 8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액 합계(국비+지방비)와 동일해야함

[부록 6] 심층조사표

ID	1	-			
----	---	---	--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보건복지부(복지급여조사담당관) 주관으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관 리서치엔리서치입니다.

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2에 의거하여,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태 등”에 대해 매 3년 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입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장 분야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방안 모색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조사 및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파악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 중 개인 관련 내용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설문 응답 시 주의사항

1. 본 설문은 뒤로가기 및 응답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설문에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답 중 설문을 중단하시게 되면, 기존에 응답된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되며 추후 응답이 중단되었던 부분에서부터 다시 설문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
(Q8, Q10번의 경우 응답해야 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신 후에 설문에 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실태조사에서의 「부정수급」은 수급자 또는 행정담당자의 기망 또는 부패와 같이 ‘고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혐의의 부정수급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정보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_____세
직장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소속기관 시도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⑰세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 연락처는 '-'(하이픈) 없이 숫자로만 기입해주세요. (예. 01012345678) ()		

응답부서 및 사업 현황과 업무량

Q1. (보장기관별) 응답부서의 현황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귀 부서의 구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현원 기준)

※ 시군구청 '과', 보훈(지)청 '과', 근로복지공단 '부', 국유림관리소 '팀' 등

주된 조직단위로 응답

· 앞 문항에서 응답한 '부서'의 구성원으로 입력, 현재 귀 부서에서 근무하는 정
규직, 기간제, 파견직 등은 모두 포함하되, 사회복무요원 및 인턴은 제외

	명
--	---

Q1-2. 귀 부서에서 과장·팀장 등 부서관리자를 제외한 구성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현원 기준)

	명
--	---

Q1-3. 귀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회보장 사업수는 총 몇 개입니까?

* 사회보장사업: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업
(부록1 사회보장급여 목록, 부록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급여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총		개
---	--	---

Q1-4. 귀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회보장 사업(Q1-3)의 업무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 과장·팀장 등 부서관리자 제외

** 현재 부서원이 아니라, 사회보장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원(Q1-2)을 기준으로 작성함

	명
--	---

Q1-5. 해당 사업의 월평균 신청자 수(또는 신청 건수)는 몇
명(건)입니까?

* 월평균 신청자 수(건) = 2022년 연간 총신청자(건)수 / 12개월

** 해당 사업 :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회보장 사업(Q1-3) 모두 포함

월평균		명(건)
-----	--	------

Q1-6.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액과 수급 규모를 작성해 주십시오.

2022년 예산 집행액 (국비 + 지방비)	2022년 수급자 수** (연도말 기준, 명)	2022년 연간 순 수급자 수***
백만원	명	명

* 해당 사업 :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회보장 사업(Q1-3) 모두 포함

** 2022년 수급자 수 : 사업별 수급자수를 누적하여 기입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았으면 중복으로 계산)

*** 2022년 연간 순 수급자 수

: 여러 번 참여한 횟수와 상관이 없이 2022년 한 해 동안 수급한 전체 수급자 수를 '사람' 기준으로 기입

(예시: A가 2월 한달간 수급했다면? → 1명, B가 4~6월동안 수급하고 12월에 새롭게 수급했다면? → 1명)

Q1-7.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원은 몇 명입니까?

* 해당 사업 :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회보장 사업(Q1-3) 모두 포함

** 해당 사업의 담당과와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면, 0명으로 기재

	명
--	---

응답부서의 부정수급 적발 노력 및 관리에 대한 업무량

다음은 귀 부서의 부정수급 적발 노력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Q2. 귀 부서는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 또는 적발을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조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수행하신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항	응답
①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②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요청	
③ 방문확인(가정방문, 신상변동의심자 현장점검, 기관 방문 등)	
④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에 방문 확인 요청(가정방문, 신상변동의심자 현장점검 등)	
⑤ 상담 또는 유선(전화)을 통한 확인	
⑥ 기관 내 감사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감사 또는 조사 요청	
⑦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감사부서 제외)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⑧ 기관 내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	
⑨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	
⑩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 부적정수급자 검색 및 부적정수급 의심자 등록 등	
⑪ 상급기관(부처 등)에 조사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⑫ 기타 ()	

Q2-1.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 또는 적발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노력(조치)을 보기 중 **최대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Q2에서 수행했다고 응답한 문항들만 보여주기

Q2-2.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 또는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노력(조치)을 보기 중 **최대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Q2에서 수행했다고 응답한 문항들만 보여주기

Q2-3.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 및 적발을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변동사항'에 대해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거주지 변동 | ② 가족관계변경(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
| ③ 가족관계변경 외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출소, 군 입·제대, 실종, 말소, 가출 등) | |
| ④ 사망의심자 확인 | ⑤ 출입국 내역(장기출국자 파악) 또는 국적상실 |
| ⑥ 소득·재산 변동 | ⑦ 중복수급 |
| ⑧ 장애, 상이, 장애, 근로능력 등의 판정변화 | ⑨ 부양의무자 |
| ⑩ 법 적용 배제 (보훈제도 등) | ⑪ 순위변경 (보훈제도 등) |
| ⑫ 기타 () | |

Q2-4. 부정수급 확인 및 적발 조치(노력)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①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정보 부족 | ② 수급자 변동사항 발생과 정보시스템 등록의 시차 |
| ③ 수급자 반발 등 민원대응 | ④ 부정수급 사실 확인을 위한 강제력 부족 |
| ⑤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 ⑥ 기관 간 정보공유의 어려움과 비협조 |
| ⑦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 | ⑧ 기타 (기입:) |

Q3.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원이 부정수급 관련 업무에 투입한 업무량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관리 부서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업무 비중이 높은 담당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의 전체 업무 대비 부정수급 업무 비중을 작성

전체 업무량의	%
---------	---

응답부서가 속한 보장기관 차원의 부정수급 관리

※ 필요시 질문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4.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을 귀 기관의 감사실 등 감사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 * 부정수급 적발 목적의 감사, 사업부서의 가정방문·현장조사 등 지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각종 업무 및 체계 점검 등
 ① 예 (= Q4-1) ② 아니오 (= Q4-1) ③ 해당 없음(감사조직 없음) (= Q5)

Q4-1. 귀 기관의 감사실에서는 해당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장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4-2. 감사실 등 감사부서의 부서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 감사관, 과장·팀장 등 부서관리자 제외
 **현재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파견직 포함, 사회복무요원과 인턴은 제외

	명
--	---

Q4-3. 감사실 등 감사부서에서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부서원은 몇 명입니까?

- * 감사관, 과장·팀장 등 부서관리자 제외
 **현재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파견직 포함, 사회복무요원과 인턴은 제외

	명
--	---

Q5.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수급 신고·접수체계가 있습니까?

- ※ 중앙 부처 차원의 신고·접수체계는 제외합니다
 (단, 응답부서가 중앙 부처인 경우 해당 신고접수 체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 (= Q5-1) ② 아니오 (= Q6)

Q5-1. 해당 신고·접수체계의 명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Q5-2. 해당 신고·접수체계의 운영 형태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신고·접수체계 종류
① 온라인 (URL주소 기입: http://)
② 유선(전화)
③ 이메일
④ 현장 창구 운영

Q6. 귀 기관에는 감사부서를 제외하고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 Q5에서 응답한 자체 신고·접수 체계는 제외, 응답부서가 전담조직인 경우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 Q6-1)

② 아니오 (▶ Q7)

Q6-1. 전담조직명을 기입해주시시오

--

Q6-2.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설치 형태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감사조직에 설치

② 감사조직 외 별도 조직(부서)으로 설치

③ 사업부서들이 속한 국·실에 설치

④ 기타()

Q6-3. 부정수급 전담조직의 관리영역에 해당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6-4. 부정수급 전담부서의 부서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과장·팀장 등 부서관리자 제외

※ 편제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파견직 포함, 사회복무요원과 인턴은 제외

	명
--	---

부정수급 관리 현황과 실적

※ 귀 부서가 속한 기관 자원의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현황과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필요시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등)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정기적으로 현황 관리) ② 아니오 (비정기적으로 현황 관리)

Q7-1.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환수결정액, 환수실적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① 전산시스템 ② 수기관리 (엑셀, 문서 등으로)
③ 전산시스템과 수기관리 병행 ④ 기타 ()

Q8. 해당 사업의 2022년 1년간 발생한 부정수급 인제(검수) 경로를 작성해 주십시오.

(단위 : 건)

검수 경로 (인지 또는 검수 건수 입력)									총계 (검수건수)
재보*		갑사	현장점검	정기조사	비정기 조사	정보연계	타기관 조사의뢰	기타	
내부	외부								

* 해당 기관으로 재보가 접수되는 경우(내부)와 복지포, 국민신문고 등 외부에서 접수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기입

* 해당 값이 없을 경우에는 0을 입력해주세요.

* 현재까지 응답은 저장되므로, 본 문항에 응하시기 전 자료를 찾으신 후에 다시 조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Q9.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일반법(보조금법, 사회보장급여법, 공공재정환수법), 개별법 및 사업안내(지침) 등에 규정된 조치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조치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원중단(자금중지)
② 환수
③ 환수를 제외한 금전적 제재(과태료, 과징금, 벌칙금 등)
④ 벌금, 징역 등 형벌
⑤ 명단공표
⑥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⑦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⑧ 기타 ()
⑨ 없음 (근거법령 및 관련 사업안내 없음) (다른 보기와 선택 불가)

Q10. 해당 사업의 2022년 1년간 이뤄진 부정수급 관련 조치 실효를 작성해 주십시오.

(단위: 천 원)

고의성 여부	환수		환수결정률 기준으로 작성									
	환수결정*		환수실적**		금전적				비금전적	수사 의뢰	합사 고발	행정 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형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고의적					과태료			지원 중단				
비고의적					과징금			명단 발표				
					기타							

* 환수결정 기준 : 22년도에 발생한 환수결정액

** 환수실적 기준 : 22년도 내 환수한 금액(납부액 + 결손처분액), 환수결정액 발생시점과 상관없이 22년도에 환수한 금액

***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자격정지, 시설의 등록·인가·자격취소 등

**** 해당 값이 없을 경우에는 0을 입력해주세요.

* 본 설문은 뒤로가기 및 응답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설문에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응답은 저장되므로, 본 설문에 응하시기 전 자료를 찾으신 후에 다시 응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Q10-1. 해당 사업의 경우 환수결정 이후 환수가 원활하게 이뤄집니까?

① 예 = (Q11) ② 아니오 = (Q10-2)

Q10-2. 환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 ② 환수 대상자 소재 불분명
 ③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 ④ 환수 대상자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⑤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⑥ 환수방법의 한계
 ⑦ 서류상 부재산 등 대상자의 재산은닉 ⑧ 경제적 취약성 등 실제로 환수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⑨ 기타 (기입:)

※ Q10 관련 참고 사항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분류 (기획재정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방, 부채 (고의적, 합의의 부정수급)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담 담보, 무단 양도, 무단 임대, 무단 인출, 임의 사용
	가족간거래	가족동족차용, 가족간거래
수급자 오류, 행정오류 (비고의적, 공의의 부정수급)	관리이비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신청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자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분리 계약
	업무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거래처 착오
	증빙이비	전자세금계산서 이비, 카드영수증 이비, 기타 증빙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증빙

부정수급 위험성 유형

※ 다음은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위험성을 유형화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 필요시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각 재화의 성격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재화의 성격	현물급여 방식	1	2	3	4	5	99
	서비스 제공 방식	1	2	3	4	5	99
	현금급여 방식	1	2	3	4	5	99

Q12.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각 수급주체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수급 주체	사업 수급자가 개인	1	2	3	4	5	99
	사업 수급자가 (민간)기관	1	2	3	4	5	99

Q13.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보조사업자의 유형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사업자 유형	사업자가 자자체	1	2	3	4	5	99
	사업자가 공공기관	1	2	3	4	5	99
	사업자가 민간사업자	1	2	3	4	5	99

Q14.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전달체계 복잡성	전달체계의 단계 수가 4단계 이상 (중앙-광역-기초-민간 사업자인 경우 4단계)	1	2	3	4	5	99
	대상 선정과 급여 지급 업무가 분리 (대상 선정은 A부처(세), 급여 지급은 B부처(세))	1	2	3	4	5	99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각 부처 사업이 존재)	1	2	3	4	5	99
	사업에 여러 재정지원 방식이 포함 (이용자지원-공급자지원-민(위탁))	1	2	3	4	5	99
	사업에 여러 항목별 지원이 포함 (본 사업-추가 대상자 지원-추가 프로그램 지원)	1	2	3	4	5	99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1	2	3	4	5	99

Q15.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예산 구조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십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예산 구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	1	2	3	4	5	99
	물건비(시설장치비) 비중이 높은 사업	1	2	3	4	5	99
	건축설계비 비중이 높은 사업	1	2	3	4	5	99
	예산규모가 큰 사업(100억 원 이상)	1	2	3	4	5	99
	예산규모가 작은 사업(1억 원 미만)	1	2	3	4	5	99

Q16.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수급자의 자격기준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십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수급자의 자격기준	소득 또는 자산 같은 경제적 기준	1	2	3	4	5	99
	비경제적 기준	1	2	3	4	5	99

Q17.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사업 선정방식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십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사업자 선정관리	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	1	2	3	4	5	99
	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사업자 선정	1	2	3	4	5	99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1	2	3	4	5	99
	선정절차는 있으나 3년 이상 동일	1	2	3	4	5	99
	선정 절차가 따로 없음(관행적 선정)	1	2	3	4	5	99

Q18.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개인 단위 이유(수급자)를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십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부정수급 발생 원인 (개인 차원)	대상선정기준이 엄격해서	1	2	3	4	5	99
	제공되는 금액이 부족해서	1	2	3	4	5	99
	남들도 다 하니까 하는 생각에	1	2	3	4	5	99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1	2	3	4	5	99

Q19.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기관 단위 이유(제공기관)**를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부정수급 발생 원인 (기관 차원)	대상자 모집을 못해서	1	2	3	4	5	99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혼돈해서	1	2	3	4	5	99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영세해서	1	2	3	4	5	99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서	1	2	3	4	5	99

Q20. 귀 부서의 업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조직 단위 이유(부서)**를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부정수급 발생 원인 (조직 차원)	관리하는 사업 수가 많아서	1	2	3	4	5	99
	관리하는 예산이 많아서	1	2	3	4	5	99
	관리하는 인원이 적어서	1	2	3	4	5	99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1	2	3	4	5	99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활동

※ 필요시 질문 내용과 관련된 부서 또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21. 귀 기관은 해당사업의 초기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매 - (Q21-1) ② 아니오 - (Q21-2)

Q21-1. 귀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초기상담 시 부정수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021-2 해당 사업에서 초기상업은 어느 기력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기력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 보호(지)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② 시군구청
 ③ 읍면동
 ④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⑤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⑥ 지방교육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⑦ 기타 () ⑧ 해당기관 없음

Q.22. 귀 기관(또는 초기성답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 수급자에게 부정수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Q22-1) ② 아니오 - (Q22-3)

Q22-1. 해당 안내의 대상 범위를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수급자 전부 ② 부정수급 고위험자
③ 수급자 일부(수급자의 일정비율) ④ 기타 ()

Q22-2. 2022년 기준으로 안내대상에 대한 평균 안내 횟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대상 당 평균 ()회

Q 22-3. 해당 사업 수급자에게 변동사항 신고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주의사항 안내는 어느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 보호관(지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② 시군구청
 ③ 읍면동
 ④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⑤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⑥ 지방교육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⑦ 기타 () ⑧ 담당기관 없음

Q23. 해당 사업의 경우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조사, 현장조사 모두 포함)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 ① 예 (→ Q23-1) ② 아니오 (→ Q24)

Q23-1. 해당 조사의 대상 범위를 모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수급자 전부 ② 부정수급 고위험자
③ 수급자 일부(수급자의 일정비율) ④ 기타 ()

Q23-2.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 대비 적정성 확인조사 대상비율을 기입해주시시오.
()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Q24. 귀하는 2022년에 부정수급 교육(관리, 예방, 조사기법 등)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정부부처, 광역시도 등 다른 기관은 물론 귀 기관의 자체 교육도 포함

- ① 예 (→ Q24-1) ② 아니오 (→ Q24-4)

Q24-1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총 몇 회 참석하셨습니까? 총 _____ 회

Q24-2. 부정수급 교육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참석 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최근 참석한 부정수급 교육의 주최를 2개까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부부처 ③ 광역시도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 보존(지)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④ 해당 기관 자체 교육 ⑤ 기타 ()

Q24-3. 해당 교육이 부정수급 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Q24-4. 효과적인 부정수급 관련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인식 조사 항목

Q25. 해당사업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 ②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 사항 안내 강화
③ 선장과정의 엄격성 강화 ④ 확인조사 강화
⑤ 부정수급 적발(단속, 지도점검 등) 강화 ⑥ 보다 강력한 원소조치
⑦ 처벌 강화(벌칙, 과태료 등) ⑧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⑨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⑩ 부정수급 관련 인력 확대
⑪ 담당자의 전문성 및 자숙성 ⑫ 신고포상금 도입 또는 확대
⑬ 관련 규정을 사후관리 부정수급 예방 관련 정비 ⑭ 기타 ()

Q26.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27. 귀하께서 담당하는 사업의 취지 상 급여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가 있다면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일반 현황

DQ1. 귀하의 현재 고용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공무원 (→ DQ2) ② (무기)계약직 공무원 (→ DQ2)
 ③ 정규직 민간인력 (→ DQ4) ④ 계약직 민간인력 (→ DQ4)

DQ2. (DQ1=①,②만)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⑥ 그 외()

DQ3. (DQ1=①,②만) 귀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총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DQ4. (DQ1=③,④만) 귀하께서 현재 업무에 종사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DQ5.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발송해드립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간단히 개인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조사 완료 후 일괄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이용목적 : 설문조사 답례품 발송 및 조사 검증
- 수집정보 : 휴대전화 번호
- 답례품 : 소정의 기프트콘(5천원 모바일 상품권)
- 지급시기 : 조사 종료 후 일괄 발송 (12월 내 발송)
- * 개인정보는 답례품 지급 및 조사 검증 완료 1주일 후 일괄 삭제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① 동의함 (연락처 입력: - -) ② 동의하지 않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7] 델파이 조사표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전문가 델파이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강지원 연구위원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202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2020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올해 두 번째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와 부정수급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대상과 범위의 기준을 마련한 후 부정수급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부정수급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와 부정수급의 개념, 부정수급의 원인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 조사 대상은 총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정책프리즘을 활용하여 지난 5년 간 사회보장급여 관련 정책연구에 참여하신 전문가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분야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건, 사회복지,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와 위원회 등에서 수행하는 정부의 재정사업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각 부처 단위에서 수행하는 자체평가, 그 외 법에 근거한 평가에 참여한 평가 위원 목록을 구축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전문가 인력풀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이뤄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와 민간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조사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본 조사는 생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므로 각 항목에 내용을 기술한 후 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일반적인 조사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설명하듯이 작성하였으니, 회의자료를 읽으며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술해주시면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바쁜 중에도 조사 참여를 수락해주시고,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편안한 마무리 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7일

1.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아래를 읽은 후에 응답해주세요.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으로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가 명문화되었음.
- ☐ 보건복지부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 사회보장급여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 이때, ‘보장기관’이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질문 1-1) 귀하께서는 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씩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응답)

☐ ① 예 ☐ ② 아니오

질문 1-2)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에 대한 정의가 모든 사회보장급여의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 ① 예(1-4로 넘어가세요) ☐ ② 아니오(1-3으로 넘어가주세요)

질문 1-3)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지급방식으로 위에서 언급한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외에 무엇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수관서 응답)

질문 1-4)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보장기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 ① 예 ☐ ③ 아니오

질문 1-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지방행정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보장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응답)

2.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아래를 읽은 후에 응답해주세요.

- ☐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됨.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라 “사회 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과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교육부(사학연금)에서 공적연금을 주관하고 있음.
 -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질문 2-1)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① 예(2-3로 넘어가세요)

② 아니오(2-2로 넘어가주세요)

질문 2-2)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구분이 적절하지 않거나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주관식 응답)

질문 2-3) 귀하께서는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관리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응답)

① 예	② 아니오
-----	-------

질문 2-4) 붙임1의 자료는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목록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적절합니까? (응답)

① 예	② 아니오
-----	-------

질문 2-5)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 목록 중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주관식 응답)

3.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아래를 읽은 후에 응답해주세요.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개요

- 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2020년부터 3년 단위로 법에 근거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함(2019년 기준). 1차 조사는 일반 재정을 중심으로 조사함.
- 2023년 조사는 일반재정에 더해 사회보험 급여(신규)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신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층 조사(기본조사+심층조사+면접조사)로 구성



질문 3-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주기(3년)는 적절합니다? (응답)

① 예(3-3로 넘어가세요)

② 아니오(3-2로 넘어가주세요)

질문 3-2)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주기를 어떻게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주관식 응답)

질문 3-3)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과 사회보험 급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① 동의함(3-5로 이동)

② 동의하지 않음(3-4로 이동)

질문 3-4)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주관식 응답)

질문 3-5)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자체사업(예, 복지彩票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목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목록에는 약 4300여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제약으로 모든 사업을 조사할 수 없고 100개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목록에는 단체명, 사업명, 예산액, 분야, 부문, 급여유형, 자산조사 기준, 수급자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주관식 응답)

질문 3-6)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세 가지 방법(기본조사, 심층조사, 질적조사)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① 예(4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3-6으로 이동)

질문 3-7)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주관식 응답)

4. 사회보험 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파악을 위한 기본조사 문항(별첨 2. 중앙부처 기본조사표)

☐ 전체 문항 구조

- ☐ 사업 담당자 정보, 사업 및 예산 정보, 부정수급 관리의 근거, 부정수급 관리 주체, 부정수급 관리 방법, 부정수급 관리 전산시스템 및 신고체계 운영, 부정수급 규모, 부정수급 유형으로 구성됨
-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로는 반환, 신고포상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명단공표, 사업배제 등이 있음.
- ☐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가족간 거래, 공모, 임의처리,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증빙미비, 중복처리, 업무착오, 권리미비 등이 있음.

질문 4-1) 귀하께서는 사회보장급여 조사 문항이 부정수급 규모와 함께 분석하는 변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① 예(4-3로 넘어가세요)

② 아니오(4-2로 넘어가주세요)

질문 4-2)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를 해석할 때 추가해야 하는 변수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개별 사업에 대한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방법이나 신규 조사 문항으로 포함해야 하는 변수를 함께 제시해주세요.

(주관식 응답)

질문 4-3) 부정수급 조치에 대한 분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① 예(4-5로 넘어가세요)

② 아니오(4-4로 넘어가주세요)

질문 4-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적발 시 조치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응답)

질문 4-5)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① 동의함(4-7로 이동)

② 동의하지 않음(4-6으로 이동)

질문 4-6)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이유를 적어주세요. 부정수급 유형으로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주관식 응답)

질문 4-7)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규모는 1) 부정수급 적발액 규모, 2)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3) 부정수급 환수액 중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응답)

질문 4-8)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규모에 대한 분석으로 1) 부처, 2) 급여 형태(현금, 현물 등), 3) 급여 종류(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4) 예산액, 5) 사업유형(중앙부처 지자체 보조, 민간보조, 보조 외 사업 등), 6) 자산소득 기준, 7) 생애주기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제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주관식 응답)

5. 사회보험 급여 부정수급 실태 심층조사(별첨 3. 사회보장급여 보장기관 심층조사)

□ 전체 문항 구조

- 응답자 정보: 성, 나이, 직장주소, 소속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 응답부서 및 사업 현황과 업무량: 담당 사업 수, 월평균 신청자 수, 예산 규모 등
- 부정수급 관리: 적발방법, 적발실적, 감사원과의 관계, 부정수급 관리 인원, 부정수급 체계, 부정수급 전담 조직, 부정수급 위험성 유형,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일반현황

질문 5-1)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심층 조사는 보장기관(시도, 시군구, 보호(지)청, 국유림관리소, 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중앙부처 외에 실제 사업에 책임이 있는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응답)

① 예(5-3로 이동)

② 아니오(5-2으로 이동)

질문 5-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심층조사에서 보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서 응답)

질문 5-3)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심층조사 대상이 보장기관이므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의 조사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주관서 응답)

질문 5-4) 예산의 한계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심층조사는 전체 중앙부처 사업을 포함하지 못하고 50개 사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전체 중앙부처 사업 중(별첨 1 참조) 심층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 부처, 2) 급여 형태(현금, 현물 등), 3) 급여 종류(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4) 예산액, 5) 사업유형(중앙부처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보조 외 사업 등), 6) 자산소득 기준, 7) 생애주기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제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주관식 응답)

6. 다음은 귀하께서 인식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모든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응답에 체크 혹은 창색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6-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각 급여유형을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십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급여 유형	현물급여 방식	1	2	3	4	5	99
	서비스 제공 방식	1	2	3	4	5	99
	현금급여 방식	1	2	3	4	5	99

질문 6-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각 수급주체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십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수급 주체	사업 수급자가 개인	1	2	3	4	5	99
	사업 수급자가 (민간)기관	1	2	3	4	5	99

질문 6-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보조사업자의 유형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십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사업자 유형	사업자가 지자체	1	2	3	4	5	99
	사업자가 공공기관	1	2	3	4	5	99
	사업자가 민간사업자	1	2	3	4	5	99

질문 6-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전달체계 복잡성	전달체계의 단계 수가 4단계 이상 (중앙-광역-기초-민간 사업자인 경우 4단계)	1	2	3	4	5	99
	대상 선정과 급여 지급 업무가 분리 (대상 선정은 A부제 세, 급여 지급은 B부제 세)	1	2	3	4	5	99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각 부처 사업이 존재)	1	2	3	4	5	99
	사업에 여러 재정지원 방식이 포함 (이유·자격·원·종교·지역·민간위탁)	1	2	3	4	5	99
	사업에 여러 항목별 지원이 포함 (본 사업·추가 대상자 지원·추가 프로그램 지원)	1	2	3	4	5	99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	1	2	3	4	5	99

질문 6-5)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예산 구조를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예산 구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	1	2	3	4	5	99
	물건비(시설장치비) 비중이 높은 사업	1	2	3	4	5	99
	건축설계비 비중이 높은 사업	1	2	3	4	5	99
	예산규모가 큰 사업(100억 원 이상)	1	2	3	4	5	99
	예산규모가 작은 사업(1억 원 미만)	1	2	3	4	5	99

질문 6-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수급자의 자격기준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수급자의 자격기준	소득 또는 자산 같은 경제적 기준	1	2	3	4	5	99
	비경제적 기준	1	2	3	4	5	99

질문 6-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정도를 사업 선정방식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사업자 선정관리	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	1	2	3	4	5	99
	발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업자 선정	1	2	3	4	5	99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1	2	3	4	5	99
	선정절차는 있으나 3년 이상 동일	1	2	3	4	5	99
	선정 절차가 따로 없음(관행적 선정)	1	2	3	4	5	99

질문 6-8)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개인 단위 이유(수급자)를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부정수급 발생 원인 (개인 차원)	대상선정기준이 엄격해서	1	2	3	4	5	99
	제공되는 급여가 부족해서	1	2	3	4	5	99
	남들도 다 하나까 하는 생각에	1	2	3	4	5	99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1	2	3	4	5	99

질문 6-9)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기관 단위 이유(제공기관)를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부정수급 발생 원인 (기관 차원)	대상자 모집을 못해서	1	2	3	4	5	99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혼돈해서	1	2	3	4	5	99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영세해서	1	2	3	4	5	99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서	1	2	3	4	5	99

질문 6-10)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조직 단위 이유(부서)를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사업특성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부정수급 발생 원인 (조직 차원)	관리하는 사업 수가 많아서	1	2	3	4	5	99
	관리하는 예산이 많아서	1	2	3	4	5	99
	관리하는 인원이 적어서	1	2	3	4	5	99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1	2	3	4	5	99

7. 다음은 귀여께서 인식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적절한 응답에 체크 혹은 칠해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7-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많다고 인식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적다 ④ 매우 적다

질문 7-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많은 제도는 어디라고 인식하십니까?

- ① 사회보위 ② 공공복조 ③ 사회서비스

질문 7-3) 귀어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에서 부정수급이 많은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보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③ 국민연금 ④ 고용보험 ⑤ 산재보험

질문 7-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중에서 부정수급이 많은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⑤ 장애인연금

질문 7-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중에서 부청수급이 많은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설 이용 ② 가정 방문 ③ 재정지원 ④ 교육훈련서비스 ⑤ 상담, 사례관리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일자리

질문 7-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중에서 부정수급이 많은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기 (만0~5세) ② 아동기 (만6~17세) ③ 청년기 (만18~34세) ④ 중장년기 (만35~64세) ⑤ 노년기 (만 65세 이상)

질문 7-7)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 | ②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 사항 안내 강화 |
| ③ 선정과정의 엄격성 강화 | ④ 확인조사 강화 |
| ⑤ 부정수급 적발(단속, 지도점검 등) 강화 | ⑥ 보다 강력한 환수조치 |
| ⑦ 처벌 강화(벌칙, 과태료 등) | ⑧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
| ⑨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⑩ 부정수급 관련 인력 확대 |
| ⑪ 담당자의 전문성 및 지속성 | ⑫ 신고포상금 도입 또는 확대 |
| ⑬ 관련 규정(급여 사후관리, 부정수급 예방 관련) 정비 | ⑭ 기타 () |

질문 7-8) 그 외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illegible]

응답자 일반 현황

DQ1. 귀하의 자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교사, 학사 ② 연구원, 박사 ③ 공무원(중앙, 지방 등) ④ 협회, 종사자 등

DQ2. 귀하의 전공 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사회복지 ② 경제(재정 포함) ③ 아동(가족) ④ 교육 ⑤ 행정 ⑥ 그 외()

DQ3. 귀하께서 전문가로 활동하신 총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DQ4. 귀하께서는 최근 3년 이내(2020~2023년)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보조사업연장평가, 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평가)와 각 부처별 자율평가, 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 등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DQ5로 이동) ② 없음(조사 종료)

DQ5.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하신 중앙정부 주관 평가가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8] 초점집단면접 조사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FGI 가이드라인 - 공급자: 사회보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 -

SESSION 1	WARMING UP	10mins
-----------	------------	--------

1. 좌담회의 취지 설명

본 좌담회는 사회보장급여 업무의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담당자님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편안하게 말씀에 주시면 됩니다.

2. 본인 소개 및 참석자 소개

- 모더레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소속 및 성명
- 참석자 소개 : 성명/소속기관/담당업무 소개
- 주의: 수행 업무 중 부정수급 유형, 가능성, 사례,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방지 노력에 대한 의견 위주로 요청

SESSION 2	기본 업무 파악	25mins
-----------	----------	--------

1.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기본 업무 파악

- 현재 직접 수행하고 계신 사회보장급여 업무는 무엇인가요?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법, 지침, 정보시스템 등)는 어디에서 얻으시는 편인가요?
- 이러한 정보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정보접근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지고 있나요?
- 수급자의 신청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까? (또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그럼, 부정수급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지침, 정보시스템 등은 어디에서 얻으시는 편인가요? 이러한 정보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업무 파악

- 현재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부정수급관리 업무는 무엇인가요?
(선제적 예방과 사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지 Probing)
- 해당 사업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나요? 또한 조직 내에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나요?
- 그럼, 부정수급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지침, 정보시스템 등은 어디에서 얻으시는 편인가요? 이러한 정보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관 내에 감사실 또는 부정수급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대략의 규모(인원)를 알수 있을까요?

3. 정보접근 권한에 대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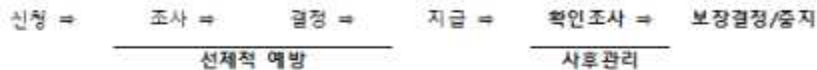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정보접근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지고 있나요
- * e나라도움 시스템 :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고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향복e음)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통합 정보시스템(개인별, 가구별 DB를 구축하고 제공)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복지 업무 담당자는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대응, 업무처리, 복지사업설계 등 효율적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복지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임
- *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급여정보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음 ; LH 조사원의 주택방문 조사 결과 관리
- * 교육급여의 경우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명단 및 징수 필요 금액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부정수급 유형화'를 사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용해보신 적이 있다면, 누가 입력을 하였습니다?

SESSION 3	제도의 부정수급 가능성 및 적발 가능성	25mins
-----------	-----------------------	--------

1. 부정수급 파악

-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서의 수급자의 부정수급이 빈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정수급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지 확인

[X 사회보장급여 기본업무 수행 프로세스 및 부정수급 관리 실태 도식화 예 (현금급여)]



- 그럼, 각 단계별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각 단계별로 부정수급이 행정 오류에서 비롯하는 지, 아니면 수급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Probing)
- 부정수급이 행정오류로 인해 발생할 경우 조치는 어떻게 취하십니까?
- 그럼, 수급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할 경우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2. 부정수급 적발업무

㉠ 부정수급 적발업무 파악

- 현재 부정수급 적발업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정수급 적발 담당이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 부정수급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업무협조 등)
(조직 내부적인 체계는 무엇인가요? 그 체계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 조직 외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어떤 체계가 있나요?(e나라도움, 헬프e음시스템 등)
그 체계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3. 부정수급 적발 노력 및 관리의 업무 강도

㉠ 부정수급 관리 및 적발 노력

- 해당 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확인 및 적발을 위해 귀하 또는 귀 조직에서는 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X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업무 예시 참조)
- 부정수급 관련 확인 및 적발을 위해 실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 부정수급 관련 확인 및 적발한 사례 중 효과적이었던 경험이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 만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이유, 원인은 무엇인가요?
- 앞서 보여드린 단계중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어려운 단계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도적 사유 : 법령 미비, 정보 부족에 따른 모니터링 부족 등
개인적 사유 : 업무량, 업무관한 등
- 귀하께서 체감하기에, 수급자가 부정수급하려는 빈도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수급 권리를 위한 업무 예시]

-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요청
- 방문확인(가정방문, 신청변동의뢰자 현장점검, 기관 방문 등)
-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에 방문 확인 요청(가정방문, 신청변동의뢰자 현장점검 등)
- 상담 또는 유선(전화)을 통한 확인
- 기관 내 감사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감사 또는 조사 요청
-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감사부서 제외)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 기관 내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
-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중복 급여·서비스 확인
-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 부정수급자 검색 및 부정수급 의뢰자 등록 등
- 상급기관(부처 등)에 조사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 (구체적인 사례 공유가 부족하거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적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에서 어려운 점?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예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정보 부족, 수급자 반발 등 민원 대응,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 제한적인 정보접근 권한, 수급자 변동사항 발생과 정보시스템 등록의 시차, 부정수급 사실 확인을 위한 강제력 부족, 기관 간 정보공유의 어려움과 비협조 등

SESSION 4	부정수급 유형과 예방 활동	25mins
-----------	----------------	--------

1. 부정수급 유형 구분

-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 말씀하신 유형이 업무수행 단계 중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 구분해주세요.
- 말씀하신 부정수급 유형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 고의성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세요.
- 가장 시급하게 없애야 하는 유형을 순서대로 말씀해주세요.
- 일반적인 현금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1의 질문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2로 바로 전환)

2.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 경험

- 수급자의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 어떻게 적발하였고, 조치하였는지 구체적인 경험 위주로 말씀해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밀, 부패 (고의적, 합리적 부정수급)	허위	자부담금 대납, 가격부풀리기, 허위처리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단 담보, 무단 양도, 무단 임대, 무단 인출, 임의 사용
	가혹간거래	가혹충책형용, 가혹간거래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 (비고의적, 광의의 부정수급)	관리미비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신청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신 오류, 분리 계약
	업무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거래처 착오
	중복미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카드영수증 미비, 기타 중빙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중빙

3. 부정수급 예방

- 본 사업의 초기 상담, 안내시 부정수급 관련한 주의사항을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까?
- 부정수급을 방지, 예방하기 위해 귀 조직, 부서에서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가 있나요?
-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SESSION 5	부정수급 업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5mins
-----------	----------------------	--------

1. 사회보장 급여의 부정수급 관리 방식

-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평소 수행하고 계신 업무들 중, 부정수급 관리 업무에 대한 강도는 어떤 편인가요?
-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관리 주체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관리업무는 어떤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주체와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ex. 사업담당자, 감사관 등 별도 부서, 중앙부처 등)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 기존의 법, 제도, 사업지침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도움 여부, 사업별 지침자료의 충분여부, 법적 보호 필요 여부 등 확인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자원에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4. 부정수급 관련 교육 효과성

- 정부, 기관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효과성(부정수급의 이해, 관리, 예방, 적발 방법 등)은 어떤가요? 만일 개선, 강화되어야 한다면 어떻게하면 좋을지 의견부탁드립니다.

SESSION 6	마무리	5mins
-----------	-----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후 종료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FGI 가이드라인
-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수혜자 -**

SESSION 1	WARMING UP	10mins
------------------	-------------------	---------------

1. 좌담회의 취지 설명

본 좌담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편하게 답변주시면 됩니다.

※ 참석자의 부정수급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한 좌담회가 절대 아니며,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 간접검험 등을 중심으로 진행 설명.

2. 본인 소개 및 참석자 소개

- 모더레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소속 및 성명
- 참석자 소개 : 연령대/성별/거주지역 등

SESSION 2	이용하는 급여 파악	30mins
-----------	------------	--------

1. 사회보장 수혜 급여 기본 파악

- 어떠한 급여를 받으셨나요?
- 현재(또는 과거에) 받고있는 해당 급여를 수급받은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본 급여 이외에 과거에 수혜받은 급여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사회보장급여(장학 포함) 받은 내용 모두 파악(이후 부가 질문에서 활용)

2. 사회보장 급여 수혜 경로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정보를 얻는데 있어 주로 어떤 곳에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 찾은 정보들은 급여를 신청,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로별로)
- 찾은 정보들은 급여를 신청, 유지하는데 적절(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찾은 경로별로 파악)
- 정보를 찾은 후 문의 / 신청을 위해 어떠한 경로를 활용하시나요? 본 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셨나요?

3. 신청 및 수급까지의 경험

- 1) 현재 수급하고 있는 급여 기준으로 정보 탐색 · 신청 · 기관의 확인 · 수급 · 수급 이후 부정수급, 유지 등을 위한 확인이 기관에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 2) 현재 수급하고 있는 급여 외에 이전에 (또는 동시에) 다른 급여를 수급받은적이 있다면, 해당 급여의 정보 탐색 · 신청 · 기관의 확인 · 수급 · 수급 이후 부정수급, 유지 등을 위한 확인이 기관에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SESSION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관련 안내	30mins
-----------	--------------------	--------

1. 관리 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노력: 신청

- 초기에 급여 신청시 기관 담당자와 상담을 하였습니다니까?
 - 초기 상담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 상담시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 사항을 기관 담당자가 안내하였습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습니까?
- 어떤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까? (구두 / 자료 활용 등) (기억에 남거나 자료를 볼수 있는 등) 효과가 있었나요?
-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전달하면 수혜자 입장에서 효과가 있을것이라(기억에 남음, 더 주의하게 됨, 신고 등을 편하게 함)생각하십니까?

2. 관리 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노력: 유지 및 사후 관리

- 수급을 받은 후, 기관 담당자는 수급의 유지 또는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지 등 다양한 확인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수급 이후에 기관 담당자와 접촉하거나 추가 보완 자료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 혹시 수급의 유지 등을 위해 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활동 중 불편하였거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업무 예시]

- 방문확인(가장방문, 산상변동의심자 현장점검, 기관 방문 등)
-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에 방문 확인 요청(가장방문, 산상변동의심자 현장점검 등)
- 상담 또는 유선(전화)을 통한 확인
-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 부정정수급자 검색 및 부정정수급 의심자 등록 등
- 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 기관 내 다른 부서, 타 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상변동 등 변동사항 확인 요청
- 기관 내 감사부서에 부정수급 관련 감사 또는 조사 요청
- 기관 내 부정수급 전담부서(감사부서 제외)에 부정수급 관련 확인 등 협조 요청
- 기관 내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중목 급여·서비스 확인
- 타 기관의 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중목 급여 서비스 확인
- 상급기관(부처 등)에 조사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3. 부정수급 간접 경험

- 주변 지인들 중에 부정수급으로 수혜 중지, 환수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자료] 적발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방, 부패 (고의적, 형의의 부정수급)	허위	자무담금 대납, 가족부풀리기, 허위처리
	공모	내부공모, 외부공모
	임의처리	무담 담보, 무단 양도, 무단 임대, 무단 인출, 임의 사용
	가족간거래	가족동복제출, 가족간거래
수급자 오류, 행정오류 (비고의적, 공의의 부정수급)	관리미비	자격관리 미흡, 평가관리 미흡, 신청관리 미흡, 타당성 미검토, 과다 집행, 집행 오류, 정산 오류, 물리 제각
	입부착오	규정 미숙, 절차 미숙, 사용 미숙, 거래처 착오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미비, 카드영수증 미비, 기타 증빙
	중복처리	중복 등록, 중복 신청, 중복 증빙

- 혹시 본 급여 관련하여 주변 지인들 중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험 위주로 말씀주세요. (소문, 언론,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 등 모두 포함)
 - 본 급여가 아니어도, 다른 사회보장급여에서 주변인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경험 위주로 말씀해주세요
- ※ 부정수급 사례 발굴시, 수혜자/일반국민 입장에서 원인/해결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재질문할 것.

4. 부정수급의 신고, 관리

- 주변인의 부정수급 발생시 신고할수 있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 만일 알고 있다면, 신고를 했을때의 신고자 보호, 포상금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론 등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귀하께서 체험하기에, 수급자가 부정수급하려는 빈도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ESSION 4	부정수급 예방 및 제도 개선 방안	10mins
-----------	--------------------	--------

1. 부정수급 예방

- 본 사업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들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 기존의 법, 제도, 사업지침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도움 여부, 사업별 지침자료의 충분여부, 법적 보호 필요 여부 등 확인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SESSION 5	마무리	5mins
-----------	-----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후 종료

[부록 9] 중앙부처 기본조사 미응답 사업 현황

연번	사회보장급여사업명	소관부처
5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6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7	진폐근로자보호	고용노동부
41	이동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부
4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부
46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교육부
4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교육부
48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49	탈북학생 교육지원	교육부
50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
51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부
5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
53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65	WEE 클래스 상담지원	교육부
106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107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108	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109	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
110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118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11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120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124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금융위원회
125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햇살론youth 보증사업)	금융위원회
12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금융위원회
138	큰글자책 보급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43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7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보건복지부
192	다문화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193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9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97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보건복지부

346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연번	사회보장급여사업명	소관부처
198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2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21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236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39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24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보건복지부
2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271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273	재가암환자관리	보건복지부
336	여성기업 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33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중소벤처기업부
338	여성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365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

[부록 10] 중앙부처 예산 미제출 및 통합 사업 현황

연번	구분	예산(A)	분류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예산 미제출
11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고용노동부	집행액 미제출
66	급식비	교육부	예산 미제출
82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국가보훈처	예산 미제출
83	보훈병원 진료	국가보훈처	예산 통합
84	위탁병원진료	국가보훈부	
101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처	예산 미제출
111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국토교통부	예산 미제출
121	버팀목대출보증	금융위원회	집행액 미제출
122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금융위원회	집행액 미제출
12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금융위원회	집행액 미제출
127	근로·자녀장려금	기획재정부	집행액 미제출
132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집행액 미제출
154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예산 통합
155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보건복지부	
156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157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보건복지부	
158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159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보건복지부	
160	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161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보건복지부	
162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예산 통합
163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164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166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예산 통합
167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168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169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보건복지부	
170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보건복지부	
171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172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173	의료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	
174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	

연번	구분	예산(A)	분류
175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예산 통합
176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보건복지부	
177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180	치매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예산 통합
181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89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보건복지부	예산 통합
190	방과후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199	장애아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200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사회보험 이동(집행액 미제출)
20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예산 미제출
20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예산 미제출
205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예산 미제출
215	아동수당지급	보건복지부	예산 통합
216	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	
217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18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219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220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22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집행액 미제출)
224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집행액 미제출)
225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집행액 미제출)
226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집행액 미제출)
227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집행액 미제출)
31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여성가족부	예산 통합
31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31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30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여성가족부	예산 통합
317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여성가족부	
320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예산 통합
32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324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예산 통합
325	청소년전화1388 및 모바일문자상담 운영	여성가족부	
339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미제출
34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예산 통합
347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352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통일부	예산 통합

연번	구분	예산(A)	분류
354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통일부	예산 통합
355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통일부	
356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통일부	
357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통일부	
358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통일부	
359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통일부	

[부록 11] 사회보험기관 부정수급 현황 및 추이

1. 고용보험

〈부표 11-1〉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연도	지원		부정수급				
	건수	집행액	건수	부정수금액	납부할 금액	환수액	환수율
2018	416,115	1,040,926	292	2,403	4,796	3,672	76.6
2019	574,975	1,797,983	963	7,408	15,561	11,778	75.7
2020	885,470	4,607,437	972	12,098	24,741	19,621	79.3
2021	1,021,963	4,353,613	1,910	29,551	75,880	49,584	65.3
2022	643,984	2,016,547	1,278	18,453	49,608	27,194	56.6

주: 1) 지원금액은 집행일이 속한 연도 기준이며, 부정수급은 적발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함.
2) 지급결정 취소, 부정수급 결정 취소 등 사유로 건수 및 금액은 추출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기일 내 미납시 국제세납 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

〈부표 11-2〉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유형

(단위: 건)

연도	부정수급				
	합계	지도점검, 센터 조사 의뢰(내부적발)	부정행위신고 (외부제보)	자진신고	기타
2018	292	194	37	26	35
2019	963	394	37	44	488
2020	972	334	197	247	194
2021	1,910	580	457	437	436
2022	1,278	575	200	265	238

주: 1) 부정수급은 적발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부정수급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음.

〈부표 11-3〉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단위: 건/천원)

연도	부정수급자 수	고발건 수	부정수금액	제재 부가금
2018	151	14	956,244	920,808
2019	67	13	685,515	3,624,088
2020	221	21	1,034,259	4,542,293
2021	201	109	2,071,530	8,189,690
2022	351	75	4,703,418	14,697,911

자료: 고용노동부; 이은주의원실 보도자료(2023.6.6.)

2. 산재보험

〈부표 11-4〉 산재보험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적발건수	적발금액 (징수결정액+예방액)	징수결정액	예방금액
2018	196	45,220	11,724	33,496
2019	202	38,025	11,245	26,780
2020	308	43,616	7,405	36,211
2021	295	21,531	2,458	19,073
2022	302	20,829	4,287	16,542

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공개.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현황(202308).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ocu.jsp>)에서 2023년 9월 25일 인출.

〈부표 11-5〉 유형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건)

구분	적발 유형	'18	'19	'20	'21	'22
최초요양관련	최초요양관련 소계	41	36	29	63	26
	재해경위 조작	16	22	14	59	18
	근로자성 조작	12	11	7	4	2
	사업장 바꿔치기	9	3	5	0	6
	재해자 바꿔치기	1	0	3	0	0
	성립일 조작	1	0	0	0	0
	적용관계 조작 (공사금액, 근로자수 등 조작)	1	0	0	0	0
	기타(최초요양)	1	0	0	0	0
보험급여 관련	보험급여관련 소계	151	154	272	228	272
	평균임금 조작	8	2	3	3	1
	휴업급여 부정(부당)수급	91	107	213	197	242
	장해(폐질)상태 상이(조작)	31	30	42	18	14
	장해연금 부정(부당)수급	0	1	0	4	1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미신고	3	3	4	2	4
	간병급여 부정수급	12	9	7	3	6
	이송료 부당(부정)수급	1	1	0	0	2
기타	기타(보험급여관련)	5	1	3	1	2
	기타관련 소계	4	12	7	4	4
	진료비 부당청구(의료기관)	0	1	2	2	3
	요양관리 실패	3	7	2	2	0
	기타	1	4	3	0	1

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공개.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현황(202308).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ocu.jsp>)에서 2023년 9월 25일 인출.

〈부표 11-6〉 유형별 적발금액(징수결정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적발 유형	'18	'19	'20	'21	'22
최초 요양 관련	최초요양관련 소계	2,037	8,939	1,988	433	1,036
	재해경위 조작	846	5,015	674	285	914
	근로자성 조작	909	3,907	1,290	148	121
	사업장 바뀌치기	174	17	12	0	2
	재해자 바뀌치기	0	0	12	0	0
	성립일 조작	31	0	0	0	0
	적용관계 조작(공사금액, 근로자수 등 조작)	75	0	0	0	0
	기타(최초요양)	2	0	0	0	0
보험 급여 관련	보험급여관련 소계	9,684	2,302	5,332	1,993	3,242
	평균임금 조작	301	92	33	28	16
	휴업급여 부정(부당)수급	429	652	981	1,267	1,541
	장해(폐질)상태 상이(조작)	6,913	976	3,932	609	916
	장해연금 부정(부당)수급	0	0	0	0	239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미신고	124	401	287	77	229
	간병급여 부정수급	1,522	119	84	8	73
	이송료 부당(부정)수급	366	62	0	0	66
	기타(보험급여관련)	29	0	15	4	162
기타	기타관련 소계	3	4	85	32	9
	진료비 부당청구(의료기관)	0	0	14	17	3
	요양관리 실태	3	4	0	15	0
	기타	0	0	71	0	7

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공개.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현황(2023.08).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ocu.jsp>)에서 2023년 9월 25일 인출.

3. 국민연금

〈부표 11-7〉 국민연금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건수

(단위: 건, %)

연도	조사대상 건수	부정수급 적발 건수	적발율(%)
2018	65,000	40	
2019	65,000	49	
2020	62,000	63	
2021	66,000	43	
2022	67,000	22	

자료: 국민연금공단

〈부표 11-8〉국민연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수급기간)

(단위: 건)

연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2018	19	8	7	6
2019	13	14	5	17
2020	21	15	9	18
2021	22	3	6	12
2022	14	3	3	2

자료: 국민연금공단

〈부표 11-9〉국민연금 연도별 부당이득 적발건수 및 환수 결정 금액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노령연금	24	23	30	119	40	68	24	36	15	54
유족연금	13	62	14	68	19	93	16	73	6	25
장애연금	1	7	-	-	1	27	-	-	-	-
일시금	2	1	5	14	3	13	3	30	1	0

자료: 국민연금공단

〈부표 11-10〉국민연금 연도별 부당이득 환수 금액

(단위: 백만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노령연금	23	119	68	26	30
유족연금	57	40	76	56	11
장애연금	4	-	26	-	-
일시금	1	14	13	23	0

자료: 국민연금공단

4. 노인장기요양보험

〈부표 11-11〉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현지조사 결과)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대상 기관수	조사대상 기관	%	부당청구 기관	%	청구 지급액	부당 청구액	%	기관당 부당 금액
2018	소계	20,141	838	4.2	742	88.5	536,479	15,037	2.8	20
	재가	14,320	555	3.9	509	91.7	284,778	8,073	2.8	16
	시설	5,821	283	4.9	233	82.3	251,702	6,963	2.8	30
2019	소계	22,102	854	3.9	784	91.8	770,594	21,235	2.8	27
	재가	16,265	602	3.7	561	93.2	401,220	12,084	3.0	22
	시설	5,837	252	4.3	223	88.5	369,374	9,151	2.5	41
2020	소계	23,576	895	3.8	799	89.3	669,593	23,258	3.5	29
	재가	6,005	160	2.7	129	80.6	169,151	7,836	4.6	61
	시설	17,571	735	4.2	670	91.2	500,442	15,422	3.1	23
2021	소계	24,858	1,006	4.0	927	92.1	1,077,028	46,076	4.3	50
	재가	6,334	273	4.3	234	85.7	412,088	19,672	4.8	84
	시설	18,524	733	4.0	693	94.5	664,940	26,366	4.0	38
2022	소계	26,291	1,133	4.3	1,083	95.6	1,377,569	52,398	3.8	48
	재가	6,469	272	4.2	248	91.2	451,240	20,038	4.4	81
	시설	19,822	861	4.3	835	97.0	926,329	32,360	3.5	39

주: 1) 대상기관수: 전체기관 중 심사완료 기관
2) 반올림에 따른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부표 11-1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현황

(단위: 개소, %)

	조사기관	적발기관	적발률
2018	838	742	88.5
2019	854	784	91.8
2020	895	799	89.3
2021	1006	927	92.1
2022	1,133	1,083	95.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부표 11-13〉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수가가감산 위반		허위청구		산정기준 위반		자격기준 위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568	10,891	397	2,167	285	1,558	24	127	54	294
2019	659	16,957	423	3,171	245	883	24	102	72	120
2020	684	18,255	459	2,991	211	1,777	20	120	43	115
2021	810	37,908	453	4,112	195	1,974	29	301	48	1,782
2022	887	44,244	496	3,661	233	2,459	23	358	29	1,64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부표 11-14〉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 적발기관 행정처분 통보 현황

(단위: 건, 개소)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2018	20	498	1	8
2019	21	530	3	4
2020	16	517	6	1
2021	10	640	10	-
2022	5	695	2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부표 11-15〉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 적발 기관 수사의회(고발) 현황

(단위: 건, %)

	진행	불기소	벌금형	징역형	반려(각하)
2018	2	21	7	24	0
2019	27	20	19	8	2
2020	31	8	3	5	2
2021	55	4	2	2	0
2022	62	9	4	1	1

주: 2017년 진행 1건 재판중, 2018년 진행 2건 재판중 1건, 검찰수사중 1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5. 건강보험

〈부표 11-16〉 최근 5년 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자격상실 후 수급	고지건수	99,254	71,150	29,966	40,016	16,689	257,075
	고지금액	8,722	7,370	4,012	8,711	2,416	31,231
	환수금액	5,460	5,433	3,680	5,561	1,578	21,712
	환수율	62.6	73.72	91.72	63.84	65.31*	69.52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고지건수	942	847	592	498	524	3,403
	고지금액	1,279	1,130	738	615	546	4,308
	환수금액	719	639	572	443	298	2,671
	환수율	56.22	56.55	77.51	72.03	54.58*	62.00
고의중대한 과실로인한 범죄행위	고지건수	11,953	12,257	11,209	12,374	13,150	60,943
	고지금액	21,254	24,570	24,597	25,525	28,330	124,276
	환수금액	15,935	17,832	16,404	15,918	15,759	81,848
	환수율	74.97	72.58	66.69	62.36	55.63	65.86

주: 원단위 환수율과 차이 있음.
자료: 내부통계(2023.10.31.기준)

〈부표 11-17〉 면허대여약국 부정수급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분	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		징수	
년도	기관수(개소)	금액(백만 원)	금액(백만 원)	징수율(%)
2018	12	109,278	2,546	2.33
2019	14	16,612	2,470	14.87
2020	32	131,710	12,256	9.31
2021	15	10,867	6,174	56.82
2022	15	195,366	6,740	3.45
계	88	463,833	30,186	6.51

※최초 결정한 기관수,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건수, 금액(연도별 중복건 제외)

〈부표 11-18〉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징수	
년도	기관수(개소)	금액(백만 원)	금액(백만 원)	징수율(%)
2018	106	222,989	23,876	10.71
2019	100	518,616	18,924	3.65
2020	46	277,440	12,483	4.50
2021	23	55,654	11,988	21.54
2022	22	103,768	11,243	10.84
계	297	1,178,467	78,514	6.66

※최초 결정한 기관수,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건수, 금액(연도별 중복건 제외)